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79호

2025. 7. 17.(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2197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고 시

제2025-3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 13
제2025-376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 14
제2025-37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15
제2025-37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 18
제2025-380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2
제2025-381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0
제2025-382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73
제2025-383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 76
제2025-384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79
제2025-385호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2
제2025-3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 100
제2025-387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 103
제2025-388호 공항동 55-32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16
제2025-391호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140
제2025-392호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51

제2025-3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 174

◈ 공 고

제2025-211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187
제2025-21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88
제2025-2129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변경시행) 공시송달 공고 ····· 190
제2025-2131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안) ····· 191
제2025-2135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서소문고가차도) ····· 193
제2025-2145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 194
제2025-215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198
제2025-215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199
제2025-215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200
제2025-2157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01
제2025-2160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02
제2025-21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 208
제2025-216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209
제2025-216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210
제2025-216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211
제2025-2170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212
제2025-2172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크라운방재(주)] ····· 233
제2025-2173호 사적 탕춘대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공고 ····· 234
제2025-217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41
제2025-217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244
제2025-2183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246
제2025-2191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276

◈ 서울특별시의회

[예 규]

제17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281
제179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304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 례]

제96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07
제96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 309
제96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3
제96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 315
제96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8
제96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 320
제96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3
제96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6
제96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9
제96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1
제96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333
제96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6
제97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 338
제97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42
제97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44

◈ 구 고 시

제2025-105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 348
제2025-1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 352

◈ 구 공 고

제2025-9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종로구) ····· 358
제2025-699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공사완료 공고(중구) ····· 386
제2025-9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용산구) ····· 387
제2025-130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강서구) ····· 396
제2025-1295호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동작구) ····· 398
제2025-1698호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강남구) ····· 399
제2025-1306호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송파구) ····· 430

◈ 사업소고시

제2025-3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438

◈ 기 타

제2025-2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39
제2025-2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440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97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4호 ~ 제5호)
나.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09, 이메일: tmahsh6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팩 스: 02-768-8834
2) 이메일: tmahsh6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보건의료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공공보건의료”라 함은”을 “ “공공보건의료”란”으로, “ ‘시’ ”를 “ “시”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을 “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를 “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공공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공공보건의료”란 -------- ---------- ---------- ----- “시”---------- ---------- ---------- ---------- ----------.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3.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	나. ---------- ---------- ----------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하는 의료기관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신 설>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신 설>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융자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 필요한 ----------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도시경관담당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 점용의 목적
   - 목　적 : 청계천 야간경관 전기공사에 필요한 배관 및 경관조명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청계천(종로5가 458-1 외 8필지)
   - 면　적 : L=500.0m

5. 점용기간 : 2025년 6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120일간)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5. 7. 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6호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내역

구 분	구역의 명칭 (정비사업 방식)	위 치	면 적(㎡)	해제(일몰) 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기한)
기정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	2025. 8. 9.
변경 (연장)	가재울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78,640	2027. 8. 8.

2.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02-2133-7227) 또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02-330-16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7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강동구	양재대로124길	10	130
2	강서구	강서로48길	7~8	230
3	관악구	시흥대로160길	8	230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 보행자우선도로 위치도

1) 양재대로124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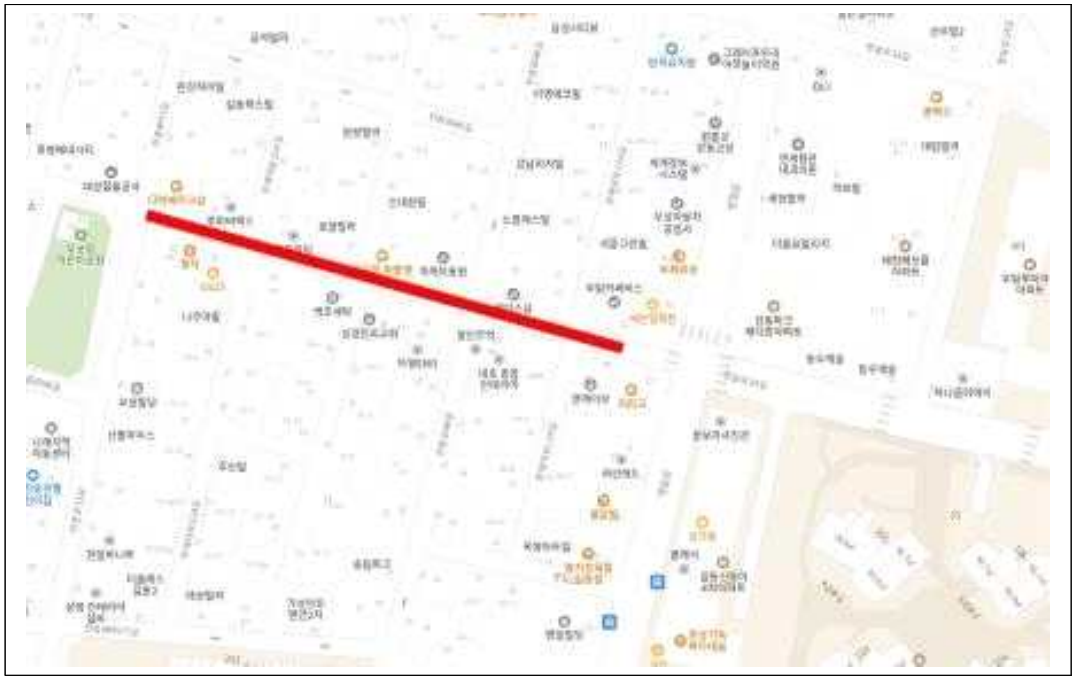

2) 강서로48길

3) 시흥대로160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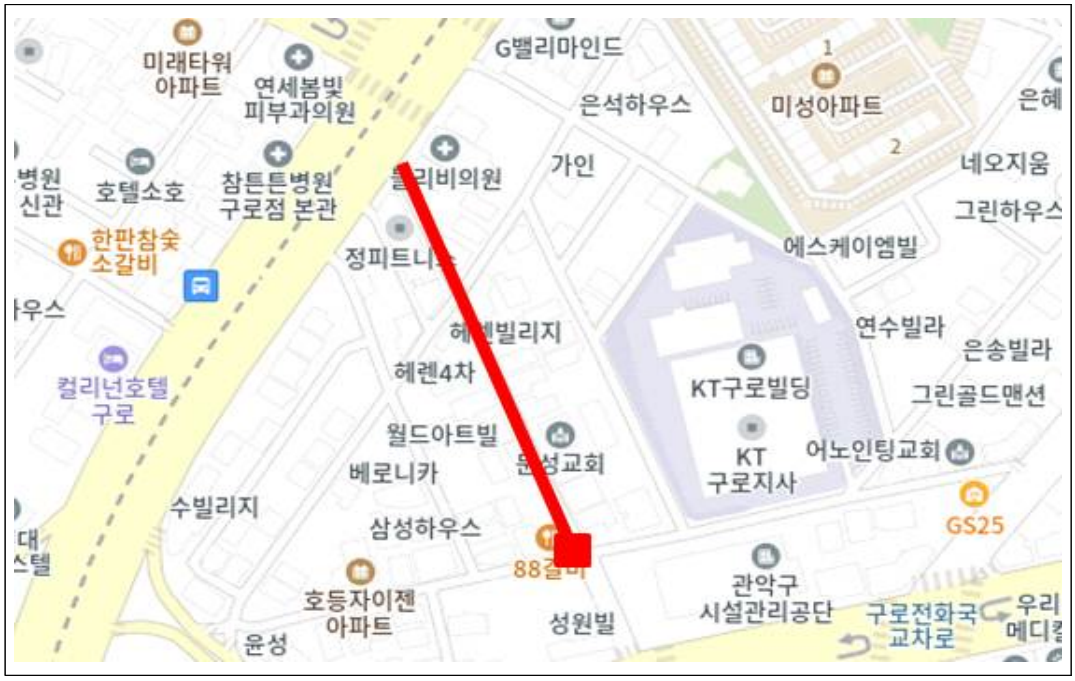
미래타워
아파트
연세봄빛
피부과의원
G밸리마인드
은석하우스
미성아파트
은혜
병원
신관
호텔소호
참튼튼병원
구로점 본관
가인
네오지움
그린하우스
한판참숯
소갈비
정피트니스
에스케이엠빌
연수빌라
은송빌라
컬리넌호텔
구로
혜렌4차
KT구로빌딩
그린골드맨션
월드아트빌
베로니카
KT
구로지사
어노인팅교회
GS25
수빌리지
삼성하우스
88길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구로전화국
교차로
호등자이젠
아파트
성원빌
윤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6.2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강남구 대치동 511번지)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5.03.14.)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개포동 157번지 일대 도곡동 410번지 일대 일원동 619,663번지 일대	5,268,557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268,557	-	5,268,557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1,107 (13,464.9)	감) 1,589.6	1,112,698.9 (15,054.5)	21.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928,697	-	928,697	17.6	-
제2종일반주거지역	1,613,546	-	1,613,546	30.6	-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6,032 (196,728.9)	감) 1,589.6	1,414,440.1 (195,139.3)	26.9	-
준주거지역	43,408		43,408	0.8	-
일반상업지역	155,767	-	155,767	3.0	-

※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261호(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는 구역 내 해당되는 사항임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치동 511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1,589.6㎡ 증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1,589.6㎡ 감소	• 구역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부지면적 및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부지로 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7	15	국지 도로	630	광로 1-72	대로 1-20	일반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
변경	중로	2	257	15	국지 도로	630	광로 1-72	대로 1-20	일반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	8~20	특수 도로	148	대치동 511	개포동 183-1	보행자 전용도로	-	-	중로2-257, 경관녹지4, 양재천과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57	중로2-257	•중로1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면적 305.3㎡)	•양재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입체보행로를 지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로2-	•신설 - 연장 : 148m, 폭원 : 8~20m	

※ 상기 시설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④	대치 근린공원	근린공원	대치동 512번지	10,408.9	감) 10,408.9	-	건고시465호 (71.8.6)	-
신설	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대치동 511번지	-	증) 4,532.4	4,532.4	-	-
신설	①	문화공원	문화공원	대치동 511번지	-	증) 7,467.6	7,467.6	-	-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대치 근린공원	•폐지 - 면적 : 10,408.9㎡	•금회 신규 편입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내 위치 조정을 위하여 시설 폐지
①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532.4㎡	•어린이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적정 위치에 공원 신설
①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7,467.6㎡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적정위치에 공원 신설

※ 상기 시설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간시설 변경없음

2)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⑨	경관녹지9	경관녹지	대치동 511-1	854.4	감) 854.4	-	-	-
폐지	⑩	경관녹지10	경관녹지	대치동 511-3	295.9	감) 295.9	-	-	-
기정	①	연결녹지1	연결녹지	대치동 512-1	1,933.4	감) 40.0	1,893.4	-	-
변경	①	완충녹지1	완충녹지	대치동 512-1					
기정	④	경관녹지4	경관녹지	중로2-257 남측일대	3,150.0	-	3,150.0	건고시253호 (85.6.11)	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⑨	경관녹지9	•폐지 - 면적 : 854.4㎡	•금회 신규 편입된 녹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내 위치 조정을 위하여 시설 폐지
⑩	경관녹지10	•폐지 - 면적 : 295.9㎡	•금회 신규 편입된 녹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내 위치 조정을 위하여 시설 폐지
①	연결녹지1	•시설명 변경 - 연결녹지1→완충녹지1 •면적 변경 - 1,933.4㎡→1,893.4㎡	•아파트 단지의 정주환경 보호 및 존치시설(극동교회)의 출입구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 용도 폐지 및 시설명 변경
④	경관녹지4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면적 : 101.7㎡)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를 위한 입체보행로 설치에 따른 중복결정

※ 상기 시설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신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 복지시설	노유자 시설	대치동 511	-	증) 4,000.0	4,000.0	-	유수지와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신설	①	사회 복지시설	대치동 511	층	지상4층 ~ 지하2층	-	키즈카페 (서울특별시)
				연면적	1,087.0		
				층	지상4층 ~ 지하2층	-	노인요양시설 (서울특별시)
				연면적	5,000.0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 복지시설	•신설 - 면적 : 4,000.0㎡ - 연면적 : 1,087.0㎡	•지역 초등돌봄 기관의 허브로서 아동 놀이와 쉼,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 등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지의 일부 및 건축물을 키즈카페로 기부채납
		•신설 - 면적 : 4,000.0㎡ - 연면적 : 5,000.0㎡	•초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획지의 일부 및 건축물을 노인요양시설로 기부채납

라. 방재시설

1) 하천 : 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기정	하천	양재천	내곡동 344	탄천 합류점	4,850	-	서고시 84호(79.2.26)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면적 :1,213.8㎡)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천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면적 : 1,213.8㎡)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를 위한 입체보행로 설치에 따른 중복결정

2) 유수지 : 신설

■ 유수지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저류시설	저류시설	대치동511	-	증) 4,000.0	4,000.0	-	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유수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4,000.0㎡ - 연면적 : 4,000.0㎡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획지의 일부 및 건축물을 저류시설로 기부채납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 지	합 계	188,383.4	증) 2,296.2	190,679.6	100.0	-
	획지1 (A1)	188,383.4	증) 1,256.2	189,639.6	99.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C1)	-	증) 1,040.0	1,040.0	0.5	존치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	비 고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존치시설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획지1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210 이하	230 이하	250 이하	-	존치시설

※ 획지1의 용적률계획은 2025 서울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도지역별 법적상한용적률 이하로서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

– 획지1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비 고
①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5%p	5%p
②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5%p	5%p
③감성디자인	공공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 지속적인 이행 담보가 가능하도록 지역권 설정	10%p 이내	8%p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미설치(관목 등 식재 불가), 연도형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준공 후에도 유지)	5%p	5%p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소통공간 조성	5%p 이내	-
④지역맞춤형	기반시설 등 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 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5%p 이내	-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추가 신설 가능	10%p 이내(합산)	-
합계		최대 20%p 이내		23%p 이내 〉 20%p적용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획지1 상한(법적상한)용적률 완화사항

구 분	용적률 완화		비 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공주택 건설	
용적률 완화사항	17.07%	52.92%	총 69.99%

■ 높이 계획

구 분	지역	높이기준	비 고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최고 170m 이하 (최고 50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제3종일반주거지역	40m 이하	존치시설

주) 획지1의 높이계획은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다. 건축물의 배치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후퇴
	학여울역 방향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후퇴
통경구간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를 포함하여 폭원 30m 확보
	단지 내 보행동선	• 동-서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폭원 15m 확보

5.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남-북 통경축 내	• 폭원 20m 및 24시간 개방 • 양재천로변으로의 보행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행공간 조성 • 공공보행통로(20m) 지역권 설정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되 계획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나.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삼성로, 남부순환로, 영동대로변	간선도로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양재천로변	이면도로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차량출입구	남부순환로변 1개소, 삼성로변 1개소, 양재천로변 2개소	간선부 및 이면부에서 단지내 출입을 위한 차량출입구 개설
	영동대로변 1개소	존치시설 출입을 위한 차량출입구 개설

다.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㉓	한보미도 특별계획구역	대치동 511번지 일대	195,080.4	증) 15,113.4	210,193.8	서울시고시 227호 (2002.6.17)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㉓	한보미도 특별계획구역	•구역계 확장 - 195,080.4㎡→210,193.8㎡	•구역 내 공원 및 녹지 확보와 양재천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입체보행로 설치를 위한 구역계 확장

2)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단지별 지구단위계획 계획지침(변경)

■ 특별계획구역23(한보미도)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위치	•강남구 대치동 511		-
특별계획구역 면적	•195,080.4㎡	•210,193.8㎡	-
획지(계획대지) 면적	•188,383.4㎡	•190,679.6㎡	존치시설 1,040.0㎡ 포함
공공시설 면적	•6,697.0㎡	•19,514.2㎡	국공유지 15,113.4㎡ 포함
공공시설 비율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3.4% 내외	•기부채납(순부담) 비율 5.77% 내외	-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기반시설 계획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6,697㎡ - 공원 2개소(남부순환로(면적 : 3,967㎡) 및 양재천변 (면적 : 2,730㎡) 어린이공원 2개소) ※ 공공기반시설면적은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기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5,113.4㎡ - 공원 : 11,599.2㎡, 녹지 : 1,893.4㎡, 도로(입체보행로) : 1,620.8㎡ •기부채납(순부담) 공공·기반시설 면적 : 11,196.2㎡ - 공원 2개소 중 일부 면적 400.8㎡ 계획 -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면적 4,000.0㎡ 계획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면적 2,366.5㎡ + 토지지분 4,428.9㎡ 계획 ① 공공주택 환산부지면적 : 852.6㎡ + 토지지분면적 : 4,428.9㎡ = 5,281.5㎡ ② 키즈카페 환산부지면적 : 101.6㎡ ③ 노인요양시설 환산부지면적 : 412.4㎡ ④ 저류시설 환산부지면적 : 765.9㎡ ⑤ 입체보행로 환산부지 면적 : 234.0㎡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 도로, 공원·녹지, 입체보행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자문을 통해 필수기반시설로 인정 ※ 공공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 ※ 공공주택은 주택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	
건축물의 용도·밀도에 관한 계획	용도	불허용도 A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 용도제한규정 준용 •이외 불허용도는 별도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허용용도 a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획지 1(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존치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
	용적률	기준용적률	•210% 이하	•210% 이하	-
		허용용적률	•230% 이하	•230% 이하	-
		상한용적률	•250% 이하	•250% 이하	-
	높 이		•최고층수 35층 이하	•최고 170m 이하 (최고층수 50층 이하)	-
배치	건축한계선		•남부순환로, 삼성로변 : 8m •양재천길변 : 6m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학여울역 방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통경구간		•단지 중앙으로 양재천, 남부순환로를 연계하는 남북방향 통경구간(폭 30m) (위치는 세부 지침도 참조)	•단지 중앙으로 양재천, 남부순환로를 연계하는 남-북 통경구간 계획 (폭 30m) •단지 동-서 간으로 보행동선과 연계하는 통경구간 계획 (폭 15m) (위치는 세부 지침도 참조)	-
	특화배치구간		•양재천변 : 폭60m	•역세권 특화배치 구간 - 학여울역 주변 디자인특화 랜드마크 건축물 계획 •양재천 특화배치 구간 - 수변테라스형 주거 등 양재천과 조화되는 건축물 계획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고층배치구간(권장) - 단지 중앙부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양재천변 경관을 고려한 타워형 주동배치 ※ 특화배치구간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과 연계 검토 ※ 위치는 세부 지침도 참조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남부순환로변 : 폭30m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벽면 길이가 대지와 접한 가로길이의 70%이상 되도록 배치	•남부순환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연도형 상가 배치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과 연계 검토 ※ 위치는 세부 지침도 참조	-
기타에 관한 사항	경 관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경관체크리스트 준용	-
	보행동선	•동서방향으로 단지 중앙광장과 통경구간을 연계하는 보행동선 조성	•남-북 통경구간 내에 폭원 20m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동-서간 통경구간과 학여울역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동선 설치	-
	차량동선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간선도로변 : 삼성로, 남부순환로, 영동대로변 일부 - 이면도로변 : 양재천로변 일부 ※ 위치는 세부 지침도 참조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도로	•영동대로변(폭3m이상), 남부순환로 및 삼성로(폭1.5m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영동대로변(폭3m이상), 남부순환로 및 삼성로(폭1.5m이상)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통경구간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조성(폭1.5m이상)	-
	근린광장	•통경구간 양측 단지내 근린광장 2개소 조성	•폐지	-
	쌈지형공지	•대치공원과 인접하여 쌈지형공지 조성	•폐지	-
	획지2 (존치시설) 특별지침	-	•존치시설(극동교회)의 경우, 자치구와 기 협의한 사항(진출입로 확보 및 적법화 등)을 준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공공기여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를 조건으로 존치 ① 출입구로 계획된 시유지(40㎡, 완충녹지 폐지 부분)는 극동교회에서 매입 할 것 ②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주민 커뮤니티공간 개방등)을 사용 승인 전 제출하여 사용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을 것(필요시 건축위원회 자문 등) ③ 존치시설에 부과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 공과금을 납부할 것 ④ 건축허가(' 97.3.11 제3회 설계변경)를 득한 규모 범위 내에서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시정완료 및 사용승인 가능	
	입체보행로	-	•입체보행로의 연결구간 위치 · 규모, 유지관리 및 설치비용 등 상세 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확정	-
	연결통로	-	•학여울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통로 설치 허용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설 결정 및 공간적 범위 검토)	-

※ 법정 상한용적률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신청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 및 관련법령과 기준을 우선 적용함
※ 보행동선·자전거도로·근린광장·쌈지형공지에 관한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할 수 있음
※ 공공주택은 주택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
※ 공공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
※ 세부사항은 본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및 지침도에 따름

Ⅱ.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	-	증) 210,193.8	210,193.8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추정비례율 : 100.52%
= (10,737,740,090천원 - 2,878,151,600천원) / 7,818,749,390천원 X 100 = 100.52%
- 총 수입 추정 : 10,737,740,090천원
- 총 지출 추정 : 2,878,151,600천원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7,818,749,390천원

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

•아파트 종전자산 = 2022년 공동주택가격 X 평균 보정률(117%)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와 해당 세대의 2022년 공동주택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평균보정률 산정)

전용면적(㎡)	공부상 전유면적(㎡)	대지권(㎡)	세대수	평균 추정가액 (천원)
84.48	105.49	58.06	336	2,491,000
84.96	106.87	58.94	280	2,460,286
115.05	125.83	69.78	336	2,960,286
126.33	137.14	76.09	448	3,101,071
128.01	141.32	78.25	560	3,124,871
159.15	170.04	94.39	84	3,725,429
161.36	174.67	96.76	224	3,671,643
190.47	201.39	111.85	84	4,127,571
191.07	204.42	113.19	84	4,292,571

•상가 종전자산 = 본건 및 인근 상가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고, 아파트와의 가격 균형, 층별, 위치별 효용 차이를 반영하여 추정

층	전유면적(㎡)	분양면적(㎡)	대지권(㎡)	호수	층별 추정가액(천원)
3	3,114.39	3,275.73	1,760.28	24	55,536,000
2	2,698.45	3,372.06	1,812.02	13	63,775,000
1	3,208.46	3,374.51	1,813.33	97	127,688,000
지하1	3,216.42	3,401.62	1,828.06	88	44,703,000

※ 층별 효용지수, 위치별 효용지수 등 적용하여 추정
•유치원 종전자산 = 본건 및 인근 상가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고, 아파트와의 가격균형, 층별, 위치별 효용차이를 반영하여 추정

구분	건물면적(㎡)	대지면적(㎡)	건수	추정가액(천원)
유치원	1,710.2	998.30	1	24,651,390

※ 종전자산 아파트, 상가, 유치원은 향후 실제 감정평가 시 구체적인 가치형성요인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정 분담금 산출

•아파트, 상가, 유치원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③ 추정분담금 =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① 추정 권리가액[추정비례율(a) X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b)]

① 추정 권리가액	②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③ 추정분담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0.52%)	전용 59㎡형	1,968,000천원	권리자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84㎡형	2,631,000천원	
	전용 115㎡형	3,387,000천원	
	전용 127㎡형	3,626,000천원	
	전용 160㎡형	4,382,000천원	
	전용 190㎡형	5,081,000천원	
	상가 전체 일괄	293,700,000천원	
	유치원	29,718,090천원	

※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3.3㎡ 당 약 7,925만원 추정액의 약 95%를 기준으로 산정됨
※ 상가 분양가는 3.3㎡당 72,326천원(상가분양수입 293,700,000천원 ÷ 상가신축연면적 13,424㎡)으로 산정됨

※ 해당 분담금은 추정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10,193.8	100.0	-
택지용지	소 계		190,679.6	90.7	-
	A1	공동주택	189,639.6	90.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C1	존치시설	1,040.0	0.5	극동교회
정비기반시설 용지	소 계		19,514.2	9.3	국공유지 15,113.4㎡ 포함 실제 기부채납 면적 4,400.8㎡
	어린이공원		4,532.4	2.2	-
	문화공원		7,467.6	3.5	-
	완충녹지		1,893.4	0.9	-
	사회복지시설 등		4,000.0	1.9	키즈카페 건축물 연면적 1,087.0㎡ 노인요양시설 건축물 연면적 5,000.0㎡ 저류시설 건축물 연면적 4,000.0㎡ (환산부지면적 1,279.9㎡)
	도로(입체보행로)		1,620.8	0.8	입체보행로 건축물 연면적 1,620.8㎡ (환산부지면적 234.0㎡)

※ 순부담률 : 5.77%(정비기반시설 + 건축물)
- 토지 기부채납(2.27%) : 공원 400.8㎡ (0.21%) + 사회복지시설 등 4,000.0㎡ (2.06%)
- 건축물 기부채납 중 토지 지분면적(2.28%) : 공공주택 토지지분 4,428.9㎡ (2.28%)
- 건축물 기부채납 중 환산부지면적(1.22%) : 키즈카페 101.6㎡ (0.05%) + 노인요양시설 412.4㎡ (0.21%)
  + 저류시설 765.9㎡ (0.40%) + 입체보행로 234.0㎡ (0.12%)
  + 공공주택 852.6㎡ (0.44%)

5.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10,193.8	-	210,193.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3,464.9	증) 1,589.6	15,054.5	7.2	-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728.9	감) 1,589.6	195,139.3	92.8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대치동 511번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면적 1,589.6㎡ 증가 •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1,589.6㎡ 감소	• 구역 내 편입되는 국공유지의 부지면적 및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부지로 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면적 변경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57	15	국지 도로	630	광로 1-72	대로 1-20	일반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
변경	중로	2	257	15	국지 도로	630	광로 1-72	대로 1-20	일반도로	-	건고시 296호 (83.09.07)	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신설	소로	2	-	8~20	특수 도로	148	대치동 511	개포동 183-1	보행자 전용도로	-	-	중로2-257, 경관녹지4, 양재천과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257	중로2-257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면적 305.3㎡)	•양재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입체보행로를 지정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	소로2-	•신설 - 연장 : 148m, 폭원 : 8~20m	

※ 상기 시설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교통시설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④	대치 근린공원	근린공원	대치동 512번지	10,408.9	감) 10,408.9	-	건고시465호 (71.8.6)	-
신설	①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대치동 511번지	-	증) 4,532.4	4,532.4	-	-
신설	①	문화공원	문화공원	대치동 511번지	-	증) 7,467.6	7,467.6	-	-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대치 근린공원	•폐지 - 면적 : 10,408.9㎡	•금회 신규 편입된 근린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내 위치 조정을 위하여 시설 폐지
①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4,532.4㎡	•어린이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적정 위치에 공원 신설
①	문화공원	•신설 - 면적 : 7,467.6㎡	•거주민 및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적정위치에 공원 신설

※ 상기 시설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간시설 변경없음

2) 녹지 : 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⑨	경관녹지9	경관녹지	대치동 511-1	854.4	감) 854.4	-	-	-
폐지	⑩	경관녹지10	경관녹지	대치동 511-3	295.9	감) 295.9	-	-	-
기정	①	연결녹지1	연결녹지	대치동 512-1	1,933.4	감) 40.0	1,893.4	-	-
변경	①	완충녹지1	완충녹지	대치동 512-1					
기정	④	경관녹지4	경관녹지	중로2-257 남측일대	3,150.0	-	3,150.0	건고시253호 (85.6.11)	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⑨	경관녹지9	•폐지 - 면적 : 854.4㎡	•금회 신규 편입된 녹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내 위치 조정을 위하여 시설 폐지
⑩	경관녹지10	•폐지 - 면적 : 295.9㎡	•금회 신규 편입된 녹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역 내 위치 조정을 위하여 시설 폐지
①	연결녹지1	•시설명 변경 - 연결녹지1→완충녹지1 •면적 변경 - 1,933.4㎡→1,893.4㎡	•아파트 단지의 정주환경 보호 및 존치시설(극동교회)의 출입구 확보를 위하여 일부 구간 용도 폐지 및 시설명 변경
①	경관녹지4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면적 : 101.7㎡)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를 위한 입체보행로 설치에 따른 중복결정

※ 상기 시설 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간시설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 신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사회 복지시설	노유자 시설	대치동511	-	증) 4,000.0	4,000.0	-	유수지와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신설	①	사회 복지시설	대치동511	층	지상4층 ~ 지하2층	-	키즈카페 (서울특별시)
				연면적	1,087.0		
				층	지상4층 ~ 지하2층	-	노인요양시설 (서울특별시)
				연면적	5,000.0		

■ 사회복지시설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 복지시설	•신설 - 면적 : 4,000.0㎡ - 연면적 : 1,087.0㎡	•지역 초등돌봄 기관의 허브로서 아동 놀이와 쉼,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 등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지의 일부 및 건축물을 키즈카페로 기부채납
		•신설 - 면적 : 4,000.0㎡ - 연면적 : 5,000.0㎡	•초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획지의 일부 및 건축물을 노인요양시설로 기부채납

라. 방재시설

1) 하천 : 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변경		
기정	하천	양재천	내곡동 344	탄천 합류점	4,850	-	서고시 84호(79.2.26)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 (면적 :1,213.8㎡)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하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천	•소로2류 특수도로(입체보행로)와 중복결정(면적 : 1,213.8㎡)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를 위한 입체보행로 설치에 따른 중복결정

2) 유수지 : 신설

■ 유수지 결정(신설)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저류시설	저류시설	대치동511	-	증) 4,000.0	4,000.0	-	사회복지시설과 중복결정

※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3 부분만 기재

■ 유수지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저류시설	•신설 - 면적 : 4,000.0㎡ - 연면적 : 4,000.0㎡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획지의 일부 및 건축물을 저류시설로 기부채납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근린생활시설 등	대치동 511 번지 일대	-	증) 13,424.0	13,424.0	-
	관리사무소		-	증) 240.0	240.0	법적기준 : 203.2㎡
	경비실		-	증) 100.0	100.0	법적기준 : 50㎡
	작은도서관		-	증) 500.0	500.0	법적기준 : 489.4㎡
	경로당		-	증) 1,110.0	1,110.0	공공개방 법적기준 : 1,107.8㎡
	어린이집		-	증) 1,110.0	1,110.0	공공개방 법적기준 : 1,107.8㎡
	어린이놀이터		-	증) 3,300.0	3,300.0	법적기준 : 3,239.8㎡
	주민운동시설		-	증) 1,400.0	1,400.0	-
	유치원		-	증) 1,710.0	1,710.0	-
	다함께돌봄센터			증) 520.0	520.0	공공개방
	기타공동시설		-	증) 24,000.0	24,000.0	공공커뮤니티시설 공공개방

※향후 사업승인시 시설 설치면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규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10,193.8	-	-	대치동 511번지	25	1	-	24	-	-

9.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명칭	면적(㎡)				상한	예정 법적상한	
합계		190,679.6	-	-	-	-		-
변경	A1	189,639.6	대치동 511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47.07 이하	299.99 이하	최고 170m 이하 (최고 50층 이하)
신규	C1	1,040.0	대치동 511번지	존치시설	50 이하	250 이하		40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및 비율 기준
- 1 : 1 재건축 적용
-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으며, 연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구분	전용 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연면적 (㎡)	비율(%)
		공공	분양			
60㎡이하	59㎡	756	416	29.9	98,280.24	17.7
	소계	756	416	29.9	98,280.24	17.7
60~85㎡ 이하	84㎡	-	922	23.5	109,577.90	19.7
	소계	-	922	23.5	109,577.90	19.7
85㎡초과	115㎡	-	336	8.6	54,095.86	9.7
	127㎡	-	1,008	25.8	179,436.47	32.3
	160㎡	-	308	7.9	69,258.13	12.5
	190㎡	-	168	4.3	44,830.00	8.1
	소계	-	1,820	46.6	347,620.46	62.6
합계		756	3,158	100.0	555,458.60	100.0
		3,914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명칭	면적(㎡)				상한	예정 법적상한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학여울역 주변 15m							

10.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존치시설 (㎡)	신설 공공시설 등(㎡)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 등 내 국공유지(㎡)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계	토지 및 토지지분	건축물 (토지환산)		
	210,193.8	189,639.6	1,040.0	22,795.4	20,428.9	2,366.5	232.4	11,366.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 - 신규 설치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22,795.4㎡ - 232.4㎡ - 11,366.8㎡ = 11,196.2㎡ (5.77%)							
토지	• 사회복지시설 등 제공부지 : 4,000.0㎡ • 공원 제공부지 : 400.8㎡ (전체 12,000㎡ 중 국공유지 11,599.2㎡)							
토지 지분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토지지분면적 = 공공주택 = 4,428.9㎡ ①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 : 토지지분면적 = 4,428.9㎡ - (공공주택 연면적 24,086.62㎡ / 최대연면적 1,031,357.56㎡) × 대지면적 189,639.6㎡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토지 환산면적	• 건축물 기부채납(공공기여) 환산부지면적 = 공공주택 + 키즈카페 + 노인요양시설 + 저류시설 + 입체보행로 = 852.6㎡ + 101.6㎡ + 412.4㎡ + 765.9㎡ + 234.0㎡ = 2,366.5㎡ ① 건축물 기부채납(공공주택) : 토지환산 면적 = 852.6㎡ -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1 = 지상층(13,819.23㎡ × 2,065,152원/㎡) + 지하층(10,267.39㎡ × 917,273원/㎡) = 37,956,800,600원 : ㉯ 공시지가주2 × 2 = 22,260,000원/㎡ × 2 = 44,520,000원/㎡ ② 건축물 기부채납(키즈카페) : 토지환산 면적 = 101.6㎡ -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3 = 1,087.0㎡ × 4,160,909원/㎡ = 4,522,908,182원 : ㉯ 공시지가주2 × 2 = 22,260,000원/㎡ × 2 = 44,520,000원/㎡ ③ 건축물 기부채납(노인요양시설) : 토지환산 면적 = 412.4㎡ -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4 = 5,000.0㎡ × 3,671,818원/㎡ = 18,359,090,909원 : ㉯ 공시지가주2 × 2 = 22,260,000원/㎡ × 2 = 44,520,000원/㎡ ④ 건축물 기부채납(저류시설) : 토지환산 면적 = 765.9㎡ -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주5 = 34,095,825,622원 : ㉯ 공시지가주2 × 2 = 22,260,000원/㎡ × 2 = 44,520,000원/㎡ ⑤ 건축물 기부채납(입체보행로) : 토지환산 면적 = 234.0㎡ -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원) ÷ ㉯ 용적률 완화받고자 하는 부지가액(원/㎡) : ㉮ 건축 연면적 × 설치비용주6 = 1,620.8㎡ × 6,429,200원/㎡ = 10,420,447,360원 : ㉯ 공시지가주2 × 2 = 22,260,000원/㎡ × 2 = 44,520,000원/㎡ 주1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고 고시 제2024-497호) 중 50㎡초과~60㎡이하 지상층 건축비 평균값, 지하층 건축비 주2 : 개별공시지가(2024.01.기준)							

구분	산 정 내 용
	주3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내 육아·보육·키즈센터 공사비 주4 :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4) 내 노인요양 공사비 주5 : 하수도분야 보조금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 산정 근거에 따른 서울시 치수안전과 설치비용 산정 단가 적용 주6 :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부 “한강전망 보행데크 조성” (2011년도 정책자료집) - 한강전망보행데크조성(성수,가양,서빙고 보행교) 사업비 평균값 적용 ※ 키즈카페, 노인요양시설은 서울시에서 직접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기준으로 공사비 단가를 적용함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210% + 20% = 23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 공공보행통로(8%) + 열린단지(5%) + 돌봄시설(5%) + 방재안전(5%) 총 23% 〉 20% 적용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250.0% 이하 = 허용용적률 × (1+1.3×α(토지)+0.7×α(건축물1)+1.0×α(건축물2)) = 230 × (1 + 1.3 × 0.04767 + 0.7 × 0.00181 + 1.0 × 0.01096) = 247.07% α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8,829.7㎡주7) / 185,210.7㎡주8) = 0.04767 α건축물1 = 공공시설설치비용 토지환산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335.6㎡주9) / 185,210.7㎡주8) = 0.00181 α건축물2 = 공공시설설치비용 토지환산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030.9㎡주10) / 185,210.7㎡주8) = 0.01096 ※주7 : 8,829.7㎡ = 4,000.0㎡(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면적) + 400.8㎡(공원 추가 확보 면적) + 4,428.9㎡(공공주택 지분면적) ※주8 : 185,210.7㎡ = 210,193.8㎡(구역면적) - 15,113.4㎡(기존 국공유지) - 1,040.0㎡(존치시설부지면적) - 4,000.0㎡(사회복지시설 등 부지면적) - 400.8㎡(공원 추가 확보 면적) - 4,428.9㎡(공공주택 지분면적) ※주9 : 335.6㎡ = 101.6㎡(키즈카페 환산부지 면적) + 234.0㎡(입체보행로 환산부지 면적) ※주10 : 2,030.9㎡ = 412.4㎡(노인요양시설 환산부지 면적) + 765.9㎡(저류시설 환산부지 면적) + 852.6㎡(공공주택 환산부지 면적)
법적상한 용적률	299.98% 이하

11.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에 관한 계획

■ 공공주택 공급면적 산출 근거

계획기준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목적의 공공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299.99% 이하				
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247.07% 이하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산출근거	용적률 증가분	•52.92% 이하				
	증가된 용적률의 50%	•26.46% 이상				
	의무 연면적	•26.46% × 189,639.6㎡ = 50,178.64㎡ 이상				
	공공주택 확보계획 (법적상한용적률완화)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95㎡	83.86㎡	599	50,232.14㎡	-
		총계		599	50,232.14㎡	50,232.14㎡ 〉 50,178.64㎡

	구분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비고
공공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공공주택 (공공기여)	59.95㎡	83.86㎡	157	정비계획 용적률 완화(공공기여)에 따른 공공주택
		계		157	
	공공주택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59.95㎡	83.86㎡	599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주택
		계		599	
	총 계			756	-

■ 공공주택 혼합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조합원 및 일반분양		공공주택 세대수			공공주택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전체 세대수대비	공공기여	법적상한 용적률완화
합계	3,914	100.0	3,158	80.7	756	157	599	19.3	4.0	15.3
60㎡ 이하	1,172	29.9	416	10.6	756	157	599	19.3	4.0	15.3
60~85㎡ 이하	922	23.5	922	23.5	-	-	-	-	-	-
85㎡ 초과	1,820	46.6	1,820	46.6	-	-	-	-	-	-

※ 공공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은 동일(유사)한 규모와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고,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함
※ 공공기여 및 용적률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현황 2,436세대 계획 3,914세대 증가 1,478세대	-

13. 환경성 검토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1.생태 면적률	40%	○	아파트 단지로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으며, 일부 조경식재 및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자연지반임	자연지반녹지, 옥상녹화 등을 계획하여 생태면적율 40% 이상으로 목표기준 설정	-
	2.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	계획구역은 현재 녹지의 연결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한티근린공원 및 대치근린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계획수립	-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계획구역은 평탄지로 구성 부지조성 시 절성토에 따른 토량발생 예상	지나친 절·성토 금지 발생토량은 토석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처리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부지조성에 따른 지형의 물리적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평탄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4.비오톱	비오톱유형 3등급	○	비오톱 유형평가도 3등급, 개별비오톱 평가도 평가제외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생활 환경	5.일조	총 4시간 또는 연속2시간 확보	○	계획구역 주변 건축물에 대하여 일조로 인한 영향 검토결과, 수인한도를 만족함	서울시 건축조례에 준하여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6.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서울시 주풍향인 서풍으로 인하여 계획구역 부지내로 찬공기가 유입됨	바람길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배치계획 수립	-
	7.에너지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도입	-
		신재생에너지 사용	○	단지시설로서 설치시설 없음	친환경 건축물인증 등 서울시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
	8.경관	Skyline보전	○	-	지형을 고려한 배치로 위화감방지 및 주변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권 확보	○	건물배치 계획변화에 따라 경관 변화 예상	주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계획 수립	-
		가로녹지율 35%	-	-	-	-
	9.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	본 사업 시행으로 입주민들에게 휴식 및 여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긍정적인 영향	-
	10.보행 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로변 보도 설치	보행공간 확보로 접근성 향상	-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계획구역 내 자전거도로 없음 남부순환로에 보도와 함께 자전거도로 확보	주민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확보토록 계획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자전거보관시설 열악	주민 편의를 위해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토록 계획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추가	11.물순환	우수유출 저감	○	계획구역은 현재 아파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탄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연지반, 투수성포장으로 우수유출 저감	-
	12.소음 및 진동	소음 65dB(A) 이하	○	공사중 인근 주거시설에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소음 65dB(A) 이상 발생 예상	생활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저감방안 이행 후 공사시행	-
	13.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 생활폐기물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관할구역 행정지침에 따라 처리	-

14.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정비구역계	○ 대치근린공원 및 녹지를 구역 내에 편입하여 구역계 설정 - 구역계 확장을 통해 공원·녹지 체계 재구성 및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 확보(195,080.4㎡→210,193.8㎡)
토지이용계획	[기본방향]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단지 조성(녹지생태도심단지) - 양재천 연결성 강화 및 단지 내 녹지공간 확대 ○역세권 활성화 및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보행일상권 조성 - 역세권 랜드마크 형성 및 단지와 연결 보행가로 활성화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유지
공공시설 등	○도로 - 대치생활권 ~ 개포생활권 간 연계를 위한 특수도로(입체보행로) 1개소 신설(공원 및 하천과 중복결정)
	○공원·녹지 - 대곡초등학교변 어린이공원 1개소, 양재천변 문화공원 1개소 설치 - 연도형 상가 도입 및 가로활성화를 위해 남부순환로변경관녹지 폐지 - 영동대로변 연결녹지는 도로소음 차단 및 정주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로 변경하고, 구역 내 존치시설(극동교회) 출입구 부분은 허용
	○공공시설(공공청사, 생활SOC 등) - 대중교통 접근성 및 강남구민회관과 연계성을 고려, 대치역인근에 생활SOC(공공청사 등) 설치 ※ 공공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 공공주택 : 도로, 공원·녹지를 제외한 공공시설 등의 1/2은 공공주택으로 확보 원칙(소셜믹스) ※도로, 공원·녹지, 입체보행로는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자문을 통해 필수 기반시설로 인정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용적률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30% 이하 : 인센티브 항목은 정비계획 입안 및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서간 협의를 통해 결정 ○상한용적률(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및 「도정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포함) - 상한용적률① 250% 이하 : 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공공기여(순부담기준) 5.77% 내외 · 대치근린공원 구역계 포함에 따라 감소되는 공원·녹지, 입체보행로를 제외한 공공시설 등의 1/2은 공공주택으로 확보 원칙 · 도로, 공원·녹지, 입체보행로를제외한 공공시설 등의 1/2은 공공주택으로 확보 원칙 - 상한용적률②(법적상한) 300% 이하 : 상한①~상한②(법적)까지 증가 용적률의 ½은 공공주택으로 건설(「도정법시행령」제54조, 「서울시 도정조례」제30조)
주택공급	○계획세대수 3,800세대 내외 ※ 공공주택은 주택정책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 ※ 주민제안(안) 바탕으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수요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결정
층수/높이	○높이계획은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녹지공간) 확대 및 양재천변 경관을 고려해 계획 - 고층배치구간에 한해 35층이하→ 50층이하로완화, 양재천변 경관을 고려해 타워형 주동배치를 권장 - 북서측 주거동은 대곡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영향 등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별 최고층수폐지('22.12. 예정)
건축한계선	○기존 단지 내 양호한 수림 보호를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으로 '녹지생태도심' 실현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확보 ○학여울역 활성화 및 연결통로 설치에 따른 공지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학여울역 주변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확보
보행동선계획	[공공보행통로] ○남-북통경구간내에 폭원20m의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대치생활권~개포생활권 간 연결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 방안 마련(예. 지역권 설정) [단지내 보행동선] ○동-서 통경구간과 학여울역을 연결하는 단지 내 보행동선 설치 [학여울역 연결통로] ○학여울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연결통로 설치 허용(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설 결정 및 공간적 범위 검토)
차량출입구	○차량출입구는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등 간선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공동주택 출입구는 남부순환로변 1개소, 삼성로변 1개소, 양재천변 2개소 설치 · 남부순환로변 출입구는 주변 교통영향 최소화를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0m이상 이격하여 설치 · 삼성로변 출입구 위치는 인접한 선경아파트 출입구와 연계 검토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정비계획 지침도에 따르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관계획	[통경구간] ○대상지 내 남-북 폭원30m(북측 주거지역 통경축과 연계), 동-서 폭원15m의 통경축을 확보하여 시각적 개방감확보 [특화배치구간] ○역세권 특화배치구간: 학여울역 주변 랜드마크 건축물 계획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양재천 특화배치구간: 수변테라스형주거 등 양재천과 조화되는 건축물 계획 ○고층배치구간(권장) : 단지 중앙부는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양재천변 경관을 고려한 타워형주동배치 ○연도형상가배치구간(권장) : 남부순환로 가로활성화를 위해 연도형 상가 배치 ※ 특화배치구간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과 연계 검토
주민공동시설	○단지 내 보행접근성이 높은지역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를 권장 - 공공보행통로에 면하여 배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
존치시설	○구역 내 극동교회는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거쳐 합의가 어려울경우, 존치 가능 ※극동교회를 존치할 경우, 자치구와 기 협의한 사항 (진출입로확보 및 적법화 등)을 준수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공공기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를 조건으로 존치

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계획 ○특별건축구역의 완화규정을 적용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 등은 주거유형 다양화, 경관성,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거성능이 개선되도록 계획
단지배치계획	○다양한 중·저층주거와 타워형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클러스터형, 열린 중정형 배치 계획 - 단지 중앙부는 양재천변 경관을 고려한 타워형 주동배치를 권장 ○기존의 획일화된 슈퍼블록을 중·소블럭으로 계획하여 보행자 중심의 주거단지로 계획 ○중·소규모블록 내에는 단지 주민들이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특화 마당공간 계획, 보행순환체계와 연결 ○학여울역 인근은 역세권 디자인 특화배치 구간으로 타워형 디자인 특화동 계획 ○양재천변은 수변테라스, 외부발코니 등 양재천과 조화되는 특화건축물 계획 ○남부순환로변 가로 활성화를 위해 연도형 상가 배치를 권장
스카이라인 및 경관계획	○단지 내 동서방향의 보행동선을 통해 시각통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 ○남북 공공보행통로 활성화와 양재천변 경관 이미지구축을 위해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형성 ○남측 문화공원 주변은 양재천변 경관을 형성하는 단지의 상징적인 장소임을 고려하여 고층부 이상의 스카이라인 계획 - 양재천변과 공공보행통로에 인접한 단지 중앙부는 고층의 타워형 계획(30~50층) 되도록 계획 ○북서측 주거동은 대곡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영향이 최소화
가로공간 및 동선계획	○이웃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및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가로를 형성 - 생활가로에는 부대복리시설 등을 집중하고,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 친화적인 가로계획을 유도 - 주민공동시설과 면하며, 조경을 통해서 보행과 산책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존 단지 내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보존하여 주민의 산책로로 활용(녹지생태도심) ○대상지 중앙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동서방향의 생활가로, 학여울역으로의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보행중심 생활권 계획 ○대치~개포생활권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와 보행브릿지 설치로 보행일상권 조성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건축시설 계획	○도시의 획일적인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형식의 다양화 계획 (예, 탑상형, 판상형, 혼합형) 미래의 주거 변화에 대응하도록 장수명 주택, 가변형 구조 등 지속가능한 형태의 단위세대 평면 계획 제시 ○서로 다른 높이의 주동 배치계획을 통하여 각 세대에 양호한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시각적 개방감확보 ○중저층 주동의 최상층 세대는 옥상정원을 갖는 형태 등 특화평면 도입 등 공동주택의 라이프스타일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계획 ○양재천을 조망하는 세대는 적극적인 외부공간(발코니, 오픈 공용공간 등) 도입 권장 ○대상지 입지특성상, 아파트 내 침수방지를 위한 방재관련시설 계획을 검토 ※ 정비계획 입안 및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서간 협의(저류조등 권장)를 통해 결정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생활SOC,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을 보행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 ○주동 배치계획 시 중정형의 마당과 공용시설을 계획하여 개방적 환경을 구축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은 공공보행통로 및 생활가로변에 배치하여 공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고 가로 및 보행동선에 면한 주거동 하부에 배치하여 가로활성화 유도
공원계획	○남부순환로변 어린이공원은 학교 통학로 및 공원의 접근성 등 고려하여 계획 ○양재천변 공원은 양재천과 연결되는 보행브릿지 및 양재천 수변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Ⅲ.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3.14.) 심의결과 : 수정가결

[수정사항 : 금회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다음 사항 반영하여 수정]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면적,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	·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면적,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음	반영
2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사항은 '신속 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의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 명시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 관한 사항은 '신속 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의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명시하였음	반영

[조건사항]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 저류조 용량은 향후 대치역 일대에 필요한 전체 용량 및 분담량 확정(시 치수안전과)시 최종 규모 반영	· 향후 대치역 일대에 필요한 전체 용량 및 분담량 확정(市 치수안전과)시 최종 규모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겠음	반영
2	·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전까지 양재천변에서의 위압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지 동측 양재천변 건축물 높이는 하향 조정하고 필요시 북측 남부순환로변 높이 상향 검토	· 대상지 남동측 양재천변 201, 202동을 39층에서 37층으로 2개층 하향 조정하고, 603, 604동은 2개층 상향조정 및 502동은 2개층 상향 조정함(고층배치구간)	반영
3	· 대상지와 구역 경계 간의 과도한 단차 발생으로 인한 주민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대지조성계획 검토	· 학여울역 사거리변 단차 최소화를 위해 인접부위 대지 내부 레벨을 +14.0에서 +15.0으로 조정함	반영
4	· 입체보행교 계획은 문화공원 및 입체보행교 이용객 편의, 단지 내 동서간 연결 등에 지장이 없도록 입체보행교 폭원, 규모 및 단차계획 등 검토 필요	· 문화공원 및 공공보행통로에 침해되지 않도록 평지로 계획 후 문화공원 끝부분 입체보행교 연결구간에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1/18)를 설치함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결정도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39),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02-3423-6092)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정비계획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23 결정(기정)도

■ 특별계획구역23 결정(변경)도

■ 건축계획(배치도) (예시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0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 11. 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 7. 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8호(2014. 10.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 11.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 3. 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 10. 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 9.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 4. 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 7.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2018. 1.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 3.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 8.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1호(2018. 12. 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호(2019. 7.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 12.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2021. 12. 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호(2023. 2.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5호(2023. 5.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1호(2024. 6. 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천호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 후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강동구 천호동 362-60 일대	강동구 천호동 578 일대	408,722.6	감) 337,517.1	71,205.5	존치관리구역 내 모아타운 등 대안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라, 기 존치관리구역에 대해 지구 해제함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면적 : 409,010.9㎡ → 408,722.6㎡(감 288.3㎡)

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408,722.6	감) 337,517.1	71,205.5	100.0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획지	소계	282,776.6	감) 228,414.1	54,362.5	76.3
	공동주택용지	45,689.6	감) 19,173.2	26,516.4	37.2
	근린생활시설용지	33,468.8	감) 33,468.8	-	-
	주상복합용지	27,393.1	-	27,393.1	38.5
	종교용지	453.0	-	453.0	0.6
	존치	175,772.1	감) 175,772.1	-	-
정비기반시설	소계	125,946.0	감) 109,103.0	16,843.0	23.7
	유수지	10,626.6	감) 10,626.6	-	-
	공공청사	1,344.0	-	1,344.0	1.9
	공원	35,336.1	감) 29,986.7	5,349.4	7.5
	도로	78,639.3	감) 68,489.7	10,149.6	14.3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8,488	감) 6,766	1,722	20,105	감) 16,269	4,306	
촉진구역	소 계	1,722	감) 188	1,534	4,306	감) 470	3,836	세대당 약 2.5인
	40㎡이하	-	-	-	-	-	-	
	40㎡~60㎡	772	감) 54	718	1,930	감) 135	1,795	
	60~85㎡이하	787	감) 124	663	1,968	감) 310	1,658	
	85㎡초과	163	감) 10	153	408	감) 25	383	
존치관리구역		6,766	감) 6,578	188	15,799	감) 15,329	470	현황인구 및 세대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변경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5	공공청사	-	천호동 422-12	1,344.0	-	1,344.0	09.11.26.	천호1구역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삭제	1	유수지	천호 유수지	천호동 329	10,626.6	-	10,626.6	75.10.7.	-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5	체육시설	수영장	천호동 422-12	(6,693.4)	-	(6,693.4)	-	천호1,3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3층 일부)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삭제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 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 중복결정
삭제	21	천사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삭제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 422-12	5,349.4	-	5,349.4	-	천호 1,3구역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마. 교통계획 : 변경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삭제	대로	3	110	25~33	주간선 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2009-472)	-
기정	중로	1	406	20 (2~6)	보조 간선 도로	618 (19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2~5)	집산 도로	549 (114)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	2021.12.2. (서고2021-653)	천호3구역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44	8	국지 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도로	-	-	
삭제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도로	-	2005.10.13. (강고2005-59)	
삭제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7	12~15 (7~14)	집산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삭제	소로	1	5	10	국지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	
삭제	소로	1	6	10	국지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8	8 (3)	국지도로	108 (2)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11	8	국지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8	국지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18	8	국지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도로	-	1978.6.1	
삭제	소로	3	1	6	국지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도로	-	-	
삭제	소로	3	7	6	국지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도로	-	1990.11.12	

※ 연장 및 위치 내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삭제	1	주차장	천호동 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 422-12	(6,693.4)	-	(6,693.4)	-	천호1,3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3층 일부)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바. 경관계획 : 변경없음

사.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면 적(㎡)			사업 방식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408,722.6	감) 337,517.1	71,205.5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71,205.5	감) 9,900.9	61,304.6	-	
		천호1	38,220.9	-	38,220.9	도시정비형 재개발	
		천호2	9,900.9	감) 9,900.9	-	주택 재건축	'23.6 이전고시
		천호3	23,083.7	-	23,083.7	주택 재건축	
존치 지역	소계		337,517.1	감) 327,616.2	9,900.9	-	
	존치 관리 구역	천호4	15,503.7	감) 15,503.7	-	-	
		천호5	50,796.2	감) 50,796.2	-	-	
		천호6	40,201.3	감) 40,201.3	-	-	
		천호7	117,313.2	감) 117,313.2	-	-	
		천호11	10,840.9	감) 10,840.9	-	-	
		천호12	6,401.2	감) 6,401.2	-	-	
		천호13	24,802.7	감) 24,802.7	-	-	
		천호14	13,980.4	감) 13,980.4	-	-	
		천호2	-	증) 9,900.9	9,900.9	-	
	존치시설 등		57,677.5	감) 57,677.5	-	-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된 지역(천호2재정비촉진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아.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폐지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존치관리계획 폐지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에서 전환되는 천호2존치관리구역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자. 용도지역 · 지구계획 : 변경

1) 용도지역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408,722.6	감) 337,517.1	71,205.5	100.0
주거지역	소 계	395,638.8	감) 330.969.1	64,669.7	90.8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감) 47,489.1	1,914.8	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4.4	감) 138,20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감) 84,903.2	21,168.9	29.7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45.1	감) 60,372.4	14,372.7	20.2
	준주거지역	27,213.3	-	27,213.3	38.2
상업지역	소 계	13,083.8	감) 6,548.0	6,535.8	9.2
	일반상업지역	13,083.8	감) 6,548.0	6,535.8	9.2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촉진구역별 용도지역계획 : 변경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소계	9,900.9	감) 9,900.9	-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900.9	감) 9,900.9	-	100.0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차. 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완화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1) (m)	
재정비 촉진 구역	천호1	기정	공동주택, 판매 · 업무	50% 이하	350	519	519	- / 40	135	
	천호2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190	260.13	300	- / 23	70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 고
					기준	완화	최대 (법적상한)	평균층수 /최고층수	최고높이1) (m)	
	천호2	변경	-	-	-	-	-	-	-	'23.6 이전고시
	천호3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30% 이하	192	226.79	250	- / 25	78	

※ 완화받는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순부담면적×기준용적률/대지면적)
※ 순부담면적은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기존기반시설내국공유지면적)+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환산면적으로 산정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 주1)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1) 촉진사업별 비용분담계획 : 변경

구 분		재정비 촉진구역 ①	계획 기반시설 ②	계획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③	기존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④	유상 매입 시설 ⑤	순부담면적(㎡) (②-③-④-⑤)	비고
계	기정	71,205.5	22,899.0	1,296.5	6,704.0	-	14,898.5(20.92%)	
	변경	61,304.6	19,613.0	71.4	6,521.4	-	13,020.2(21.2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8,220.9	15,215.2	-	4,969.2	-	10,246.0(26.81%)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900.9	3,286.0	1,225.1	182.6	-	1,878.3(19.00%)	
	변경	-	-	-	-	-	-	'23.6 이전고시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3,083.7	4,397.75	71.4	1,552.2	-	2,774.15(12.01%)	

※ 계획기반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 환산면적 포함(천호1 · 3구역)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2) 기반시설별 재원조달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		비고
					소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시 · 구)	민간	
기정	도로	촉진구역	천호1구역	6,440.4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2구역	3,286.0	27,313	26,263	1,050	-	●	
			천호3구역	423.2	7,339	7,062	277	-	●	
		소로2-16호선		4,286.2	17,700	15,200	2,500	-	●	(사업비+기타비용)은 천호3구역 부담 ※ 기타비: 200백만원 (용역비100/측량비100)
		소 계		14,435.8	95,491	89,214	6,277	-	-	-
	공원 녹지	촉진구역	천호1구역	3,043.4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2,306.0	20,359	19,931	428	-	●	
		소계		5,349.4	39,495	38,621	874	-	-	-

구 분				면적(㎡)	사업비(백만원)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		비고
					소계	보상비	공사비	공공(시·구)	민간	
	공공청사	천호1재정비 촉진구역		19,100.23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변경	도로	촉진구역	천호1구역	6,440.4	43,139	40,689	2,450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2구역	-	-	-	-	-	-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천호3구역	423.2	7,339	7,062	277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소로2-16호선		4,286.2	17,700	15,200	2,500	-	●	(사업비+기타비용)은 천호3구역 부담 ※ 기타비: 200백만원 (용역비100/측량비100)
		소 계		14,435.8	95,491	89,214	6,277	-	-	-
	공원녹지	촉진구역	천호1구역	3,043.4	19,136	18,690	446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천호3구역	2,306.0	20,359	19,931	428	-	●	
		소계		5,349.4	39,495	38,621	874	-	-	-
	공공청사	천호1재정비 촉진구역		19,100.23	42,727	7,379	35,348	-	●	부지는 해당구역 사업시행자가 부담 (공영주차장 포함)

※ 소로2-16호선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2.3배를 적용(강동구 도로과 토지수용 기준)하며, 공사비는 도로(소로2-16)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에 따라 공사비 산출(강동구 도로과 용역 시행)
※ 소로2-16호선은 공공(강동구)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며, 사업계획 승인 전 해당 조합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계획 승인 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조정 가능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1,722	1,528	578	787	163	194	-	144	50	-
	변경	1,534	1,372	556	663	153	162	-	144	18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99	882	358	375	149	117	-	99	18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88	156	22	124	10	32	-	-	32	-
	변경	-	-	-	-	-	-	-	-	-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535	490	198	288	4	45	-	45	-	-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파.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하.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너. 방재계획 : 변경없음
더. 정보화계획 : 변경없음
러. 에너지 순환계획 : 변경없음
머. 특성화 계획 : 변경없음
버. 기타 계획 : 변경없음
서.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변경

1) 구역별 정비계획 개요 : 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평균			최고높이	
				기준	계획	법적상한	완화	계획	기준	완화	계획	기준	계획
재정비촉진구역	천호1		38,220.9	50 이하	50 이하	519이하	519.00	518.77	-	-	-	-	40층 (135m이하)
	천호2	기정	9,900.9	30 이하	30 이하	300이하	260.13	298.48	-	-	-	-	23층 (70m이하)
	천호2	변경	-	-	-	-	-	-	-	-	-	-	-
	천호3		23,083.7	30 이하	30 이하	250이하	226.79	248.56	-	-	-	-	25층 (78m이하)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2) 구역별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소계	60㎡ 이하	60~85㎡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합계	기정	1,722	1,528	572	787	163	194	-	144	50	-
	변경	1,534	1,372	556	663	153	162	-	144	18	-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99	882	358	375	149	117	-	99	18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186	154	21	123	10	32	-	0	32	-
	변경	-	-	-	-	-	-	-	-	-	-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535	490	198	288	4	45	-	45	-	-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3) 정비계획 : 변경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분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강동구 천호동 578번지 일대	9,900.9	감) 9,900.9	-	'23.6.21 이전고시

※ 천호2재정비촉진구역 → 천호2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단순 변경

(2) 정비계획 :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준공(이전고시)된 천호2재정비촉진구역의 존치관리구역 전환에 따른 촉진구역 정비계획 조서상 삭제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변경없음

가) 천호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 변경없음

나) 천호2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천호3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408,722.6	감) 337,517.1	71,205.5	100.0
주거지역	소 계	395,638.8	감) 330.969.1	64,669.7	90.8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03.9	감) 47,489.1	1,914.8	2.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8,204.4	감) 138,204.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072.1	감) 84,903.2	21,168.9	29.7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45.1	감) 60,372.4	14,372.7	20.2
	준주거지역	27,213.3	-	27,213.3	38.2
상업지역	소 계	13,083.8	감) 6,548.0	6,535.8	9.2
	일반상업지역	13,083.8	감) 6,548.0	6,535.8	9.2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삭제	대로	3	110	25~33	주간선 도로	3,000 (456)	풍납동 광로5	암사동 강변	일반도로	올림픽로	2009.11.30. (서고2009-472)	-
기정	중로	1	406	20 (2~6)	보조 간선 도로	618 (195)	천호동 217-134	천호동 550-6	일반도로	구천면로	2001.6.2. (서고 158) 2006.7.27. (서고2006-264)	구천면로, 천호1구역
기정	소로	2	16	8 (2~5)	집산 도로	549 (114)	천호동 367-1	천호동 393-20	일반도로	-	2021.12.2. (서고2021-653)	천호3구역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399	천호동 357-1	천호동 397-16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44	8	국지 도로	150	천호동 337-98	천호동 337-17	일반도로	-	-	
삭제	중로	2	20	15	집산 도로	65	천호동 357-12	천호동 357-1	일반도로	-	2005.10.13. (강고2005-59)	
삭제	소로	2	17	8	국지 도로	237	천호동 392-1	천호동 386-19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7	12~15 (7~14)	집산 도로	134	천호동 417-57	천호동 423-158	일반도로	-	1969.1.18	천호1구역, 천호2구역
삭제	소로	1	5	10	국지 도로	45	천호동 373-2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	
삭제	소로	1	6	10	국지 도로	71	천호동 377	천호동 37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8	8 (3)	국지 도로	108 (2)	천호동 358-9	천호동 358-3	일반도로	-	-	천호3구역
기정	소로	2	9	8~10	국지 도로	119	천호동 373-2	천호동 563-1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14	천호동 361	천호동 362-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8	국지 도로	66	천호동 357-1	천호동 373-2	일반도로	-	2006.2.8. (서고2006-49)	천호2구역
삭제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00	천호동 391-1	천호동 382-13	일반도로	-	1978.6.1	
삭제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0	천호동 398-5	천호동 399-50	일반도로	-	-	
삭제	소로	3	7	6	국지 도로	100	천호동 282-25	천호동 280-15	일반도로	-	1990.11.12	

※ 연장 및 위치 내 (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수치임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삭제	1	주차장	천호동 329	7,004.0	-	7,004.0	-	천호7구역
기정	2	주차장	천호동 422-12	(6,693.4)	-	(6,693.4)	-	천호1,3구역 (공공청사, 소공원 중복결정) (지하1층~지하3층 일부)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삭제	14	천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천호동 360	26,696.8	-	26,696.8	97.1.15.	도로 중복결정
삭제	21	천사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63-5	1,617.2	-	1,617.2	72.4.22. 09.11.26.	
삭제	-	광진공원	어린이공원	천호동 338-19	1,672.7	-	1,672.7	-	
기정	47-1	-	소공원	천호동 422-12	5,349.4	-	5,349.4	-	천호 1, 3구역 (주차장, 체육시설 중복결정)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1) 공공청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체육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

(1) 유수지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삭제	1	유수지	천호 유수지	천호동 329	10,626.6	-	10,626.6	75.10.7.	-

※ '24. 12. 4. 천호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 고시 제2024-206호)_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 존치관리구역 해제에 따른 단순 조서내용 삭제

Ⅲ.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26) 및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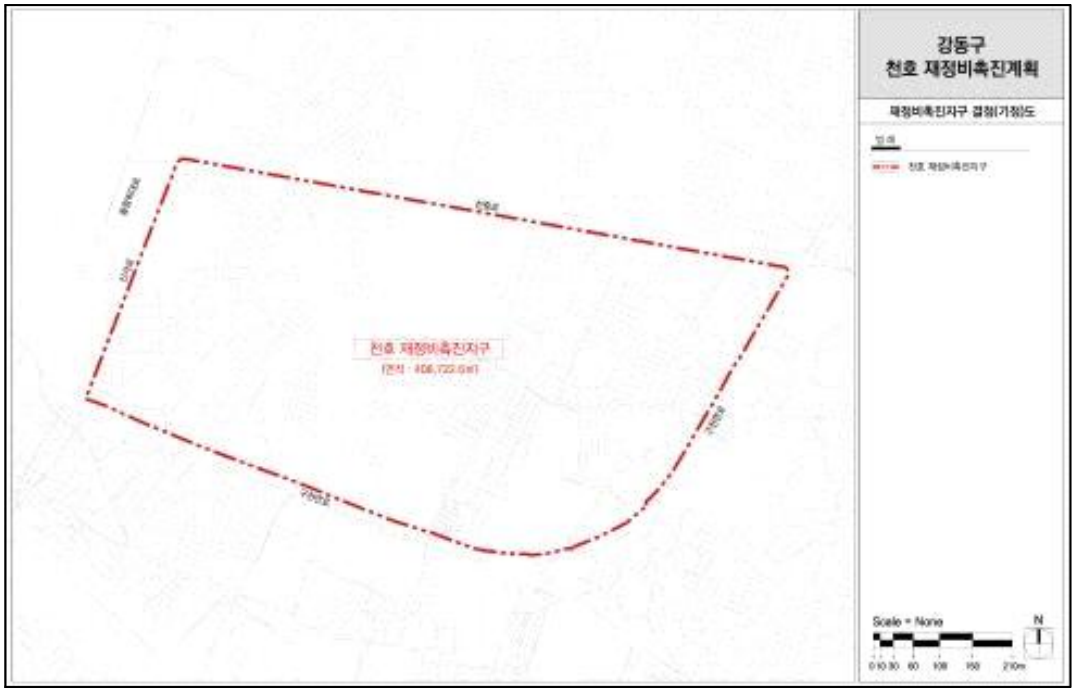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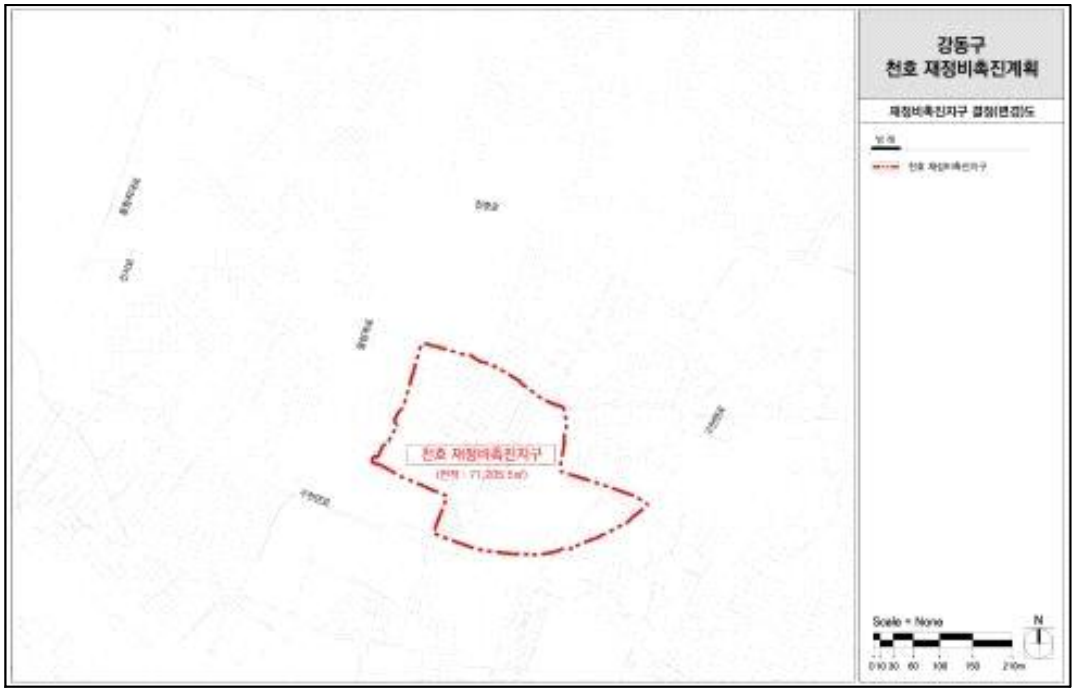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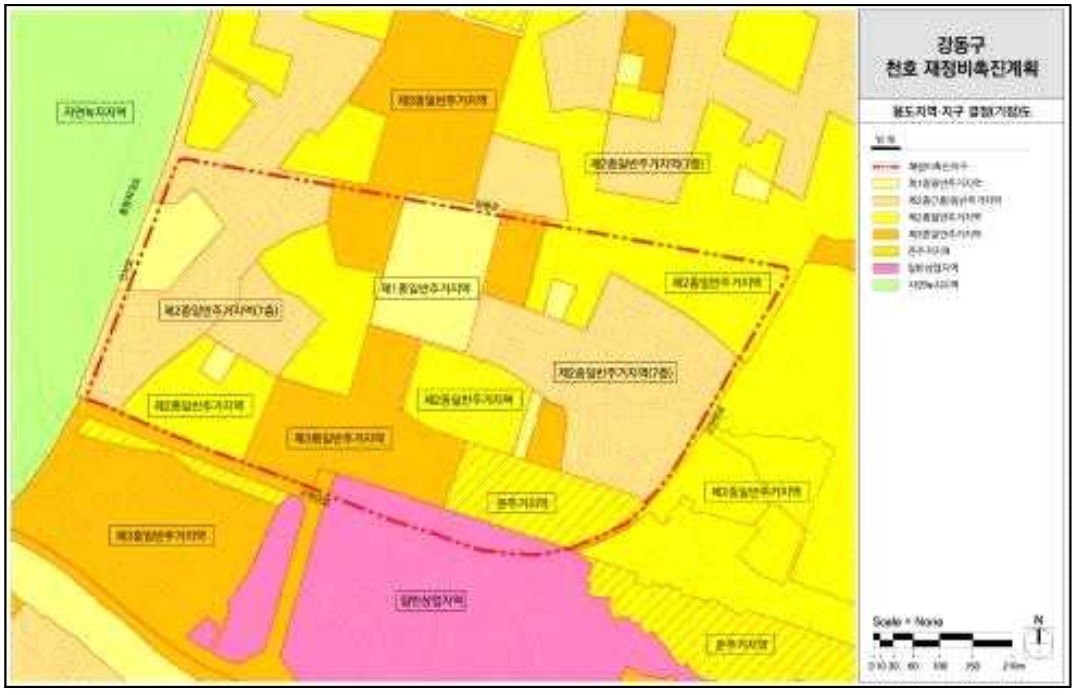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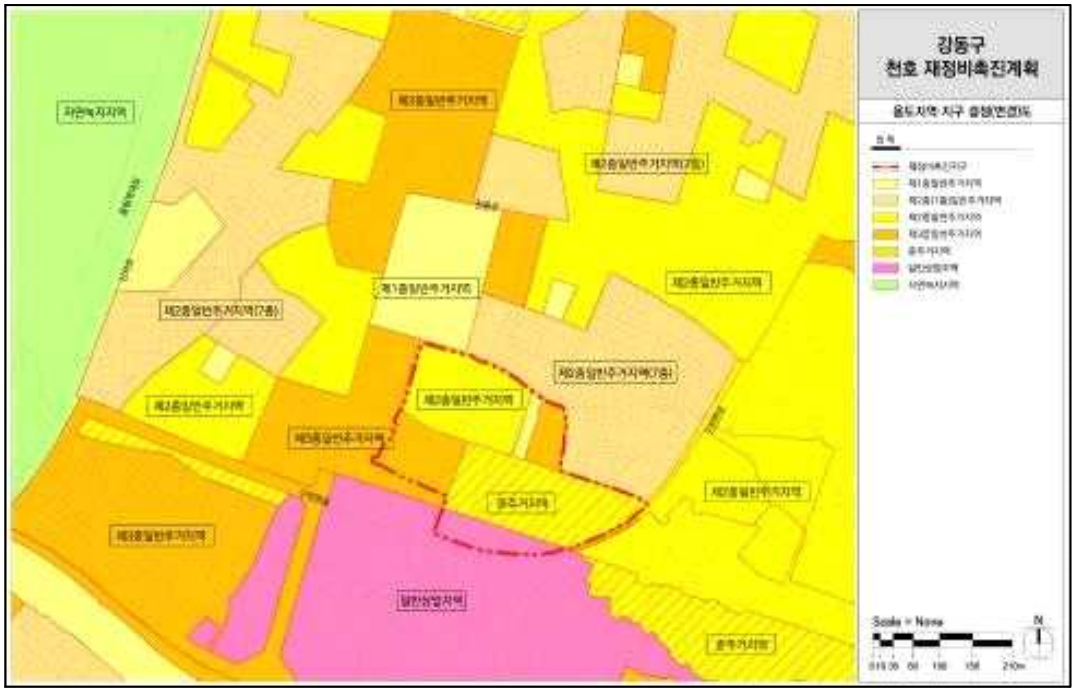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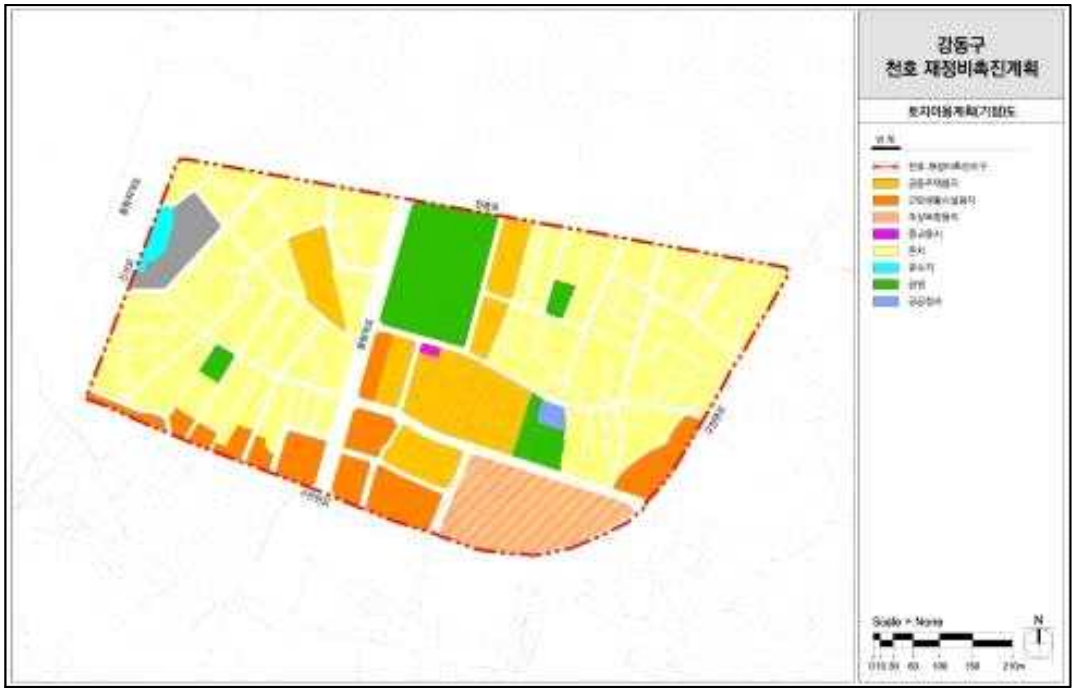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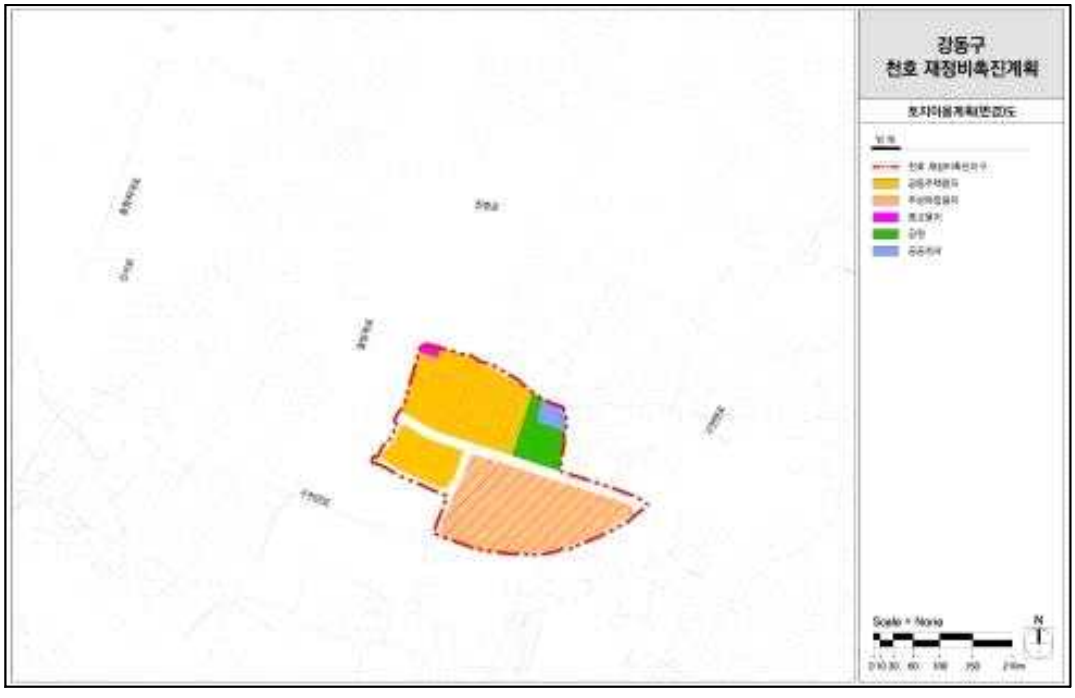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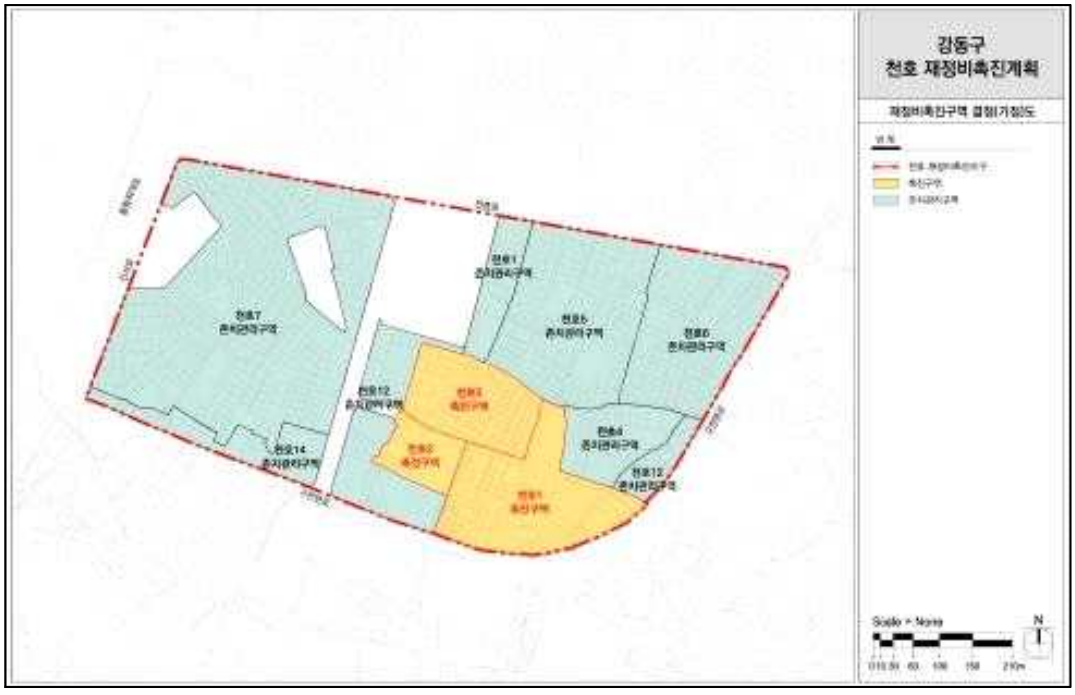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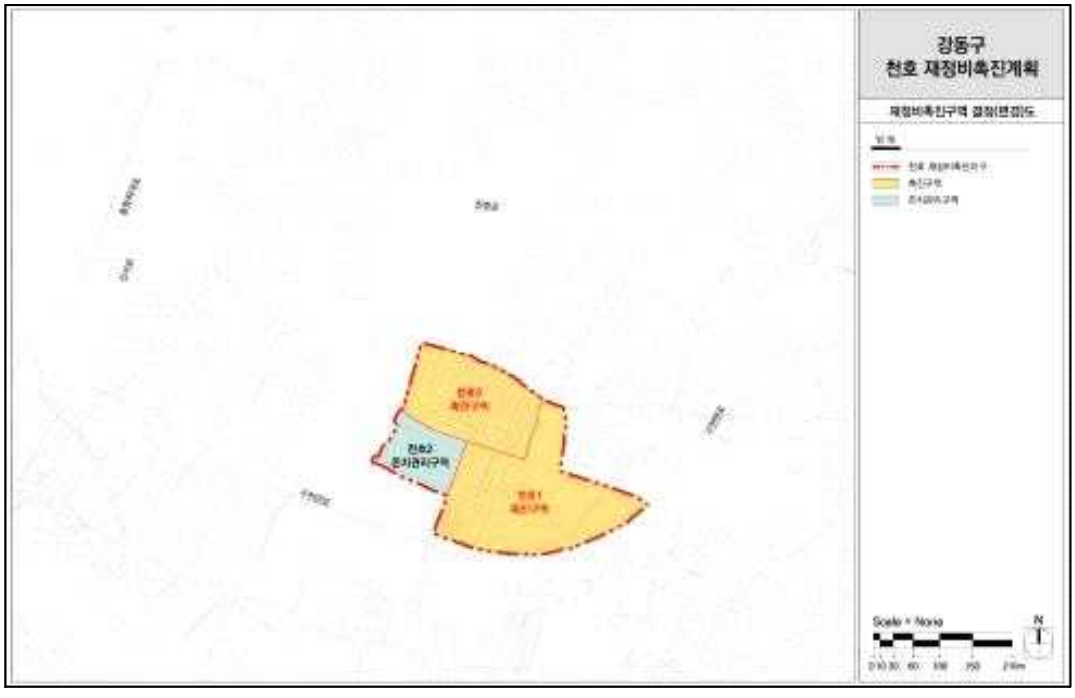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1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06호(2023. 3. 30.)로 결정(변경)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남동 일원	307,606	증) 28,790	336,396	서고387호 ('09.10.0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용산구 한남동 일원	307,606 → 336,396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된 한남근린공원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 - 위치 : 한남동 670 일대 - 면적 : 28,790㎡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2)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3)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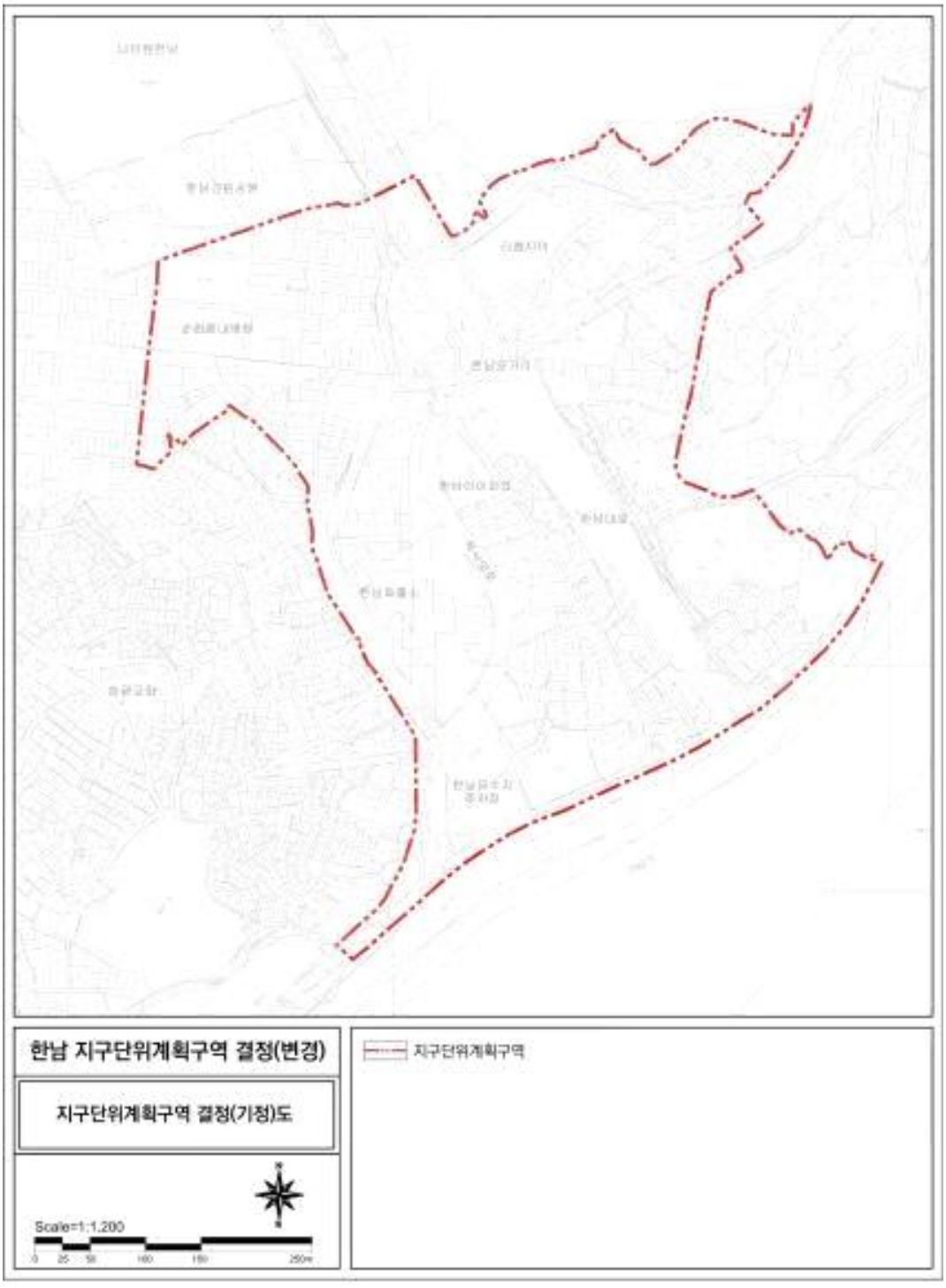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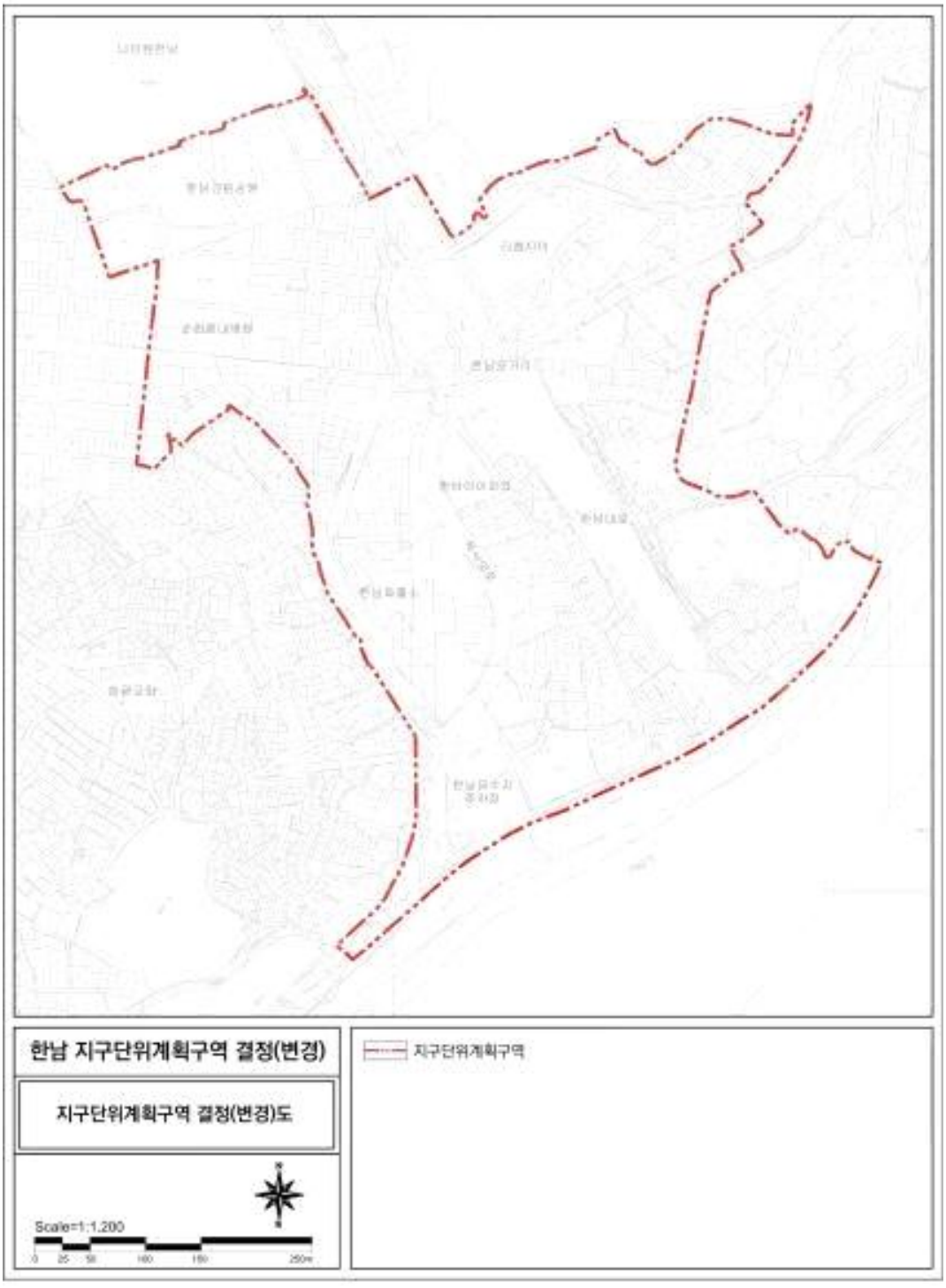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2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44호('95.12.6)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8-387호('08.11.6)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서구 외발산동 427 일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2133-4465) 및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시설관리팀(☎2640-6040)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외 1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
 나. 명칭 : 서울친환경유통 제2센터 증축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부지 면적 : 213,031.90㎡(강서시장)
 나. 사업 내용 : 창고시설(저온창고, 피킹장)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13,543.90㎡
 다. 사업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기존	계획	증감	
대지면적	13,543.9㎡			
건폐율	22.40%	22.54%	0.14%	법정 60%
용적률	11.35%	18.53%	7.18%	법정 600%
건축면적	3,034.95㎡	3,053.21㎡	증 18.26㎡	
연면적	3,366.14㎡	4,609.14	증 1,243㎡	
층수	지하1층, 지상1층	지하1층, 지상2층	1 개층	
주차대수	122대	83대	감 39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 문영표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동 427(강서지사)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6. 토지 조서
 가. 전체토지 : 13필지 213,031.90㎡
 나. 국공유지 : 13필지 213,031.90㎡

< 토지현황 >

구 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비고
1	외발산동	427	대	172,821.4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	외발산동	427-1	대	10,000.0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3	외발산동	427-2	대	3,879.3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4	외발산동	427-4	공원	2,030.0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5	외발산동	427-5	대	415.8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6	외발산동	427-6	공원	818.5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7	외발산동	427-7	대	277.3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8	외발산동	427-9	공원	950.8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9	외발산동	427-11	공원	2,525.5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0	외발산동	427-12	공원	9,942.2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1	외발산동	427-13	도로	6,818.5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2	외발산동	427-15	도로	20.1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2	외발산동	427-17	대	2,532.50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계				213,031.9		

< 관계도면 : 지형도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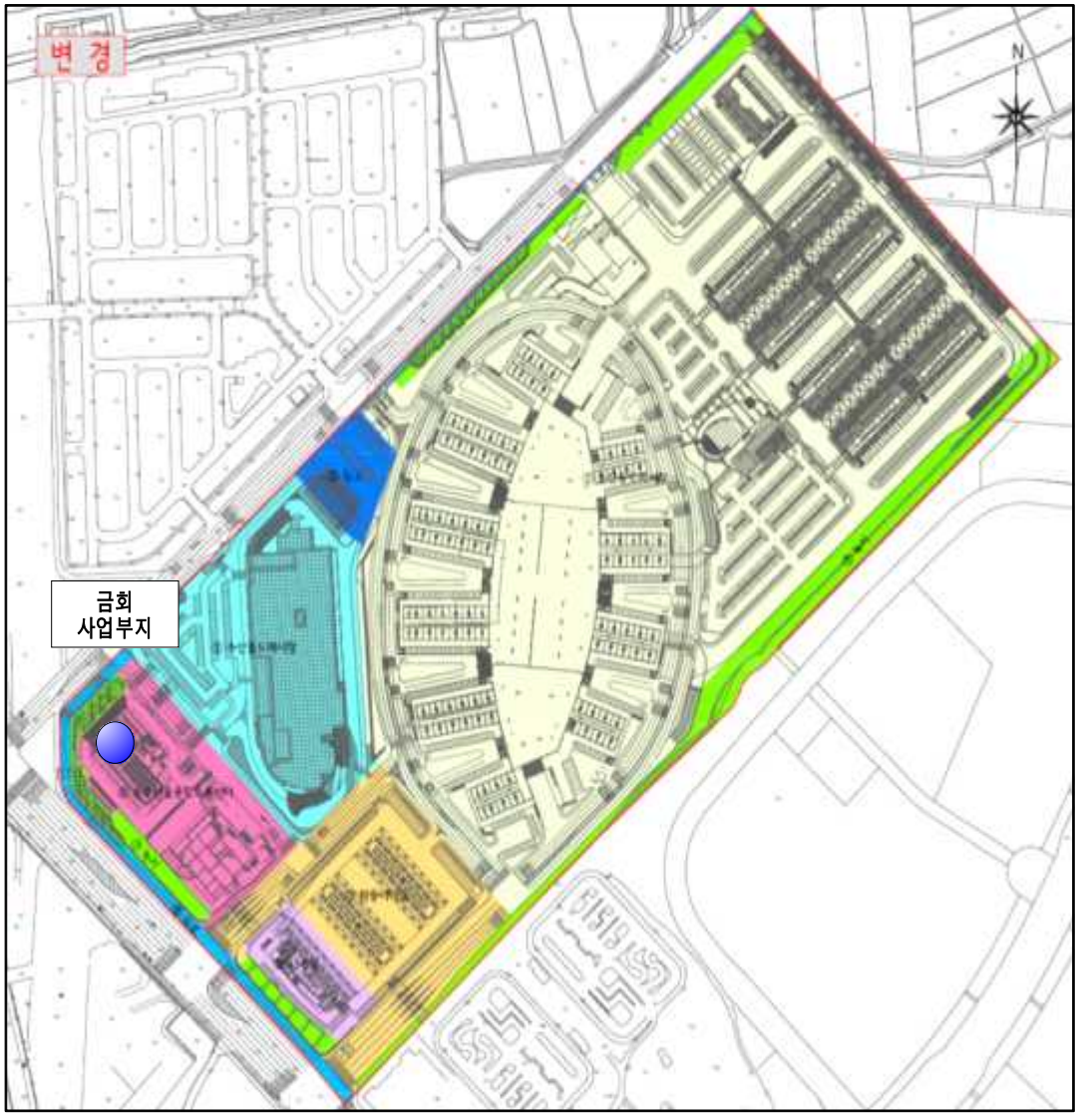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3호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등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같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보행환경개선지구 : 3개소

연번	자치구	위 치	지구면적	지구 지정 기준	지정연도
1	강서구	강서로50길 일대	310,507㎡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025
2	관악구	남현동 승방2길 일대	19.5㎡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3	서대문구	연희맛로 일대	3,992㎡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위치도(축척 없음)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행환경개선지구 위치도

위 치 도

▢ 보행환경개선지구

① 강서로50길 일대 ※북측 공항대로38길은 제외(20년 강서로54길일대 지구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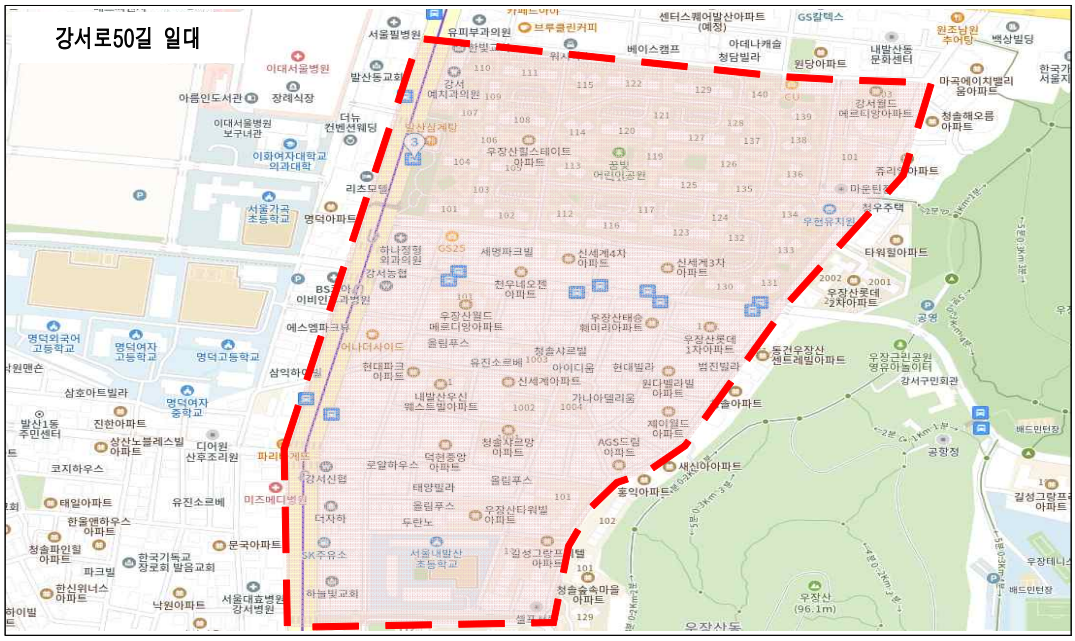

② 남현동 승방2길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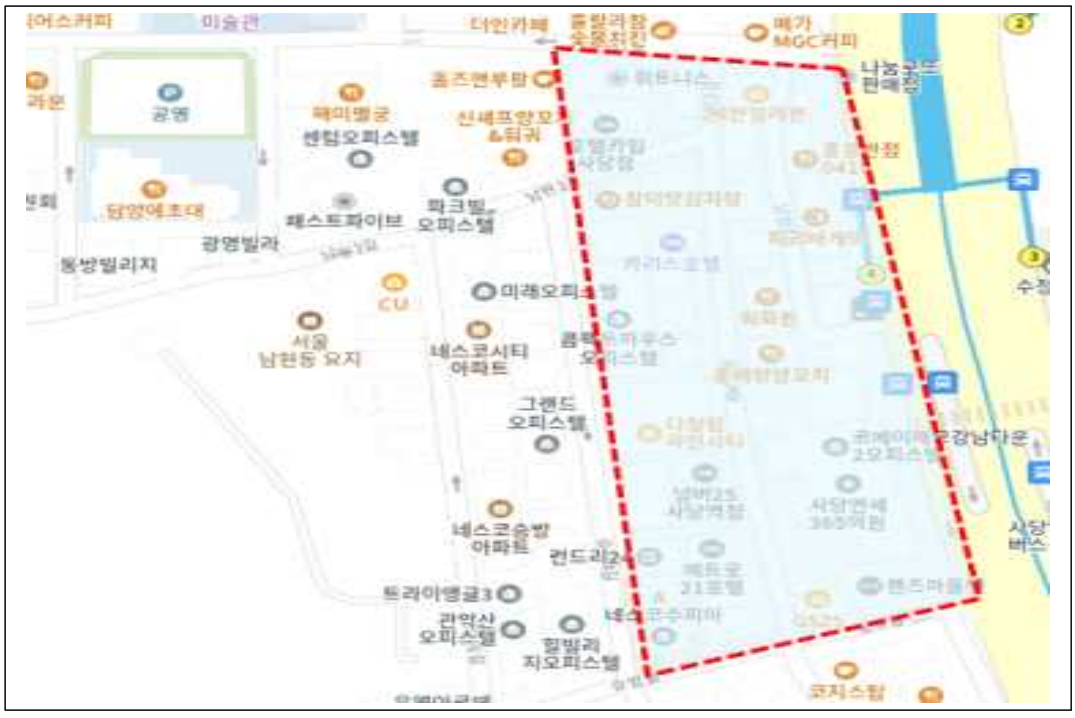

③ 연희맛로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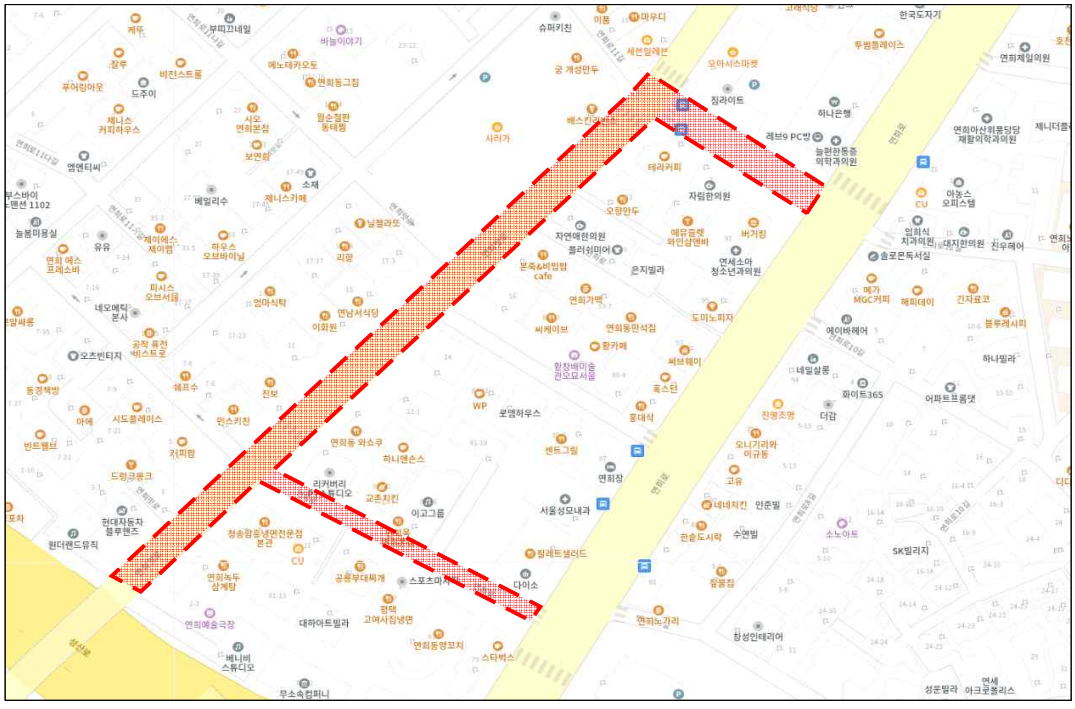
연희맛로
연희로
연희로11길
연희로11가길
연희로11나길
연희로11다길
연희로11라길
연희로11마길
연희로11바길
연희로11사길
연희로11아길
연희로11자길
연희로11차길
연희로11카길
연희로11타길
연희로11파길
연희로11하길
연희로11가길 2
연희로11가길 3
연희로11가길 4
연희로11가길 5
연희로11가길 6
연희로11가길 7
연희로11가길 8
연희로11가길 9
연희로11가길 10
연희로11가길 11
연희로11가길 12
연희로11가길 13
연희로11가길 14
연희로11가길 15
연희로11가길 16
연희로11가길 17
연희로11가길 18
연희로11가길 19
연희로11가길 20
연희로11가길 21
연희로11가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4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광진구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20,358.1	2025. 2. 28.	2025년 제10차 전문가 자문회의 (2025.7.2.)

2. 권리산정기준일: 2025. 2. 28.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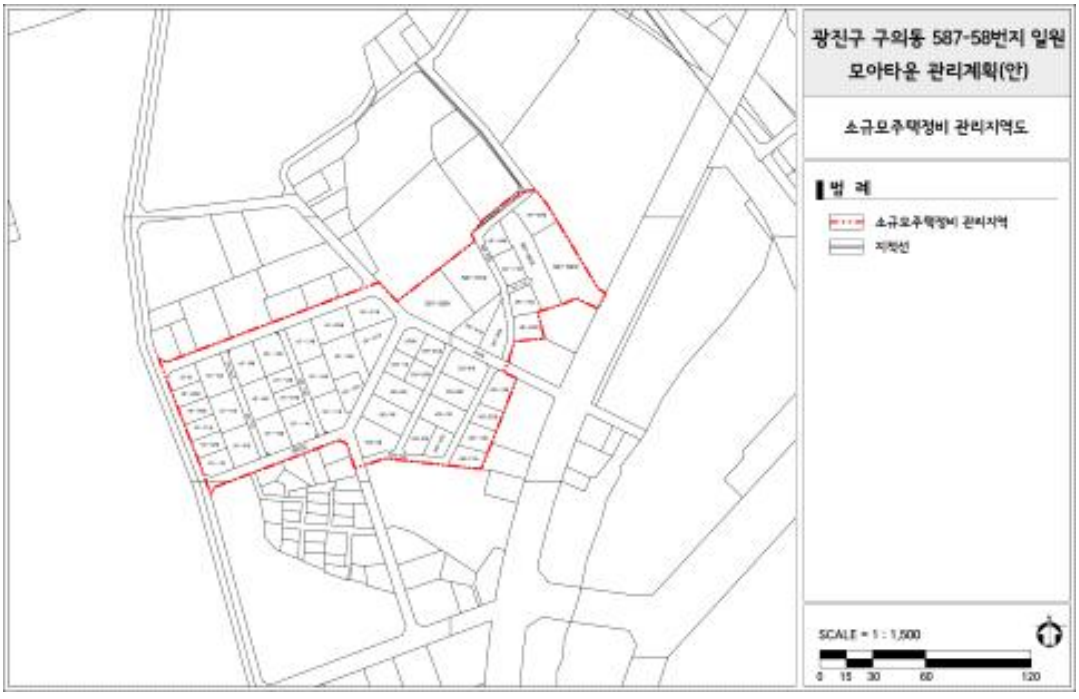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5호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4.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서초구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12,271.1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12,271.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589.8	4.8	
획지	획 지 ①	11,681.3	95.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271.1	-	12,271.1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71.1	-	12,271.1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경관지구	방배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방배역~경남아파트 앞 삼거리	27,406 (1,112.6)	700(63)	양측18	2019.4.18	

※ ( )는 구역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면적 및 연장임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추정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90.48% → (6,024억 - 2,011억) / 4,435억 X 100 □ 총수입 추정 : 6,024억 □ 총지출 추정 : 2,011억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4,435억 (현금청산자 3% 반영)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공동주택(아파트)의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및 실거래가 참고하여 추정함. □ 현금청산자(3% 가정)를 제외한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가액임.			
추정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 49.98㎡ 형	13.6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90.48%)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59.98㎡ 형	15.9억		
	전용 70.00㎡ 형	17.7억		
	전용 84.98㎡ 형	20.1억		
	전용 101.00㎡ 형	21.7억		
	전용 140.00㎡ 형	39.8억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문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기정 시점(2023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1	8~13	국지도로	259	방배동 1009-2대	방배동 1025-2대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1	•도로 확폭 - B : 6~10m → 8~13m - L : 259m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및 도로의 일체적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법정기준	법적면적	계획면적	비고
합 계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 (세대당 x 2.5㎡) x 1.25이상 설치	1,184.38㎡ 이상	2,415.45㎡	
주민공동시설	획지내	-	-	1,100.95㎡	
경로당	〃	150세대 이상 의무설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 300~500세대 미만 : 155.0㎡ 이상	155.00㎡ 이상	204.00㎡	
어린이놀이터	옥외	150세대 이상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300~1,000세대 미만 :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200㎡+379㎡ = 579.0㎡	579.00㎡ 이상	606.50㎡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 300~500세대 미만 : 198.0㎡ 이상	198.00㎡ 이상	204.00㎡	
작은도서관	〃	150세대 이상 의무설치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 300~500세대 미만 : 108.0㎡ 이상	108.0㎡ 이상	300.00㎡	지역개방형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2,271.1	서초구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4	-	-	4	-	공동주택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규	임광3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2,271.1	획지	11,681.3	서초구 방배동1011-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38.6% 이하	299.95% 이하	90m (29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379세대 (현황 316세대)
- 전체 건립규모 (전용면적 기준)

건립규모		세대수			비고
		합계	분양	국민주택규모 주택	
합 계		379(100.0%)	332(87.6%)	47(12.4%)	
85㎡ 이하	60㎡ 이하	235(62.2%)	188(49.6%)	47(12.4%)	
	60㎡ ~ 85㎡ 이하	116(30.6%)	116(30.6%)	-	
85㎡ 초과		28(7.4%)	28(7.4%)	-	

※ 세대수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 (도시정비법 제54조)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92.6% (기준 : 6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초과용적률의 50% 이상 (47세대)

심의완화 사항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9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획지선으로부터 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공공보행통로 계획 :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 (폭원: 6m, 연장 : 55m)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5">산 정 내 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
(공동주택)</td><td>토지
정비기반시설(도로)</td><td>신설 정비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공유지</td></tr>
<tr><td>12,271.1㎡</td><td>11,681.3㎡</td><td>589.8㎡</td><td>-</td><td>589.8㎡</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589.8㎡ - 589.8㎡ = 0</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기준용적률 = 229%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현황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로
현황용적률(229%)을 기준용적률로 적용</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허용용적률 = 229% + β = 229% + 9.6% = 238.6%
※ β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총 9.6% 적용)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인센티브</th><th>비 고</th></tr>
<tr><td>공공보행통로</td><td>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
229.0% × (235.40㎡ / 11,681.3㎡) = 4.6%</td><td>4.6%</td><td rowspan="2">최대
20% 이내</td></tr>
<tr><td>열린단지</td><td>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상가등
열린 단지 조성 (지형도면 고시)
기준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td><td>5.0%</td></tr>
<tr><td>합 계</td><td colspan="2">9.6%</td><td>9.6% 적용</td></tr>
</table></td></tr>
<tr><td rowspan="2">상한용적률</td><td colspan="5">•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α(토지))
= 238.6% × (1+1.3×0)
= 238.6%</td></tr>
<tr><td colspan="5">•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0㎡ ÷ 11,681.3㎡ = 0</td></tr>
<tr><td>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99.95%(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td></tr>
</table>

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 고</th></tr>
<tr><td>예정법적상한용적률</td><td>•예정법정상한용적률 : 299.95%</td><td></td></tr>
<tr><td>정비계획용적률</td><td>•238.6%</td><td></td></tr>
<tr><td>국민주택규모 주택공급기준
(법적기준)</td><td>•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규모
= (건축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X 50%
= (299.95% - 238.6%) X 50% = 30.675%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X 30.675% = 11,681.3㎡ X 30.675%
= 3,583.24㎡ 이상</td><td></td></tr>
<tr><td>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td><td>•주택규모 및 세대수
<table>
<tr><th>전용면적</th><th>세대수</th></tr>
<tr><td>49.98㎡</td><td>15세대</td></tr>
<tr><td>59.98㎡</td><td>32세대</td></tr>
</table>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면적 (공급면적 X 세대수)
<table>
<tr><th>공급면적</th><th>세대수</th><th>연면적</th></tr>
<tr><td>68.98㎡</td><td>15세대</td><td>1,034.70㎡</td></tr>
<tr><td>81.78㎡</td><td>32세대</td><td>2,616.96㎡</td></tr>
<tr><td>합 계</td><td>47세대</td><td>3,651.66㎡</td></tr>
</table></td><td></td></tr>
<tr><td>확보방법</td><td>•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td><td></td></tr>
</table>

※공공주택 및 소형·세대수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 rowspan="3">환경보전</td><td>자연환경</td><td>•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td><td></td></tr>
<tr><td>생활환경</td><td>•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td><td></td></tr>
<tr><td>사업시행시
환경영향</td><td>•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td><td></td></tr>
<tr><td>재난방지</td><td>수재해</td><td>•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하고 우수집중구간 발생시 저류조 설치 등 우수로 인한 피해방지 검토</td><td></td></tr>
</table>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산사태	•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 · 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화 재	•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수립 시 반영사항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유지	○	•비오톱유형평가 : 3등급 •개별비오톱평가 : 평가제외	•법정 녹지면적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강화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서측 방배근린공원, 남측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위치	•계획대상지 내 · 외부 녹지 연결성 확보
동 · 식물상	동 · 식물상 보호	○	•현존식생 : 시가화지역 •생태 · 자연도 : 3등급권역	•저소음 · 저진동장비 투입 •야간공사 지양
토지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공동주택 밀집지역 (준공 후 30여년 경과)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 최소화	○	•표고 : 65~70m •경사 : 평균 3.5°	•현 지형을 고려하여 지형 변화 최소화
물환경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기준 : 30% •빗물분담량 : 5.5mm/hr	•생태면적률 30% 이상 •필요대책량 : 25.87㎥/hr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우수유출량 : 0.0854㎥/sec •토사유출량 : 4.7445ton/㎥ •공사시 오수발생 예상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공사시 발생오수는 시설 이용 •운영시 발생오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계처리
기후대기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주풍향:서(W)풍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불투수포장의 낮은 비율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난방(취사),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세륜 · 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청정연료 사용, 녹지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수립 시 반영사항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용 및 위탁처리 •서초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에너지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도로교통에 의한 소음 발생	•야간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경관녹지 및 공원 조성
경관	주변경관 조화	○	•고층건물 신축 시 계획대상지 주변 경관 변화 예상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디자인(색채 등) 적용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기존 자연자원 및 녹지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질 높은 휴식 및 여가공간 이용 예상	•계획대상지 내 녹지 조성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신설	도시정비법 제74조에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재건축)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기존 세대수 : 316세대 계획 세대수 : 379세대 증) 63세대	증) 63세대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북동측 상문고등학교 입지	• 대상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시설은 상문고등학교로 약 330m 떨어져 있음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등을 최소화하여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인가)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비고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범죄예방을 위해 공간 구조론과 범죄 예방학을 응용한 CPTED 원리를 다양하게 설계전략으로 전환하여 적용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인식토록 하는 도시조성 전략	

1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설	-	11,681.3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11,681.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세대수	세대규모(공급)	비고(연면적)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11,681.3	15	68.98	1,034.70
		32	81.78	2,616.96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12,27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12,271.1	•양호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함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271.1	-	12,271.1	100.0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71.1	-	12,271.1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 고
경관지구	방배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	방배역~경남아파트 앞 삼거리	27,406 (1,112.6)	700(63)	양측18	2019.4.18	

※ ( )는 구역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면적 및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1	8~13	국지도로	259	방배동 1009-2대	방배동 1025-2대	일반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로 3-1	•도로 확폭 - B : 6~10m → 8~13m - L : 259m	•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 확폭 및 도로의 일체적 정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신 설	-	11,681.3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11,681.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4.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획지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29% 이하 •허용용적률 238.60% 이하 •상한용적률 238.60% 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99.95%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90m / 29층 이하
		건축한계선	•획지선으로부터 3m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공보행 통로	•도면에 표기	•보행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지정 (지역권 등기 설정) - 남 · 북방향 공공보행통로 (폭원: 6m, 연장 : 55m)

2)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수립 시 반영사항
비오톱	비오톱 보전등급 유지	○	•비오톱유형평가 : 3등급 •개별비오톱평가 : 평가제외	•법정 녹지면적 확보 및 도시생태기능 강화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서측 방배근린공원, 남측 우면산 도시자연공원 위치	•계획대상지 내 · 외부 녹지 연결성 확보
동 · 식물상	동 · 식물상 보호	○	•현존식생 : 시가화지역 •생태 · 자연도 : 3등급권역	•저소음 · 저진동장비 투입 •야간공사 지양
토지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공동주택 밀집지역 (준공 후 30여년 경과)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형 · 지질	지형 · 지질 변동 최소화	○	•표고 : 64.2~69.5m •경사 : 평균 3.5°	•현 지형을 고려하여 지형 변화 최소화
물환경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기준 : 30% •빗물분담량 : 5.5mm/hr	•생태면적률 30% 이상 •필요대책량 : 25.87㎥/hr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우수유출량 : 0.1707㎥/sec •토사유출량 : 9.0329ton/㎥ •공사시 오수발생 예상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공사시 발생오수는 시설 이용 •운영시 발생오수는 서남물재생센터 연계 처리
기후대기환경				
바람	바람길 확보	○	•주풍향:서(W)풍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수립 시 반영사항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불투수포장의 낮은 비율	•충분한 녹지 조성으로 열환경 개선
대기질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운영시 난방(취사), 차량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세륜·세차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 및 살수 실시 •청정연료 사용, 녹지 계획 수립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재활용 및 위탁처리 •서초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에너지수요 증가 예상	•에너지절약형 및 고효율 설비 도입계획 수립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발생 •운영시 도로교통에 의한 소음 발생	•야간공사 지양 및 장비 분산 투입 •가설방음판넬 설치 •경관녹지 및 공원 조성
경관	주변경관 조화	○	•고층건물 신축 시 계획대상지 주변 경관변화 예상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경관디자인(색채 등) 적용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기존 자연자원 및 녹지공간으로 입주민들의 질 높은 휴식 및 여가공간 이용 예상	•계획대상지 내 녹지 조성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장해 예상	•건축물 배치 및 층수 조정으로 일조 침해 최소화

Ⅲ. 2025년 제3차(‘25. 04. 28.)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결과	심 의 의 견	조 치 계 획
제3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사항 - 용적률계획 및 허용인센티브 항목,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용적률계획 및 허용인센티브 항목,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 면적,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하였음 - 용적률계획: 기준 229%, 허용·상한 238.6%, 예정법적상한 300% - 허용인센티브 항목 : 총 9.6% (공공보행통로 4.6%, 열린단지 5%) - 공공기여계획 : 도로 589.8㎡ - 순부담면적 : - (의무순부담 없음) - 주택공급계획 : 전체 379세대, 일반분양 332세대, 공공주택 47세대
		○조건사항 - “203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것	○ “203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겠음

Ⅳ.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의 견	조 치 계 획
-	-	-

Ⅴ.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4.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Ⅵ.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Ⅶ.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87), 서초구 재건축사업과(☎02-2155-7348)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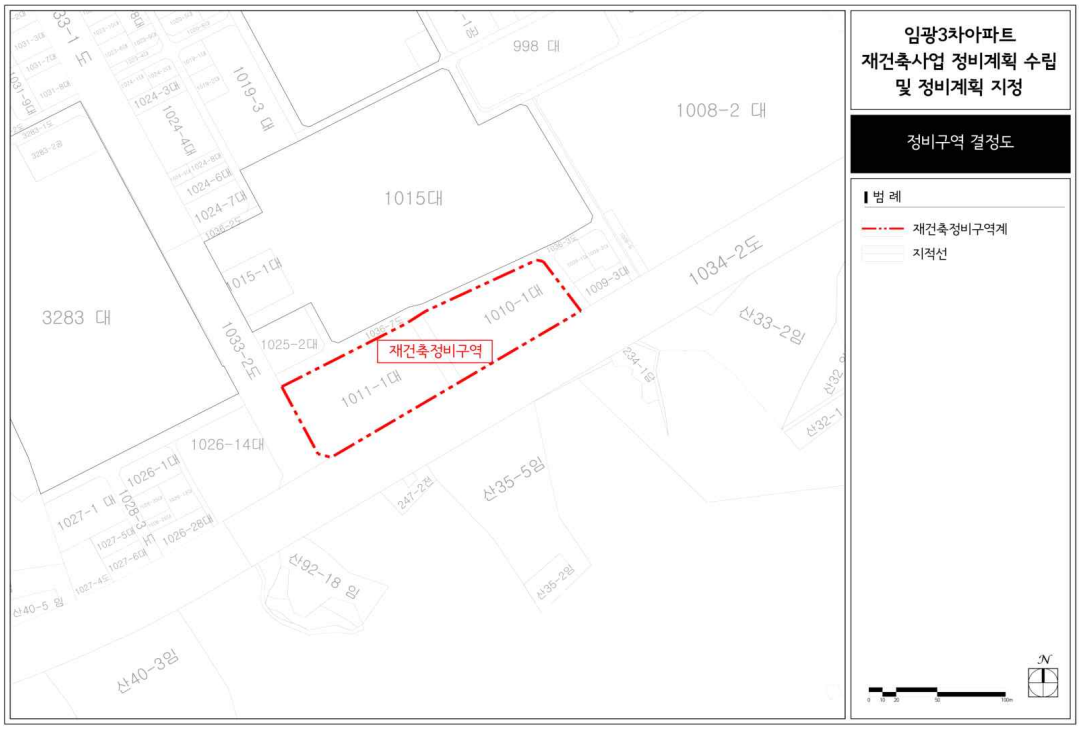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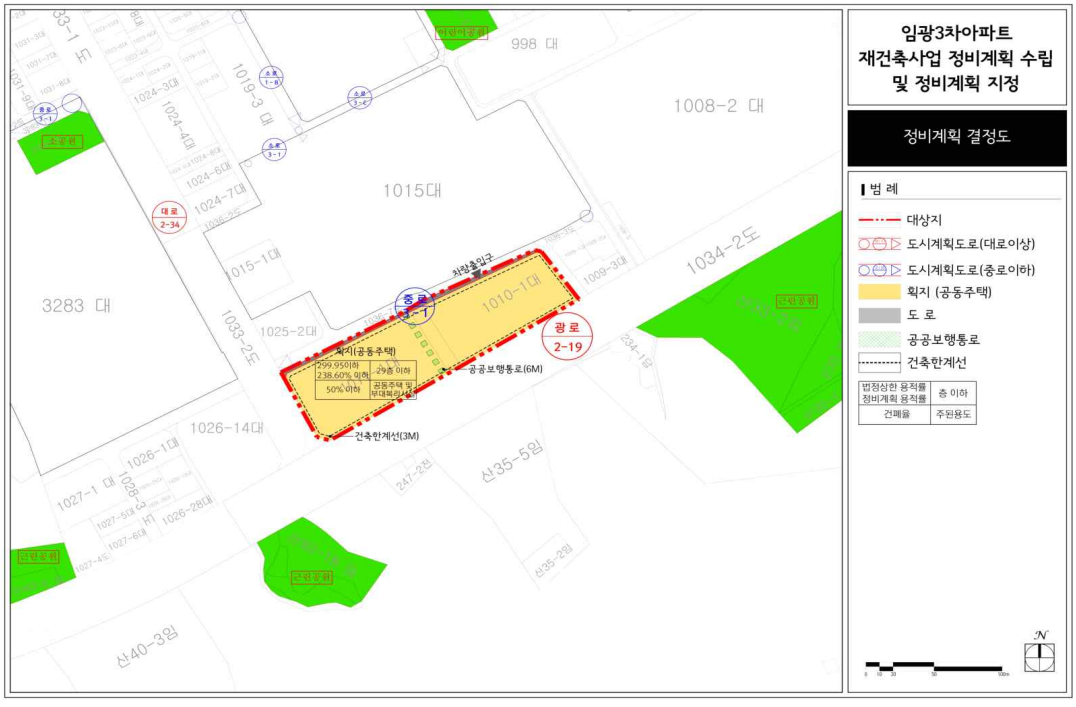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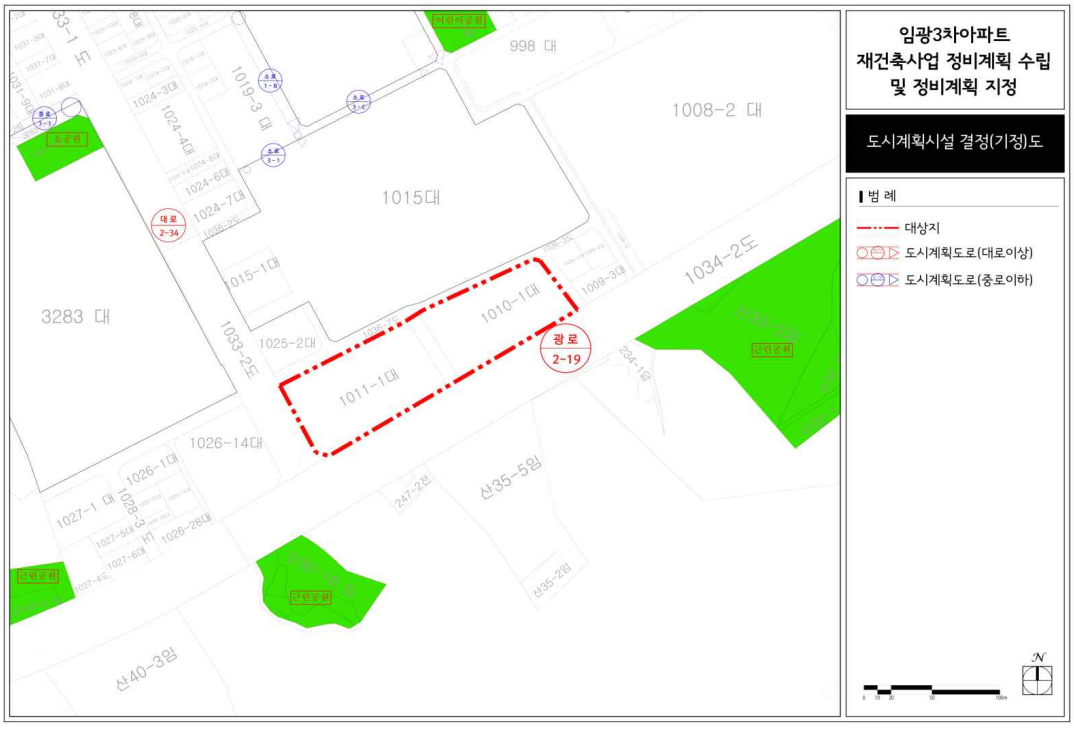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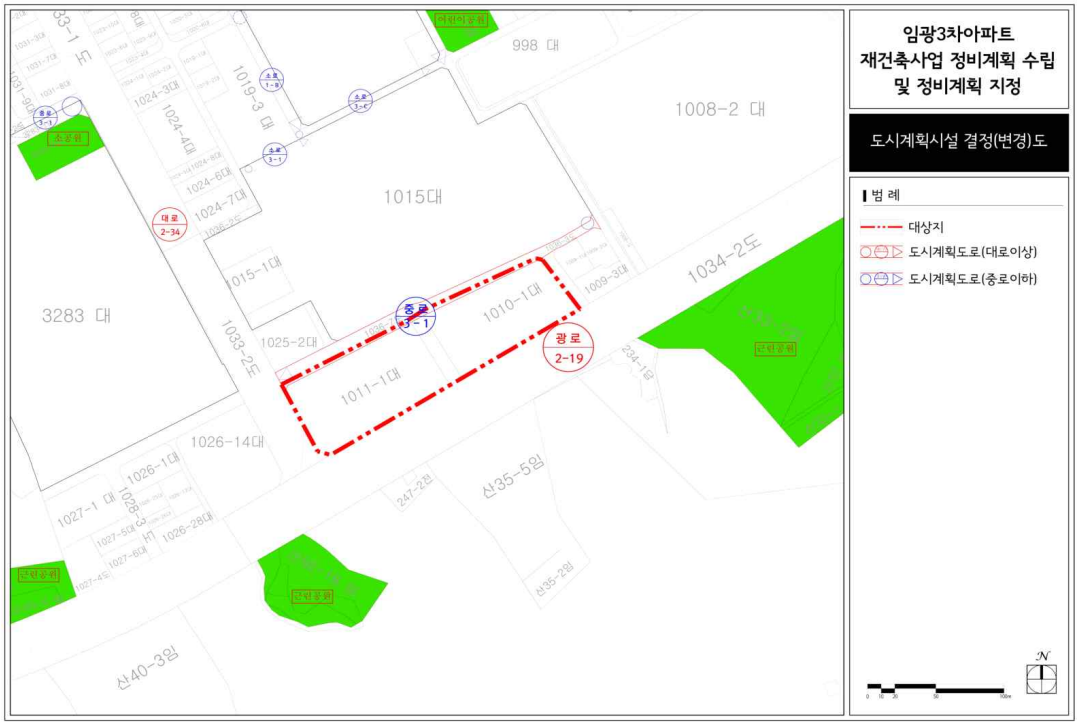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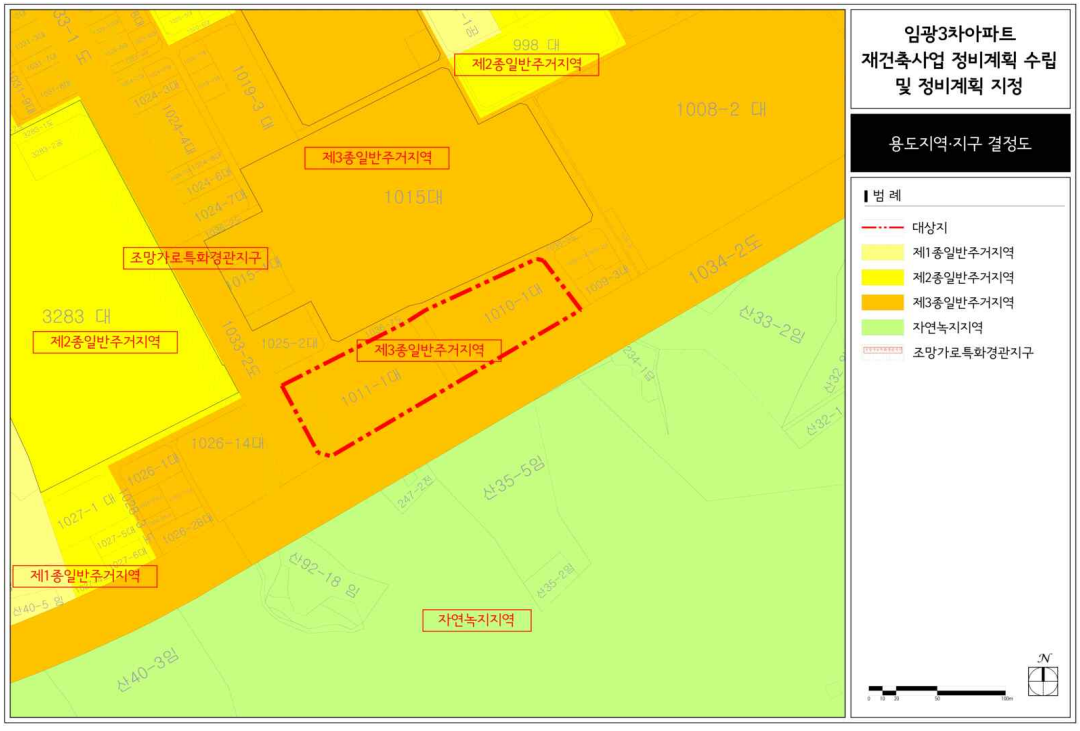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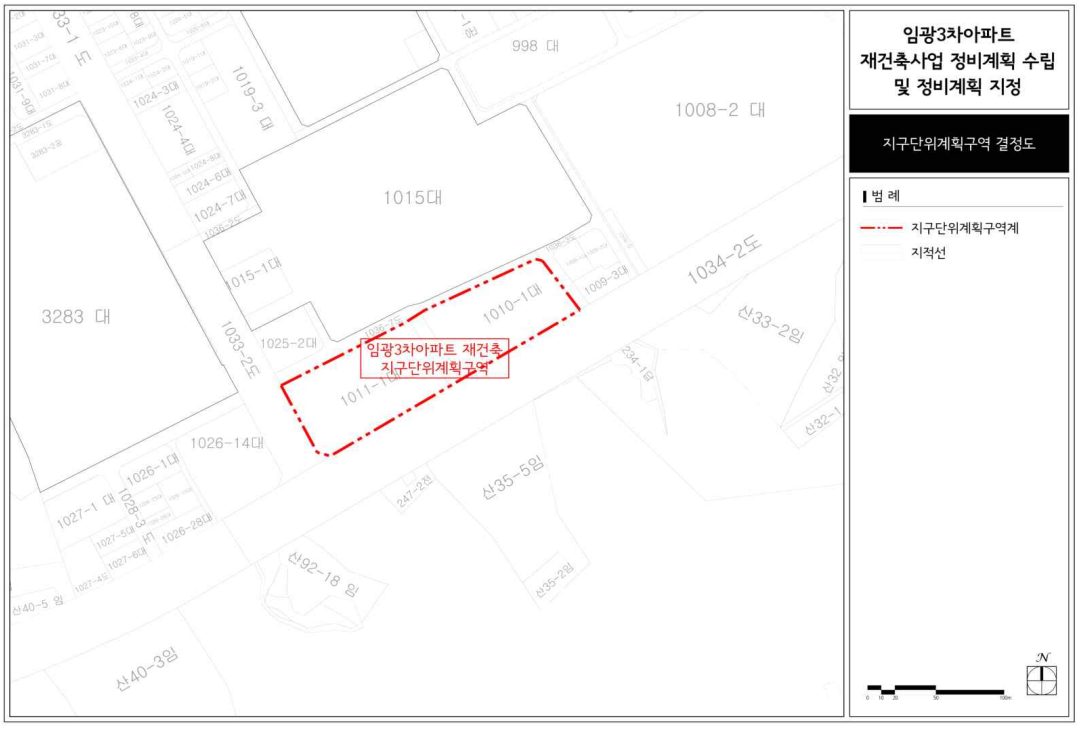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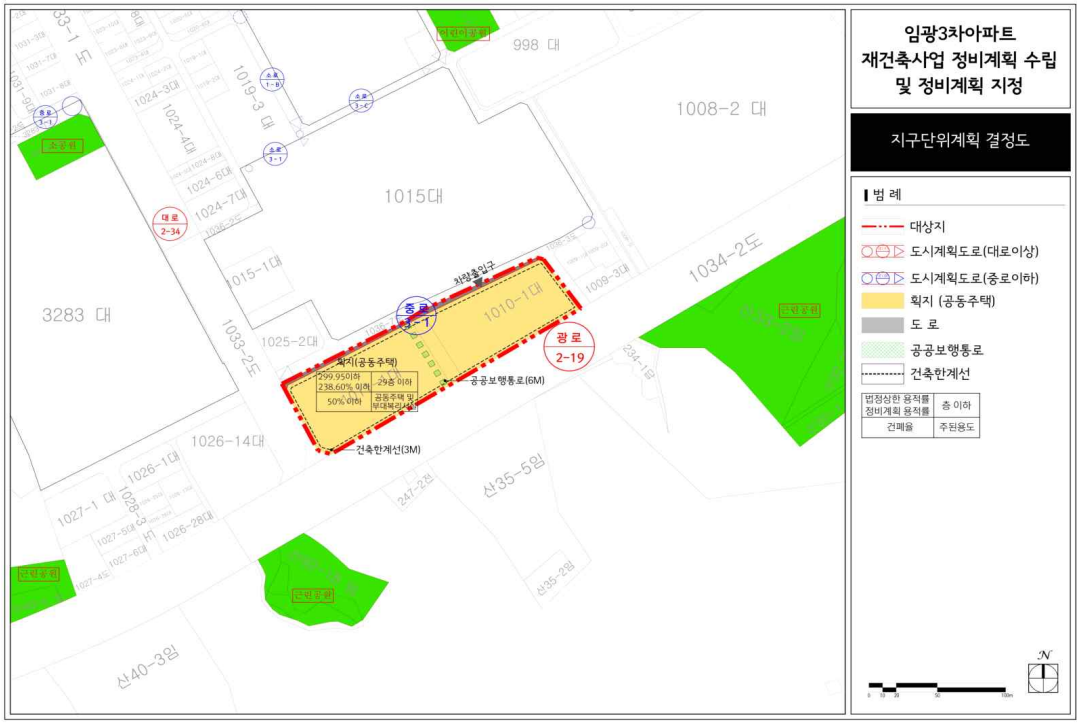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45호 (’22. 12. 30.)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창신동 23-605일대 및 창신동 6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	자치구	명칭(가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종로구	창신9구역	창신동 23-605일대	133,846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 창신9구역 위치(대표지번) 변경
변경	종로구	창신9구역	창신동 23-606일대	143,148.7	
기정	종로구	창신10구역	창신동 629일대	81,371	
변경	종로구	창신10구역	창신동 629일대	92,190.8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구분	위 치	권리산정기준일	면적(㎡)
기정	창신동 23-605일대	2022. 1. 28.	133,846
변경	창신동 23-606일대	2022. 1. 28. (기존 구역) 2025. 7. 17. (추가 구역)	143,148.7
기정	창신동 629일대	2022. 1. 28.	81,371
변경	창신동 629일대	2022. 1. 28. (기존 구역) 2025. 7. 17. (추가 구역)	92,190.8

3. 지정사유(변경 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또는 종로구 주택과(☎02-2148-26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창신9구역(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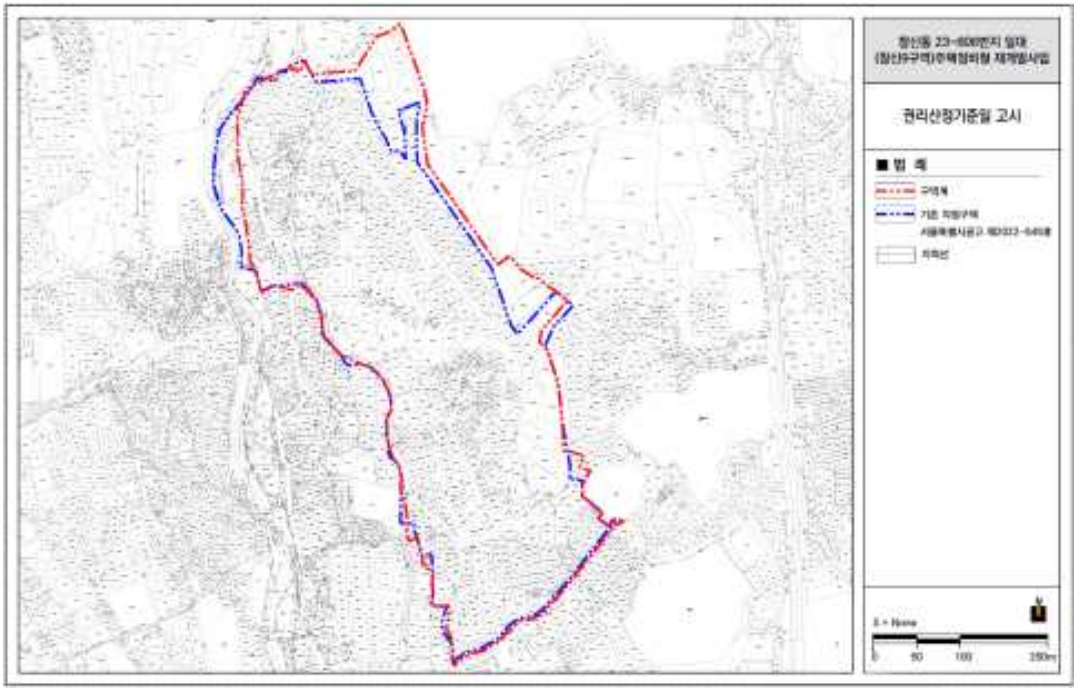

○ 창신10구역(종로구 창신동 629번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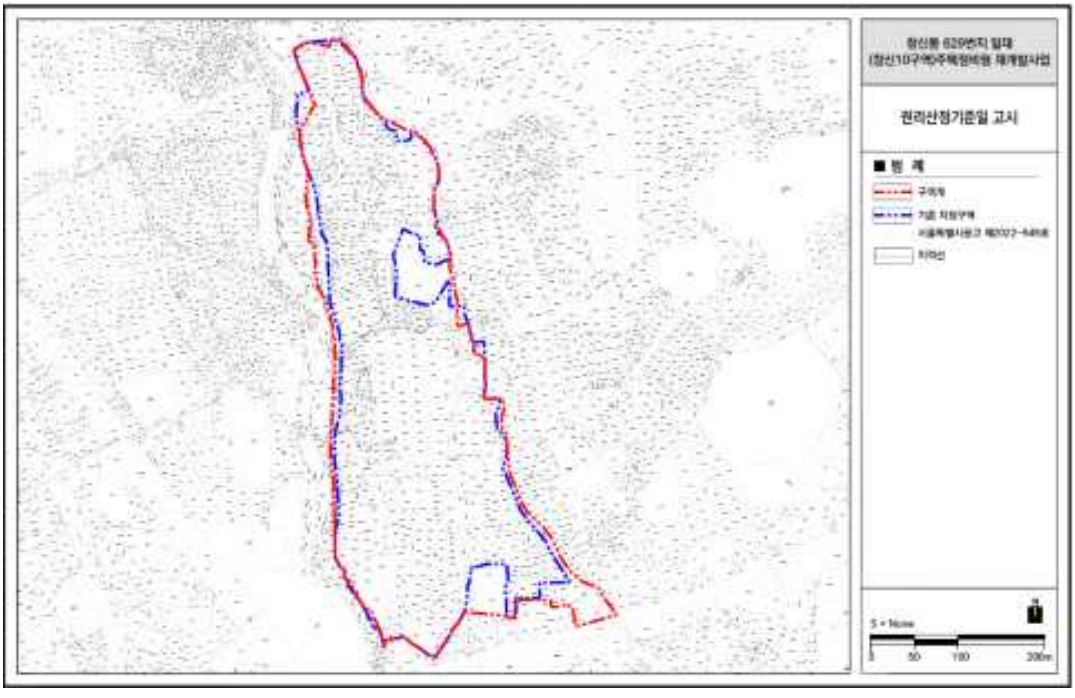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7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2019.07.25.)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55호(2019.10.31.)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29호(2021.05.13.)로 정비구역 지정(변경)된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구역 명칭(변경없음)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변경)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30,276.3	-	30,276.3	
변경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30,276.3	증) 6.2	30,282.5	

※ 변경사유 :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구역 경계 일치를 위해 산1-29를 사업구역에 포함, 47-681이 47-260과 합병 예정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다. 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0,276.3	증)6.2	30,282.5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927.0	증)1,210.1	6,137.1	20.3%	
	도로	도시계획시설	1,112.3 (1,643.1)	증)10.8 (증)224.1)	1,123.1 (1,867.2)	3.7%	공원 744.1㎡ 중복결정
		현황도로	1,862.2	감)51.3	1,810.9	6.0%	지목상 도로부지
	공원		1,952.5	증)31.0	1,983.5	6.5%	근린공원
	주차장		-	증)1,064.2	1,064.2	3.5%	신설
	공공공지		-	증)155.4	155.4	0.5%	신설
주택용지 (개별건축)			25,349.3	감)1,203.9	24,145.4	79.7%	임야 164.4㎡ 포함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르며, 도로 조성 및 유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 변경사유 : 구역계변경, 소로3-(1) 일부 도로폭원 확장 및 소로3-(2) 선형변경, 주차장 및 공공공지 신설

2)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0,276.3	증)6.2	30,282.5	100%	
주거지역	소계	29,400.1	증)6.2	29,406.3	97.1%	
	제1종일반주거지역	28,602.4	증)6.2	28,608.6	9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97.7	-	797.7	2.6%	
녹지지역	소계	876.2	-	876.2	2.9%	
	자연녹지지역	876.2	-	876.2	2.9%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조정은 되었으나, 용도지역은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경관지구(변경없음)

구분	명칭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경관지구(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51,223.7 (27,822.5)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변경	-	경관지구(인왕지구)	자연경관지구	종로구, 삼청동, 세종로동, 옥인동, 누상동, 사직동 청운동 일대	747,314 (28,614.2)	건설부고시 제235호 (1977.12.3.)	

※ 인왕지구 변경면적(서고시 제2019-227호, 2019.07.11.) 반영, ( )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사항으로 오기정정함

나) 고도지구(변경)

구분	명칭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	20m이하	415,800.0 (494.1)	서고77-139 (1977. 5. 9.)	
변경	-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옥인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체부동, 필운동 일대	20m이하	332,972 (494.1)	서고77-139 (1977. 5. 9.)	

※ 고도지구 변경(서고시 제2024-317호, 2024.06.27.) 반영, ( )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사항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334	12	보조간선도로	580	신교동	옥인동	일반도로	총고722 (1936.12.26)	구역외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279	옥인동 47-357	옥인동 47-51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 (2019.07.25.)	공원(121.3㎡) 중복결정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	4.0 ~ 6.6	국지도로						공원(135.1㎡) 중복결정 일부구간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12	신교동 2-139	옥인동 47-424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4호 (2019.07.25.)	공원(409.5㎡) 중복결정 일부구간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2)	4.0 ~ 10.2	국지도로						공원(609.0㎡) 중복결정 일부구간 선형변경

※ ( )는 노선번호 미부여에 따라 구분편의를 위해 임시번호를 부여
※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 성과에 따르며, 도로 조성 및 유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선형 및 폭원 변경 가능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	소로 3-(1)	· 일부 도로선형 변경	· 곡선부 회전반경 및 시거확보 필요에 따른 폭원 조정
소로 3-(2)	소로 3-(2)	· 일부 도로선형 변경	· 진입도로 확폭에 따른 선형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 면적은 1,643.1㎡→1,867.2㎡로 224.1㎡ 증가됨

(2) 공원 (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종로구 옥인동 47-512번지 일원	1,757,377 (1,951.6)	–	1,757,377 (1,951.6)	서고제176호 (1982.04.28.)	도로(530.8㎡) 중복결정
변경	공원	인왕산 근린공원	종로구 옥인동 47-512번지 일원	1,782,345 (1,950.5)	– 증)33	1,782,352 (1,983.5)	서고제176호 (1982.04.28.)	도로(744.1㎡) 중복결정

※ 기정 공원면적 착오(1,951.6 → 1,950.5, 증31.0→증33.0) 오기 정정함
※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인왕산 근린공원으로 명칭 변경(서울시고시 제2020-254호, 2020.06.2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인왕산 근린공원	면적증가 (증) 33)	구역계 변경(산1-29: 편입)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공원부지면적이 33㎡ 증가됨

(3)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중복결정) 결정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도로	인왕산 근린공원	종로구 청운동 7-6 일대	530.8	증)213.3	744.1	서고제244호 (2019.07.25.)	도로(744.1㎡) 중복결정

※ 공원, 도로 중복결정으로 도로 최초결정일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19-244호)를 반영한 사항임

(4) 주차장(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종로구 옥인동 47-16일대	-	증)1,109.3 (증)1,064.2)	1,109.3 (1,064.2)	종로구고시 제2020-25호 (2020.3.19.)	-

※ 종로구고시 제2020-25호(2020.3.19.)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반영
※ ( )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사항임

(5)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종로구 옥인동 47-177	-	증)56.2	56.2	-	-
신설	②	공공공지	종로구 옥인동 47-306 일원	-	증)49.3	49.3	-	-
신설	③	공공공지	종로구 옥인동 47-81 일원	-	증)49.9	49.9	-	-

(6)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필요시)(해당사항 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30,276.3	-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155 (145)	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변경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30,282.5	-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125 (117)					

※ ( )는 특정무허가건물 제외

(2) 주택개량 지원계획(변경없음)

(3)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변경된 구역 면적으로 적용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 형태 및 색채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3) 대지안의 공지(변경없음)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5) 대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변경없음)

7)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건축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8)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변경없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정비구역의 분할 · 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해당사항 없음)

1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해당사항 없음)

13)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사항 없음)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변경없음)
1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6)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7)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향후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자생적 재생기반 마련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19)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20)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변경없음)
21) 구역 내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22)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종로구청장	-	-
변경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종로구청장	-	-
기정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	-
변경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변경없음	변경없음	-	-

※ 사업예정시기 변경은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에 따른 사업예정시기 연장임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시행지침 포함) 참고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시청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2)와 종로구청 주택관리과(02-2148-2612)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제1차('23.01.1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심의결과	구 분	내 용	반영계획	비고
수정가결	수정사항	• 높이 완화 계획 : 3층 12m ※ 단, 저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4층 16m(필로티 포함) • 차량 출입 불허구간 : 구역 내 대지에 대해 차량출입 및 주차출입구 설치 불허 • 건축선 계획 : 기정 계획(저층부 벽면한계선) 유지 • 기반시설계획 : 6,137.1㎡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삭제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1) : 선형 변경, 최소 폭원 4m 이상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2) ※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 중복 결정 744.1㎡ - 보행도로 : 1,810.9㎡ • 주택용지 : 24,145.4㎡	• 수정 사항 반영	-
	조건사항	대상지는 자연경관지구이자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구역 내 공공부지 비율이 상당한 지역으로서 민간의 자율적 개발보다는 공공의 계획적 개발 및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지역인 바, '높이완화계획(3층 12m ※ 단, 저층부 벽면한계선 준수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4층 16m) 및 소로3-1 및 3-2 연접부 등 ' 차량출입 가능 대지계획 '은 재검토	• 반영	
		대상지 내 도로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필지별 건축시 피로티를 통한 주차장 확보가 적정하지 않은 바, 공공부지(서울시 및 SH)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보육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보 검토	• 반영	

▢ 관계 도면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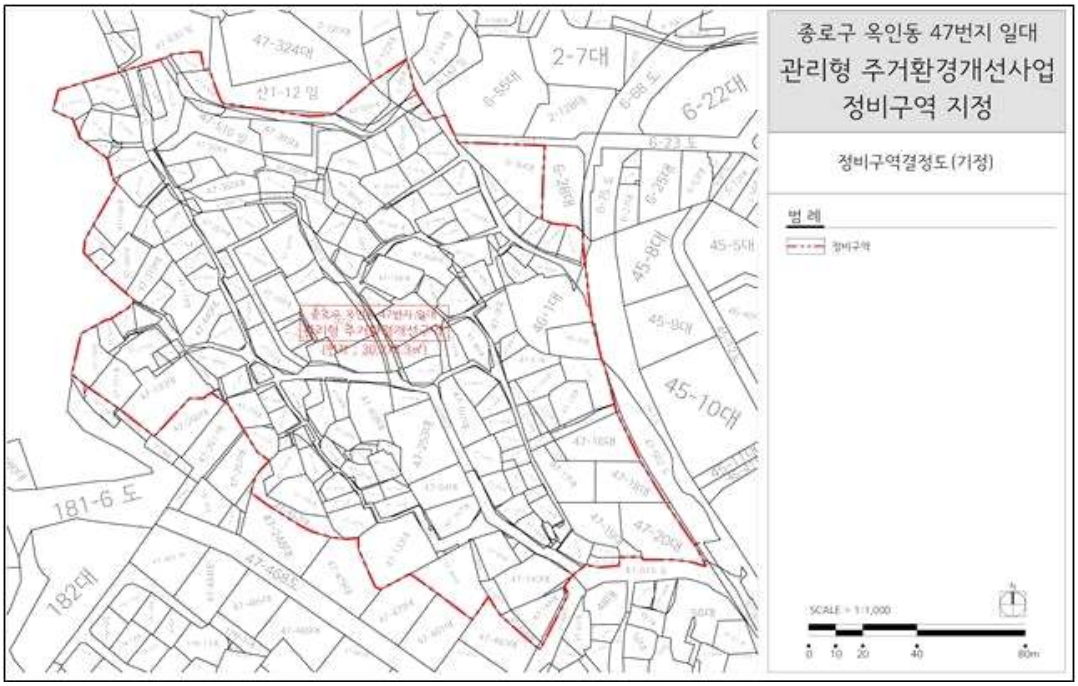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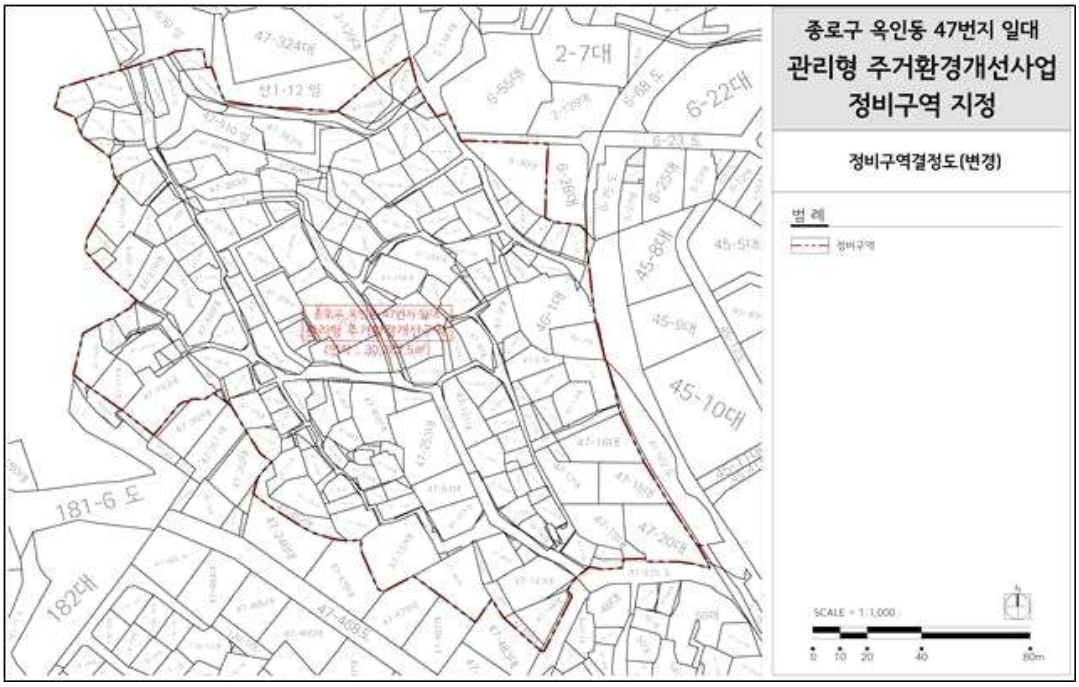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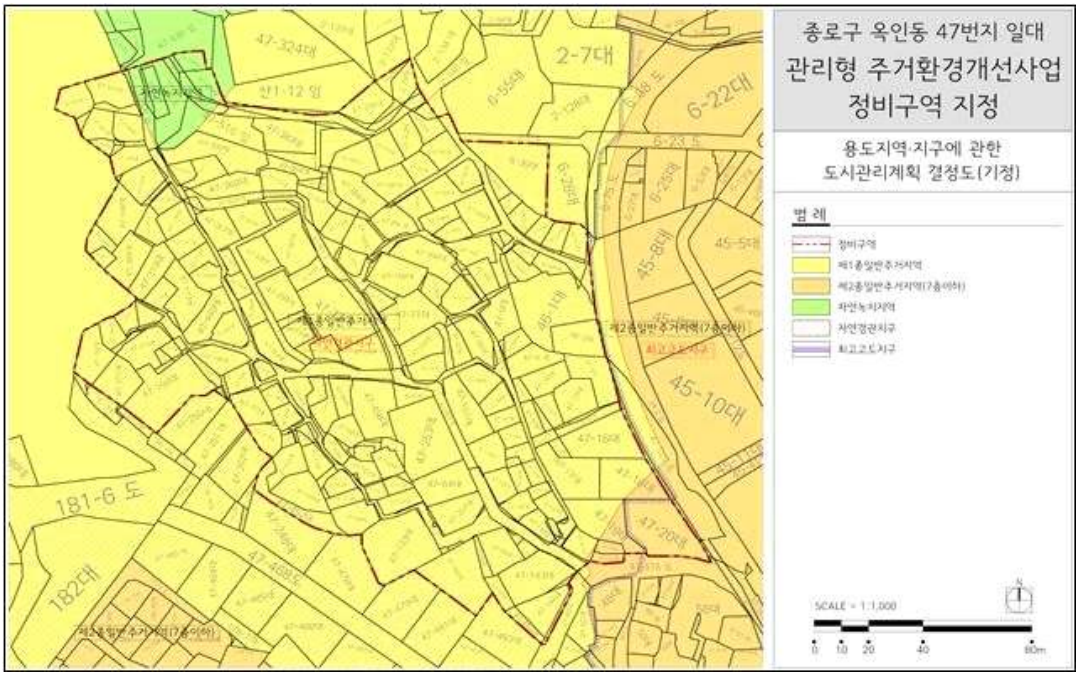

– 변경(구역계 변경 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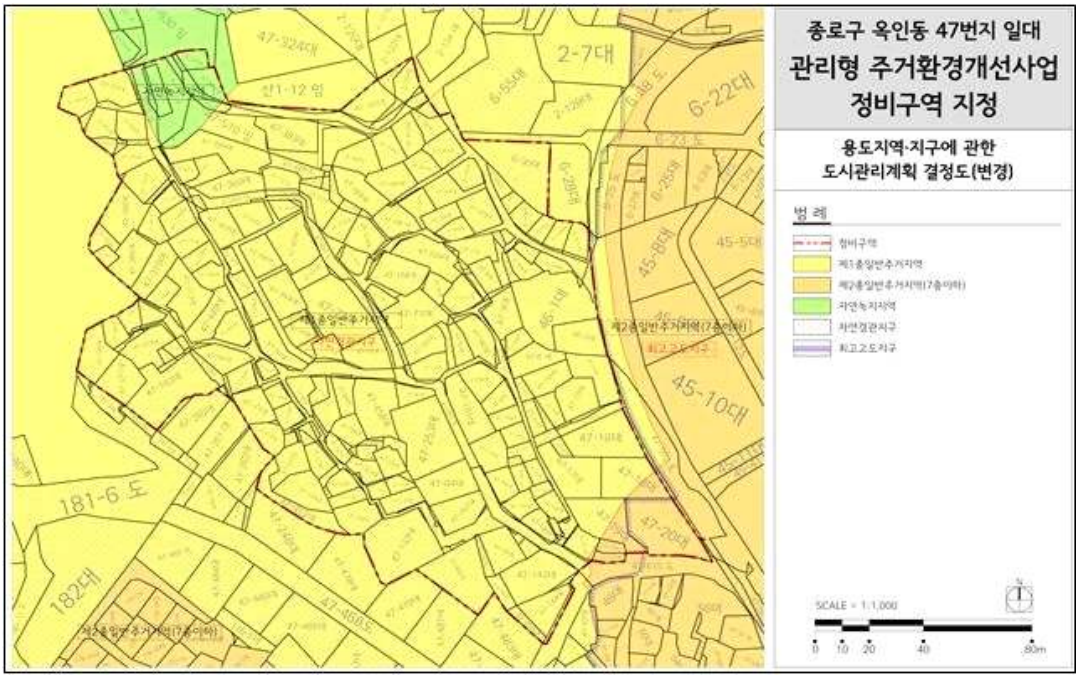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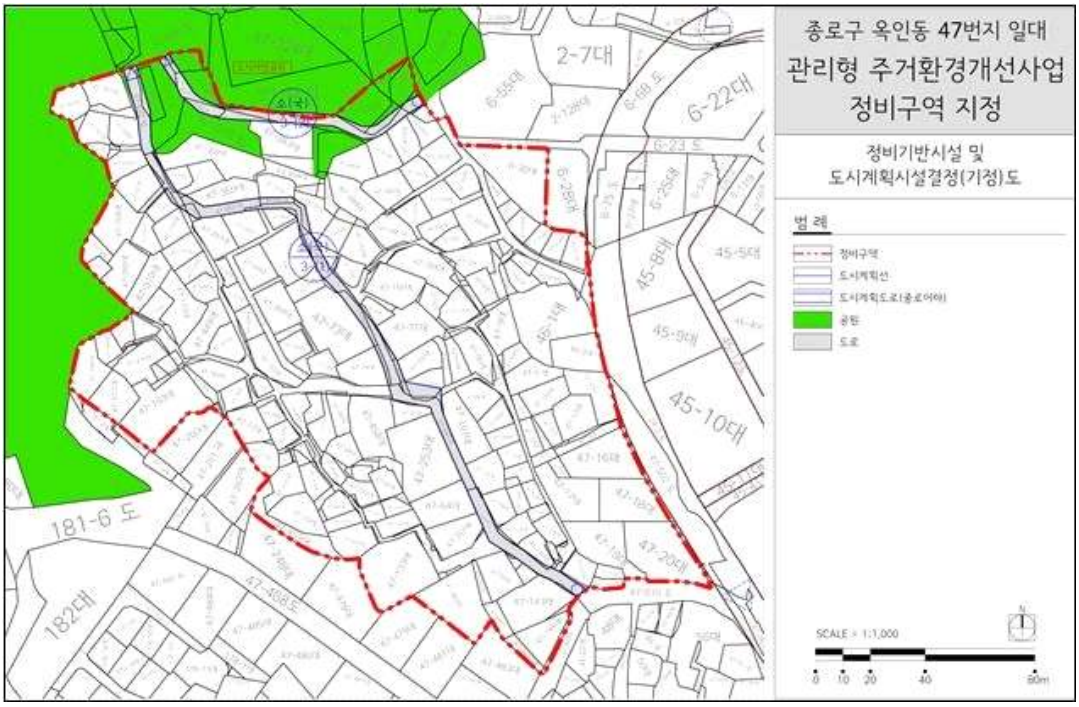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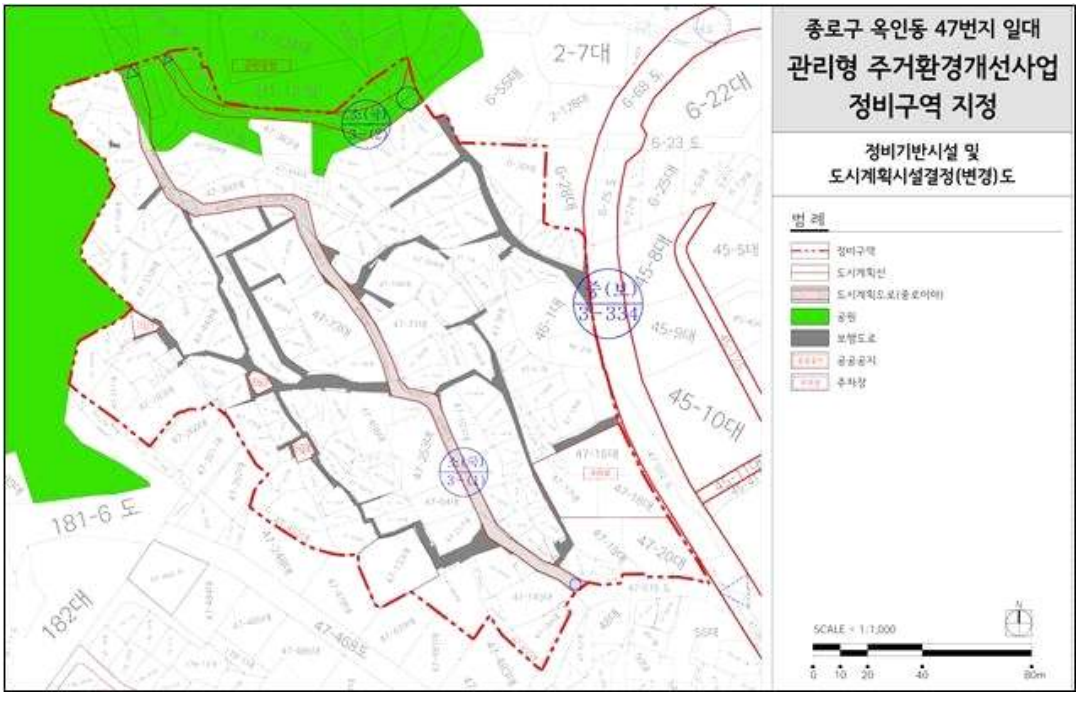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도(변경없음)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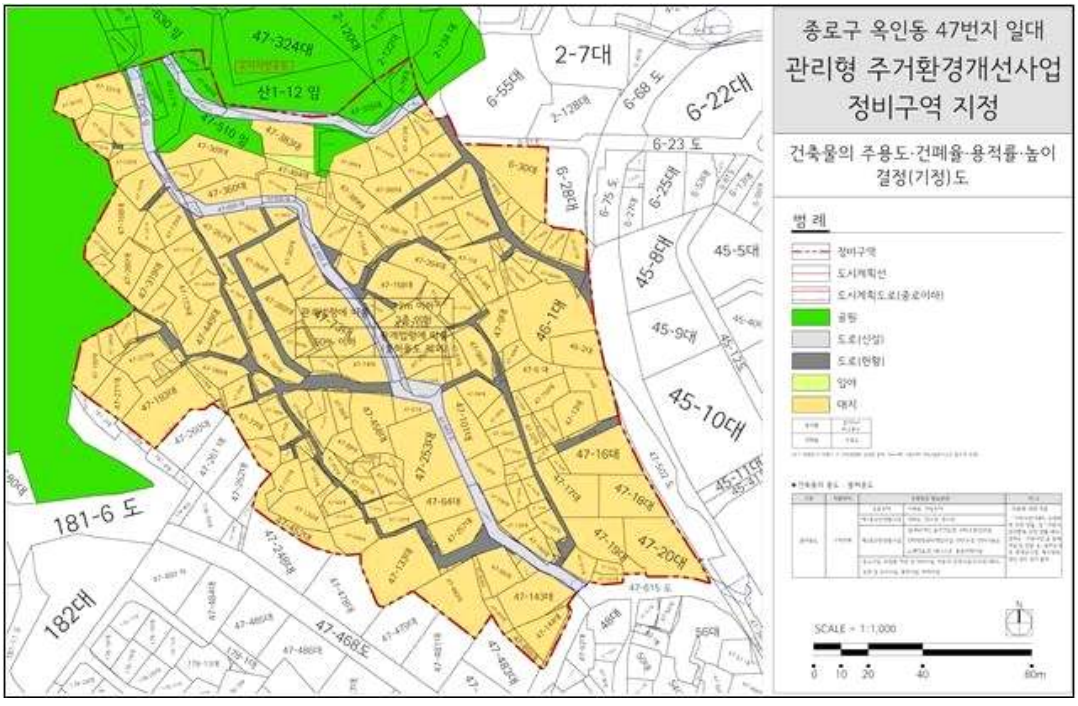

– 변경(구역계 변경 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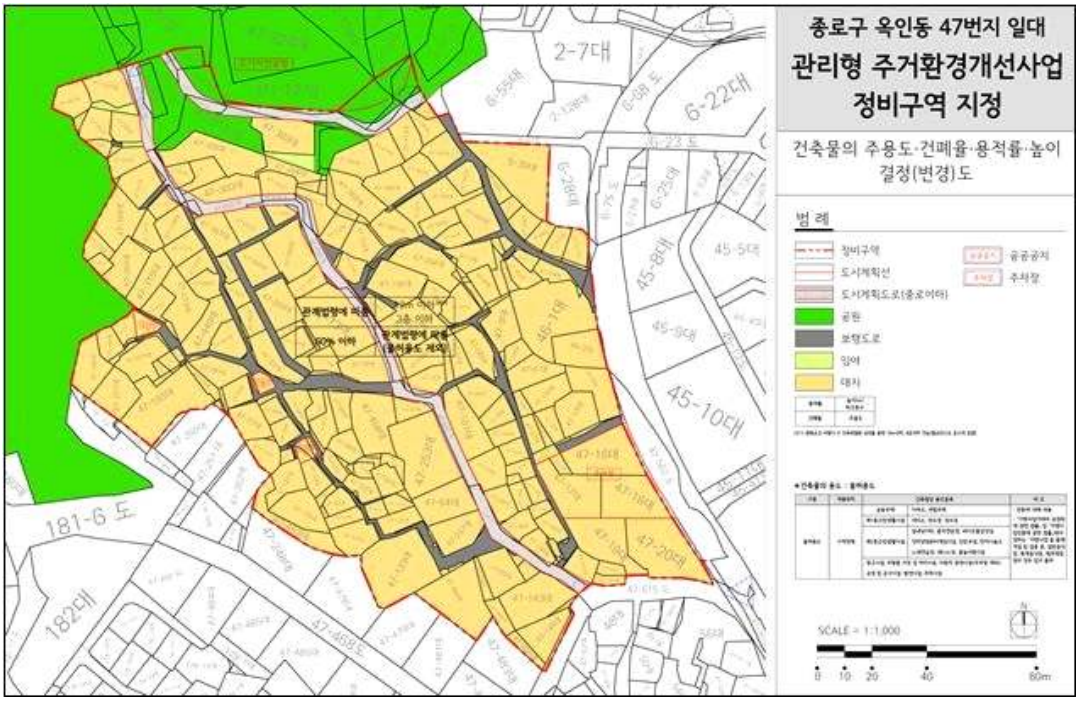

○ 건축물의 건축선 결정도(변경없음)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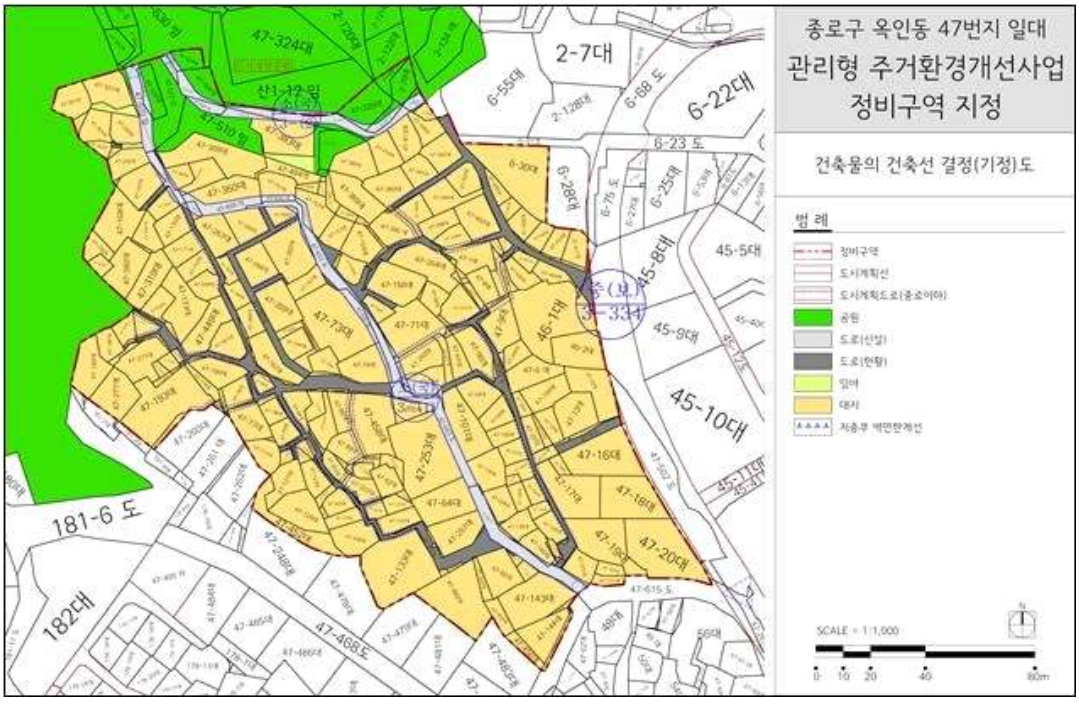

– 변경(구역계 변경 사항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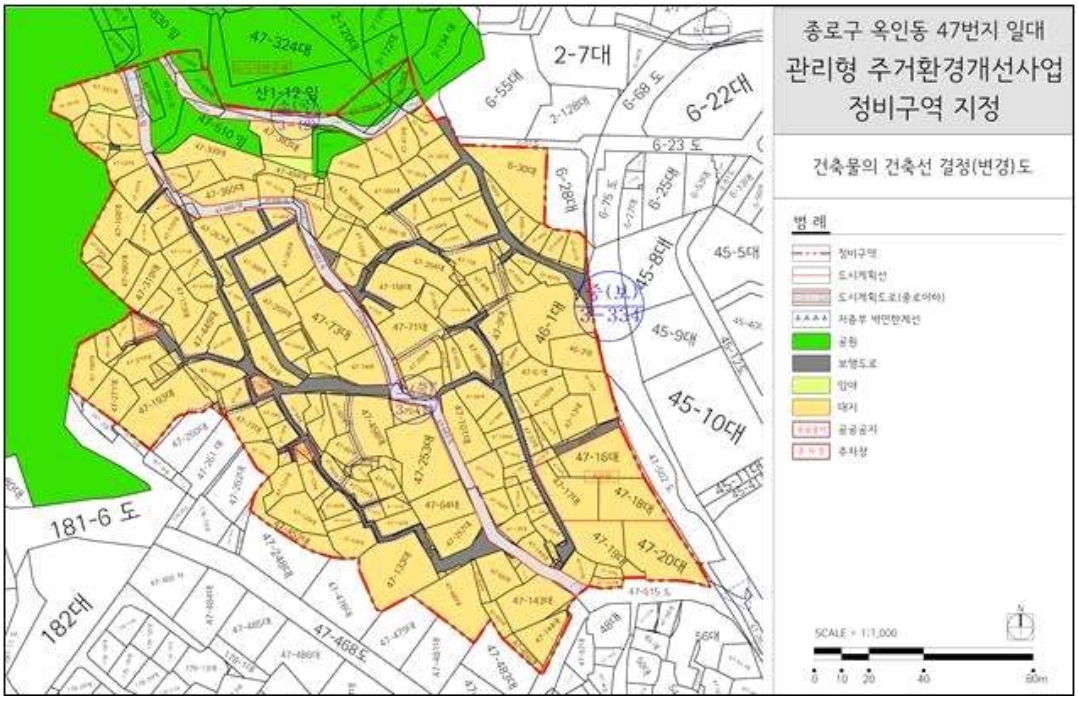

○ 정비계획 종합 결정도(변경)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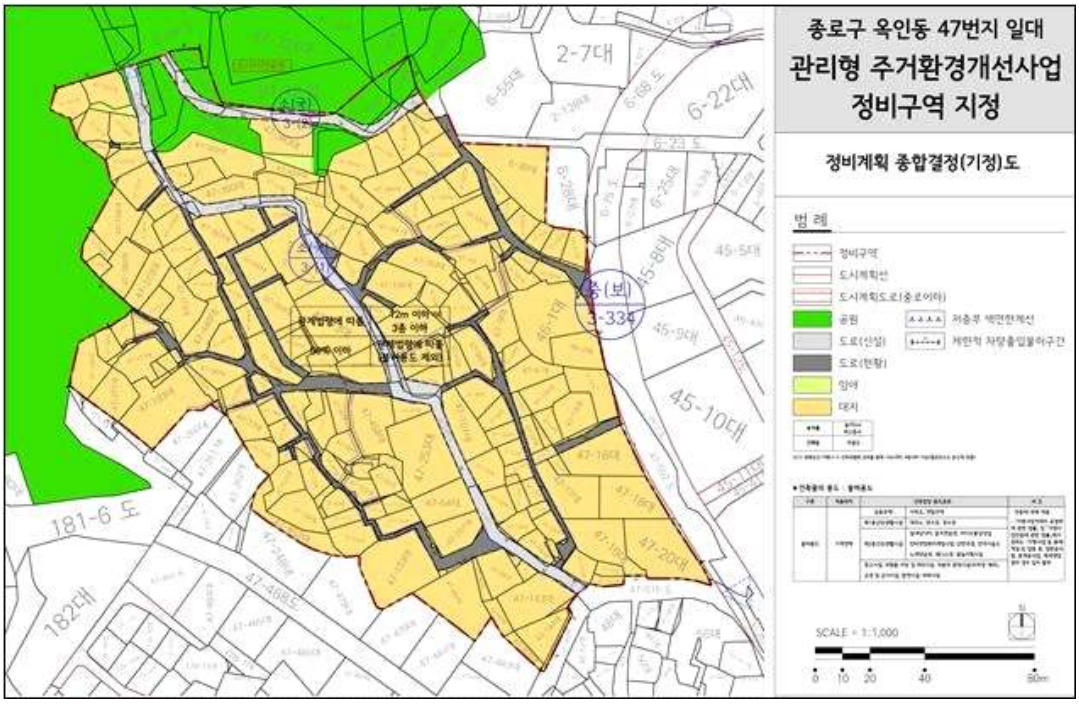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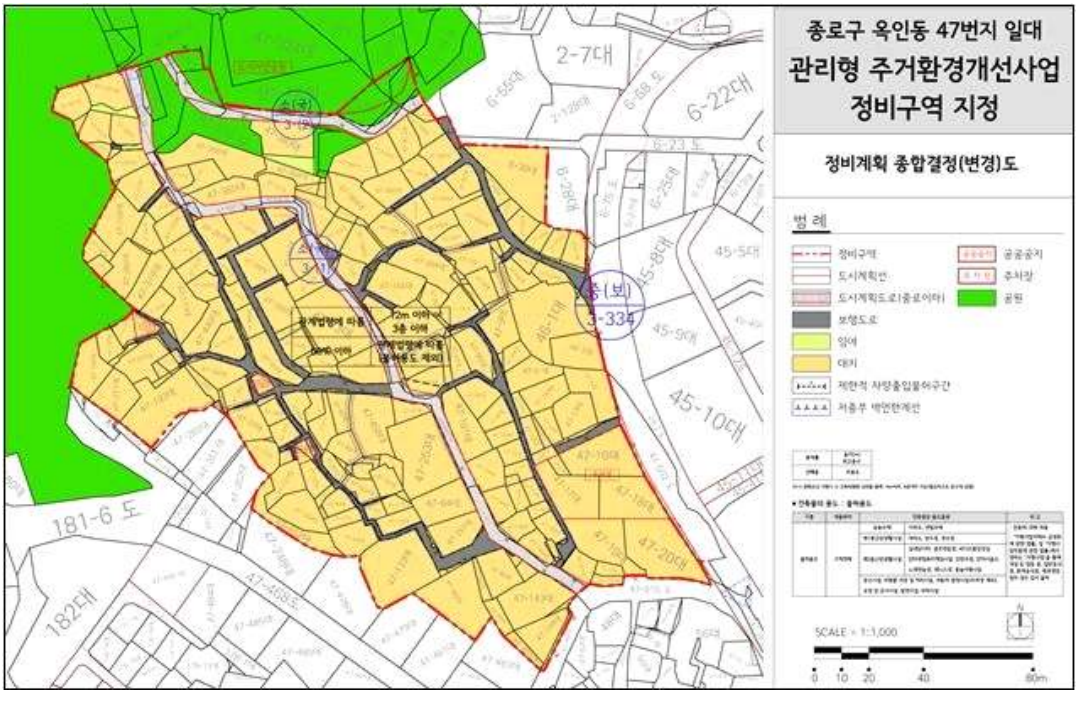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88호

공항동 55-32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55-327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공항동 55-32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6,637.5㎡	전체: 376동 노후·불량: 251동(66.8%)	-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공항동 55-32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	증) 96,637.5	96,637.5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공항동 55-327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96,637.5㎡	•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6,637.5	100.0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56,077.2	58.0	
		A1	사업가능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6,530.1	6.7	
		A2	사업가능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4,356.0	14.9	
		A3	사업가능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1,502.1	11.9	
		A4	사업가능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0,822.0	11.2	
		A5	사업가능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2,867.0	13.3	
	정비기반시설	소계		12,064.3	12.4	
		-	도로	7,222.9	7.4	
		B1	공원 및 지하주차장	3,000.7	3.1	중복결정
		B2	공공공지	1,840.7	1.9	
	공동이용시설	C1	어린이집·경로당	609.0	0.6	
사업가능구역 외	존치지역			16,978.7	17.6	※사업가능시점 도래시 관리계획 수립 검토
	기반시설	도로		7,428.9	7.7	
	자율정비구역	D1	종교시설 등	1,596.5	1.7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D2	운수시설 등	1,714.8	1.8	
		D3	어린이집	168.1	0.2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역에 대한 사업가능 시점 도래시 공항동 660-14를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 및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2) A4 분리시(A4-1, A4-2)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96,637.5	100.0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소계		56,077.0	58.0	
		A1	사업가능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6,530.1	6.7	
		A2	사업가능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4,356.0	14.9	
		A3	사업가능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1,502.1	11.9	
		A4-1	사업가능구역4-1(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2,120.6	2.2	
		A4-2	사업가능구역4-2(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8,701.2	9.0	
		A5	사업가능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12,867.0	13.3	
	정비기반시설	소계		11,345.5	11.7	
		-	도로	6,504.1	6.7	
		B1	공원 및 지하주차장	3,000.7	3.1	중복결정
		B2	공공공지	1,840.7	1.9	
	공동이용시설	C1	어린이집 · 경로당	609.0	0.6	
사업가능구역 외	존치지역			16,978.7	17.6	※ 사업가능 시점 도래시 관리계획 수립 검토
	기반시설	도로		8,147.9	8.4	
	자율정비구역	D1	종교시설 등	1,596.5	1.7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D2	운수시설 등	1,714.8	1.8	
		D3	어린이집	168.1	0.2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존치지역에 대한 사업가능 시점 도래시 공항동 660-14를 포함하여 관리계획 변경 및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	387	공항동 302-1	외발산동 313-2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2	1	15	국지	221	공항동 725	공항동 669-5	일반	-	-
기정	소로	2	8	8	-	52	공항동 39-6	공항동 40-37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1	12	국지	52	공항동 650-3	공항동 40-8	일반	-	-
기정	소로	3	21	6	-	271	외발산동 산5-1	공항동 40-2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2	12	국지	194	공항동 657-3	공항동 40-6	일반	-	-
기정	소로	2	-	8	-	-	-	-	-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3	12	국지	116	공항동 55-135	공항동 55-100	일반	-	-
기정	소로	2	7	8	-	133	외발산동 319	공항동 40-39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4	12	국지	168	공항동 657-1	공항동 55-163	일반	-	-
기정	소로	1	2	10	-	95	외발산동 329-9	공항동 301-4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5	10~12	국지	327	공항동 669-11	공항동 55-100	일반	-	-
기정	소로	1	3	10	-	130	공항동 39-6	외발산동 324-13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6	12	국지	249	공항동 669-10	공항동 652-2	일반	-	-
기정	소로	3	-	4	-	-	-	-	-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7	12	국지	139	공항동 653-5	공항동 55-252	일반	-	-
기정	소로	2	6	8	-	115	외발산동 324-9	외발산동 321-3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중로	3	8	12	국지	114	공항동 657-8	공항동 654-7	일반	-	-
기정	소로	2	3	8	국지	260	공항동 2-5	공항동 19-1	일반	서고제3호 ('69.1.18.)	-
변경	소로	1	1	10	국지	260 (121)	공항동 55-177	공항동 41-78	일반		-
기정	소로	3	-	6	-	-	-	-	-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소로	1	2	10	국지	74	공항동 40-6	공항동 41-78	일반	-	-
기정	소로	2	4	8	-	218	외발산동 314-13	외발산동 319	-	서고제216호 ('85.3.29.)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소로	1	3	10	국지	209	공항동 669-5	공항동 657-4	일반	-	-
기정	소로	2	-	8	-	-	-	-	-	-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
변경	소로	2	1	8	국지	79	공항동 55-180	공항동 692	일반	-	-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연장임
※ 명기된 기정 도로 외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으로 조성된 계획도로는 폐지되는 것으로 봄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	중로 2-1	기존 도로 확폭	• 대상지 일대는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이 시행된 지역이며,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인정 • 대상지 일대 통행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소로 2-8	중로 3-1		
소로 3-21	중로 3-2		
소로 2-	중로 3-3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 번호 시·종점 부여	
소로 2-7	중로 3-4	기존 도로 확폭	
소로 1-2	중로 3-5		
소로 1-3	중로 3-6		
소로 3-	중로 3-7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 번호 시·종점 부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6	중로 3-8	기존 도로 확폭	
소로 2-3	소로 1-1		
소로 3-	소로 1-2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 번호 시·종점 부여	
소로 2-4	소로 1-3	기존 도로 확폭	
소로 2-	소로 2-1	기존 도로 확폭 및 도로 번호 시·종점 부여	

3)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공항동 668	1,661.5	감) 1,661.5	-	서울시고시 제1995-141호 ('95.5.20.)	
신설	①	공원	어린이공원	공항동 669 일대	-	증) 3,000.7	3,000.7	-	주차장과 중복결정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시공원법」 상 공원 규모 및 공원조성계획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강서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것

4)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공원	어린이공원 1개소 신설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보

5) 주차장 계획(안)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공항동 669 일대	-	증) 3,000.7	3,000.7	-	공원①과 중복결정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강서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것

6)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주차장	주차장 1개소 신설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을 남측 저층주거지와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

7)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항동 723 일대	-	증) 1,840.7	1,840.7	-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강서구 등 관련 기관(부서)과 협의할 것

8)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1개소 신설	향후 강서구 SOC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건립용도 결정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구분	시설유형	변경사유
권장 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관리지역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확보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안)

구분	계획내용
차량진출입불허구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교차로 가각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설정
공공보행통로	A2를 가로지르는 폐도 부분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여 송정역으로 연결 편의성 확보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사업계획				
도면표시	구역명		계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기존 어린이집, 경로당 대체용지	토지등 소유자	기존 세대, 가구, 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 결정일
합계			68,750.5	56,077.2	12,064.3	609.0	-	1,307	-	-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40-36 일대	7,169.8	6,530.1	639.7	-	-	189	-	-	-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55-14 일대	16,648.1	14,356.0	2,292.1	-	-	289	-	-	-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301-27 일대	14,446.5	11,502.1	2,944.4	-	-	202	-	-	-
A4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4 일대	12,829.9	10,822.0	2,007.9	-	-	326	-	-	-
A5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67 일대	17,656.2	12,867.0	4,180.2 (지하 주차장 1,111.7 미포함)	609.0	-	301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사업시행구역 및 가로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A4 분리시(A4-1, A4-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사업계획				
도면 표시	구역명		계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 시설	기존 어린이집, 경로당 대체용지	토지등 소유자	기존 세대, 가구,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계			68,031.6	56,077.0	11,345.5	609.0	-	1,307	-	-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40-36 일대	7,169.8	6,530.1	639.7	-	-	189	-	-	-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55-14 일대	16,648.1	14,356.0	2,292.1	-	-	289	-	-	-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301-27 일대	14,446.5	11,502.1	2,944.4	-	-	202	-	-	-
A4-1	사업가능구역4-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1 일대	2,386.7	2,120.6	266.0	-	-	82	-	-	-
A4-2	사업가능구역4-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4 일대	9,724.3	8,701.2	1,023.1			244			
A5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67 일대	17,656.2	12,867.0	4,180.2 (지하 주차장 1,111.7 미포함)	609.0	-	301	-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면적을 사업시행구역 및 가로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바. 기타(건축협정)에 관한 계획(안)

1-1) 건축협정 가능 구역: 사업가능구역 적용

구분		위치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법」 제77조의 13)	
도면표시 번호	사업구역			통합적용	완화적용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40-36 일대	7,169.8	• 대지의 조경(제42조) • 지하층의 설치(제53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등	• 대지의 조경(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6조) • 대지안의 공지(제58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55-14 일대	16,648.1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301-27 일대	14,446.5		
A4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4 일대	12,829.9		
A5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67 일대	17,656.2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2) A4 분리시(A4-1, A4-2) 건축협정 가능 구역: 사업가능구역 적용

구분		위치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법」 제77조의 13)	
도면표시 번호	사업구역			통합적용	완화적용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40-36 일대	7,169.8	• 대지의 조경(제42조) • 지하층의 설치(제53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등	• 대지의 조경(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6조) • 대지안의 공지(제58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55-14 일대	16,648.1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301-27 일대	14,446.5		
A4-1	사업가능구역4-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1 일대	2,386.7		
A4-2	사업가능구역4-2	공항동	9,724.3		

구분		위치	면적(㎡)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법」 제77조의 13)	
도면표시 번호	사업구역			통합적용	완화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654 일대			
A5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67 일대	17,656.2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협정 가능 구역: 자율정비구역 적용

구분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건축법」 제77조의 13)	
	통합적용	완화적용
자율정비구역	• 대지의 조경(제42조) • 지하층의 설치(제53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 건폐율(제55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등	• 대지의 조경(제42조) • 건폐율(제55조) • 용적률(제56조) • 대지안의 공지(제58조) •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공동주택용지)	건폐율	50% 이하	제2종일반주거(7층)→ 제3종일반주거
	용적률	기준 250% / 상한 300%	
	높이	•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용 높이 • 「공항시설법」 에 따른 높이 제한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경로당, 어린이집)	건폐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7층)
	용적률	200%	
	높이	•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용 높이 • 「공항시설법」 에 따른 높이 제한	
사업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7층)
	용적률	200%	
	높이	• 「건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허용 높이 • 「공항시설법」 에 따른 높이 제한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기준(상향)용적률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된 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며, 같은 법 제43조의4 및 제48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 대상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적용지역으로 향후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계획(높이 등) 수립 가능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1) 건축물 배치 · 형태 · 건축선 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사업가능구역 1 ~ 5	•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사업가능구역 1 ~ 5 : 3m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가능구역 2 ~ 5	• 배치구간 : 남부순환로11가길 (중로 3-6) • 가로활성화시설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
공공 보행통로	사업가능구역 2	• 공공보행통로(6m)로 지정하여 송정역 보행 편의성 확보	보행편의 확보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건축물 용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 구역	유형		• 공동주택 용지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사업가능 구역 외	용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1)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계		-	1,878	258	-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40-36 일대	217	24	-	-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55-14 일대	485	58	-	-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301-27 일대	360	65	-	-
A4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4 일대	369	48	-	-
A5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67 일대	447	63	-	-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예시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2) A4 분리시(A4-1, A4-2)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계		-	1,878	269	-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40-36 일대	217	24	-	-
A2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55-14 일대	485	58	-	-
A3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301-27 일대	360	65	-	-
A4-1	사업가능구역4-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1 일대	64	9	-	-
A4-2	사업가능구역4-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54 일대	305	50		
A5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공항동 667 일대	447	63	-	-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예시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안)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6,637.5	-	96,637.5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61.5	감) 1,661.5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94,976.0	감) 54,415.7	40,560.3	42.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56,077.2	56,077.2	58.0	-

※ 사업가능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건축법」 제54조 등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건축계획 등을 수립할 것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1-1) 특별건축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7,169.8	7,169.8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6,648.1	16,648.1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4,446.5	14,446.5	
		사업가능구역4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2,829.9	12,829.9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7,656.2	17,656.2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시행자(조합 등) 등이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1-2) A4 분리시(A4-1, A4-2) 특별건축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7,169.8	7,169.8	
		사업가능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6,648.1	16,648.1	
		사업가능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4,446.5	14,446.5	
		사업가능구역4-1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증) 2,386.7	2,386.7	
		사업가능구역4-2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증) 9,724.3	9,724.3	
		사업가능구역5 (가로주택정비사업형 모아주택)	-	증) 17,656.2	17,656.2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시행자(조합 등) 등이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2) 특별건축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비고
-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 사업가능구역1 ~ 5의 통합적 계획 유도 •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	-

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해당없음

3. 관련도면: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8240) 및 강서구 도시전략과(☎02-2600-6047)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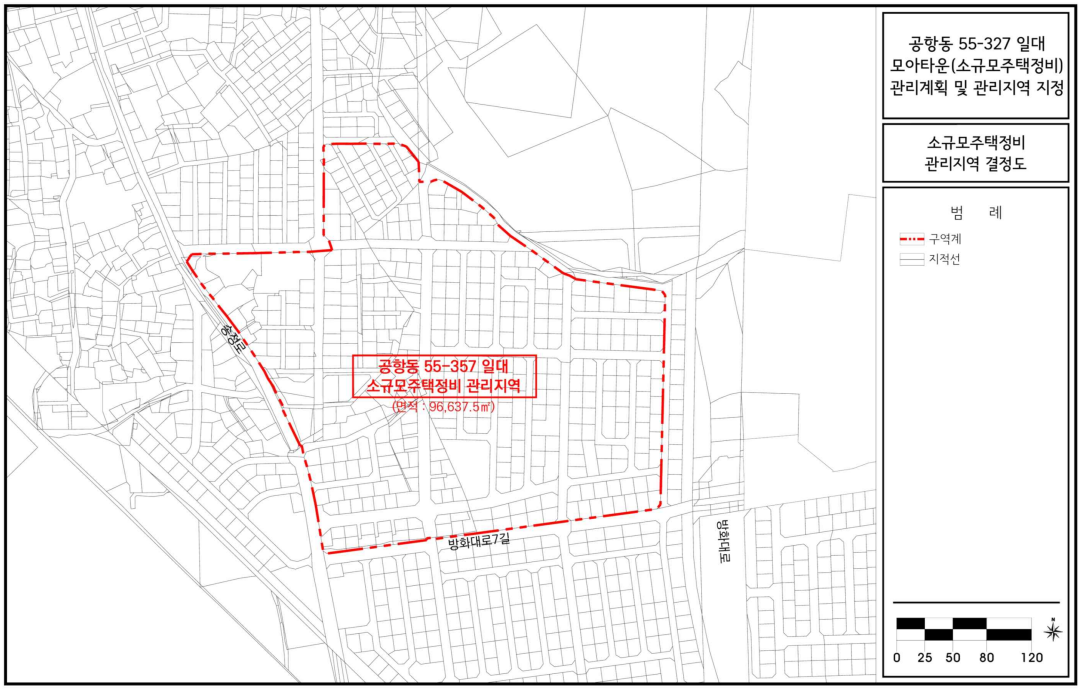

<이하여백>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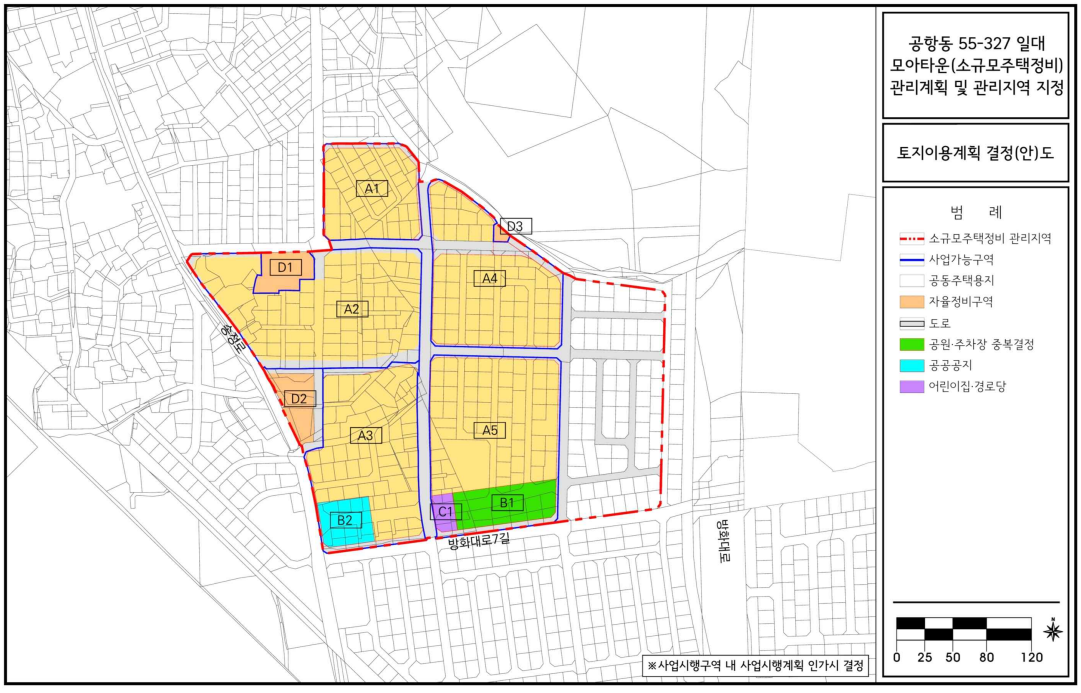

○ A4 분리시(A4-1, A4-2)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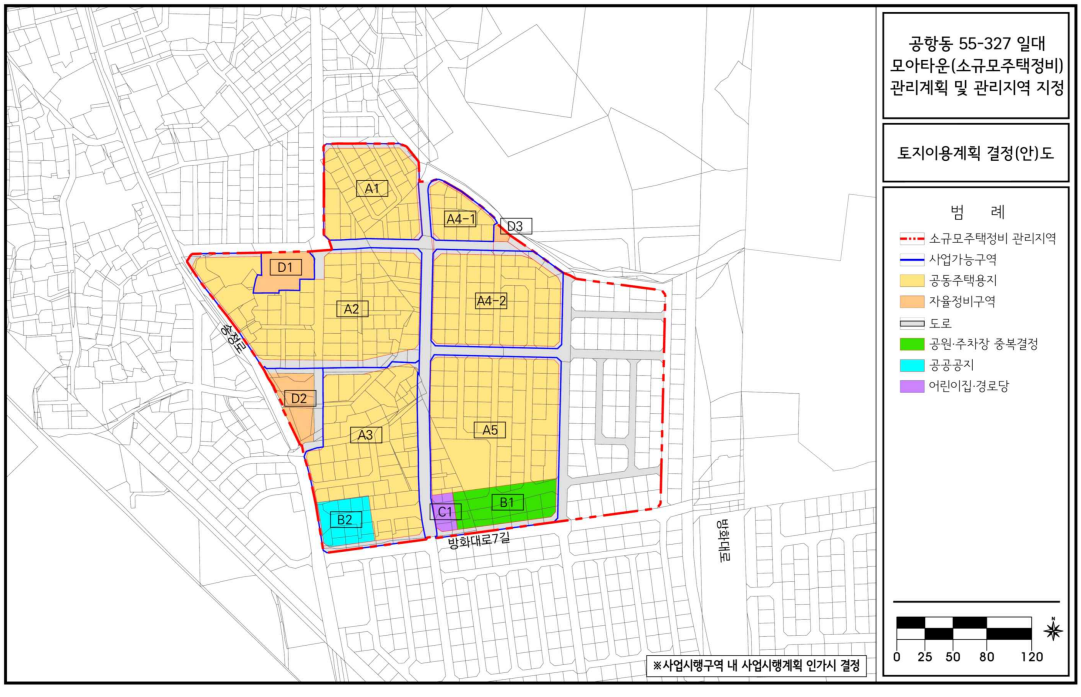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계획(안)_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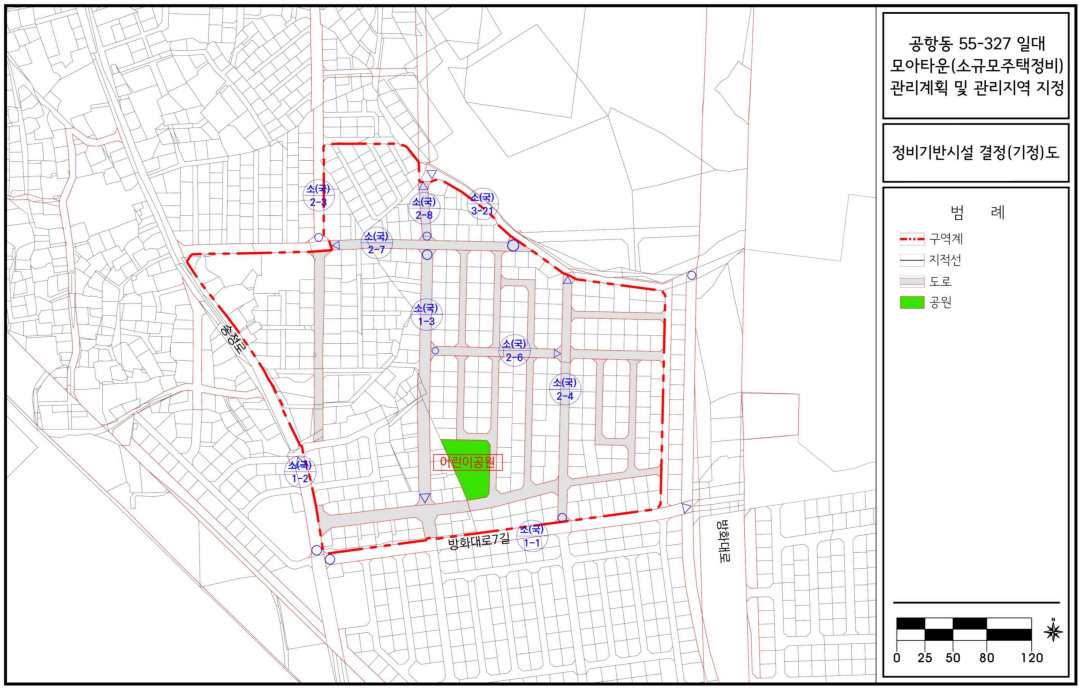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계획(안)_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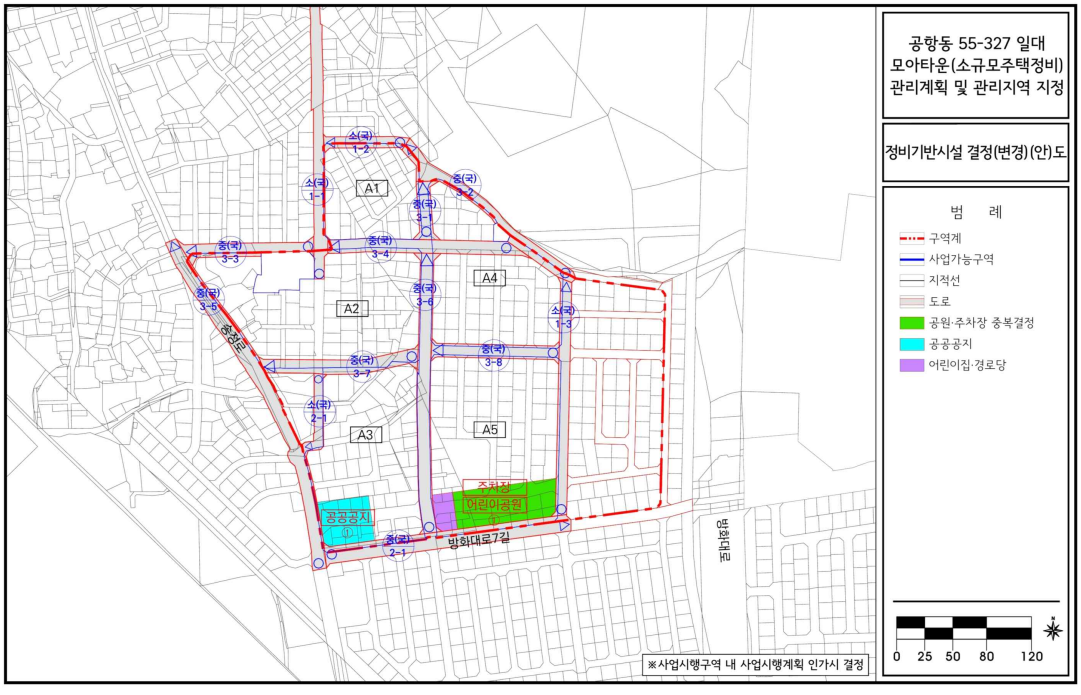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계획(안)_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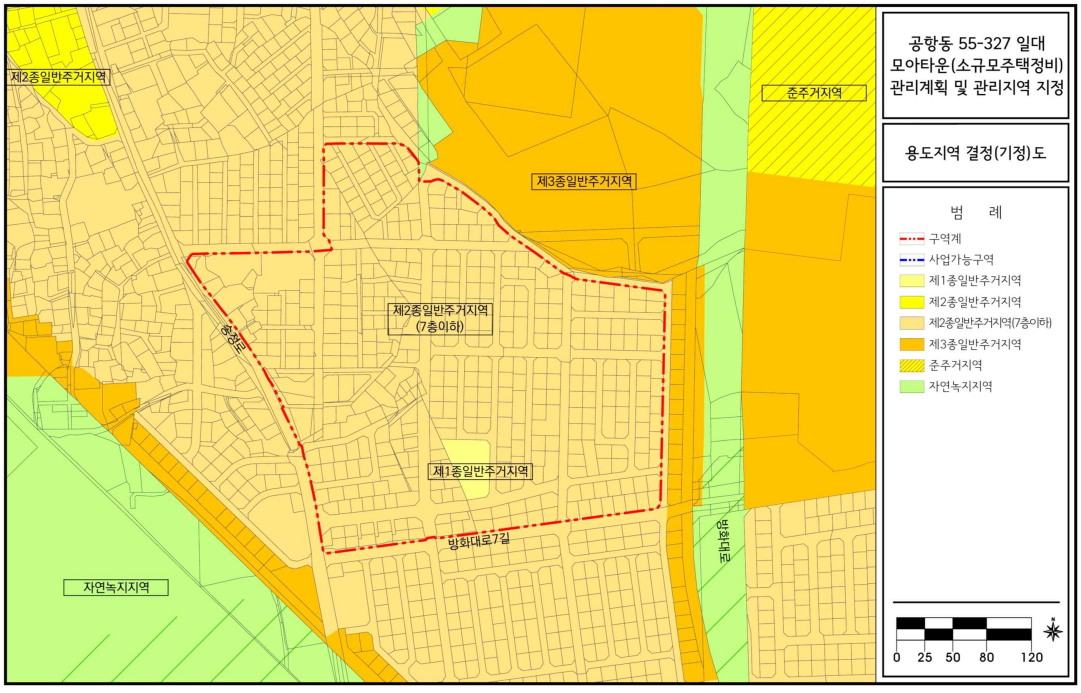

○ 용도지역 계획(안)_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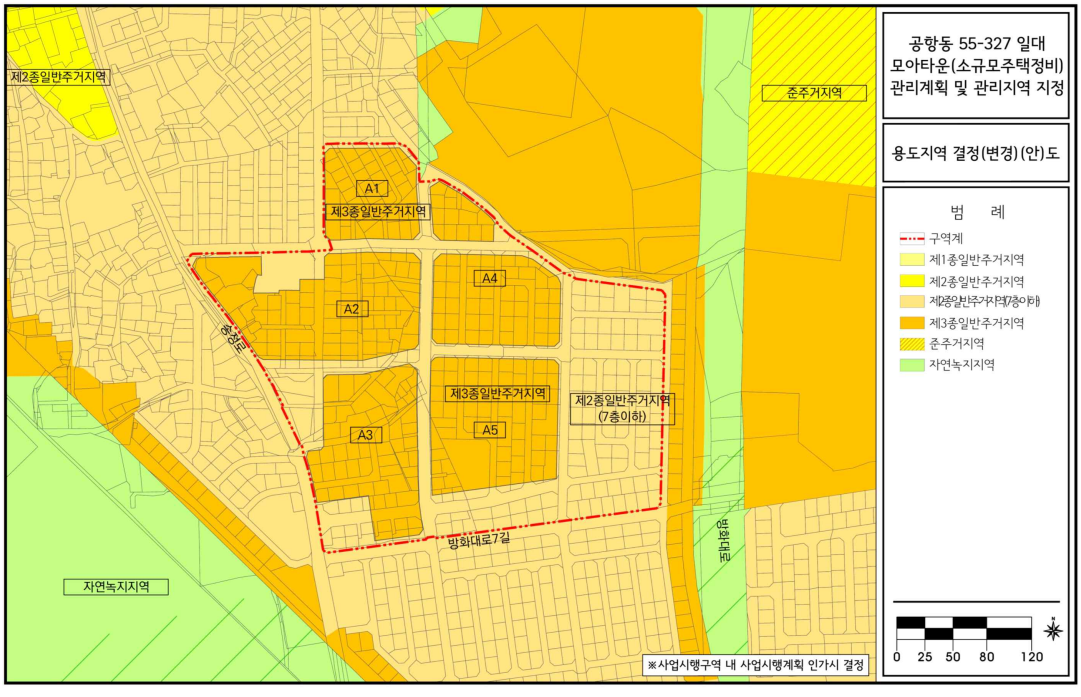

○ A4 분리시(A4-1, A4-2) 용도지역 계획(안)_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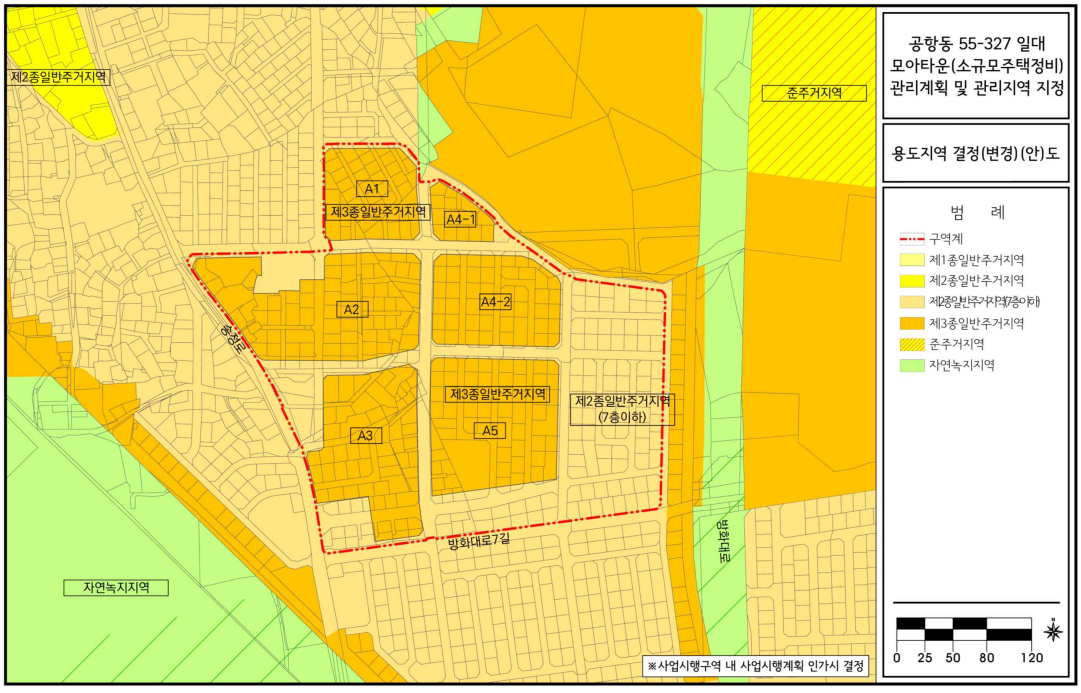

<이하여백>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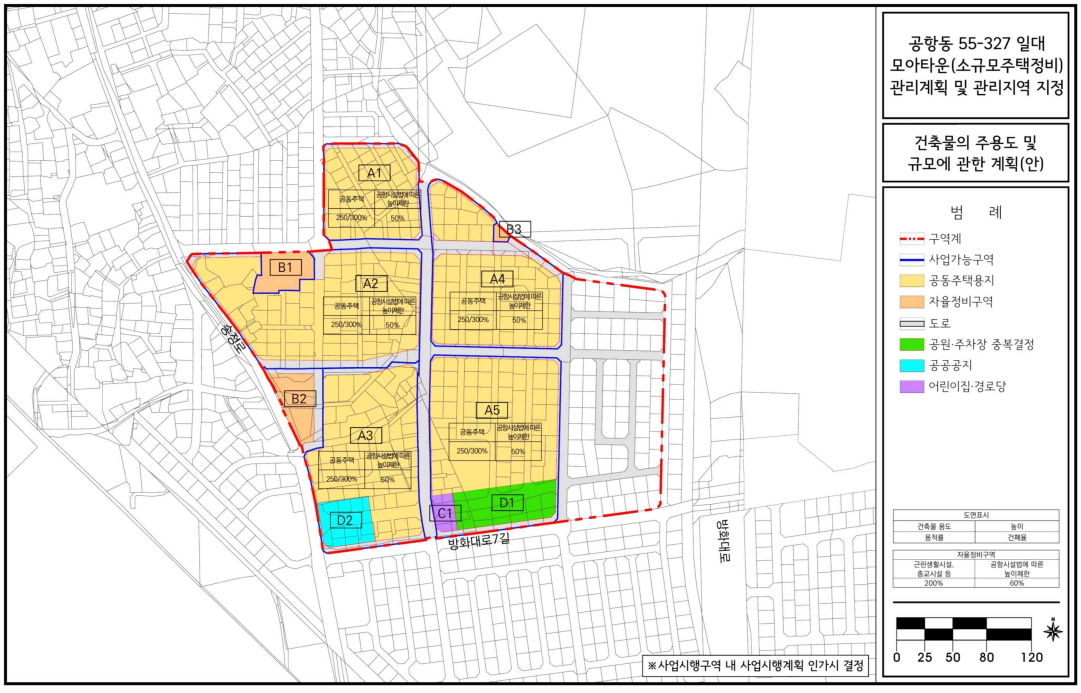

○ A4 분리시(A4-1, A4-2)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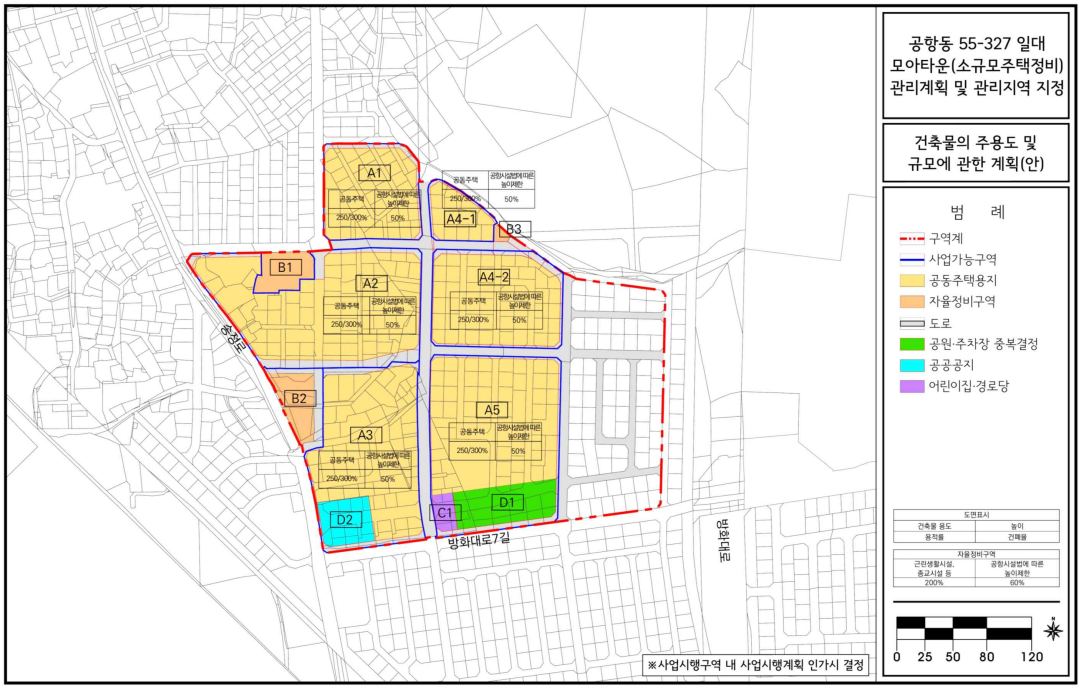

○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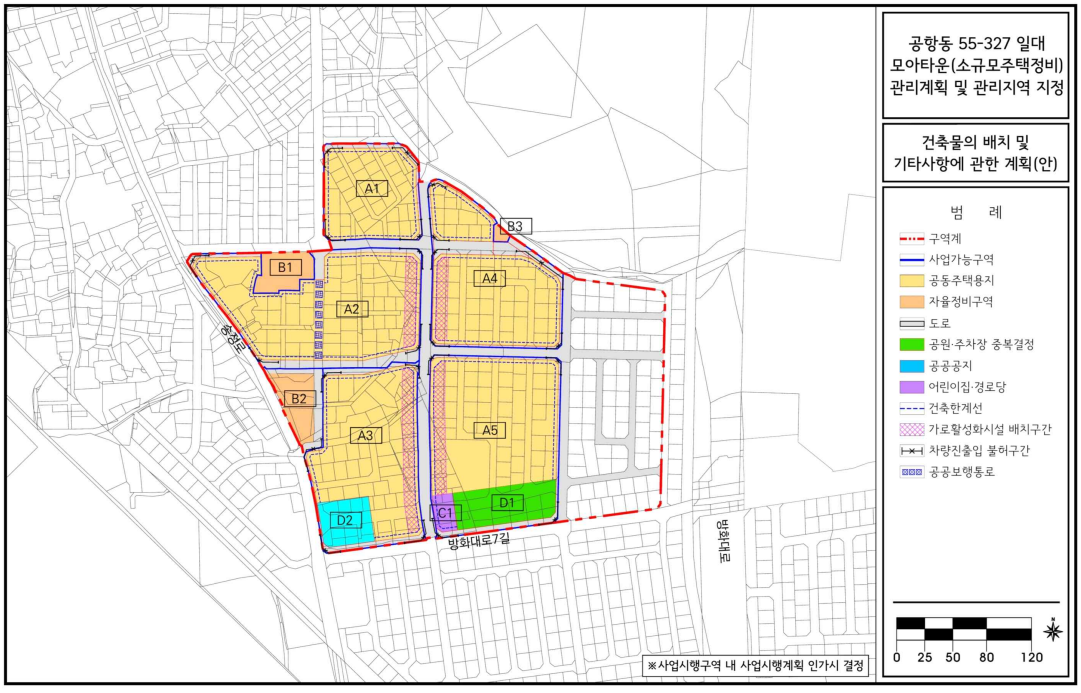

○ A4 분리시(A4-1, A4-2)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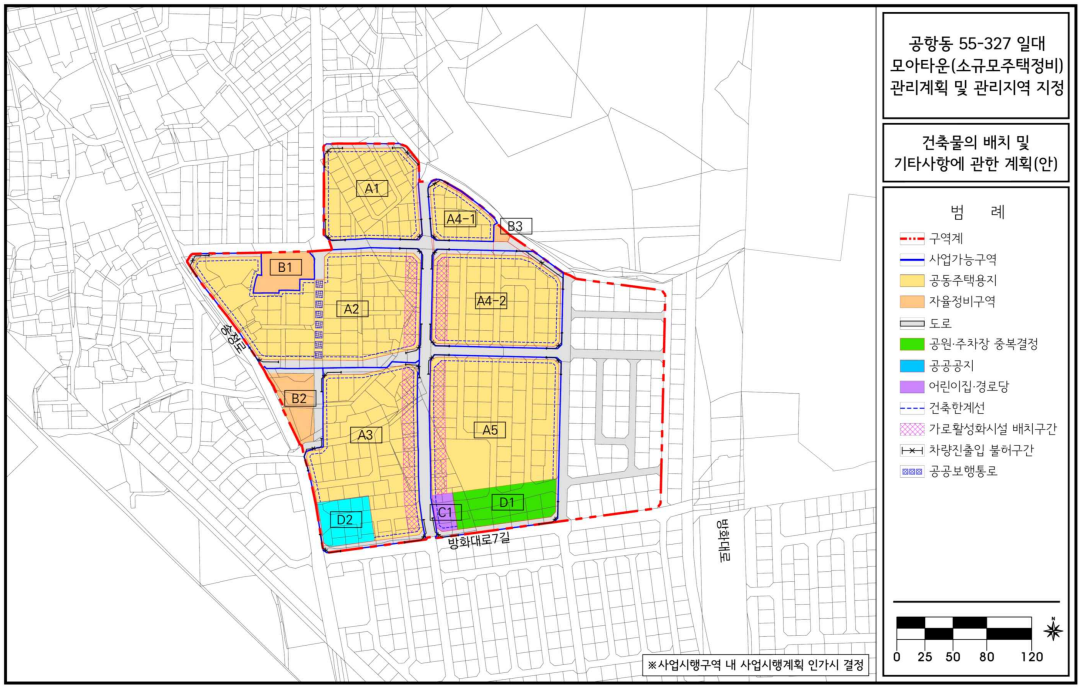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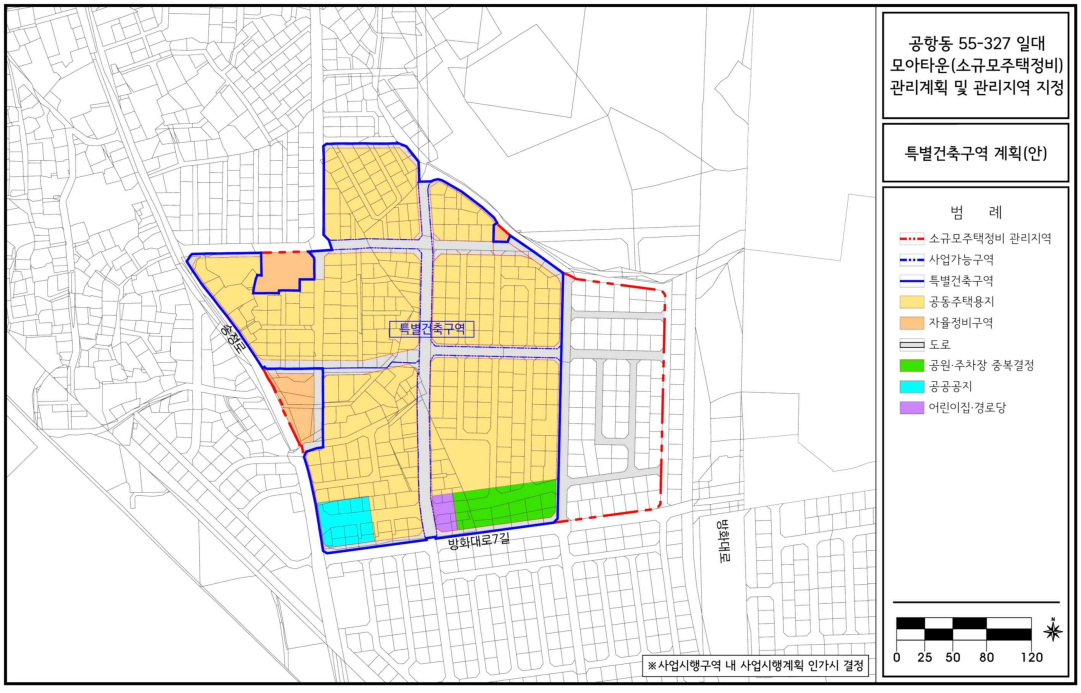

<이하여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91호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 지구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은천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66호(2024.11.28.)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관악구 봉천동 464-8번지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인구 · 주택 수용계획 (변경)
 1) 수용인구 : 184인 (변경없음)
 2) 주택건설계획 : 100세대 (변경없음)
 ○ 기정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임대주택	23㎡ type	2	2.0	2	1.09	청년안심주택 건설 · 공급
	50㎡-B type	11	11.0	29	15.85	
	소 계	13	13.0	31	16.94	
공공임대주택 (SH 선매입)	23㎡ type	4	4.0	4	2.19	
	50㎡-B type	2	2.0	5	2.19	
	소 계	6	6.0	9	4.37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3㎡ type	23	23.0	23	12.57	
	27㎡ type	8	8.0	8	4.37	
	50㎡-A type	29	29.0	58	31.69	
	50㎡-B type	21	21.0	55	30.05	
	소계	81	81.0	144	78.68	
합계		100	100.0	184	100.0	

※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 변경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공공임대주택	24㎡ type	2	2.0	2	1.09	
	49㎡-B type	11	11.0	29	15.76	
	소 계	13	13.0	31	16.85	
공공임대주택 (SH 선매입)	24㎡ type	4	4.0	4	2.17	
	49㎡-B type	2	2.0	5	2.72	
	소 계	6	6.0	9	4.89	청년안심주택 건설 · 공급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24㎡ type	22	22.0	22	11.96	
	26㎡ type	1	1.0	1	0.54	
	27㎡ type	8	8.0	8	4.35	
	49㎡-A type	29	29.0	58	31.52	
	49㎡-B type	21	21.0	55	29.89	

구분		세대수(세대)	비율(%)	수용인구(인)	비율(%)	비고
	소계	81	81.0	144	78.26	
합계		100	100.0	184	100.0	

※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 인구 · 주택 수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세대 명 변경 및 신설 23㎡ type → 24㎡ type 50㎡-A type → 49㎡-A type 50㎡-A type → 49㎡-B type 26㎡ type (신설) 세대 수 변경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총 81세대 24㎡ type : 23세대 → 22세대 26㎡ type : 0세대 → 1세대 (신설) 27㎡ type : 8세대 (변경없음) 49㎡-A type : 29세대 (변경없음) 49㎡-B type : 21세대 (변경없음)	세대 명 변경 사유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단위세대 전용면적 증가로 인해, 세대 명 변경 - 세대 신설 사유 : 서비스면적 변동에 따른 타입 신설 세대 수 변경 사유 : 신설 26㎡ type 추가로 인해 기존 24㎡ type 세대 수 1세대 조정	-

6. 교통 · 공공 ·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붙임]

1.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3) 건축물의 밀도 결정 (변경)

가) 건폐율 결정조서 (변경없음)

나) 용적률 결정조서 (변경)

▮ 기정

구분	접도조건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8m 미만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청년안심주택 사업지)	500% 이하	575% 이하 (계획 573.98%)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300% 적용

▮ 변경

구분	접도조건	계획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준주거지역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300% 이하	360% 이하
	8m 미만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250% 이하	300% 이하
	8m 이상 (간선변, 8m 도로변, 청년안심주택 사업지)	500% 이하	575% 이하 (계획 573.45%)

주1) 기정 용적률은 현행법상 용적률 내에서 별도로 적용함
주2) 공동개발 해제시 이면부 필지는 접도조건에 따른 기준/허용용적률 250%/300% 적용

▮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허용용적률 계획 573.98% → 573.45%	설계면적 변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년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공기여 기준 준용을 위해 변경	-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없음)

4)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기본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6% 이상 - 1,173㎡ X 6% = 70.38㎡(부속토지면적)	- 기본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총 7세대 (부속토지면적 75.09㎡) 23㎡ TYPE 2세대 50㎡-B TYPE 5세대 - 75.09㎡(6.40%) ≥ 70.38㎡(6.00%)	기본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573.98% 부여
	상한 공공 기여율	- 기본용적률 5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73.98%의 1/2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573.98% - 500%)/2 = 36.99% - 1,173㎡ X 36.99% = 433.88㎡ 이상	- 상한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총 6세대 50㎡-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급면적 : 444.49㎡(37.89%) - 444.49㎡(37.89%) ≥ 433.88㎡(36.99%)	
건축물 용도 구분	주거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 비주거 비율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비율 85% 이상	- 주거비율 : 비주거비율 = 88.80% : 11.2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건설규모 23㎡ ~ 60㎡ 내외 - 1인세대 : 전용면적 23㎡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면적 40㎡ 이상	- 공공임대 : 총 13세대 23㎡ TYPE 2세대 50㎡-B TYPE 11세대 - SH 선매입 : 총 6세대 23㎡ TYPE 4세대 50㎡-B TYPE 2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총 81세대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23㎡ TYPE 23세대 27㎡ TYPE 8세대 50㎡-A TYPE 29세대 50㎡-B TYPE 21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상생형 임차시설	- 친환경 건축물 - 상생형 임차시설 (지상 2층 75.95㎡ 설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시설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커뮤니티시설 150㎡ 이상	- 지상 2층 커뮤니티시설 150.07㎡ 설치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24.08.06.) 준용

▮ 변경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공공 기여율	기본 공공 기여율	- 기본공공기여율 6% 이상 - 1,173㎡ X 6% = 70.38㎡(부속토지면적)	- 기본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총 7세대 (부속토지면적 74.97㎡) 24㎡ TYPE 2세대 49㎡-B TYPE 5세대 - 74.97㎡(6.39%) ≥ 70.38㎡(6.00%)	기본 용적률 500% 상한 용적률 573.45% 부여
	상한 공공 기여율	- 기본용적률 500%에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73.45%의 1/2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 - (573.45% - 500%)/2 = 36.7250% - 1,173㎡ X 36.7250% = 430.78㎡ 이상	- 상한기여율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총 6세대 49㎡-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택 제공 공급면적 : 438.8370㎡(37.41%) - 438.8370㎡(37.41%) ≥ 430.78㎡(36.7250%)	
건축물 용도 구분	주거 /비주거 비율 (용적률 기준)	- 비주거 비율 5%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비율 85% 이상	- 주거비율 : 비주거비율 = 88.80% : 11.20%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건설규모 24㎡ ~ 60㎡ 내외 - 1인세대 : 전용면적 24㎡ 이상 - 2인 이상 세대 :	- 공공임대 : 총 13세대 24㎡ TYPE 2세대 49㎡-B TYPE 11세대 - SH 선매입 : 총 6세대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전용면적 40㎡ 이상	24㎡ TYPE 4세대 49㎡-B TYPE 2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총 81세대 24㎡ TYPE 22세대 26㎡ TYPE 1세대 27㎡ TYPE 8세대 49㎡-A TYPE 29세대 49㎡-B TYPE 21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커뮤니티 지원시설 - 상생형 임차시설	- 친환경 건축물 - 상생형 임차시설 (지상 2층 75.95㎡ 설치)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시설	100호 이상 ~ 300호 미만 커뮤니티시설 150㎡ 이상	- 지상 2층 커뮤니티시설 150.07㎡ 설치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2024.08.06.) 준용

▮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 기본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23㎡ type 2세대 → 24㎡ type 2세대 50㎡-B type 5세대 → 49㎡-B type 5세대 총 세대수 7세대 (변경없음) 기본 공공기여 부속토지면적 75.09㎡(6.44%) → 74.97㎡(6.39%) - 상한 공공기여율 계획기준 증가 용적률 73.98% → 73.45% 공공임대주택 제공면적 433.88㎡ 이상 → 430.78㎡ 이상 - 상한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50㎡-B type 6세대 → 49㎡-B type 6세대 총 세대수 6세대 (변경없음) 공공임대주택 제공면적 444.49㎡(37.89%) → 438.8370㎡(37.41%) - 주택건설규모 계획내용 1인세대 전용면적 23㎡ 이상 → 24㎡ 이상 - 주택규모 계획내용	- 변경사유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기본 공공기여 부속토지 면적 산식 및 면적 변경 - 상한 공공기여율 계획기준 변경사유 : 용적률 변동에 따른 상한 공공기여율 계획기준 산식 변경 - 상한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변경사유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상한 공공기여 공급면적 산식 및 면적 변경 - 주택규모 계획기준 변경사유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단위세대 전용면적 증가로 인해 주택건설 최소규모 수정 - 주택규모 계획내용 변경사유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공공임대] 총 13세대 (변경없음) 23㎡ type 2세대 → 24㎡ type 2세대 50㎡-B type 11세대 → 49㎡-B type 11세대 [SH선매입] 총 6세대 (변경없음) 23㎡ type 4세대 → 24㎡ type 4세대 50㎡-B type 2세대 → 49㎡-B type 2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총 81세대 (변경없음) 23㎡ type 23세대 → 24㎡ type 22세대 26㎡ type 0세대 → 26㎡ type 1세대 (신설) 27㎡ type 8세대 (변경없음) 50㎡-B type 29세대 → 49㎡-B type 29세대 50㎡-B type 21세대 → 49㎡-B type 21세대	단위세대 전용면적 변동으로 인한 단위세대명 정정, 공공지원민간임대 24㎡ TYPE 1세대 감소 및 26㎡ TYPE 1세대 신설	

5) 공공기여계획 (변경)

가) 기본용적률 공공기여 (변경)

▌ 기정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500%	부지면적의 6% 이상 (70.38㎡ 이상)	- 공공임대주택 : 총 7세대 23㎡ TYPE 2세대 50㎡-B TYPE 5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전용면적 : 298.42㎡ -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산식 : $1,173\,m^2 \times \frac{7,457.88\,m^2}{8,549.0\,m^2} \times \frac{298.42\,m^2}{4,066.91\,m^2}$ = 75.09㎡(6.40%) - 75.09㎡(6.40%) ≥ 70.38㎡(6.00%)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변경

구분	기본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500%	부지면적의 6% 이상 (70.38㎡ 이상)	- 공공임대주택 : 총 7세대 24㎡ TYPE 2세대 49㎡-B TYPE 5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전용면적 : 297.9272㎡ -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산식 : $1,173\,m^2 \times \frac{7,452.5973\,m^2}{8,542.8465\,m^2} \times \frac{297.9272\,m^2}{4,066.7004\,m^2}$ = 74.97㎡(6.39%) - 74.97㎡(6.39%) ≥ 70.38㎡(6.00%)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 계획내용 : 공공임대주택 총 7세대 (변경없음) 23㎡ type 2세대 → 24㎡ type 2세대 50㎡-B type 5세대 → 49㎡-B type 5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전용면적 : 298.42㎡ → 297.9272㎡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단위세대 전용면적 변동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전용면적 감소,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감소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산식 $1{,}173\,㎡ \times \frac{7{,}457.88\,㎡}{8{,}549.0\,㎡} \times \frac{298.42\,㎡}{4{,}066.91\,㎡}$ → $1{,}173\,㎡ \times \frac{7{,}452.5973\,㎡}{8{,}542.8465\,㎡} \times \frac{297.9272\,㎡}{4{,}066.7004\,㎡}$ - 공공임대 부속토지 면적 : 75.09㎡ → 74.97㎡		

나) 상한용적률 공공기여 (변경)

▮ 기정

구분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573.98%	- 기존용적률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 (573.98% - 500%)/2 = 36.99% - 1,173㎡ X 36.99% = 433.88㎡	- 공공임대주택 : 총 6세대 50㎡-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공급면적 : 444.49㎡(37.89%) - 444.49㎡(37.89%) ≥ 433.88㎡(36.99%)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변경

구분	상한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준주거지역	573.45%	- 기존용적률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 - (573.45% - 500%)/2 = 36.7250% - 1,173㎡ X 36.7250% = 430.78㎡	- 공공임대주택 : 총 6세대 49㎡-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택 총 제공 공급면적 : 438.8370㎡(37.41%) - 438.8370㎡(37.41%) ≥ 430.78㎡(36.7250%)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64-8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 상한용적률 : 573.98% → 573.45% - 공공기여율 산식 : (573.98% - 500%)/2 = 36.99%, 1,173㎡ X 36.99% = 433.88㎡ → (573.45% - 500%)/2 = 36.7250%, 1,173㎡ X 36.7250% = 430.78㎡	- 용적률 변동에 따른 상한 공공기여율 계획기준 산식 변경 - 설계면적 변동에 따른 상한 공공기여 공급면적 감소	

구분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비고
	- 계획내용 : 공공임대주택 총 6세대 (변경없음) 50㎡-B type 6세대 → 49㎡-B type 6세대 - 공공임대주책 총 제공 공급면적 : 444.49㎡(37.89%) → 438.8370㎡(37.41%)		

라. 건축물의 배치계획 (변경없음)

2.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1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92호

성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6호(2008.06.05.),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9호(2020.02.27.), 성동구고시 제2022-168호(2022.10.20.)로 고시된 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4.23.)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조서

구분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조건 등)
기정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	1.3	-	-	-	-	단독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변경				1.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나.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구역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 기 정 : 13,122.5㎡ - 변 경 : 14,284.3㎡ - 증·감 : 증) 1,161.8㎡(8.8%)	• 북측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도로 통행문제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역에 포함하였음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4항) :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2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

2.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성수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대	13,122.5	증) 1,161.8	14,284.3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122.5	증) 1,161.8	14,284.3	100.0	-
정비기반 시설	소계	1,082.6	증) 1,516.8	2,599.4	18.2	-
	도로	1,082.6	증) 1,516.8	2,599.4	18.2	-
획지	소계	12,039.9	감) 355.0	11,684.9	81.8	-
	획지1	11,348.4	증) 336.5	11,684.9	81.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691.5	감) 691.5	-	-	공공임대산업시설 및 공동주택(임대)

나. 용도지역 ·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122.5	증) 1,161.8	14,284.3	100.0	-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122.5	증) 1,161.8	14,284.3	100.0	-

※ 준공업지역 내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	11	집산도로	(179)	성수동1가 656-736	성수동1가 656-202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	6	집산도로	260 (94)	성수동1가 656-1255	성수동1가 5-10	일반도로	-	서고제2020-79호 (`20.02.27)	-
변경	소로	3	3	6	집산도로	260 (94)	성수동1가 656-1255	성수동1가 5-10	일반도로	-	-	가각 선형변경
폐지	소로	1	B1	6~10	집산도로	260 (151)	성수동1가 656-753	성수동1가 656-1698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C1	6	집산도로	60	성수동1가 656-1169	성수동1가 656-1179	일반도로	-	-	-
폐지	중로	1	B2	10	집산도로	(70)	성수동1가 656-947	성수동1가 656-5	일반도로	-	-	-

※ ( )안은 대상지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1	• 도로 신설 - L=179m, B=11m	• 기존 도시계획시설 실효(성동구고시제2020-72호_`20.07.02.)됨에 따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3-6	-	• 도로 선형변경	• 소로1-1호선이 신설됨에 따라 교차지점에 가각정리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소로1-B1	-	• 노선폐지	• 기존 도시계획시설 실효(성동구고시제2020-72호_`20.07.02.)됨에 따라 폐지함
소로3-C1	-	• 노선폐지	• 정비구역 외 도로로 기존 도로조서에 오류로 표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실효(성동구고시제2020-72호_`20.07.02.)됨에 따라 폐지함
소로1-B2	-	• 노선폐지	• 도로 연계성이 부족하고, 공공성이 미흡하여 폐지함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변경

구분	위치	계획(㎡)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어린이집	1-1	120.0	증) 192.5	312.5	※ 법적기준 : (322세대 × 2.5) × 1.25㎡ = 1,006.3㎡ 이상
경로당		135.0	증) 65.9	200.9	
주민공동시설		824.0	감) 438.1	1,262.1	
어린이놀이터		504.8	증) 55.2	560.0	

구분	위치	계획(㎡)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작은도서관		-	증) 138.1	138.1	
주민운동시설		-	증) 107.6	107.6	
세대창고		-	증)1,133.1	1,133.1	
합계		1,583.8	증)2,130.5	3,714.3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122.5	1-1	11,348.4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 번지 일원	37	-	-	-	37	무허가 15개동
			1-2	691.5							
변경		14,284.3	1-1	11,684.9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 번지 일원	37	-	-	-	37	무허가 15개동

2) 건축시설 계획(변경)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3,122.5	1-1	11,348.4	성수동1가 656-1267 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 이하	238.30 이하	238.30 이하	66이하 /22층	-
			1-2	691.5	성수동1가 656-46 번지일대	공공임대 산업시설 등	60.0 이하	400.0 이하		32이하 /9층	-
변경	성수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284.3	1-1	11,684.9	성수동1가 656-1267 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 이하	235.1 이하	300 이하	110이하 /35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세대수 282세대(분양 28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96세대(69.5%) - 전용면적 60㎡~85㎡이하 : 86세대(30.5%)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
최고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td><td></td><td colspan="11">•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이상
• 획지2 임대주택 18세대</td></tr>
<tr><td></td><td>변경</td><td colspan="11">• 총세대수 322세대(분양 272세대, 국민주택규모임대 42세대, 기부채납임대 8세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세대수</th></tr>
<tr><th>합계</th><th>분양</th><th>국민주택규모
임대</th><th>기부채납
임대</th></tr>
<tr><td>합계</td><td>322세대(100.0%)</td><td>272세대</td><td>42세대</td><td>8세대</td></tr>
<tr><td>전용 60㎡ 이하</td><td>111세대(34.5%)</td><td>71세대</td><td>32세대</td><td>8세대</td></tr>
<tr><td>전용 60~85㎡이하</td><td>183세대(56.8%)</td><td>173세대</td><td>10세대</td><td>-</td></tr>
<tr><td>전용 85㎡초과</td><td>28세대(8.7%)</td><td>28세대</td><td>-</td><td>-</td></tr>
</table>
•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이상</td></tr>
<tr><td rowspan="2">심의완화
사항</td><td>기정</td><td colspan="11">• 허용용적률 완화(세입자 주거대책)
- 허용용적률 : 210% → 213.2% (3.2% 완화)
• 높이 및 층수 완화
- 60m이하(최고 20층이하) → 66m이하(최고 22층이하)</td></tr>
<tr><td>변경</td><td colspan="11">• 허용용적률 완화
- 허용용적률 : 210% → 225.7% (15.7% 완화)
※ 열린단지 5%, 돌봄시설 5%, 고령서비스시설 5%, 세입자주거대책 0.7%
• 높이 및 층수 완화
- 66m이하(최고 22층이하) → 110m이하(최고 35층이하)</td></tr>
<tr><td row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colspan="11">•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
<tr><th>구분</th><th>지정 내용</th><th>비고</th></tr>
<tr><td>획지 1-1</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td><td>정비계획결정도 참고</td></tr>
</table></td></tr>
<tr><td>변경</td><td colspan="11">•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table>
<tr><th>구분</th><th>지정 내용</th><th>비고</th></tr>
<tr><td>획지 1-1</td><td>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td><td>정비계획결정도 참고</td></tr>
</table></td></tr>
</table>

■ 상한용적률 산정(기정)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1 (공동주택)	획지2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계	공공임대 산업시설	공동주택 (임대)		
	13,122.5㎡	11,348.4㎡	691.5㎡	1,082.6㎡	987.5㎡	719.4㎡	268.1㎡	692.8㎡	1,131.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율 =7.1%(의무사항 없음) • 신설정비기반시설 + 획지2(공공임대산업시설 등)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1,082.6㎡ + 691.5㎡ - 987.5㎡ - 692.8㎡ - 1,131.7㎡ = 937.1㎡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10%이내)을 합산하여 산정한 용적률 ※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 지침(2019.04_주택건축본부) • 상한용적률 산정식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기준용적률 = 210% ▪허용용적률 = 210% + 3.2%(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용적률) = 213.2% ▪상한용적률 = 213.2% × (1 + 1.3 × 1 × 0.09045) = 238.3%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 후 대지면적 = 937.1㎡ / (13,122.5㎡-691.5㎡-1,082.6㎡-987.5㎡) = 0.09045 ※ 손실보상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은 세입자 주거대책 참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 별표2에 의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상 공장비율 10% 미만일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구역계(일부 공장부지제척)를 변경하여 공장부지 면적 490㎡ 약 3.8%로 10%미만에 해당됨으로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 없음

■ 상한용적률 산정(변경)

구분	산정내용									
토지 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소계 (A-B-C+D)	도로 (A)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B)	대지 내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C)	유상매입 (D)	건축물 기부채납(임대주택)		
								소계	토지 (대지지분)	환산부지
	14,284.3	11,684.9	-	2,599.4	1,712.3	1,068.0	180.9	409.8	226.1	183.7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순부담 면적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 0.0㎡ + 409.8㎡ = 409.8㎡(구역면적 대비 2.8%)									

<table>
<tr><th>구분</th><th>산정내용</th></tr>
<tr><td>용적률</td><td>▪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25.7%, 상한용적률 235.1%, 법적상한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사항〉
<table>
<tr><th>구분</th><th>인센티브 항목</th><th>인센티브
(최대20%)</th><th>적용
용적률</th></tr>
<tr><td>열린단지</td><td>- 단지 외곽개방, 담장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 단지*로 조성 (지형도면 고시)
▫ 기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td><td>5%</td><td>5%</td></tr>
<tr><td>돌봄시설</td><td>- 지역에 필요한 놀이 · 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 a=0.1이하
(단, 법적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건축조례 제3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 중복 불가)</td><td>5%이내</td><td>5%</td></tr>
<tr><td>고령
서비스시설</td><td>- 지역에 필요한 고령서비스시설*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기준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면적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a
※ a=0.1이하 * 노인복지시설 등</td><td>5%이내</td><td>5%</td></tr>
<tr><td>세입자
주거대책</td><td>-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주거대책(손실보상 규모검토)
-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인센티브 항목 확정 및 인가조건을 부여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시 손실보상 대상 및 비용을 확정</td><td>10%이내</td><td>0.7%</td></tr>
<tr><td colspan="2">합계</td><td>-</td><td>15.7%</td></tr>
</table></td></tr>
<tr><td>상한
용적률
산정</td><td>▪ 상한용적률 = 허용(기준)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1.0 × α건축물 + 0.7 × α현금)
= 225.7% × (1 + 1.3 × 1 × 0.0197 + 1.0 × 0.0160) = 235.1%</td></tr>
<tr><td>α토지</td><td>▪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226.1㎡ ÷ (11,684.9㎡-226.1㎡) = 0.0197</td></tr>
<tr><td>α건축물</td><td>▪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면적)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183.7㎡ ÷ (11,684.9㎡-226.1㎡) = 0.0160</td></tr>
<tr><td>α현금</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r><td>가중치</td><td>▪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1(용도지역 변경 없음)</td></tr>
</table>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 별표2에 의거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이적지포함)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상 공장비율 10% 미만일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사항으로 대상지는 구역계(일부 공장부지제척)를 변경하였으며, 구역 내 기존 공장부지(656-1238)가 제2종근린으로 용도를 변경(`23.08)함에 따라 대상지 내 공장부지가 없음으로 산업부지 확보 의무비율 없음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1) 의무 임대주택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공급)	비고(연면적)
기정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 번지 일대	13,122.5	-	2018.02.09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사업대상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별도의 임대주택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임대주택은 획지2(기부채납부지)에 공공임대산업시설과 복합 계획함		
변경	재건축사업으로 의무 임대주택 해당사항 없음					

2)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신설)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 이 조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이라 한다)까지 건축할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초과용적률"이라 한다)의 50%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0조 :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적용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법적상한용적률	300.0%				
상한용적률(정비계획)	235.1%				
초과용적률의 50%	(300.0% - 235.1%) × 50% = 32.45%				
임대주택 확보 연면적 기준	11,684.9㎡(대지면적) × 32.45% = 3,791.75㎡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확보계획 (건축심의에서 최종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59.8546㎡	83.4565㎡	32	2,670.61㎡	소셜믹스
	84.6066㎡	114.5564㎡	10	1,145.56㎡	
	합계		42	3,816.17㎡	기준이상 충족

사.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 변경

1)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주변 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단지 내 개방감 확보를 통한 시각 조망축 형성	-
환경보전	자연환경	•절 · 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 최소화 •기존 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의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PG)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방지	수재해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주변에 적정	-
	산사태	•해당없음	-
	화재	•구역 내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2) 환경성 검토결과(변경없음)

구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생태면적율	·30%이상	○	·생태면적율 30%이상으로 계획	·자연지반녹지, 틈새투수포장 적용
	2.녹지네트워크 (녹지체계)	·녹지계획 확보	○	·녹지면적의 증가	·녹지는 보행동선과 연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조성
	3.지형변동	·절성토비율 최소화	○	·기존시설의 평탄한 지역이므로 영향미미	·절토 및 성토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최소화	○	·기존 지형 활용으로 지형변동 미미	·지형변화 최소화
	4.비오톱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으로 도시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	·비오톱유형 유지 및 도시생태기능 강화
생활환경	5.일조	·일조침해 및 방해의 최소화	○	·일조침해 및 방해정도 미미	·건축법 및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일조권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을 준수
	6.바람 및기후	·바람길 최대한 확보	○	·대지분석을 통한 오픈스페이스 확충	·바람진행 방향 고려 건축계획 수립
	7.에너지	·에너지절약, 효율 극대화	○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 미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고효율 에너지 절약설비 등 사용
	8.대기질	·대기환경기준 준수	○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 미미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 수립

구분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9.물순환	·우수유출	○	·우수유출량 변화 예상	·토사유출, 침사지 등 저감방안 수립
	10.경관	·스카이라인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건축물 배치 및 형태계획을 통해 스카이라인 계획수립
	11.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여가공간 최대확보	○	·휴식여가공간 확보	·녹지 및 휴식공간의 확보를 통해 보행환경개선에 기여
	12.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구간 계획수립	○	·단절되는 보행로는 없음	·단지 내 계획된 보행구간 확충
추가	13.소음	·소음규제기준 준수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저감시설 설치로 규제기준 준수
	14.폐기물	·폐기물처리	○	·기존건축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저감대책수립

아.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주택재건축)	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계획 : 282세대	증)142세대
변경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름 (주택재건축)	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140세대 계획 : 322세대	증)182세대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남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 진동을 규제 • 공사시 교육환경 장애요소 (소음·진동·먼지 등)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 교육시설 이용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계획 • 해당 관할 교육청의 협의결과를 준수토록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에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겠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거리 200m이내

차.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조경	단지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 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조명	단지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주차장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
자연적 접근통제	단지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 내 출입을 통제	-
영역성 강화	단지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 · 사적 공간을 구분	-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성수1 주택재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67번지 일원	13,122.5	증) 1,161.8	14,284.3	100.0	· 북측 현황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도로 통행문제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역에 포함하였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122.5	증) 1,161.8	14,284.3	100.0	·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은 변경되지 않으나,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 반영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122.5	증) 1,161.8	14,284.3	100.0	

※ 용도지구는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1	1	11	집산도로	(179)	성수동1가 656-736	성수동1가 656-2022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	6	집산도로	260 (94)	성수동1가 656-1255	성수동1가 5-10	일반도로	-	서고제2020-79호 (`20.02.27)	-
변경	소로	3	3	6	집산도로	260 (94)	성수동1가 656-1255	성수동1가 5-10	일반도로	-	-	가각 선형변경
폐지	소로	1	B1	6~10	집산도로	260 (151)	성수동1가 656-753	성수동1가 656-1698	일반도로	-	-	-
폐지	소로	3	C1	6	집산도로	60	성수동1가 656-1169	성수동1가 656-1179	일반도로	-	-	-
폐지	중로	1	B2	10	집산도로	(70)	성수동1가 656-947	성수동1가 656-5	일반도로	-	-	-

※ ( )안은 대상지 내 구간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1-1	• 도로 신설 - L=179m, B=11m	• 기존 도시계획시설 실효(성동구고시제2020-72호_`20.07.02.)됨에 따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로 신설
소로3-6	-	• 도로 선형변경	• 소로1-1호선이 신설됨에 따라 교차지점에 가각정리를 위해 도로선형 변경
소로1-B1	-	• 노선폐지	• 기존 도시계획시설 실효(성동구고시제2020-72호_`20.07.02.)됨에 따라 폐지함
소로3-C1	-	• 노선폐지	• 정비구역 외 도로로 기존 도로조서에 오류로 표기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 실효(성동구고시제2020-72호_`20.07.02.)됨에 따라 폐지함
소로1-B2	-	• 노선폐지	• 도로연계성이 부족하고, 공공성이 미흡하여 폐지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소계	12,039.9	증) 355.0	11,684.9	100.0	-
	①-1	11,348.4	증) 336.5	11,684.9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①-2	691.5	감) 691.5	-	-	공공임대산업시설 및 공동주택(임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허용용도	①-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허용용도	①-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변경	허용용도	①-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건폐율 계획

구분	가구	지역	건폐율	비고
기정	1-1	준공업지역	30.0% 이하	-
	1-2		60.0% 이하	-
변경	1-1	준공업지역	30.0% 이하	-

② 용적률 계획

구분	가구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기정	1-1	210% 이하	213.2% 이하	238.3% 이하	238.3% 이하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13.2% 상한용적률 238.3% 법적상한용적률 238.3%
	1-2	400.0% 이하				정비계획	상한용적률 400.0%이하
변경	1-1	210% 이하	225.7% 이하	235.1% 이하	300.0% 이하	정비계획	상한용적률 300.0%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항목				비고
	열린단지	돌봄시설	고령서비스시설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	
기정	-	-	-	3.2%	총 3.2%
변경	5%	5%	5%	0.7%	총 15.7%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확정되며, 전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10%범위 이내에서 부여함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국민주택규모 임대 건설	
기정	25.1%	-	총 25.1%
변경	9.4%	64.9%	총 74.3%

③ 높이 계획

구분	가구	지역	높이(최고층수)	비고
기정	1-1	준공업지역	66m이하(최고 22층이하)	-
	1-2	준공업지역	32m이하(최고 9층이하)	-
변경	1-1	준공업지역	110m이하(최고 35층이하)	-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건축한계선	획지 1-1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4.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가.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기정	전면공지	서측, 북측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폭원3m)
		동측 6m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폭원3m)
변경	전면공지	서측, 북측, 동측 도로변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폭원3m)

□ 2025년 제6차('25.04.2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수정사항		○ 구역 및 획지 면적, 용적률 계획, 공공기여계획 및 순부담면적, 주택공급계획은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		-
조건사항	1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중 공공보행통로 항목은 효용성을 고려하여 타 항목으로 조정 또는 항목 제외를 통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 방안 검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중 고령 서비스시설(5%)을 계획한 후 초과 용적률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였음	반영
	2	○ 대상지 서측 왕십리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출 제한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한 교통처리계획 개선 방안 검토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2조 제2항에 따라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있으나, 해당 교차지점은 9.2%의 경사 구간으로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일부 반영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사업지 서측 왕십리로 교차로 좌회전 진출 제한을 개선하여 제시하고, 향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치하겠음	
	3	○ 대상지 서측 가각부에 고층 주동 배치는 지양하고, 차폐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필요시 특별건축구역 등 활용 검토	○ 서울시 우수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인동, 채광 완화 적용으로 단지 서측 가각부의 101동 주동 높이를 낮추어 차폐감을 해소하고, 102동을 높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조성하였음	반영

Ⅲ.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기본계획 결정도(기정/변경)
2. 정비구역 결정도(기정/변경)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토지이용계획도(기정/변경)
6. 정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7.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수립 도서 : 생략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14), 성동구청 주거정비과(☎02-2286-6567)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Ⅵ. 관계도면

□기본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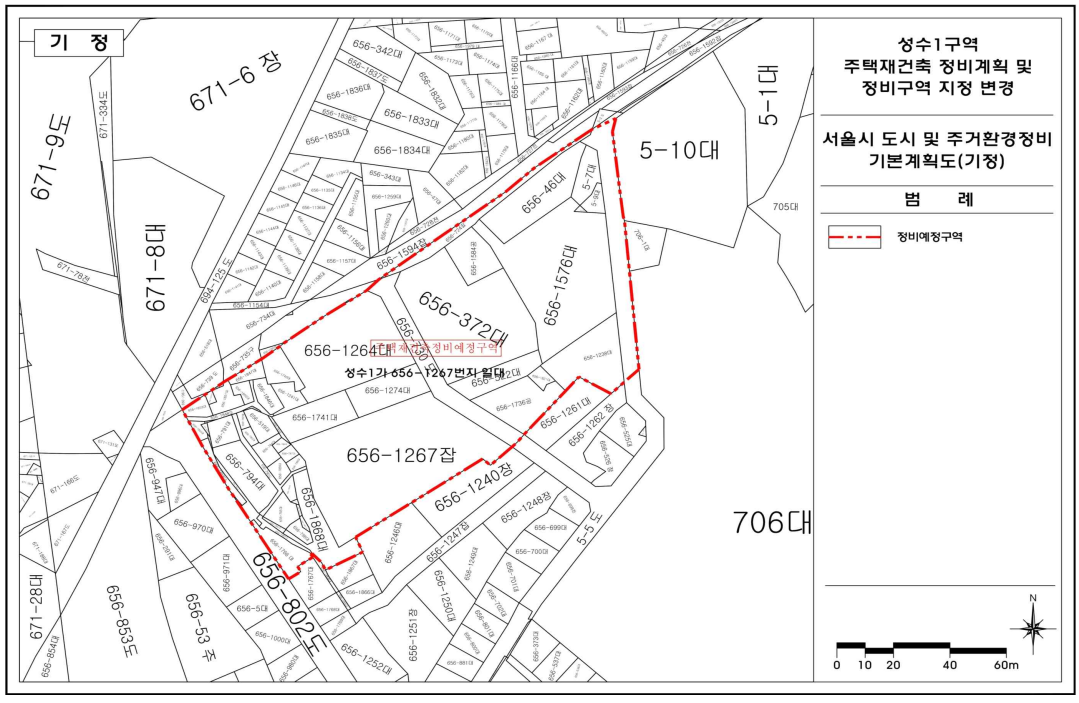

□기본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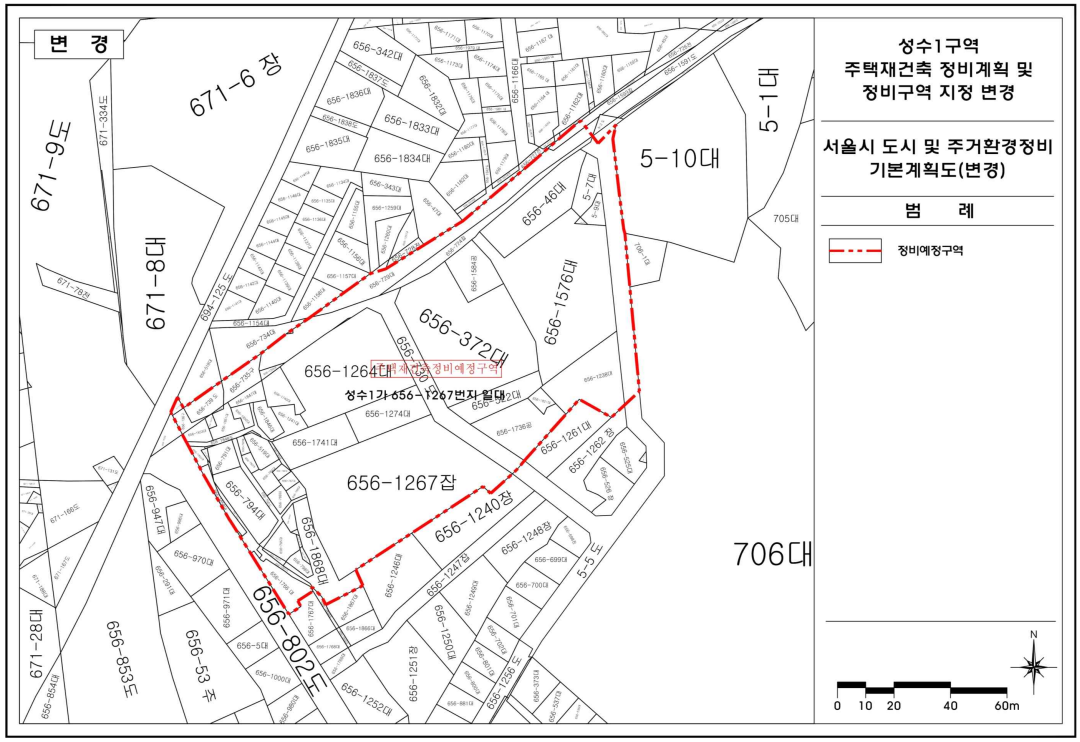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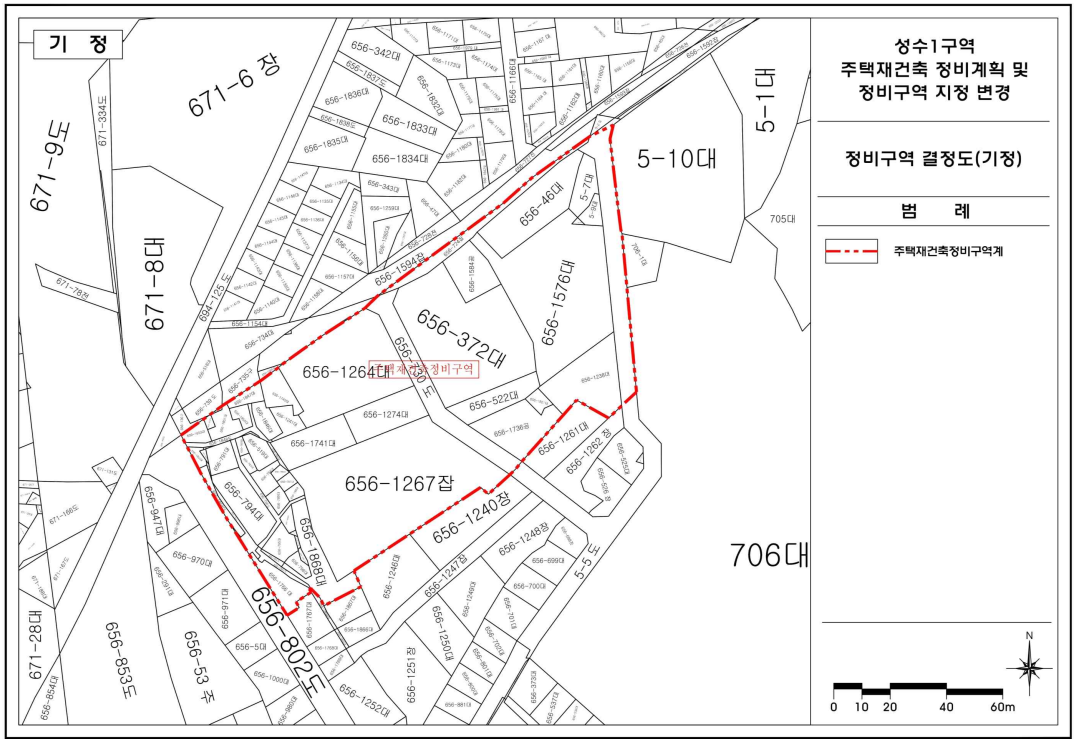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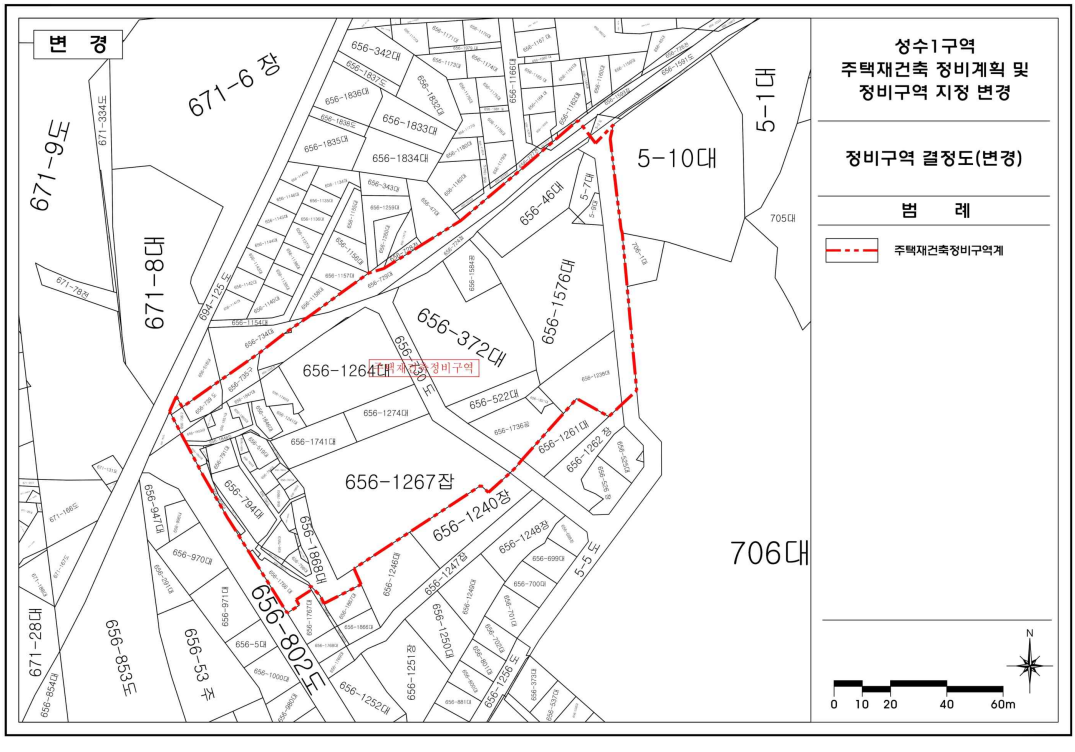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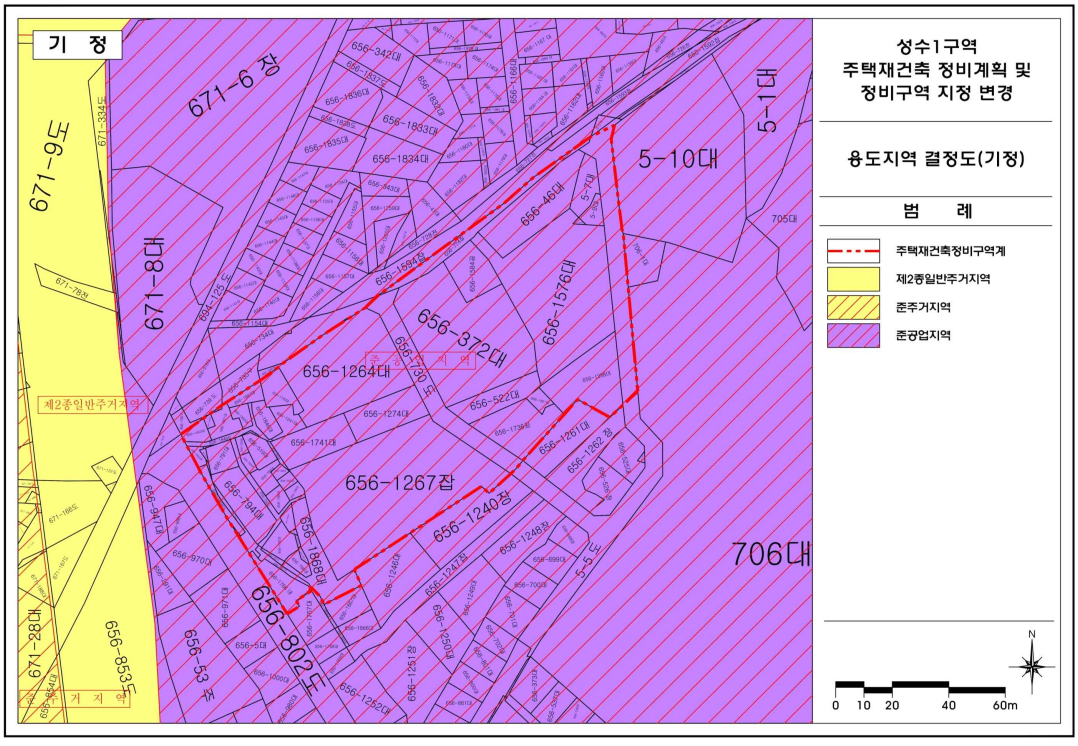
기 정
671-6 장
671-9도
671-8대
671-7대
656-342대
656-1833대
656-1834대
656-1835대
656-1836대
656-46대
656-1576대
656-1264대
656-1730 대
656-372대
656-522대
656-1274대
656-1741대
656-1267잡
656-1240장
656-1248장
656-1247장
656-1250대
656-1251장
656-1262장
656-1868대
656-802도
656-53 구
656-859도
656-1944대
656-970대
656-941대
656-1125도
671-7934
671-1824도
671-1665도
671-1915도
671-1916도
671-1917도
671-1918도
671-1919도
671-1920도
671-1921도
671-1922도
671-1923도
671-1924도
671-1925도
671-1926도
671-1927도
671-1928도
671-1929도
671-1930도
671-1931도
671-1932도
671-1933도
671-1934도
671-1935도
671-1936도
671-1937도
671-1938도
671-1939도
671-1940도
671-1941도
671-1942도
671-1943도
671-1944도
671-1945도
671-1946도
671-1947도
671-1948도
671-1949도
671-1950도
671-1951도
671-1952도
671-1953도
671-1954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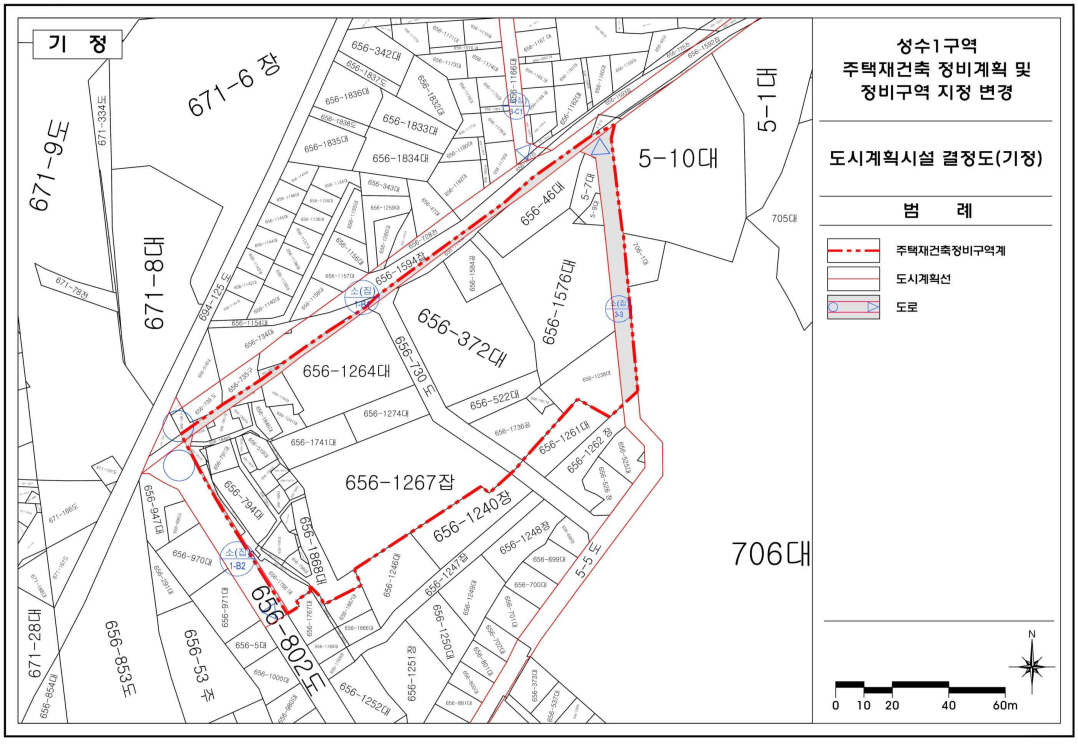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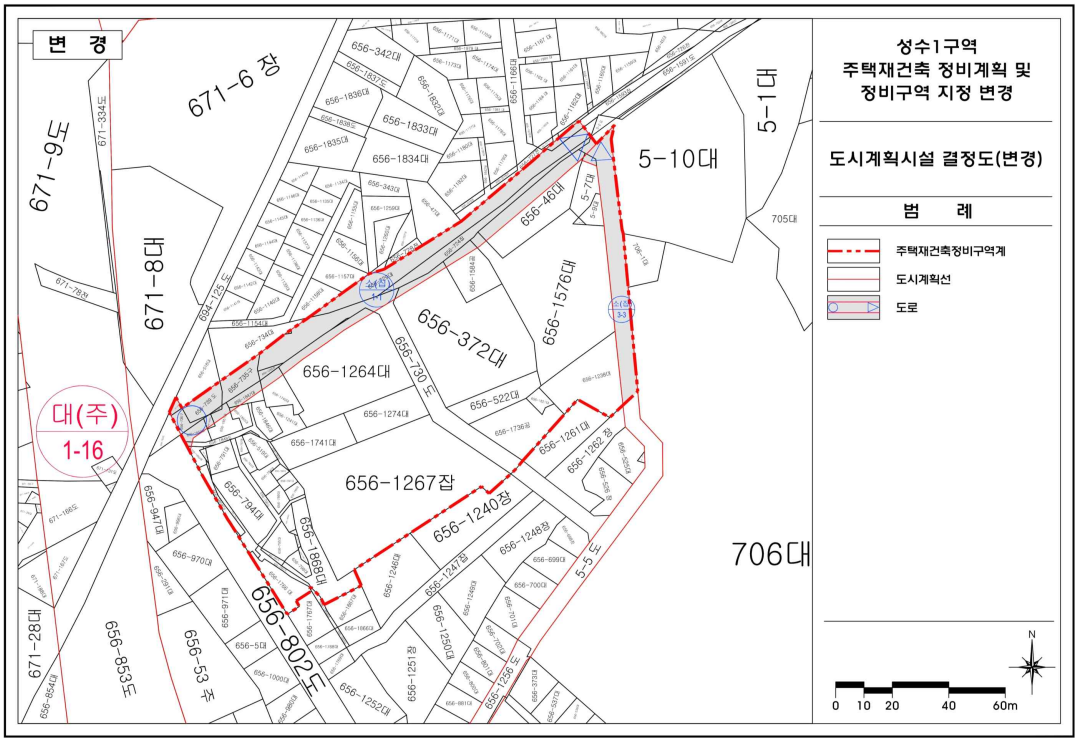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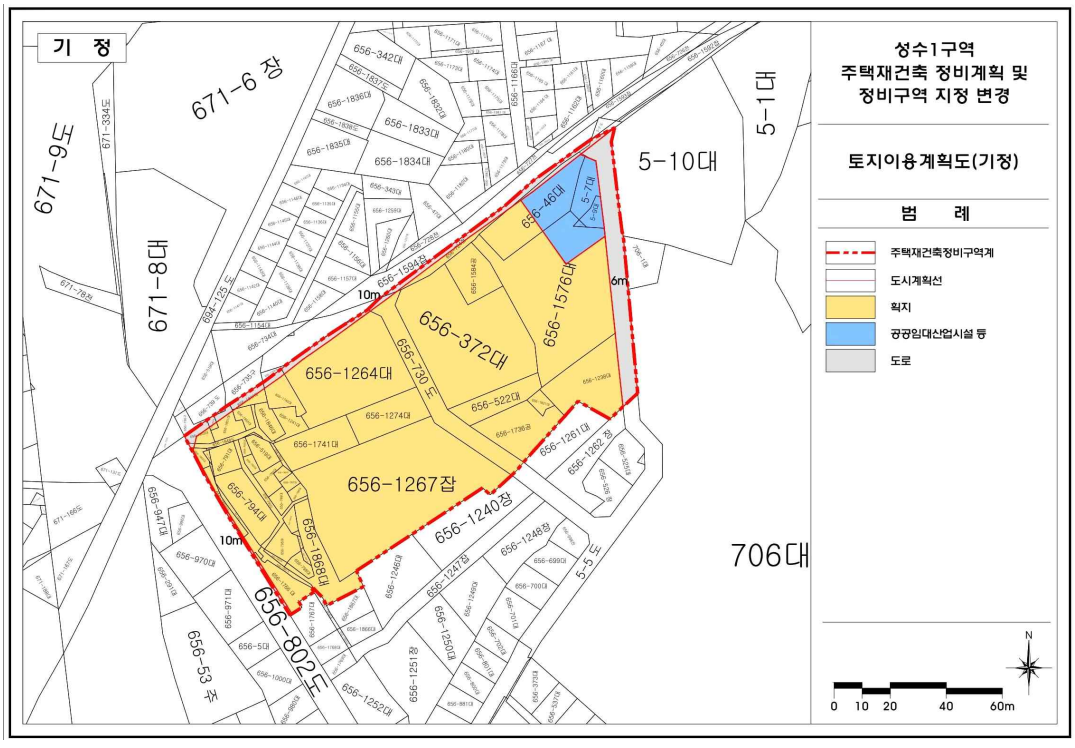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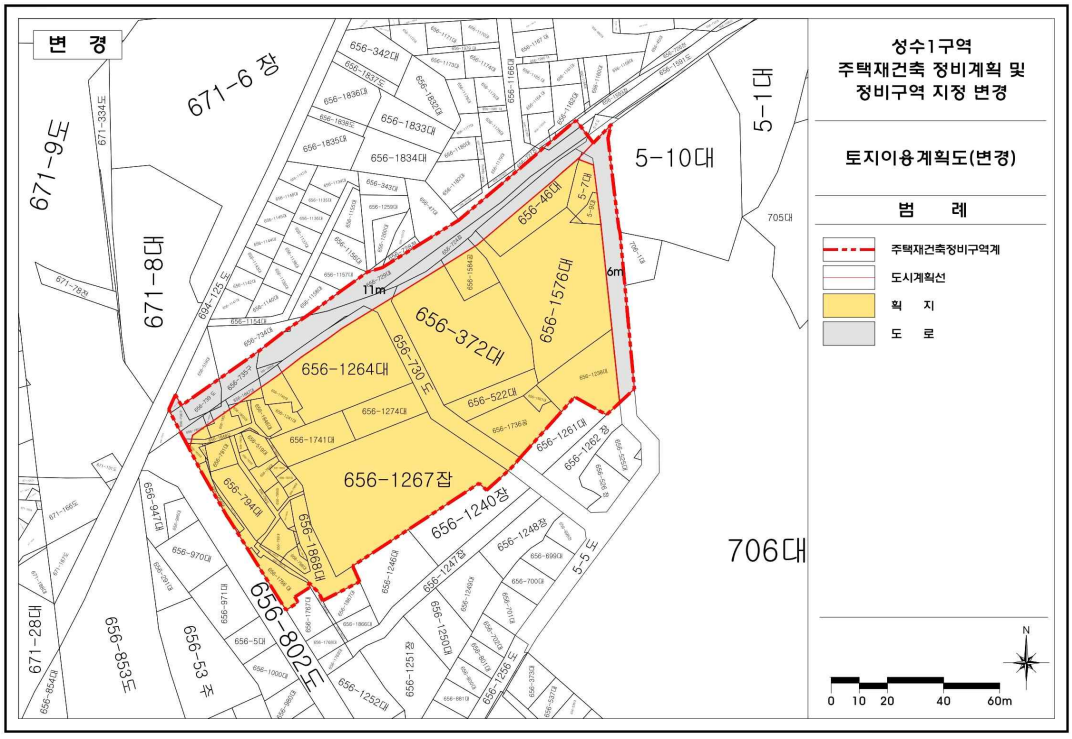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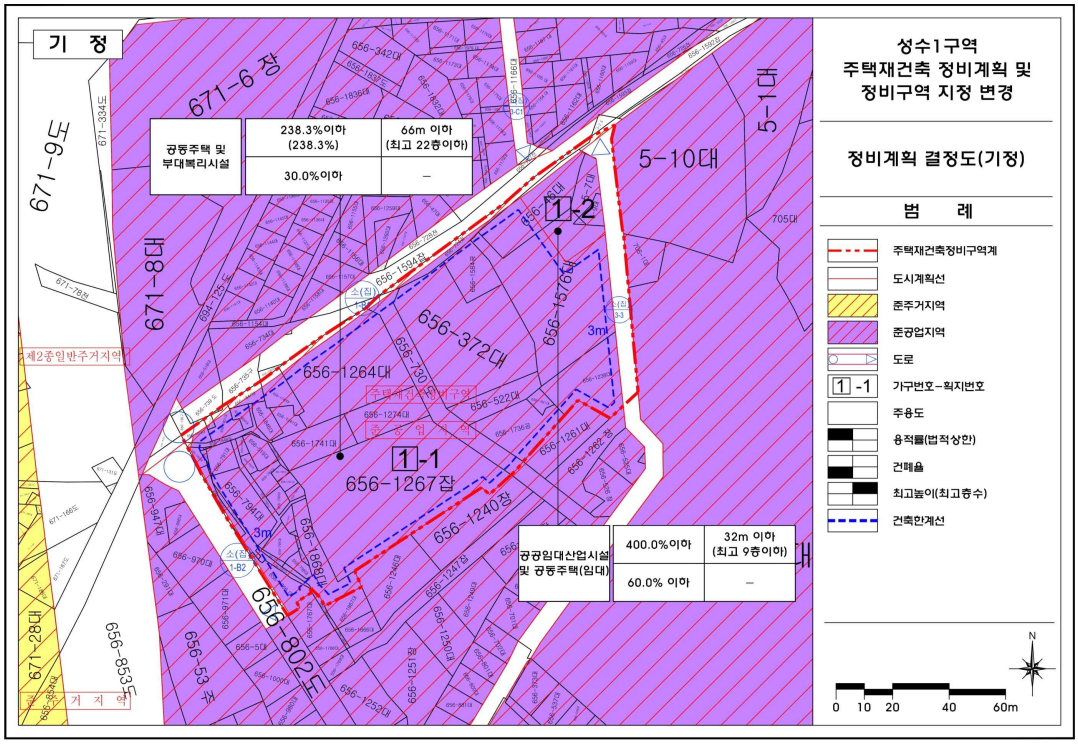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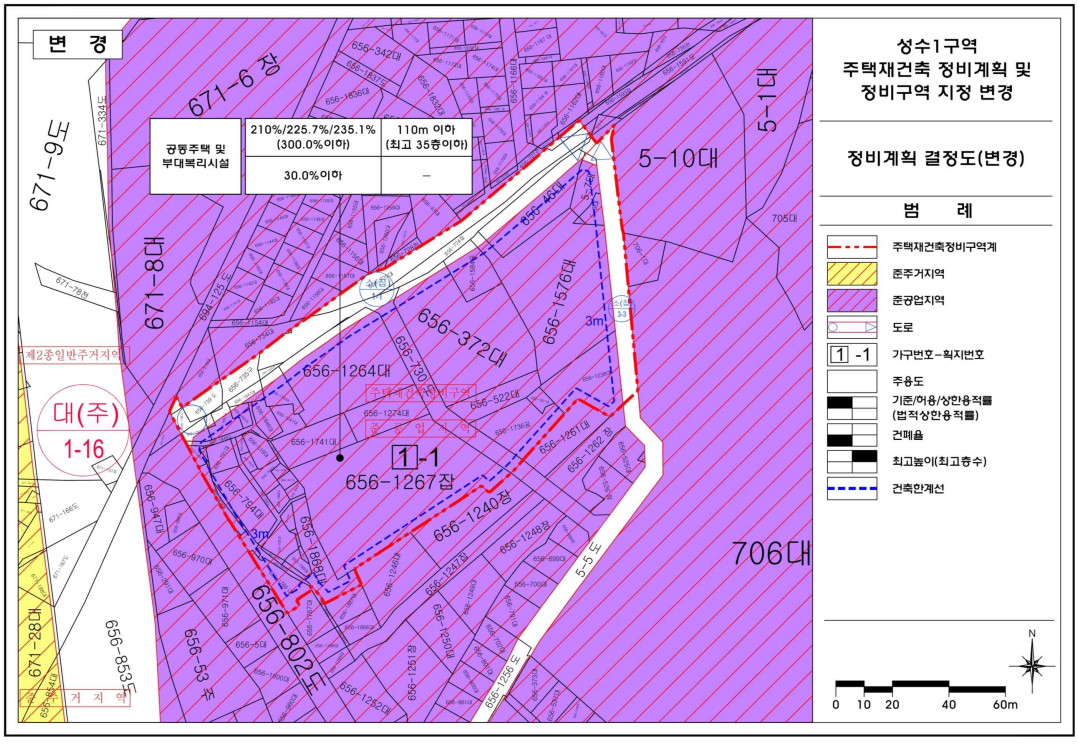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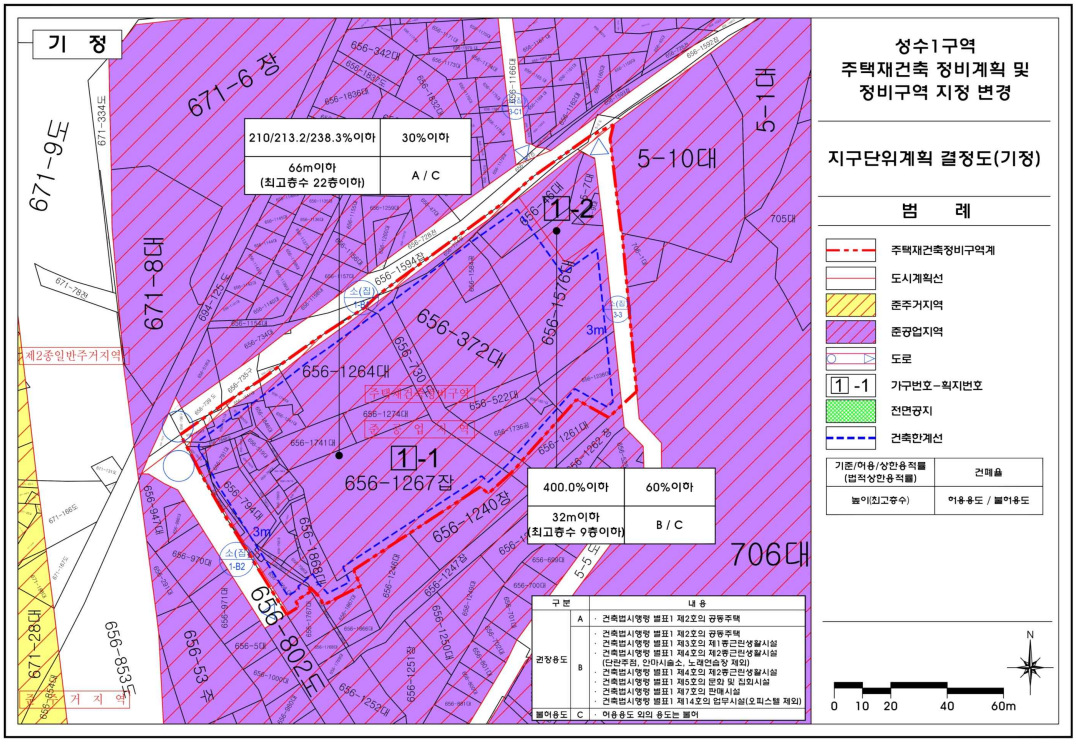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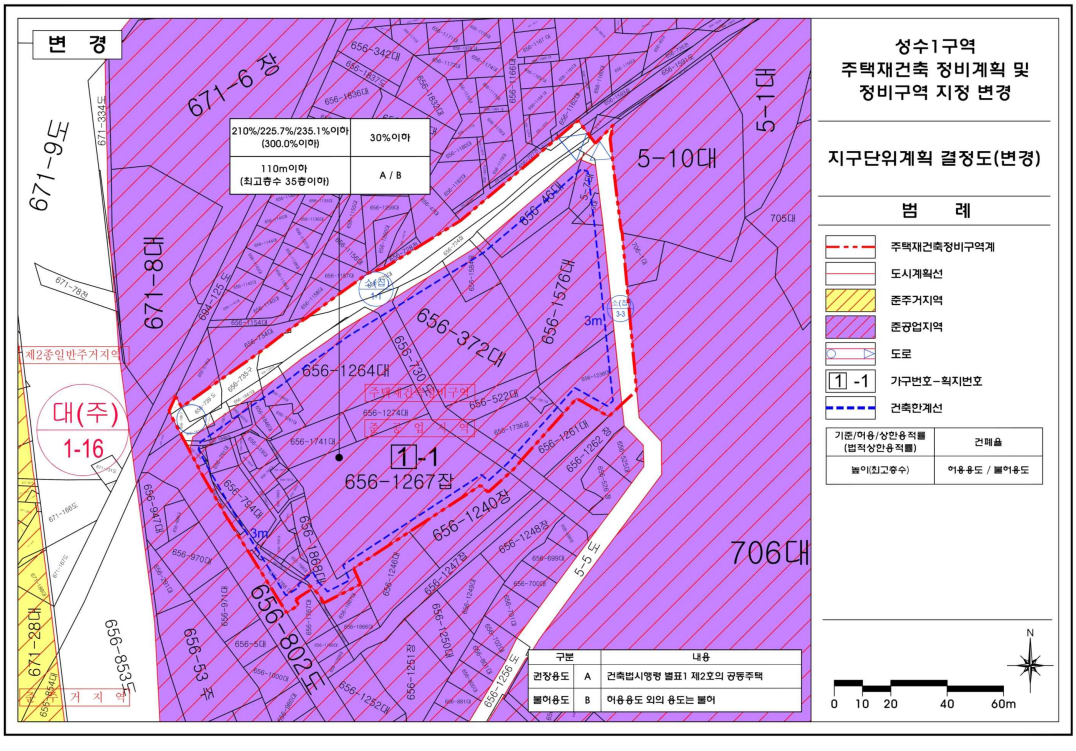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9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16호(2024.6.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67호(2025.5.15.)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964호(2025.6.26.)로 실시계획 작성을 위해 열람공고 된 (가칭)세운문화공원①-4(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같은법 제88조 및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울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합니다.
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재창조과)에 비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2133-4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1)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	공원	문화공원	을지로4가 310-68	5,662.5	증)6.4	5,668.9	서고시 제2024-316호(24.06.27.)	-

2)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문화공원	면적변경(5,662.5㎡ → 5,668.9㎡)	-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변경 없음

나.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5,668.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고시일
-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2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조서와 같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조서와 같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중구 을지로4가	310-68	대	1,119.0	1,119.0	주식회사주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근저당권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을지로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47	
								근저당권, 임의경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여의도동)	
								근저당권	케이에프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9, 4층(삼성동, 원방빌딩)	
								근저당권	주식회사케이뱅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근저당권	주식회사케이티아이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 10층(여의도동, 주식회사케이티여의도빌딩)	
								근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서울지역본부)	
								근저당권	디비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27층(대치동)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근저당권	비씨카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근저당권	주식회사더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9, 청림타워 5층(문정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케이티씨에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괴정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압구정역금융센터)	
								근저당권	효성아이티엑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양평동4가)	
								근저당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근저당권	세방익스프레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2	중구 인현동1가	2-13	대	1,139.5	1,139.5	주식회사주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근저당권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근저당권	주식회사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00(을지로지점)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근저당권	주식회사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47	
								근저당권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56(여의도동)	
								근저당권	케이에프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9, 4층(삼성동, 원방빌딩)	
								근저당권	주식회사케이뱅크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을지트윈타워)	
								근저당권	주식회사케이티아이에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14, 10층(여의도동, 주식회사케이티여의도빌딩)	
								근저당권	근로복지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교동)(서울지역본부)	
								근저당권	비씨카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을지로4가)	
								근저당권	주식회사더파트너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9, 청림타워 5층(문정동)	
								근저당권	주식회사케이티씨에스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괴정동)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근저당권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압구정역금융센터)	
								근저당권	효성아이티엑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양평동4가)	
								근저당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근저당권	세방익스프레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역삼동)	
3	중구 인현동2가	120-2	도	153.1	6.1	국(건설부)					일부편입
4	중구 을지로4가	310-40	도	371.9	371.9	국(건설부)					
5	중구 을지로4가	310-41	도	136.9	136.9	서울특별시중구					
6	중구 을지로4가	310-44	도	36.7	36.7	서울특별시중구					
7	중구 을지로4가	310-46	도	3.3	3.3	서울특별시중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8	중구 을지로4가	310-48	도	16.5	16.5	서울특별시중구					
9	중구 을지로4가	310-49	도	273.3	273.3	국(건설부)					
10	중구 을지로4가	310-50	도	2	2	서울특별시중구					
11	중구 을지로4가	310-52	도	63.8	63.8	서울특별시중구					
12	중구 을지로4가	310-53	도	30.7	30.7	등기없음		토지대장상 소유자	국	등록번호 : 200	
13	중구 을지로4가	310-54	도	55.9	55.9	서울특별시중구					
14	중구 을지로4가	310-55	도	30.7	30.7	서울특별시					19.3분의 10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	근저당권	주식회사제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53-1	19.3분의 9.3
15	중구 을지로4가	310-56	도	9.9	9.9	서울특별시중구					
16	중구 을지로4가	310-57	도	588.8	588.8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7	중구 을지로4가	310-62	도	1.3	1.3	국(건설부)					
18	중구 을지로4가	310-63	도	13.2	13.2	서울특별시중구					
19	중구 을지로4가	310-66	도	19.8	19.8	국(국토교통부)					
20	중구 을지로4가	310-67	도	24.1	24.1	국(건설부)					
21	중구 인현동1가	2-20	도	302.1	302.1	서울특별시중구					
22	중구 인현동1가	2-32	도	316.7	314	서울특별시중구					일부편입
23	중구 인현동1가	2-33	도	864.7	634.9	국(건설부)					일부편입
24	중구 인현동1가	2-21	도	587.9	449.1	국(건설부)					일부편입
25	중구 인현동1가	2-26	도	23.1	23.1	서울특별시중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고
	동명	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26	중구 인현동1가	2-15	도	2.3	2.3	국(건설부)					
합계				6,187.2	5,668.9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번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을지로4가 310-68, 인현동1가 2-13	철근콘크리트조 및 슬래브지붕 및 시멘트블록조 및 함석지붕 14층 외	33,490.86	33,490.86	주식회사주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주식회사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근저당권	완전편입 및 수용대상
							㈜인더스 개발	B1층	임차인	
							SC제일은행(을지로지점)	1층	근저당권, 임차인	
							코루모리커피	1층	임차인	
							다정사	1층	임차인	
							㈜이스타	1층	임차인	
							더맑은 클리닉	1층	임차인	
							참좋은 약국	1층	임차인	
							유미상패	1층	임차인	
							대흥상사	1층	임차인	
							한화손해보험	1층	근저당권, 임차인	

일련번호	소재지번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삼국프로인디고	1층	임차인	
							보전사	1층	임차인	
							진양안경	1층	임차인	
							이지오스(메타엠)	2, 5, 6층	전세권, 임차인	
							삼우토탈	3층	임차인	
							한화생명	3, 4, 11층	근저당권, 임차인	
							㈜케이에프지	4층	근저당권, 임차인	
							삼보기술단	5층	임차인	
							㈜아피그룹	5층	임차인	
							SK브로드밴드	5층	임차인	
							주식회사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5층	근저당권	
							㈜영우	5층	임차인	

일련번호	소재지번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윤태구보험사무소	5층	임차인	
							정우 문화사	5층	임차인	
							㈜지앤파트너	5층	임차인	
							지금융플러스	5층 外	임차인	
							더 파트너스	6층	근저당권, 임차인	
							근로복지공단	7층	근저당권, 임차인	
							㈜글로벌금융판매	7층	임차인	
							㈜디비굿잇슈	7층	임차인	
							주식회사 스퀘어스	7층	임차인	
							㈜케이뱅크	8층	근저당권, 임차인	
							BC카드	8층	근저당권, 임차인	
							DB CSI	9층	근저당권, 임차인	

일련번호	소재지번	구조 및 규격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면적	총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KT IS	10, 12층	근저당권, 임차인	
							KT CS	13층	근저당권, 임차인	
							신한라이프생명보험	3, 9층	근저당권, 임차인	
							효성아이티엑스	5층	근저당권, 임차인	
							세방익스프레스	11층	근저당권, 임차인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19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7.17. ~ 2025.7.30.(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주)영성종합건설 (홍종배)	건축공사업 01-47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 707호(제일빌딩)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후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	등록말소	2025.8.1.(금) 9: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주무관 남은주	법 제83조 제3호의2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2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고지서 교부(송달)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납부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7.17. ~ 7.30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근 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동법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제1항, 동법 제55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

업체명	대표자	대상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위반사항	비고
이젠***	이*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10길 78 가산테라타워 926호~929호, 939호~940호	267-1*-006**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 임대사업 영위	과태료 280만원

5. 공고내용
가. 위 근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에 앞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5. 8.1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의견제출 기한내 과태료 자진납부시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경제실 산업입지과(☎02-2133-846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의견제출인</td><td colspan="2">성명</td></tr>
<tr><td>주소</td><td>전화번호</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 내용</td><td colspan="2">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r>
<tr><td>주소
(전화번호:)</td></tr>
<tr><td>의 견</td><td></td></tr>
<tr><td>기 타</td><td></td></tr>
</table>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29호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변경시행)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7.17. ~ 2025.7.30.(14일간)

2. 송달대상 및 처분 개요

업 체 명 (대표)	업종 및 등록번호	위반내용	위반 법규	처분 법규	처분내용		변경시행사유
					당초	변경	
㈜만덕종합건설 (김동훈)	건축 공사업 01-5534	사업자등록 폐업(폐업일자:2025.3.20.)	-	법 제83조 제12호	등록말소 (2025.7.4.)	등록말소 (2025.8.15.)	공시송달 기간 확보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31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안)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점용허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점용허가 신청 사항

신청자		점용 장소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명칭	주소				
강서구청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43-2번지 등	18,749.5	강서구청 자원순환과 청소시설 운영 및 청소차량 주차	'25.5.18. ~ ' 30.5.17.
㈜아이티공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산업4로 76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44, 개화동 600-2	2	물산업용 예측 모델링 솔루션 설치 및 실증	'25.6.1. ~ ' 26.2.28.
㈜에싸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249번길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131	150	협잡물처리기 설치 및 실증 TEST	'25.6.1. ~ ' 26.2.28.
㈜이앤켐솔루션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경제로 1길 94-38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131	12.5	50CMM 건식악취제거설비 적용	'25.6.23. ~ ' 26.2.28.
㈜하이필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덕성산단 2로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	105	융복합 기반 에너지 절감형 MBR 기술 개발	'25.10.1. ~ ' 26.3.31.

신청자		점용 장소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명칭	주소				
㈜에스에어텍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25-23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05	75	악취저감시설 실증설비 설치 및 실증화 검증	'25.7.1. ~ ' 25.12.31.
㈜동일캔바스 엔지니어링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길 105-1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108-1	375	환경부 상하수도혁신사업 실증플랜트 설치/운영	'25.7.1. ~ ' 26.3.31.

2.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3.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 전까지 복구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02-2133-3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35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서소문고가차도)

○ 서울특별시에서 관리 중인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차량의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도로의 종류	서울특별시도	
노 선 명	서소문로	
제 한 의 대 상	변경 전	변경 후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 대중교통(버스)은 운행 가능	○ 총중량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5톤을 초과하는 차량 ○ 기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 ※ 대중교통(버스)은 운행 가능
구 간	시설물명	서소문고가차도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406~순화동 6(서소문로)
	규 모	폭 15미터, 연장 570미터
기 간	2025년 7월 9일부터 별도 해제 공고 시까지	
이 유	도로시설물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공고기간	2025. 7. 9.~2026. 5. 31.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실 도로기획관 교량안전과(전화 02-2133-1956)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전화 02-300-8372)	
비 고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도면 비치	

붙임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1부.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45호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 제1항에 의거,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한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1.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제4항 및 제64조 제1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 별첨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울특별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사항: 서울시청 재무과 지출팀(☎ 02-2133-3229)

반환기한 5년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목록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부 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봉급공제금	2016-06-10	세입세출외현금 과오납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6-07-08	5,210
봉급공제금	2016-07-19	2016년 7월 본청융자	재무과	재무과	2016-08-10	337,000
봉급공제금	2016-08-09	2016년 7월 보험료 과오납금 반환	재무과	재무과	2016-09-16	450
봉급공제금	2016-08-19	8월분 보수 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6-09-20	51,080
봉급공제금	2016-08-19	8월분 보수 지방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6-09-20	5,090
봉급공제금	2016-08-19	8월분 보수 기여금	재무과	재무과	2016-09-20	622,180
봉급공제금	2016-09-20	9월분 보수 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6-10-10	43,930
봉급공제금	2016-09-20	9월분 보수 지방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6-10-10	4,380
봉급공제금	2016-09-20	9월분 보수 기여금	재무과	재무과	2016-10-10	622,180
봉급공제금	2016-09-28	과오납 보험금 반납	재무과	황O미	2016-10-10	3,410
봉급공제금	2016-09-09	보험료 과납금 환급	재무과	재무과	2016-10-14	29,780
봉급공제금	2016-10-11	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재무과	재무과	2016-11-10	790
봉급공제금	2016-11-07	과오납 보험료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6-12-30	30,610
봉급공제금	2016-11-07	10월 보험료 과오납금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6-12-30	7,230
봉급공제금	2016-12-12	세입세출외현금 과오납분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7-01-12	90,560
봉급공제금	2016-06-09	봉급공제금	재무과	재무과	2017-02-01	40
봉급공제금	2017-01-19	2017년 1월분 본청직원 봉급공제액(근로자 장기저축)	재무과	재무과	2017-02-10	289,000
봉급공제금	2016-06-10	보험료	재무과	재무과	2017-06-09	12,34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부 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봉급공제금	2018-09-10	2018년 8월분 고용산재 통합고지분 납부관련 과다 반환액 재수납(사유 : 물재생계획과 보험료 지출액 증가)	재무과	재무과	2019-06-30	6,740
봉급공제금	2018-09-19	2018년 9월분 급여 공제액-고용보험	재무과	재무과	2019-06-30	262,830
원천공제액	2016-01-07	시민소통 퇴직자(정O일) 소득세 징수	재무과	정O일	2016-02-10	174,420
원천공제액	2016-07-07	2016년6월 임기제 및 수습 공무원 보험료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6-07-08	101,630
원천공제액	2016-07-07	2016년6월 임기제 및 수습 공무원 보험료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6-07-08	8,420
원천공제액	2016-07-08	2016년6월 임기제 및 수습 공무원 보험료 반납	재무과	재무과	2016-07-08	20,880

현금종류	수납일자	적 요	부서	납부자	반환기일	보관액(원)
원천공제액	2016-09-08	보험료 과납금 환급	재무과	재무과	2016-10-14	56,350
원천공제액	2016-10-17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납부금(진O선-지방세)	재무과	진O선	2016-10-17	3,000
원천공제액	2015-12-22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 자문위원 수당 지급 원천공제액	재무과	마을공동체담당관	2016-12-30	171,600
원천공제액	2015-12-22	원천징수 원천공제액	재무과	동작구청	2016-12-31	560,000
원천공제액	2015-12-22	원천징수 원천공제액	재무과	동작구청	2016-12-31	1,120,000
원천공제액	2018-09-27	2018년 8월 중도퇴직자 소득세 착오신고에 따른 환급금 예치	재무과	남대문세무서	2018-09-28	317,190
원천공제액	2018-04-19	2018년 4월분 급여 공제액(정산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9-04-30	1,703,440
원천공제액	2018-11-19	2018년 11월분 급여 공제액-지방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9-06-30	3,472,009
원천공제액	2018-12-19	2018년 12월분 급여 공제액-지방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9-06-30	215,870
원천공제액	2019-01-17	2019년 1월분 급여 공제액-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9-06-30	11,594,970
원천공제액	2019-02-19	2019년 2월분 급여 공제액-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9-06-30	6,771,841
원천공제액	2019-04-18	2019년 4월분 급여 공제액-소득세	재무과	재무과	2019-12-31	2,954,486
국고반환금	2016-10-27	별단예금 해지 이자	재무과	재무과	2016-11-30	16,103
국고반환금	2017-01-11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오납분 환급	재무과	재무과	2017-01-31	50
급여압류금	2004-06-07	급여압류금 별단예금 해지이자(공탁)	재무과	강O영	2008-12-31	31,025
계약보증금	2008-07-04	터널및기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계약보증금 재무과19072(080526박O민)	재무과	정도기전	2008-12-31	4
하자보수보증금	2009-06-15	우성안전(임O규)정기예금예치기간경과해지이자(별단예금:이자수입합산운용)-재무과(09.6.15류O현)	재무과	재무과	2009-07-16	53,664
하자보수보증금	2015-10-30	하자보수보증금	재무과	부창건설㈜	2016-10-13	1,338,010
기타보관금	2013-02-28	별단해지후 이자(도시기반시설본부-155,073,SH공사-988,929, 서부도로-128,673)	재무과	재무과	2013-08-31	1,272,675
기타보관금	2017-03-29	별단예금 해지이자	재무과	부루벨코리아	2017-04-29	3,14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5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393749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24, 401호 (수유동 ,송림힐스)	수도요금	2023년 11월 등 10납기	10회	364,38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24, 401호 (수유동 ,송림힐스)	박*호	580626-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15-24, 401호 (수유동 ,송림힐스)	364,380	2025.7.31.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철희(☎02-3146-33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55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91216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길 93, 3동 303호 (수유동 ,현대빌라)	수도요금	2022년 5월 등 19납기	19회	563,97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길 93, 3동 303호 (수유동 ,현대빌라)	이*홍	800719-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길 93, 3동 303호 (수유동 ,현대빌라)	563,970	2025.7.31.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철희(☎02-3146-33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56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 소유자 주소지(주민등록주소 및 법인등기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반송으로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17. ~ 2025. 7.31.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통지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23644970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15-1(방이동 1**-12)	수도 요금	2024. 2 외 5납기	6회	5,199,300원	압류통지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15-1 (방이동 1*8-12)	손*경	820718-******* (등기번호 1126806262377수취인부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길 15-1(방이동)	5,199,300원	2025. 6.18.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박임숙(☎02-3146-11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57호

종합건설사업자 과태료 감경부과 및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감경부과 고지서 및 처분 사전통지서를 법인의 본점 및 소재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월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1.(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공사명)	예정된 처분내용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처분 근거
㈜공감종합건설 (김현재)	건축공사업 01-4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196 , 602호(길동) (길동)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으로 통보 - 현장명: 하계동 명일동 312-203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사 증축공사 - 하수급인 미기재: 지에이치(주)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준공일 이전에 통보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과태료	2025.8.1.(금)	법 제99조 제3호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는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메일, 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8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60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1.(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의신청 기간 : 최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후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61건																
1	20229795	58머3421	그랜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4117	개화산역	0008:57	2025-04-01	08:47	2025-04-01	17:44	6,100	0	6,100	김*현	인천광역시서구이음로	폐문부재	2025-07-30
2	20229800	60서8540	스파크 1.0 DOHC LPG	000047339214201 20250525004062	천왕역	0005:16	2025-04-02	08:40	2025-04-02	13:56	5,400	0	5,400	최*택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폐문부재	2025-07-30
3	20229928	22도5171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50525004025	서울글로벌센터	0000:54	2025-04-03	15:33	2025-04-03	16:27	7,700	0	7,700	L*HA*VA*UR*N *KH*AS*RE*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주소불명	2025-07-30
4	20229931	경기76아5649	유니버스(UNIVERSE)	000047339214201 20250525003990	사당노외	0000:24	2025-04-04	06:57	2025-04-04	07:21	6,000	0	6,000	(*)성화*광여*사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폐문부재	2025-07-30
5	20229963	71구7758	갤로퍼승합	000047339214201 20250525003953	천호역	0008:07	2025-04-01	00:00	2025-04-01	08:07	9,300	0	9,300	이*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폐문부재	2025-07-30
6	20229966	30수7557	마티즈 0.8S AT	000047339214201 20250525003930	천왕역	0006:09	2025-04-04	12:26	2025-04-04	18:35	6,100	0	6,100	석*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폐문부재	2025-07-30
7	20229978	256누5229	ML350 BlueTEC 4Matic	000047339214201 20250525003854	한강진역	0002:02	2025-04-06	15:36	2025-04-06	17:38	10,000	0	10,000	권*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이사불명	2025-07-30
8	20229980	152더1663	BMW X4 xDrive20i	000047339214201 20250525003831	동대문	0001:20	2025-04-06	20:42	2025-04-06	22:02	2,800	0	2,800	유*영	서울특별시마포구효창목길	주소불명	2025-07-30
9	20229981	40마2231	E300 4Matic	000047339214201 20250525003824	동대문	0002:26	2025-04-06	19:40	2025-04-06	22:06	10,800	0	10,800	홍*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폐문부재	2025-07-30
10	20229982	14누5697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50525003817	동대문	0000:57	2025-04-06	21:12	2025-04-06	22:09	2,100	0	2,100	이*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삼로	폐문부재	2025-07-30
11	20229993	47거1798	C220 BlueTEC	000047339214201 20250525003718	동대문	0001:40	2025-04-06	20:11	2025-04-06	21:51	7,200	0	7,200	김*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폐문부재	2025-07-30
12	20230003	63저6978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50525003619	동대문	0004:18	2025-04-06	18:06	2025-04-06	22:24	18,700	0	18,700	이*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수취인불명	2025-07-3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13	20230025	34서2310	그랜저(GRANDEUR)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3441	구로디지털단지역	0002:56	2025-04-10	13:48	2025-04-10	16:44	4,600	0	4,600	이*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폐문부재	2025-07-30
14	20230028	111너2830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50525003428	구파발역	0000:19	2025-04-10	17:56	2025-04-10	18:15	300	0	300	안*욱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로	폐문부재	2025-07-30
15	20230030	109하6856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50525003404	한강진역	0004:33	2025-04-10	17:10	2025-04-10	21:43	11,000	0	11,000	(*)그*카	경기도고양시덕양구원흥로	주소불명	2025-07-30
16	20230031	250마2638	Tiguan 2.0TDI 4Motion	000047339214201 20250525003396	세종로	0004:32	2025-04-10	18:39	2025-04-10	23:11	10,500	0	10,500	김*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폐문부재	2025-07-30
17	20230036	131서9960	토레스	000047339214201 20250525003342	읏우물	0003:00	2025-04-11	16:42	2025-04-11	19:42	3,900	0	3,900	김*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폐문부재	2025-07-30
18	20230041	12저5728	베라크루즈(VERACRUZ)	000047339214201 20250525003297	천호역	0002:25	2025-04-12	12:12	2025-04-12	14:37	4,400	0	4,400	송*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폐문부재	2025-07-30
19	20230053	57가0123	볼보 V40D4	000047339214201 20250525003174	한강진역	0000:24	2025-04-13	21:34	2025-04-13	21:58	2,000	0	2,000	김*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폐문부재	2025-07-30
20	20230056	310다1675	니로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3144	세종로	0005:18	2025-04-14	11:54	2025-04-14	17:12	13,700	0	13,700	이*현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폐문부재	2025-07-30
21	20230061	32소3411	SM5	000047339214201 20250525003099	구로디지털단지역	0000:59	2025-04-15	13:20	2025-04-15	14:19	3,100	0	3,100	나*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폐문부재	2025-07-30
22	20230068	50다0400	CLA45 AMG 4Matic	000047339214201 20250525003022	종묘	0000:42	2025-04-16	20:03	2025-04-16	20:45	3,600	0	3,600	임*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폐문부재	2025-07-30
23	20230069	13저5162	BMW 520d	000047339214201 20250525003015	구로디지털단지역	0000:59	2025-04-16	11:56	2025-04-16	12:55	3,100	0	3,100	김*호	경기도파주시문산읍당동로	폐문부재	2025-07-30
24	20230070	334수8747	XM3	000047339214201 20250525004131	수서역	0010:42	2025-04-16	06:56	2025-04-16	17:38	23,000	0	23,000	김*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폐문부재	2025-07-3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25	20230077	10부6709	C220 d	000047339214201 20250525002951	신대방역	0002:05	2025-04-17	19:55	2025-04-17	22:00	6,500	0	6,500	홍*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폐문부재	2025-07-30
26	20230081	195어2447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50525002914	천호역	0002:17	2025-04-19	09:38	2025-04-19	11:55	500	0	500	김*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폐문부재	2025-07-30
27	20230083	267두7860	모닝	000047339214201 20250525002899	천왕역	0010:12	2025-04-18	06:30	2025-04-18	16:42	6,100	0	6,100	C*I *HU*ZI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폐문부재	2025-07-30
28	20230094	199보2100	말리부 1.35 TURBO	000047339214201 20250525002790	볕우물	0009:24	2025-04-21	07:10	2025-04-21	16:34	4,600	0	4,600	민*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폐문부재	2025-07-30
29	20230100	142우6323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50525002730	신천유수지	0000:30	2025-04-22	09:42	2025-04-22	10:12	700	0	700	정*영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	폐문부재	2025-07-30
30	20230112	169다8311	K7	000047339214201 20250525002617	신대방역	0074:09	2025-04-21	03:32	2025-04-24	05:41	31,400	0	31,400	A* YU*IN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폐문부재	2025-07-30
31	20230126	153거1662	스포티지	000047339214201 20250525002479	신대방역	0001:22	2025-04-26	07:04	2025-04-26	08:26	4,400	0	4,400	L* SH*GU*N	경기도 시흥시 군서로	폐문부재	2025-07-30
32	20230130	51루1263	렉서스 IS250	000047339214201 20250525002433	한강진역	0001:16	2025-04-25	18:01	2025-04-25	19:17	6,400	0	6,400	A*HE*EI*I *OU*UF *BD*LL* AB*UL*A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폐문부재	2025-07-30
33	20230137	12어0724	쏘렌토	000047339214201 20250525002364	구로디지털단지역	0001:25	2025-04-26	16:39	2025-04-26	18:04	4,400	0	4,400	송*훈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폐문부재	2025-07-30
34	20230138	49주3391	싼타페(SANTAFE)	000047339214201 20250525002357	구로디지털단지역	0002:04	2025-04-26	16:05	2025-04-26	18:09	6,500	0	6,500	박*호	경기도 광명시 영우로	폐문부재	2025-07-30
35	20230140	17라4834	BMW 520d	000047339214201 20250525002334	구로디지털단지역	0002:12	2025-04-26	16:15	2025-04-26	18:27	7,000	0	7,000	김*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	폐문부재	2025-07-30
36	20230155	81주5585	포터II냉장탑차	000047339214201 20250525002189	신천유수지	0001:15	2025-04-28	10:48	2025-04-28	12:03	3,900	0	3,900	김*룡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수취인불명	2025-07-30
37	20230174	29수1416	EV3	000047339214201 20250525002037	동대문	0000:06	2025-04-30	23:54	2025-05-01	00:00	300	0	300	임*훈	경기도남양주시별내로	폐문부재	2025-07-3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38	20230202	40너3194	스파크 1.0	000047339214201 20250525001806	세종로	0001:07	2025-04-17	14:27	2025-04-17	15:34	3,000	0	3,000	임*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폐문부재	2025-07-30
39	20230204	57보7446	투싼(TUCSON)	000047339214201 20250525001781	세종로	0000:19	2025-04-06	11:13	2025-04-06	11:32	1,700	0	1,700	G*RI*O *AR*OS *UG*ST* CA*DO*O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폐문부재	2025-07-30
40	20230207	12두4899	G4 렉스턴	000047339214201 20250525001751	동대문	0002:07	2025-04-18	16:32	2025-04-18	18:39	9,300	0	9,300	박*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폐문부재	2025-07-30
41	20230210	28부4255	레인지로버 벨라 D240	000047339214201 20250525001721	동대문	0004:44	2025-04-29	21:59	2025-04-30	02:43	20,100	0	20,100	전*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폐문부재	2025-07-30
42	20230211	43보7326	G80	000047339214201 20250525001714	동대문	0001:44	2025-04-20	15:32	2025-04-20	17:16	3,700	0	3,700	황*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폐문부재	2025-07-30
43	20230219	144우8765	캐스퍼(CASPER)	000047339214201 20250525001639	한강진역	0003:12	2025-04-11	19:11	2025-04-11	22:23	7,800	0	7,800	백*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폐문부재	2025-07-30
44	20230229	26다7445	Model Y RWD	000047339214201 20250525001530	사당노외	0000:52	2025-04-18	14:35	2025-04-18	15:27	2,200	0	2,200	박*홍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폐문부재	2025-07-30
45	20230242	150로6085	MINI Cooper D Countryman	000047339214201 20250525001417	잠실역	0003:57	2025-04-04	18:47	2025-04-04	22:44	19,200	0	19,200	이*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폐문부재	2025-07-30
46	20230244	225고4975	트랙스 1.2 터보	000047339214201 20250525001392	잠실역	0005:32	2025-04-29	10:47	2025-04-29	16:19	13,400	0	13,400	서*온	경기도 광주시 모개미길	폐문부재	2025-07-30
47	20230245	25도0241	니로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1385	잠실역	0014:02	2025-04-22	09:16	2025-04-22	23:18	14,400	0	14,400	정*림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폐문부재	2025-07-30
48	20230249	53어9567	렉서스 CT200h	000047339214201 20250525001348	잠실역	0001:55	2025-04-11	19:23	2025-04-11	21:18	4,600	0	4,600	유*희	충청남도당진시수청로	폐문부재	2025-07-30
49	20230264	134거7473	트레일블레이저 1.35 TURBO FWD	000047339214201 20250525001202	도봉산역	0007:35	2025-04-19	14:59	2025-04-19	22:34	6,100	0	6,100	최*비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폐문부재	2025-07-30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금액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50	20230275	39부4734	그랜저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1095	도봉산역	0002:04	2025-04-27	13:19	2025-04-27	15:23	2,100	0	2,100	왕*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폐문부재	2025-07-30
51	20230280	354머2381	K7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1058	천호역	0001:12	2025-04-01	14:26	2025-04-01	15:38	1,800	0	1,800	박*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폐문부재	2025-07-30
52	20230301	155주7698	그랜저 하이브리드(GRANDEUR HYBRID)	000047339214201 20250525000840	종묘	0000:18	2025-04-05	15:29	2025-04-05	15:47	800	0	800	한*만	경기도 의정부시 송현로	폐문부재	2025-07-30
53	20230316	45조8066	SM7	000047339214201 20250525000711	종묘	0002:47	2025-04-30	07:43	2025-04-30	10:30	13,600	0	13,600	한*원	경기도 광주시 머루숯길	폐문부재	2025-07-30
54	20230317	52서2728	코나(KONA)	000047339214201 20250525000704	종묘	0003:55	2025-04-20	17:48	2025-04-20	21:43	18,800	0	18,800	강*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폐문부재	2025-07-30
55	20230318	53소9216	INFINITI G35S	000047339214201 20250525000696	종묘	0002:27	2025-04-06	15:20	2025-04-06	17:47	6,000	0	6,000	문*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폐문부재	2025-07-30
56	20230331	231고2209	팰리세이드(PALISADE)	000047339214201 20250525000573	구파발역	0002:27	2025-04-07	08:31	2025-04-07	10:58	5,100	0	5,100	장*구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폐문부재	2025-07-30
57	20230370	21너9636	니로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0345	개화역	0004:11	2025-04-19	10:57	2025-04-19	15:08	500	0	500	강*하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로	폐문부재	2025-07-30
58	20230373	295나6134	K5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50525000315	개화역	0056:33	2025-04-26	13:56	2025-04-28	22:29	7,300	0	7,300	선*수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동진면 봉황제내길	폐문부재	2025-07-30
59	20230384	212버2153	그랜저(GRANDEUR)	000047339214201 20250525000246	마포유수지	0001:38	2025-04-19	13:17	2025-04-19	14:55	2,200	0	2,200	이*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폐문부재	2025-07-30
60	20230387	248라4561	K5	000047339214201 20250525000216	마포유수지	0009:51	2025-04-26	06:51	2025-04-26	16:42	15,800	0	15,800	정*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폐문부재	2025-07-30
61	20230388	260가3200	Mercedes-AMG GT63 S 4Matic	000047339214201 20250525000209	마포유수지	0005:54	2025-04-03	17:08	2025-04-03	23:02	15,600	0	15,600	이*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이사불명	2025-0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64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한남동 670 일대	28,790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

2. 개발행위허가 제한 근거 및 사유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사유: 용산구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 부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전까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3.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다만, 제한기간 중 대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될 경우 그 고시일까지 함.)
4.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 단, 재난·재해 등의 예방(보수·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6. 관계도서 : 생략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비치)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02-2133-8382)
8. 의견제출 : 본 공고에 대해 의견을 제출코자 하는 개인(단체)은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에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65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제이브이 글로벌 유한회사	서울 제932호	윤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1, 10층 1004호 (역삼동)	소재지 ('25.06.2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5, 2층 (삼성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1, 10층 1004호 (역삼동)
2	엑소바이옴 누베	서울 후 제2780호	이주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34, 2층 202호 (합정동)	폐업 ('25.07.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68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29532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31-27, B동 1층 (수유동 ,신성젠트리스)	수도요금	2022년 9월 등 17납기	17회	447,70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2길 31-27, B동 1층 (수유동 ,신성젠트리스)	권*만	720220-1****** (2회송달 부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간석로32번길 YG캐슬 11 ,401호	447,700	2025.7.31.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철희(☎02-3146-33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6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0.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308174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7길 20(수유동)	수도요금	2023년 5월 등 13납기	13회	596,02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7길 20(수유동)	윤*임	450101-2******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7길 20(수유동)	596,020	2025.7.31.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이철희(☎02-3146-330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70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시 시행하는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평가의 공정성 향상을 기하고자 동 공고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평가방법(평가점수 산출방법) 개정
- (현행)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평균)
- (변경)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업체별 최종점수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나.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업체명 공개
- (현행) 업체명이 공개된 기술인 평가서(기술제안서)로 평가
- (변경) 업체명이 미공개된 기술인 평가서(기술제안서)로 평가

다.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평가과정 기록사항 변경
- (현행) 평가과정 사진 촬영 및 녹음 등
- (변경) 평가과정 동영상 촬영

라.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평가결과 공개사항 변경
- (현행)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공개시 익명 공개
- (변경)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 공개시 실명 공개

※ 수행실적(PQ) 평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변동 없음

3.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누리집 ▸ 분야별 정보(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 자료실 ▸ 지침/방침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서울시(개정안)
제Ⅰ장.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중략)…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중략)…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개정안)

다. 기본사항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42.5(제외)	48.9	48.5	49.0	49.0(제외)	48.6	48.75
B업체	48.5	47.8	46.9	46.5(제외)	48.0	49.1(제외)	47.80
⋮	⋮	⋮	⋮	⋮	⋮	⋮	⋮

(5) …(중략)…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개정안)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중략)…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4)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6)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마. 평가기준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3) 감점기준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 · 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서울시(개정안)

(다) 감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 사용(업체명 · 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 · 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나) …(중략)…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

사.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개정안)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생략)…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개정안)

서울시(개정안)

[별지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서울시(개정안)

제4절 기술제안서에 따른 평가(기술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다. 기술제안서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절차

(1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중략)…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중략)…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다. 기본사항

(3) 기술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73.5(제외)	79.9	79.5	80.0	80.0(제외)	79.6	79.75
B업체	79.5	78.8	77.9	77.5(제외)	79.0	80.1(제외)	78.80
⋮	⋮	⋮	⋮	⋮	⋮	⋮	⋮

서울시(개정안)
(5) …(중략)…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4) 기술제안서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수행계획 및 방법의 발표 및 면접 운영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중략)…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서울시(개정안)

(6)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마. 평가기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3) 감점기준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 · 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다) 감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제안서 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 사용(업체명 · 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서울시(개정안)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에 기술제안서 업체명 · 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나) 발주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평가결과는 실명 공개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사.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제안서 작성의 기본원칙 (다) 제출되는 기술제안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생략)….
(4) 기술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 (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개정안)

서울시(개정안)

(별지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서울시(개정안)
제Ⅱ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절 기술인평가서에 따른 평가(기술인 평가서 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다. 기술인평가서 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절차 (12) 기술인평가서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14)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중략)…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중략)…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자료 활용하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개정안)

2. 평가기준

다. 기본사항

(3) 기술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상대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점수는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예시) 상대평가 항목별 점수의 합계점수에 따른 최종점수 산정

구분	위원1	위원2	위원3	위원4	위원5	위원6	최종점수
A업체	22.5(제외)	28.9	28.5	29.0	29.0(제외)	28.6	28.75
B업체	28.5	27.8	26.9	26.5(제외)	28.0	29.1(제외)	27.80
⋮	⋮	⋮	⋮	⋮	⋮	⋮	⋮

(5) …(중략)… 이 경우 보완요구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7) …(중략)…,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는 익명(업체명, 기술인 등)을 전제로 작성된 기술인평가서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개정안)
라.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 운영 (2)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중략)…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시 업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 조치(업체명 비공개 등)를 하여야 한다.)
(5)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에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확보된 별도의 설명자료(파워포인트)를 평가위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할 수 있다.
(7) 발주부서가 판단하기에 익명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평가위원이 피면접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 조치(익명성이 보장된 사전에 녹음된 발표자료로 대체, 가림막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마. 평가기준 심의위원회 및 입찰참여 적격자 선정방법 (3) 감점기준 (나) 감점기준의 주요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하며, …(이하생략)… 1)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사용(업체명 · 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서울시(개정안)

(다) 감점기준은 입찰공고시에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감점기준에 대한 예시>

평가항목	감점기준 (감점 및 실격)	감점 및 실격사항	비고
기술인평가서	- 익명성을 위반하는 표지(標識) 사용(업체명 · 기술인 표기, 암호 기재 등)	실격처리	
	- 쪽수초과	쪽당 0.5점	
	- 항공사진·투시도·조감도·시뮬레이션 사용, 3D 효과, 일러스트 편집, 바탕면·여백부 치장	쪽당 0.5점	
	- 칼라 사용 위반	쪽당 0.5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쪽당 0.5점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쪽당 0.5점	

(5) 기타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에 기술인평가서 업체명 · 기술인 등을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기재하여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익명성 위반)

(나) …(중략)… 위원별 평가결과 및 평가사유서 등 평가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또는 발주부서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여야 한다.

사. 평가결과의 녹화 및 기록관리

평가과정의 모든 절차는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업체의 이의신청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개정안)
4.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가. 일반사항 (1) 기술인평가서 작성의 기본원칙 (다) 제출되는 기술인평가서는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에 기반하여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생략)…
(4) 기술인평가서의 수정·보완 및 관리 (다) 보완요구 기한까지 기술인평가서 제출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되, 익명성(업체명, 기술인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서울시(개정안)

서울시(개정안)

[양식 4 - 평가위원용]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 동영상 촬영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평가위원회 운영과정에서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동의함
- 해당 저작물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따라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저작권)은 용역 발주기관에 있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는 실명공개

20 . . .

동의자 :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장 귀 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72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크라운방재(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 공고

업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크라운방재 주식회사 (659-87-03042)	제서울(성동) 2025-1호 (2025.7.11.)	손정화 (1988.12.20.)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462, 101호	02-2296-5119

※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2622-1692로 연락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73호

사적 탕춘대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공고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 국가유산

연번	종목	국가유산명	소재지	비고
1	사적	탕춘대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산1-1번지 외	

2. 취지
   ○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화함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유산 주변 건축행위의 범위를 사전에 고시하여 행정 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작성내용 : 붙임의 허용기준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8. 5.(20일간) 17:00 까지

5. 허용기준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및 건축행위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또는 은평구 또는 종로구 협의를 거쳐 처리
   ○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개별검토 후 사안에 따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 행위 가능

6.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2025년 8월 5일)
   ○ 제출방법 : 서면제출(붙임 의견서 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우편접수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기재

○ 제출장소

-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세계유산등재팀

※ 문의처 : 서울특별시청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세계유산등재팀(☎02-2133-2668, 02-768-8873, mazeda@seoul.go.kr)

붙임 1. 국가지정유산 허용기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 탕춘대성(사적)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국가지정유산 보호구역 경계 지표에서 7.5m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27°선 이내에 한함)	
4구역	○서울특별시지정 유형문화유산 석파정 별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지하 50m이상의 땅파기 행위는 개별 검토함. ○높이3m 이상의 땅깎기·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땅깎기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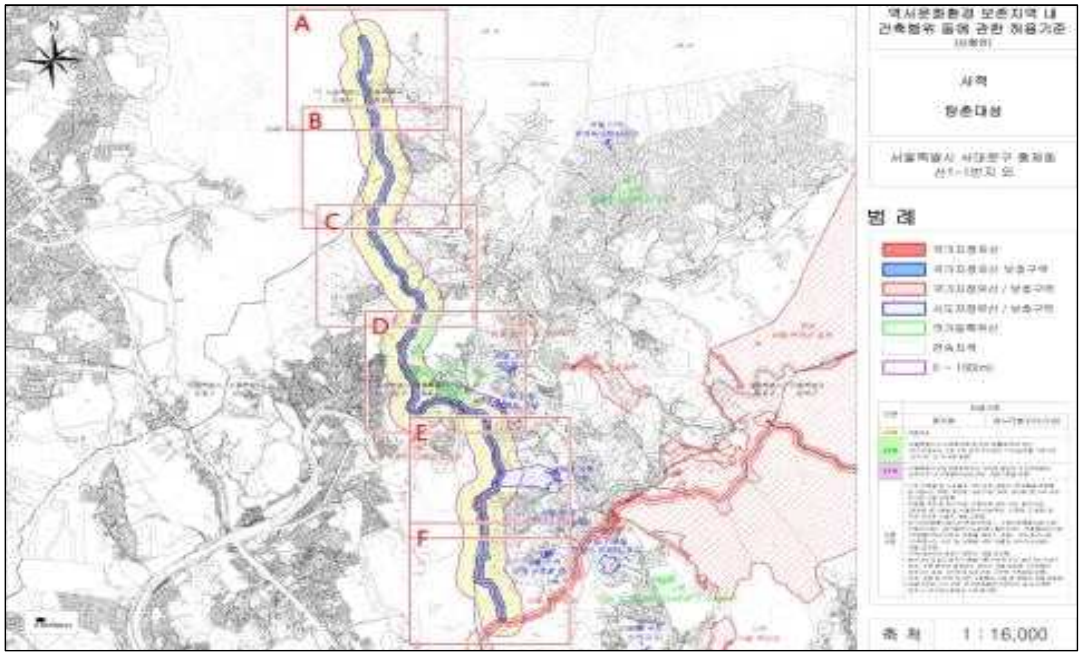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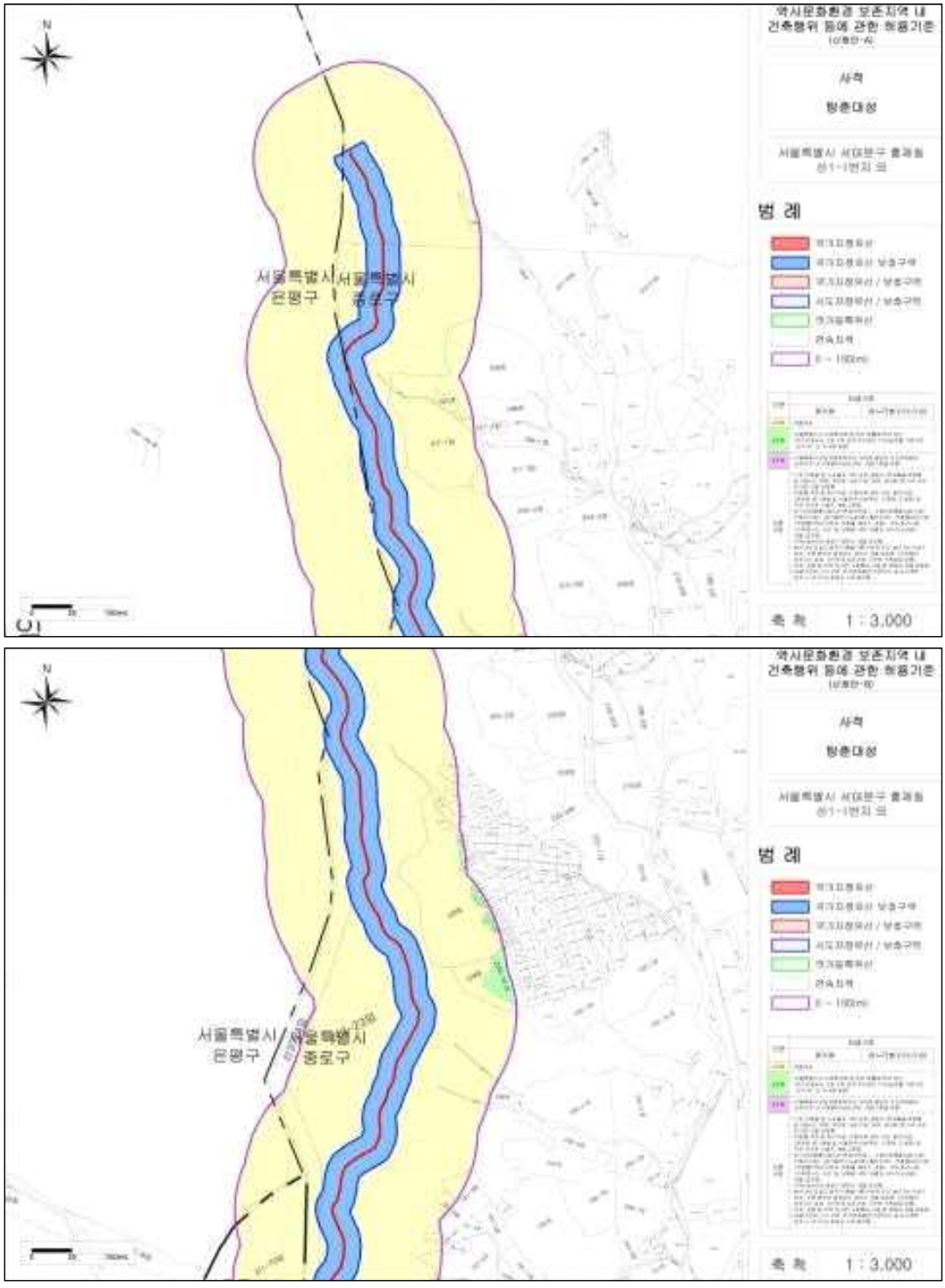
N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 례
축 척 1 : 3,000
N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범 례
축 척 1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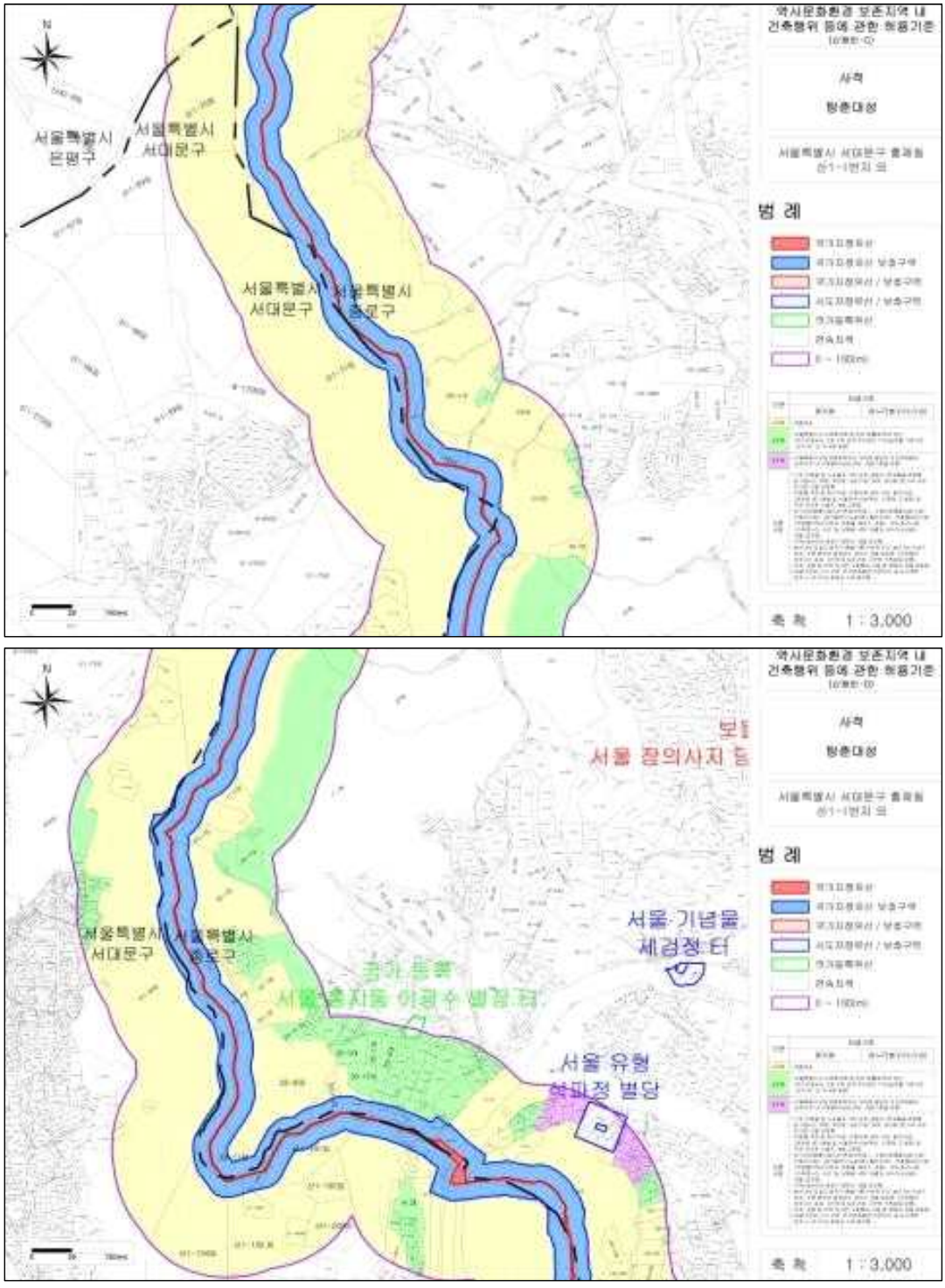
N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항춘대성
범 례
축 척 1 : 3,000
N
서울 충의사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 기념물 제정정 터
서울 유형 문화재 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항춘대성
범 례
축 척 1 :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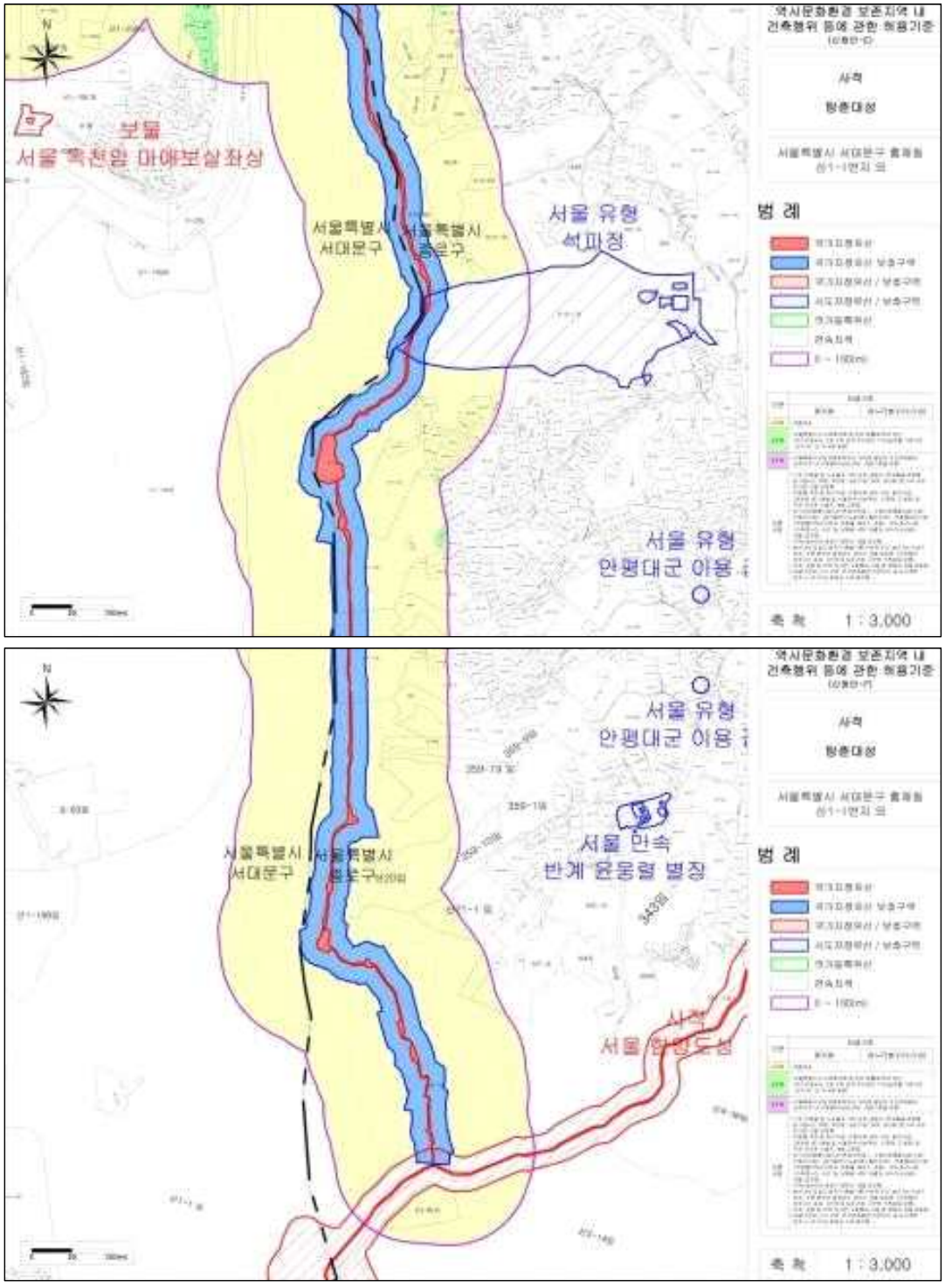
보물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 유형
석파정
서울 유형
안평대군 이용
범 례
축 척 1 : 3,000
서울 유형
안평대군 이용
서울 만속
반계 윤웅렬 별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 례
축 척 1 : 3,000

<붙임 2>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 제출자

○주 소 :

○성 명(법인, 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의 견 사 항 –

상기 본인은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 . .

의견제출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7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0.(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5. 7. 31. ~ 2025. 8. 13.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 : 2025. 8. 13.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 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7-07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이*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7-07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배*랑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7-07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4	박*하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7-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5	양*모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길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7-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6	김*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마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7-04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76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0.(14일간)
5. 납부기한 : 2025. 8. 31.
6. 유의사항
   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 이메일 : kys82@seoul.go.kr)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 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문*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4-24	부과고지서
2	권*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이천로 ***, ***동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4-24	부과고지서
3	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4-24	부과고지서
4	전*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 ***동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7-01	부과고지서
5	김*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길 **, ***동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7-01	부과고지서
6	설*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 ***동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7-01	부과고지서
7	김*익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길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7-01	부과고지서
8	최*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 **, ***호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07-01	부과고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83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그○홈○어○경○남○지○ 등 716명
4. 공고기간 : 2025. 7. 17. ~ 2025. 7. 31.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7. 17. ~ 2025. 7. 31.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53하98**	그*홈*어*경*남*지*)	경기도 용인시	2025-05-01 1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	153하26**	주*휘	경기도 시흥시	2025-05-04 14: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	134호24**	김*영	서울특별시	2025-05-02 18: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	209무39**	윤*옥	대전광역시	2025-05-03 11: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	163하16**	피*리*리*(*)	서울특별시	2025-05-07 08:58	내곡ic~염곡ic	50000
6	104부84**	(*)*퍼*원*노*이*	서울특별시	2025-05-27 17:2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7	45보80**	이*열	경기도 양주시	2025-06-04 2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	경기55바41**	구*회	경기도 양주시	2025-06-08 23: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	169하13**	이*자	인천광역시	2025-05-09 19: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	서울31사53**	김*열	서울특별시	2025-06-05 17:1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	66서49**	최*자	서울특별시	2025-06-05 17:4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	40저30**	국*산*렌*(*)	경기도 안성시	2025-06-05 16:5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3	서울31아71**	김*남	경기도 성남시	2025-05-31 11:01	말죽거리공원사거리~매헌시민의숲사거리	50000
14	160마58**	양*진	광주광역시	2025-06-05 19:2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	서울31자32**	이*수	서울특별시	2025-06-04 09:02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50000
16	서울31바43**	안*붕	서울특별시	2025-06-04 09:03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50000
17	25모27**	김*준	서울특별시	2025-05-30 07:51	연희ic~사천교교차로	50000
18	66보78**	김*형	서울특별시	2025-05-12 09:01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19	49너78**	신*	서울특별시	2025-05-12 09:01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20	180보70**	윤*오	경기도 광주시	2025-05-12 09:01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21	153러21**	정*미	서울특별시	2025-06-04 15:24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2 10:54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3	391어95**	장*석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4 08:3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4	271나93**	홍*영	인천광역시	2025-06-03 17: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	96더04**	김*덕	경기도 고양시	2025-06-06 16: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6	229호80**	(*)*이*앤*이*스	서울특별시	2025-05-09 16: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383러27**	박*자	경기도 이천시	2025-06-04 17: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8	92고70**	(*)*프*넷*러*	서울특별시	2025-06-08 15: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	85보68**	(*)*명*업	서울특별시	2025-06-06 08: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	14러34**	민*디	경기도 수원시	2025-06-06 11: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	55너79**	동*산*(*)	서울특별시	2025-06-05 18:2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2	66로72**	구*주	서울특별시	2025-04-24 16:13	염창역~등촌역	50000
33	346거96**	성*옥	서울특별시	2025-06-04 20: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4	09러31**	서*남	경기도 김포시	2025-06-05 09:3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5	124허26**	(*)*주*렌*카	서울특별시	2025-06-05 09:4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	120무88**	주*회*더*스*이*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08 14:3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7	159허90**	서*림	인천광역시	2025-05-12 17: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	경기34바40**	유*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2 17: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9	39오84**	최*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4 08:4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	57소19**	김*숙	서울특별시	2025-06-04 17:5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1	경기89바43**	유*식	경기도 광주시	2025-06-04 08: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2	135고23**	이*윤	서울특별시	2025-06-05 20: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	40더39**	이*욱	경기도 용인시	2025-06-05 19: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4	205보93**	L*Y*N*F*N	경기도 부천시	2025-06-06 12: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5	59조88**	주*회*티*피*(*M*C*	서울특별시	2025-06-04 14:2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6	222허43**	농*회*법*청*팜*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5-04-28 10:33	상일IC~상일2교	50000
47	13보17**	김*	충청남도 당진시	2025-06-02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8	서울32사47**	곽*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2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9	54라19**	현*캐*탈*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5-05-29 09:02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50	23서19**	김*만	서울특별시	2025-05-30 09:09	구로교~대림삼거리	50000
51	22노40**	디*이*엠*린*경*식*사	서울특별시	2025-05-14 07:53	경복궁교차로(동십자각)	50000
52	16버80**	주*민	서울특별시	2025-06-02 09:44	용화여고~노원역	50000
53	194호43**	엄*현	서울특별시	2025-05-15 17: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105오70**	문*호	서울특별시	2025-06-05 11: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5	경기37바90**	김*재	경기도 부천시	2025-06-05 18: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6	156부20**	주*회*와*디*퍼*	서울특별시	2025-06-05 15:1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7	69부89**	오*경	경기도 부천시	2025-06-04 17:43	남태령고개~남태령역	50000
58	84모97**	이*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4 08:47	태릉~서울여대	50000
59	274무13**	주*회*슬*운*리*	경기도 화성시	2025-06-07 17: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60	192마98**	정*만	경기도 화성시	2025-06-07 20:0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61	54서75**	이*숙	서울특별시	2025-06-02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2	152나63**	정*훈	서울특별시	2025-06-04 09: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3	71고93**	장*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6-05 16:3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64	84보01**	장*주	충청남도 천안시	2025-06-05 16: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5	71고93**	장*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6-05 16:3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66	175머90**	Y*N*O*G*E*	경기도 안양시	2025-06-05 17: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7	125하22**	김*주	서울특별시	2025-05-14 08:29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68	95수68**	(*)*려*랜*	경기도 안성시	2025-06-06 16:2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69	228노34**	주*회*트*아*앤*	서울특별시	2025-06-04 01:5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0	101하63**	박*	서울특별시	2025-05-23 13:3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1	47저03**	송*호	서울특별시	2025-05-29 17:54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0 (신사동)	50000
72	130호21**	나*용	경기도 용인시	2025-05-28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3	서울31자46**	김*호	서울특별시	2025-06-02 14:32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74	41오77**	최*관	서울특별시	2025-06-02 10:11	난곡사거리~신림역	50000
75	334소57**	주*회*서*	경기도 김포시	2025-06-02 18:23	사대부고앞교차로~종암사거리	50000
76	22마75**	이*애	서울특별시	2025-06-03 15:48	사당역~이수역사거리	50000
77	80서28**	이*자	경기도 성남시	2025-06-02 11:43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78	서울31자50**	원*동	서울특별시	2025-06-02 11:46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79	서울31아70**	김*휴	경기도 용인시	2025-06-02 12:41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80	80어54**	배*오	경기도 양주시	2025-06-05 18: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1	경기73바86**	여*투*주*회*	경기도 화성시	2025-06-04 18:5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82	23너52**	김*걸	서울특별시	2025-06-05 17: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3	183머81**	주*회*나*코*아	경기도 고양시	2025-06-06 15:4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84	19호48**	주*회*블*렌*카	서울특별시	2025-06-02 0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5	54마06**	박*순	서울특별시	2025-06-02 10:3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86	18부68**	이*혜	경기도 성남시	2025-06-05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7	306더48**	주*회*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5-15 15: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8	82너64**	최*일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04 09:3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89	19러65**	박*남	서울특별시	2025-06-03 09:5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90	119너20**	안*철	경기도 평택시	2025-06-04 21:05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91	84로13**	지*남	서울특별시	2025-06-04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2	178로68**	주*회*에*에*케*	서울특별시	2025-06-05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3	153어65**	이*영	경기도 안산시	2025-06-06 09:4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4	10수03**	배*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6-04 17: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5	12오43**	고*환	경기도 안양시	2025-06-05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6	152조12**	(*)*젠*트*얼*	서울특별시	2025-05-29 18:2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50000
97	35머23**	구*서	경기도 시흥시	2025-06-02 09:2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8	경기83아41**	방*수	경기도 부천시	2025-06-02 09: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99	205하16**	(*)*아	경기도 광주시	2025-05-13 10:1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0	726러30**	주*회*3*5*급*	경기도 용인시	2025-06-04 13: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60000
101	199호46**	주*회*이*투*	서울특별시	2025-05-29 14: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2	157가82**	정*산*건*(*)	인천광역시	2025-05-29 07:5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03	824노28**	(*)*스*기*	서울특별시	2025-06-05 09:2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04	서울31바85**	성*주	서울특별시	2025-06-05 17:4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5	192하48**	(*)*인*스	서울특별시	2025-05-30 16: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06	11조99**	주*회*건*사*소*상	서울특별시	2025-06-04 09:4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7	192머82**	윤*우	대전광역시	2025-06-03 12:3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8	40루40**	I*S*Y*V*K*M*J*N	경기도 안산시	2025-06-08 13:3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9	306더48**	주*회*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5-15 15:1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10	91루81**	최*리	경기도 용인시	2025-06-02 1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1	서울32자27**	강*찬	서울특별시	2025-06-05 12:17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50000
112	160마58**	양*진	광주광역시	2025-06-05 19: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3	60머56**	G*L*M*V*H*B*B*L*O*H*Y*U*L*U*L*	경기도 용인시	2025-06-07 19:2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4	344머88**	유*연	서울특별시	2025-05-19 12:4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15	250루76**	주*회*닥*온	인천광역시	2025-06-04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6	175머90**	Y*N*O*G*E*	경기도 안양시	2025-06-05 17:1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17	47누74**	파*모하메드	서울특별시	2025-06-03 19:5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18	경기89사24**	정*용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2 08: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60000
119	58수87**	모*트*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6-05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0	55저49**	김*원	서울특별시	2025-06-07 17: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1	191호51**	박*별	서울특별시	2025-05-26 17: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22	72마61**	김*균	서울특별시	2025-06-06 16:12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23	229조92**	김*문	서울특별시	2025-06-02 09:0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24	112부27**	최*수	서울특별시	2025-06-07 17: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5	822어88**	김*삼	서울특별시	2025-05-28 09:03	구산역	50000
126	서울동작카33**	김*	서울특별시	2025-06-04 15:19	중앙시장앞	40000
127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2025-06-03 12:5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8	서울31사19**	김*호	서울특별시	2025-06-02 09: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9	33호15**	주*회*레*	인천광역시	2025-05-23 19:06	압구정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130	45보03**	육*균	서울특별시	2025-06-02 20: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31	95고15**	강*석	대전광역시	2025-06-05 18:0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2	120무88**	주*회*더*스*이*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08 14:3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3	서울32사68**	심*택	서울특별시	2025-05-30 08:15	상계14-16단지교차로~마들역	50000
134	서울32자41**	김*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30 08:15	상계14-16단지교차로~마들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5	48고28**	오*용	서울특별시	2025-06-08 20:4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36	253라61**	김*렬	서울특별시	2025-05-30 07:51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37	816도87**	주*회*피*라*브	경기도 고양시	2025-06-04 14:2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8	64나08**	김*환	경기도 화성시	2025-06-04 14:2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39	40루40**	I*S*Y*V*K*M*J*N	경기도 안산시	2025-06-08 13:3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0	143버95**	송*경	광주광역시	2025-06-05 19: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41	40어24**	문*례	서울특별시	2025-06-04 08:22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42	165하24**	세*기*물*(*명*)	서울특별시	2025-05-28 20: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3	서울31아18**	정*섭	서울특별시	2025-06-02 08:1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44	서울38아84**	손*종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2 08:0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45	30두13**	민*화	서울특별시	2025-06-02 16:0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6	36하14**	조*윤	서울특별시	2025-05-12 20: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7	17버08**	왕*호	서울특별시	2025-06-06 11: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48	133하30**	박*영	경기도 수원시	2025-03-31 19:4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49	38누11**	김*만	서울특별시	2025-06-02 12:38	청과시장입구교차로~문래동사거리	50000
150	240조34**	정*영	대전광역시	2025-06-08 07: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1	67러06**	김*희	경기도 가평군	2025-06-04 17: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2	51소64**	한*원	서울특별시	2025-06-05 18:5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3	229호80**	(*)*이*앤*이*스	서울특별시	2025-05-09 16:0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4	166도32**	김*	경기도 고양시	2025-06-04 17: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5	62보03**	이*호	경기도 고양시	2025-06-07 07: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6	149누52**	K*M*O*C*S*E*Y*N	서울특별시	2025-06-04 13: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7	60고31**	조*우	경기도 동두천시	2025-04-21 18:09	대방건설앞	50000
158	361라69**	양*선	전라남도 장성군	2025-06-05 17:1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59	91소07**	이*승	서울특별시	2025-06-02 1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0	인천부평자86**	김*수	인천광역시	2025-05-29 19:03	영등포로터리~영등포시장교차로	40000
161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2 10:56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2	56어67**	P*O*C*A*T*A*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03 10:1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3	161호23**	선*철	경기도 구리시	2025-05-15 09:2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64	70호12**	김*종	서울특별시	2025-05-21 09: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60000
16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3 18:38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66	191하24**	(*)*일*메*드*리*	서울특별시	2025-05-28 17: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67	39오84**	최*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4 08:4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68	40루40**	I*S*Y*V*K*M*J*N	경기도 안산시	2025-06-08 13: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69	서울70자25**	주*회*제*엠*웰*	서울특별시	2025-06-07 20:24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60000
170	335보84**	박*희	서울특별시	2025-06-05 17:3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1	115러53**	주*회*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5-05-15 17:2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2	31하90**	차*자*트*주*회*	경기도 안양시	2025-06-07 11:37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73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2025-05-23 17:5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7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8 14:51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75	서울31자76**	김*수	서울특별시	2025-06-08 08:3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76	112부27**	최*수	서울특별시	2025-06-07 17: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7	346로67**	(*)*이*알*피	서울특별시	2025-05-16 07:17	대치역~도곡역	50000
178	355로18**	무*풍*장*주*회*	경기도 하남시	2025-06-05 17: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79	82너97**	박*희	경기도 하남시	2025-06-05 08: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80	57두36**	이*금	서울특별시	2025-06-05 20: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1	320무94**	이*수	경상북도 구미시	2025-06-03 13: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82	19두63**	안*환	인천광역시	2025-06-02 16:2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83	263수15**	박*주	경기도 광명시	2025-06-06 23:3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184	58누49**	김*훈	인천광역시	2025-06-05 12:2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85	서울32바74**	임*영	서울특별시	2025-06-08 11:0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86	88노49**	하*수	서울특별시	2025-06-02 17:5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87	01로76**	손*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6-04 16:2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8	88보50**	이*근	서울특별시	2025-06-07 10: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9	282구46**	주*회*다*아*드*발	경기도 화성시	2025-05-16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0	170호17**	에*에*알*퍼*	인천광역시	2025-05-29 17:2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1	109더88**	이*지	서울특별시	2025-05-26 17: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92	101하63**	박*	서울특별시	2025-05-23 13: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3	경기85아43**	유*상	경기도 동두천시	2025-06-04 08: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94	93오40**	박*길	서울특별시	2025-06-03 16:5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95	205보93**	L*Y*N*F*N	경기도 부천시	2025-06-06 12: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96	30구90**	박*식	서울특별시	2025-06-03 09: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7	서울87자31**	김*일	서울특별시	2025-06-04 07:27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50000
198	서울31아17**	전*익	경기도 부천시	2025-06-04 08:59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99	37고67**	송*순	경기도 고양시	2025-06-04 17:3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00	52너69**	황*오	서울특별시	2025-05-27 17:04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201	223허96**	에*지*비*&*m*;*	서울특별시	2025-05-27 19:12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202	233호15**	주*회*더*유*스*W*U*I*c*)	경기도 김포시	2025-05-30 21:2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03	185주75**	신*식	서울특별시	2025-05-27 18:37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204	35우72**	정*복	서울특별시	2025-05-29 07:45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205	196호99**	원*라*스*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5-05-30 17: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06	820부71**	이*제	서울특별시	2025-06-04 08:3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07	67무48**	문*호	서울특별시	2025-06-05 19: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08	서울서초카05**	최*선	서울특별시	2025-05-25 20:12	신촌역~창천동삼거리	40000
209	56머67**	P*O*C*A*T*A*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03 10:0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10	서울31바28**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4 09:2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11	60저37**	전*규	경기도 김포시	2025-06-06 15:29	북가좌동 DMC래미안이편한세상아파트	50000
212	210구96**	박*	서울특별시	2025-05-31 20:51	금융감독원~사학연금서울센터	50000
213	서울32자52**	정*열	서울특별시	2025-06-05 07:4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14	25조41**	김*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6 23:4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5	253라61**	김*열	서울특별시	2025-05-19 07:37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216	208버70**	보*콘*터*식*사	경기도 평택시	2025-05-21 18: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7	36서46**	김*주	서울특별시	2025-06-04 16: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18	28노24**	진*근	서울특별시	2025-06-05 18:5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19	서울32사47**	민*기	경기도 고양시	2025-06-07 15:47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20	75고96**	신*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2025-06-02 15:30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221	18러07**	디*치*트*스*주*	서울특별시	2025-06-05 09:4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22	195두48**	백*진	서울특별시	2025-06-07 20: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23	143호34**	정*세	경기도 성남시	2025-05-30 12:2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4	192호97**	코*(*)	경기도 안양시	2025-05-30 18:2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25	12나17**	스*이*어*주*회*	서울특별시	2025-06-04 19:2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26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6-07 10: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27	경기35바58**	서*안	경기도 안양시	2025-06-05 19:0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28	803서10**	박*희	서울특별시	2025-06-02 17:5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29	17구83**	장*옥	경기도 고양시	2025-06-03 14:03	은평뉴타운~동산육교	50000
230	014가87**	유*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4 08:49	태릉~화랑대사거리	60000
231	60머56**	G*L*M*V*H*B*B*L*O*H*Y*U*L*U*L*	경기도 용인시	2025-06-07 19:1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32	338러43**	변*우	서울특별시	2025-06-05 18:4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33	11조99**	주*회*건*사*소*상	서울특별시	2025-06-04 09: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4	169호92**	김*빈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11 16:2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35	50저33**	윤*화	경기도 부천시	2025-06-02 17:4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36	28더70**	박*규	경기도 이천시	2025-06-04 08:37	강남소방서앞	50000
237	203서83**	진*돌	경기도 고양시	2025-06-05 19:21	은평뉴타운10단지~동산사거리	50000
238	50머41**	원*성	서울특별시	2025-06-04 1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39	서울32사65**	김*구	서울특별시	2025-06-03 09:2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40	62보03**	이*호	경기도 고양시	2025-06-07 07:3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41	22러57**	이*도	경상북도 구미시	2025-06-01 10: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2	45마06**	이*린	서울특별시	2025-06-06 12:1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43	223오13**	한*리	서울특별시	2025-06-04 19:5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44	174하79**	윤*열	서울특별시	2025-05-12 10: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5	169조11**	주*회*코*아*친*자*	경기도 광주시	2025-06-04 1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6	27루35**	미*도*개*(*)	인천광역시	2025-06-07 13:13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4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3 11:5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48	183저37**	김*민	서울특별시	2025-06-04 11: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49	58도43**	전*현	경기도 수원시	2025-06-03 06:4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50	서울38아83**	신*근	경기도 하남시	2025-06-04 07:5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51	167호67**	장*자	전라북도 익산시	2025-05-17 11: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2	인천81바85**	조*식	인천광역시	2025-06-02 07:52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53	144저61**	유*석	서울특별시	2025-06-04 18: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4	141소89**	유*현	서울특별시	2025-06-04 09: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5	337거88**	김*현	인천광역시	2025-06-05 19:5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6	28가69**	황*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5 1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7	75고95**	씨*이*스*주*	경기도 안양시	2025-06-04 07:57	내곡IC~염곡IC	60000
258	235보84**	최*숙	경기도 화성시	2025-06-03 20:06	윤중초교앞교차로~여의교교차로	50000
259	08부90**	김*리	부산광역시	2025-06-05 18: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60	27서02**	신*대	대구광역시	2025-06-07 10: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1	122하60**	(*)*앤*	서울특별시	2025-05-20 10:10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사거리	50000
262	260오37**	한*형	서울특별시	2025-06-03 17:4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3	824루20**	김*민	경기도 성남시	2025-05-14 08:0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4	서울31바88**	김*두	서울특별시	2025-06-05 18:0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65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6-07 10: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6	30조17**	김*만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6 14:00	상봉사거리~망우역교차로	50000
267	47어23**	유*순	서울특별시	2025-06-04 12:16	봉천고개~은천삼거리	50000
268	서울32아17**	문*주	서울특별시	2025-05-28 07:26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9	서울31자90**	최*진	서울특별시	2025-06-04 16:53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70	81주71**	김*기	경기도 포천시	2025-06-05 12:1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71	236거41**	이*연	서울특별시	2025-06-05 18:3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2	서울38아37**	김*욱	서울특별시	2025-06-05 16:13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50000
273	서울31바76**	양*철	인천광역시	2025-06-04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74	96고94**	이*규	서울특별시	2025-06-04 11:5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75	306더48**	주*회*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5-15 15: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6	93로31**	윤*중	서울특별시	2025-06-02 14:51	강동역	50000
277	162거49**	김*상	서울특별시	2025-06-04 08: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8	65거93**	이*숙	서울특별시	2025-06-05 1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79	33노77**	권*녀	서울특별시	2025-06-02 10: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0	150가26**	김*윤	경기도 화성시	2025-06-02 09:2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81	경기37바53**	홍*기	경기도 부천시	2025-06-05 18: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2	19도33**	정*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4 08:29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83	34고51**	주*회*미*이	서울특별시	2025-06-05 15: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4	165수33**	김*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2 17: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85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6-04 19: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86	서울32사98**	노*주	서울특별시	2025-06-05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7	142호64**	노*하	서울특별시	2025-05-23 17: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8	380보52**	박*하	서울특별시	2025-06-02 07:4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89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2025-06-03 12:5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0	08로52**	양*성	경기도 시흥시	2025-06-02 09:3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91	50로21**	소*경	경기도 광주시	2025-06-06 19:24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92	서울14나83**	한*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4 08:49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60000
293	02호02**	이*하	경기도 파주시	2025-02-11 07: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75하15**	김*익	인천광역시	2025-04-25 15:4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	서울32사79**	이*구	서울특별시	2025-06-10 17:04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3	57너30**	에*엠*레*딩*식*사	인천광역시	2025-06-13 15:3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	36로84**	김*필	서울특별시	2025-06-15 21:5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5	152서52**	송*영	경기도 광주시	2025-06-10 10: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	172하42**	주*회*제*럴*커*리*	경기도 화성시	2025-05-28 02:16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	172허35**	주*회*아*소*씨*씨	서울특별시	2025-05-24 14:1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	172허71**	브*지*베*먼*그*아*아*한*사	서울특별시	2025-05-27 17: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9	경기45바49**	박*수	경기도 고양시	2025-06-10 20: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	27조29**	박*자	충청남도 서산시	2025-06-09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1	서울강남다01**	권*늘	서울특별시	2025-06-07 15:19	석촌역~송파사거리	40000
12	42로78**	김*전	서울특별시	2025-06-09 08:41	강동구청역~풍납사거리	50000
13	336부59**	주*회*지*파*너*	서울특별시	2025-06-09 08:47	성내교~올림픽회관 교차로	50000
14	14우82**	박*애	서울특별시	2025-05-27 15:28	시흥대로 박미삼거리 방향	50000
15	서울31바27**	김*문	서울특별시	2025-06-09 14:15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16	52노79**	최*국	경기도 수원시	2025-06-09 07:52	금천소방서~말미사거리	50000
17	16마29**	표*준	서울특별시	2025-06-10 08:41	성내교~올림픽회관 교차로	50000
18	224거98**	김*희	경기도 부천시	2025-06-15 11:1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9	71소70**	주*회*이*시*템	경기도 군포시	2025-06-06 16:53	녹번역~홍은사거리	60000
20	서울35바79**	이*정	서울특별시	2025-06-11 09:34	태릉~서울여대	50000
21	170주18**	(*)*모*브	서울특별시	2025-06-11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	07머75**	이*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3 18:1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3	서울31자66**	김*규	서울특별시	2025-05-09 15:35	논현역~신사역	50000
24	01거98**	정*규	서울특별시	2025-06-05 16:28	답십리역~답십리역사거리	50000
25	서울38아29**	이*돌	서울특별시	2025-06-13 16:1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	293부10**	서*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3 19: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7	846가16**	이*학	서울특별시	2025-06-12 14:29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50000
28	166도88**	(*)*이*트*홀*스	충청북도 충주시	2025-06-11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	204너62**	박*학	경기도 시흥시	2025-06-15 18: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	82누95**	박*규	경기도 부천시	2025-06-09 08: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	392부83**	김*준	서울특별시	2025-06-10 19:0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2	125호22**	황*영	서울특별시	2025-05-30 07: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3	46조29**	(*)*안*레*축*사*소	경기도 고양시	2025-06-09 08: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	29루99**	김*근	경기도 부천시	2025-06-09 08: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5	서울32아32**	최*민	서울특별시	2025-06-11 17:4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6	360누82**	남*권	서울특별시	2025-06-14 20:1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7	서울31사94**	최*열	경기도 김포시	2025-06-13 07:39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38	82가57**	김*명	서울특별시	2025-06-13 07:29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50000
39	176하66**	(*)*울*탈*스*	서울특별시	2025-05-13 20: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	34호78**	김*희	서울특별시	2025-05-17 11:3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1	16부22**	문*옥	서울특별시	2025-06-09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2	313우12**	박*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1 08:28	화랑대역교차로~화랑대역	50000
43	서울32아12**	김*추	서울특별시	2025-06-12 16:10	말죽거리공원사거리~시민의숲교차로	50000
44	86러32**	이*연	경기도 시흥시	2025-06-12 13: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5	274누58**	주*회*코*이*지	경기도 시흥시	2025-06-04 1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6	41다94**	주*회*라*시*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0 17: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7	60머80**	김*인	서울특별시	2025-06-14 19: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8	126하84**	박*원	서울특별시	2025-05-29 18: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9	89가17**	엄*승	경기도 양주시	2025-06-11 08: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0	40두09**	김*태	서울특별시	2025-06-12 17:2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1	28루08**	M*J*N*I*N*	경기도 이천시	2025-06-09 11: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2	156호21**	지*례	경기도 고양시	2025-05-26 08:58	은평뉴타운10단지앞	50000
53	193하26**	(*)*연	서울특별시	2025-06-04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4	25러58**	김*주	경기도 부천시	2025-06-12 17: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5	04두43**	유*환	서울특별시	2025-06-13 20:4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6	서울38아29**	정*만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1 15:30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50000
57	72수40**	정*택	서울특별시	2025-06-11 19:32	고려대역~종암사거리	60000
58	90더26**	박*규	경기도 안양시	2025-06-10 16:14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50000
59	서울강동카68**	김*성	서울특별시	2025-06-10 16:31	종로5가역~흥인지문교차로	40000
60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5-06-02 12:44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61	168러93**	이*한	경기도 안양시	2025-06-10 10:2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2	서울31바20**	김*진	서울특별시	2025-06-12 08:37	여의도동 4 (한양아파트앞)	50000
63	07부37**	김*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2 09:57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64	40서79**	정*배	서울특별시	2025-06-13 18:4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5	47루32**	소*경	서울특별시	2025-06-10 07: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6	187어96**	김*순	서울특별시	2025-06-12 12: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7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6-14 1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8	225호16**	주*회*노*류*하*프*	서울특별시	2025-06-04 09:13	상계백병원교차로~중계역	50000
69	255마57**	지*선	서울특별시	2025-06-10 17:5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0	179하35**	임*성	서울특별시	2025-06-03 15: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1	86저28**	김*혁	경기도 고양시	2025-06-10 09:55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2	서울31자77**	김*남	경기도 고양시	2025-06-15 16:3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3	16다16**	갈*진	인천광역시	2025-06-10 07:2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4	86가43**	최*호	경기도 성남시	2025-06-09 20:2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5	813모69**	조*율	서울특별시	2025-06-10 19: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76	19러58**	김*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9 07: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7	226도30**	양*관	서울특별시	2025-05-16 18:4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8	55더31**	신*예	경기도 부천시	2025-06-13 17:3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7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9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80	296무37**	전*연	서울특별시	2025-06-09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1	131보93**	L*S*A*Y*N*	경기도 김포시	2025-06-11 09:05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82	152두14**	D*M*E*E*O*G*N*A*A*	경기도 고양시	2025-06-12 07:5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3	60머80**	김*인	서울특별시	2025-06-14 19: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4	89모30**	김*숙	서울특별시	2025-06-09 08:08	내곡IC~염곡IC	50000
85	13무59**	주*회*한*특*	경기도 안성시	2025-06-11 17:0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86	서울31사46**	나*규	서울특별시	2025-06-09 14:15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87	36소06**	박*현	경기도 수원시	2025-06-14 11: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8	820구77**	(*)*민*건	경기도 광주시	2025-06-13 14: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9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6-15 09:5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0	68도16**	(*)*민*축*사*소	서울특별시	2025-06-10 18: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91	29부78**	W*N*O*G*U*	경기도 수원시	2025-06-15 09:4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2	86부33**	유*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3 17: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3	34머40**	플*리*로*틱*주*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6-13 16:21	논현역~반포역	50000
94	125호22**	황*영	서울특별시	2025-05-30 07:1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5	281무29**	주*회*앰*	서울특별시	2025-05-25 13:32	신동초교교차로~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	50000
96	49조45**	서*의	서울특별시	2025-05-26 08:41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50000
97	서울31사67**	박*식	서울특별시	2025-05-27 15:28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98	인천81배23**	홍*우	인천광역시	2025-06-13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9	17누70**	김*배	서울특별시	2025-06-09 0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0	34호78**	김*희	서울특별시	2025-05-17 11: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01	37수59**	(*)*양*너*	경기도 평택시	2025-06-10 08:19	동산육교~은평뉴타운	50000
102	94어55**	박*범	서울특별시	2025-06-09 17:05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103	64소28**	이*택	인천광역시	2025-06-10 17:32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4	05서08**	(*)*신*제*화*업	서울특별시	2025-06-12 09:07	월계1교교차로~하계역	50000
105	41너62**	왕*태	경기도 양주시	2025-06-10 09:0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6	25부99**	최*학	서울특별시	2025-06-13 07:49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7	300수48**	김*선	경기도 광주시	2025-06-09 21:34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8	90두23**	차*섭	경기도 김포시	2025-06-13 08:07	개화교	50000
109	154저93**	박*애	서울특별시	2025-06-13 1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10	104두21**	김*순	경기도 양평군	2025-06-10 17: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1	172허35**	주*회*아*소*씨*씨	서울특별시	2025-05-24 14: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12	서울31아67**	정*윤	서울특별시	2025-06-10 13: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3	341수72**	주*회*아*릭*	서울특별시	2025-06-11 10:37	봉천중앙시장앞	50000
114	서울31바52**	정*열	서울특별시	2025-06-12 09:0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15	162소74**	이*현	경기도 시흥시	2025-06-13 08:2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16	193호65**	박*식	인천광역시	2025-05-30 19:5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7	58두66**	손*현	서울특별시	2025-06-11 13:0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8	168러93**	이*한	경기도 안양시	2025-06-10 10: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9	55러58**	가*현	서울특별시	2025-06-11 08: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20	46조29**	(*)*안*례*축*사*소	경기도 고양시	2025-06-10 0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1	104가25**	한*진	경기도 화성시	2025-06-12 08: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22	39조33**	(*)*에*프*	경기도 화성시	2025-06-14 11: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23	390로34**	C*I*O*G*U	경기도 수원시	2025-06-13 18: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4	62누49**	황*영	서울특별시	2025-06-13 09: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25	157고48**	유*즈*트*(*)	서울특별시	2025-05-09 09:00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50000
126	53더03**	차*상	경기도 고양시	2025-06-13 07: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27	68부75**	황*익	서울특별시	2025-04-29 08:00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28	127누52**	H*S*E*N*E*N*Y*H*A*H*E*	인천광역시	2025-06-14 11: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29	172호24**	이*숙	경기도 고양시	2025-05-28 07: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30	57노04**	전*현	서울특별시	2025-06-10 18: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1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5-06-10 12: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2	91고55**	월*버*오*식*사	경기도 성남시	2025-06-11 18: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3	37마38**	정*자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3 18: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134	서울31바25**	장*식	경기도 하남시	2025-06-09 07: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5	16더20**	(*)*리*	경기도 과천시	2025-06-10 12: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6	839거50**	강*현	서울특별시	2025-05-26 09: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137	141소41**	송*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0 08: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8	69버69**	김*욱	서울특별시	2025-06-11 21: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39	152호42**	주*회*화*	서울특별시	2025-06-06 15: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0	서울31사48**	신*철	경기도 광주시	2025-06-10 18:3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41	346버61**	주*회*태*티*알	경기도 안산시	2025-06-09 18: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42	26오06**	양*숙	경기도 양주시	2025-06-13 08: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43	67구14**	주*회*이*인*스	인천광역시	2025-05-29 17: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44	48마86**	박*은	서울특별시	2025-06-09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5	19러58**	김*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09 13: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6	56구21**	김*숙	서울특별시	2025-06-09 20: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7	66도52**	김*성	서울특별시	2025-06-10 18: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8	172하33**	김*웅	서울특별시	2025-05-19 17:4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49	215루19**	김*찬	광주광역시	2025-06-11 18: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50	37다93**	고*섭	경기도 김포시	2025-06-09 19:0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1	168러93**	이*한	경기도 안양시	2025-06-10 10:1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2	69머66**	주*숙	경기도 평택시	2025-06-11 16:0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3	360누82**	남*권	서울특별시	2025-06-14 20: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4	211누51**	김*택	서울특별시	2025-06-11 18:0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5	48우93**	H*T*I*R*C*C*I*E*H*R*N*U*U*A*A*H*N*	경상북도 경주시	2025-06-15 12:2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6	49러08**	박*안	서울특별시	2025-06-12 09: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57	12조25**	이*겸	서울특별시	2025-06-12 1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8	823로54**	주*회*미*에*엠	경기도 양주시	2025-06-12 09:3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59	09도46**	P*A*D*N*C*U	경기도 부천시	2025-06-12 17: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0	28두07**	정*준	서울특별시	2025-06-13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1	152주19**	곽*희	서울특별시	2025-06-13 18: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2	192호38**	이*희	서울특별시	2025-05-29 17:3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63	278서41**	최*자	경기도 화성시	2025-06-10 09: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4	191너69**	(*)*드*비*	서울특별시	2025-05-16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5	65저53**	윤*정	서울특별시	2025-06-10 18:1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166	서울31사97**	김*홍	서울특별시	2025-06-11 09:3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7	163보43**	김*수	경기도 포천시	2025-06-13 19: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8	63부88**	황*호	경기도 수원시	2025-06-13 20: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69	76서25**	N*N*H*	서울특별시	2025-06-09 09:28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170	145구22**	주*회*강*건*	서울특별시	2025-05-29 07:40	매봉역~양재역방면	50000
171	45주13**	이*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2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2	서울31사93**	고*록	경기도 부천시	2025-06-14 09:21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173	196호30**	이*우	경기도 양주시	2025-05-27 20:0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4	120무88**	주*회*더*스*이*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15 15: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5	245두62**	유*경	서울특별시	2025-06-09 18:1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76	41너62**	왕*태	경기도 양주시	2025-06-10 08:5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77	89더21**	우*건*	부산광역시	2025-06-09 11:2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78	85모20**	이*애	서울특별시	2025-06-09 09: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9	52루02**	이*자	경기도 김포시	2025-06-12 18:4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0	서울31아25**	한*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5 18:0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181	269머25**	나*민	서울특별시	2025-06-11 14: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1동)	
182	298조26**	윤*성	서울특별시	2025-06-12 20: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3	29다67**	P*A*G*A*G*U	경기도 안산시	2025-06-14 13:0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84	서울31바38**	여*권	서울특별시	2025-06-13 17:4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85	152하86**	이*서	서울특별시	2025-05-12 20: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86	196호58**	오*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28 16:1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87	04수33**	최*숙	경기도 파주시	2025-06-11 11: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8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5-06-09 14:5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89	83거85**	정*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5-06-11 07:2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90	141오71**	홍*석	서울특별시	2025-06-14 12: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91	42오50**	유*훈	서울특별시	2025-06-04 09:18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192	385머56**	J*N*I*G*I*N	경기도 부천시	2025-06-04 09:18	구로교~대림사거리	50000
193	165하24**	세*기*물*(*명*)	서울특별시	2025-06-04 20: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4	34우19**	유*열	인천광역시	2025-06-11 08:5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95	29하95**	김*린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08 18:07	반포ic~서초ic	50000
196	24머03**	원*연	서울특별시	2025-06-05 17:5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97	156더16**	주*회*영*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6-05 18:22	우장공원입구교차로~한국폴리텍대학입구	50000
198	68다91**	이*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6-07 14:19	양화교~염창역	50000
199	101다32**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2025-06-11 09: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00	02가97**	문*수	서울특별시	2025-06-11 09: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01	133러86**	구*복	서울특별시	2025-06-12 1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02	145보21**	(*)*스*엠*연*소	경기도 고양시	2025-06-11 18:0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03	24서47**	김*	서울특별시	2025-06-15 06: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04	89소59**	주*회*일*패*지	경기도 광주시	2025-06-12 11: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5	224호18**	권*주	경기도 화성시	2025-04-28 18:07	양재IC~서초IC	50000
206	103호10**	황*용	대구광역시	2025-06-08 19:2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버스정류소(시외방향)	
207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6-15 09:5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8	32로48**	조*기	경기도 성남시	2025-06-09 10:1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09	51다07**	A*G*U*I*I*A*E*M*Q*E*Q*I*	인천광역시	2025-06-14 14: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0	275수72**	피*지*발*식*사	서울특별시	2025-06-11 17:5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55	50000
211	서울32자50**	김*용	서울특별시	2025-06-11 19: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12	서울31자65**	김*연	서울특별시	2025-06-12 09: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3	70로57**	주*회*이*트*이*	서울특별시	2025-06-13 21: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214	177하52**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5-06-12 09: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15	114보62**	전*윤	경기도 파주시	2025-06-10 17: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16	179하35**	임*성	서울특별시	2025-06-03 15:2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7	60더82**	김*은	서울특별시	2025-06-10 08: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8	141무30**	정*영	서울특별시	2025-06-12 18:3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19	322주25**	주*회*당*리*파*	서울특별시	2025-06-12 1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0	16호30**	윤*성	서울특별시	2025-05-08 18:17	금천구청입구교차로~시흥사거리	50000
221	61모69**	이*안	인천광역시	2025-06-12 11:0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22	52오44**	이*우	서울특별시	2025-06-11 17:44	개화사거리~김포공항사거리	50000
223	152호42**	주*회*회*	서울특별시	2025-06-06 15:51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24	55호70**	(*)*아*트*	충청남도 공주시	2025-06-10 17: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225	290라61**	마*형	서울특별시	2025-06-11 18: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26	258가80**	신*리	경기도 파주시	2025-06-11 12:3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27	64저02**	이*근	경기도 안양시	2025-06-14 14: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28	269서66**	김*성	경기도 광주시	2025-06-13 18: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9	41루66**	박*현	경기도 성남시	2025-06-12 09: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30	152호42**	주*회*회*	서울특별시	2025-06-06 15: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1	67저17**	주*회*아*엠	서울특별시	2025-06-09 0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2	서울31자65**	이*병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3 07:4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33	43수20**	(*)*티*스	서울특별시	2025-06-11 10: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4	경기14모73**	이*주	서울특별시	2025-06-12 17: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60000
235	39가04**	Q*A*G*N*H*	경기도 안양시	2025-06-09 08:2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36	177호76**	(*)*이*티*터*	인천광역시	2025-06-12 17:3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37	69구19**	실*건*세*디*인*주*	서울특별시	2025-06-12 07:40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238	83너84**	박*호	서울특별시	2025-06-12 08:40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성내교	50000
239	127누52**	H*S*E*N*E*N*Y*H*A*H*E*	인천광역시	2025-06-14 11: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0	서울32아10**	이*홍	경기도 하남시	2025-06-09 15:20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241	845라20**	정*진	광주광역시	2025-06-10 08:0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42	101하87**	레*포*퍼*	서울특별시	2025-05-26 16:4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243	82무69**	엠*이*러*코*아*식*사	서울특별시	2025-06-11 09: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4	95마31**	이*섭	서울특별시	2025-06-13 09:22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45	29부78**	W*N*O*G*U*	경기도 수원시	2025-06-15 09: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46	44호25**	김*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22 14:34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	50000
247	25라01**	주*회*티*스*이*	서울특별시	2025-06-09 20: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48	161하13**	고*선	대전광역시	2025-05-14 17:21	우이교~강북구청 사거리	50000
249	20러76**	지*용	인천광역시	2025-06-13 18:0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0	96도04**	주*회*솔*션*러*코*아	서울특별시	2025-06-09 18:5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51	125하10**	이*수	충청남도 아산시	2025-05-27 20: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52	300더15**	J*N*H*N*A*	경기도 양주시	2025-06-13 18:5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3	경기76아33**	주*회*공*관*여*사	경기도 수원시	2025-06-09 19:1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254	172허35**	주*회*아*소*씨*씨	서울특별시	2025-05-24 14:1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5	08주18**	윤*중	경기도 평택시	2025-06-09 08:5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56	815두33**	주*회*경*푸*북*	경기도 고양시	2025-06-10 18:3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57	81머88**	김*준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2 09: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8	67러73**	박*철	인천광역시	2025-06-14 11:58	무학동 독립문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59	101다32**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2025-06-11 09: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0	62마82**	김*의	경기도 수원시	2025-06-13 13:03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1	17고71**	주*회*스*디*스*드	서울특별시	2025-06-13 13:0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2	04도71**	박*영	서울특별시	2025-06-10 08: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3	서울32사73**	주*규	서울특별시	2025-06-12 07:31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264	22소41**	한*국	충청북도 충주시	2025-06-12 20: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65	서울31아31**	전*식	서울특별시	2025-06-11 20: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6	13구28**	김*환	서울특별시	2025-06-13 17: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67	202가99**	주*회*제*원*트*스	서울특별시	2025-05-29 23:0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68	87두51**	정*광	경기도 광주시	2025-06-10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9	13고89**	이*기	경기도 안양시	2025-06-10 10:2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0	54다01**	김*중	서울특별시	2025-06-05 16:28	답십리역	50000
271	217우86**	김*태	서울특별시	2025-05-16 11:37	내곡IC~염곡IC	50000
272	69머66**	주*숙	경기도 평택시	2025-06-11 15: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3	198로45**	안*선	경기도 구리시	2025-06-12 1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74	200소67**	한*원	서울특별시	2025-06-15 21:5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75	96고07**	조*만	경기도 포천시	2025-06-13 22:2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76	60거65**	배*옥	서울특별시	2025-06-13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77	81루60**	청*실*주*회*	서울특별시	2025-06-14 10: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0000
278	014가77**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5-05-29 16:39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60000
279	82더32**	이*현	서울특별시	2025-06-15 10:10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80	222호18**	퍼*(*)	경기도 광주시	2025-06-06 20:4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81	170오15**	오*헌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1 07:2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82	201러53**	이*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3 08: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83	200모48**	L*Y*N*C*U*N	경기도 안산시	2025-06-11 1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4	58두42**	Z*A*G*I*	서울특별시	2025-06-13 23:1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85	177하52**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5-06-12 10: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86	53나34**	S*R*E*N*R*M*R*A	서울특별시	2025-05-12 08:18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교차로	50000
287	201모40**	김*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1 17: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88	26구73**	이*훈	서울특별시	2025-06-13 20:2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89	175마50**	서*철	서울특별시	2025-06-10 08:0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90	35루12**	한*순	서울특별시	2025-06-12 17: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91	69소58**	조*숙	경기도 부천시	2025-06-14 14:59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92	96더97**	이*빈	경기도 평택시	2025-06-13 15:0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93	67도87**	이*희	서울특별시	2025-06-09 18:4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94	57너30**	에*엠*레*딩*식*사	인천광역시	2025-06-13 15:3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95	321거23**	주*회*디*이*유*온	경기도 김포시	2025-06-05 09:5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96	191허38**	곽*민	서울특별시	2025-04-21 07:58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교차로	50000
297	서울31바73**	우*하	서울특별시	2025-06-10 07:11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98	196하87**	신*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5-21 17:2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99	90도01**	이*기	경기도 파주시	2025-06-10 18:4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00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2025-06-12 1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50000
301	148서67**	유*현	서울특별시	2025-06-09 17: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2	05조41**	(*)*미*엔*	경기도 안산시	2025-06-15 14:5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03	56부26**	주*규	서울특별시	2025-06-11 17: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04	29부78**	W*N*O*G*U*	경기도 수원시	2025-06-15 09: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05	26보19**	V*K*I*O*S*R*A*B*K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6-10 08: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6	257머30**	이*원	서울특별시	2025-06-10 14: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7	경기37바45**	김*덕	경기도 부천시	2025-06-10 07:44	개화동 영산PVC 상사	50000
308	146머40**	지*욱	경기도 부천시	2025-06-11 17: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9	225호15**	조*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28 07: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10	09누80**	(*)*아*딩*	서울특별시	2025-06-04 12:5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311	서울31사71**	김*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2 08:44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312	01주17**	정*민	서울특별시	2025-06-13 08: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13	02하93**	박*영	서울특별시	2025-05-30 18:2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314	170주18**	(*)*모*브	서울특별시	2025-06-10 09: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5	159어88**	주*회*지*칼*	경기도 광주시	2025-06-10 07: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16	71노91**	김*수	서울특별시	2025-06-11 12:22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17	60다17**	권*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2025-06-04 12:5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318	61두18**	지*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2 08:47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	50000
319	34호78**	김*희	서울특별시	2025-05-17 11:3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0	서울32사81**	서*양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9 09:30	삼육대~태릉	50000
321	서울32바51**	간*선	서울특별시	2025-06-10 09:59	몽촌토성역~잠실역	50000
322	56고73**	김*권	서울특별시	2025-06-10 18:1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23	134수97**	김*정	서울특별시	2025-06-10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4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2025-06-10 13:0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25	04수33**	최*숙	경기도 파주시	2025-06-11 11:0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6	06보64**	A*R*M*V*H*R*O*B*K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025-06-13 08:4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7	55주15**	조*원	인천광역시	2025-06-13 09: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28	172호11**	(*)*원*앤*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23 12: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29	49나99**	이*기	서울특별시	2025-06-13 19: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30	서울32아14**	정*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1 08:09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331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2025-06-12 18:12	서울교교차로~여의도공원앞 교차로	50000
332	319무78**	문*	서울특별시	2025-05-21 09:19	군자역~아차산역삼거리	50000
333	101호24**	주*회*피*이*트*	경기도 안양시	2025-06-13 11:59	경기고교앞사거리~봉은사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34	101하89**	최*석	부산광역시	2025-06-05 18:0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35	51우48**	김*갑	인천광역시	2025-06-12 09: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6	299두86**	김*균	서울특별시	2025-06-13 16: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37	17보47**	김*훈	경기도 시흥시	2025-06-13 17:4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6-09 17:43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39	서울32자50**	김*용	서울특별시	2025-06-10 19: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40	86우31**	강*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09 10:1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41	85두94**	주*회*에*엠*장*설	경기도 시흥시	2025-06-09 13:5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342	69머66**	주*숙	경기도 평택시	2025-06-11 16: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3	60조40**	조*웅	서울특별시	2025-06-12 18: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44	253가32**	오*균	서울특별시	2025-06-13 19: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5	153러52**	지*현	인천광역시	2025-06-09 18: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46	서울84자68**	장*	서울특별시	2025-06-10 09:0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347	346수96**	한*오	경기도 김포시	2025-06-09 08:3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48	361로34**	윤*원	서울특별시	2025-06-10 15: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49	66도52**	김*성	서울특별시	2025-06-10 18: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0	142가24**	심*숙	서울특별시	2025-06-12 11:0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51	168무30**	(*)*브*더*	경상북도 칠곡군	2025-06-11 07: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52	56다74**	이*순	서울특별시	2025-06-09 18:2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53	42노02**	캠*월*주*회*	경기도 광주시	2025-06-11 19: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54	25구23**	엔*루*식*사	대전광역시	2025-06-15 15:3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55	38가88**	김*환	서울특별시	2025-06-14 14:14	염곡IC~염곡지하차도	50000
356	239조42**	황*경	서울특별시	2025-06-13 17:29	하계5.6단지교차로	50000
357	28나56**	스*리*어*주*	서울특별시	2025-06-13 17:47	동산육교~은평뉴타운	50000
358	209더97**	김*	서울특별시	2025-06-13 17:47	동산육교~은평뉴타운	50000
359	37두81**	김*숙	서울특별시	2025-06-10 09:1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60	83주28**	박*천	경기도 안양시	2025-06-10 17: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1	69로83**	서*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2 08: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2	서울31바22**	유*호	경기도 광주시	2025-06-10 19: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3	82주90**	김*훈	경기도 하남시	2025-06-13 08: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64	175호12**	이*이*프*주*회*	인천광역시	2025-06-12 07:58	양남사거리~영등포유통상가교차로	50000
365	151주42**	서*원	경상북도 영주시	2025-06-12 0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6	02모20**	주*회*에*닉*	경기도 군포시	2025-06-13 18:3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67	서울38아79**	홍*여	경기도 화성시	2025-06-09 20:0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8	32너63**	이*수	경기도 부천시	2025-06-13 17:14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369	310저84**	이*진	경기도 고양시	2025-06-13 0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70	56어97**	최*만	서울특별시	2025-06-14 09:45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71	69거62**	최*경	서울특별시	2025-06-09 0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72	73보56**	조*환	서울특별시	2025-06-13 18:0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60000
373	200루60**	조*철	경기도 양주시	2025-06-13 08:1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74	28더70**	박*규	경기도 이천시	2025-06-15 12:10	영등포역~ 문래동사거리	50000
375	서울중아19**	전*구	서울특별시	2025-06-12 17:19	종로5가역~ 동대문역	40000
376	11소52**	한*현	경기도 김포시	2025-06-15 09: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77	109너12**	황*해	서울특별시	2025-06-13 14: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78	서울31바88**	설*규	서울특별시	2025-06-10 09: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9	159노77**	박*영	서울특별시	2025-06-10 18:2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80	101다32**	강*정	경상남도 진주시	2025-06-11 09: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1	314오70**	이*자	서울특별시	2025-06-09 18:2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82	31우37**	김*우	경기도 고양시	2025-06-13 17:1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83	58보94**	임*재	경기도 성남시	2025-06-11 12:56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84	380머48**	디*투*파*너*주*회*	서울특별시	2025-04-18 16:56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385	128허83**	푸*솔*광*식*사	인천광역시	2025-06-12 01: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86	297두21**	윤*천	서울특별시	2025-06-10 17: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87	02누76**	이*경	서울특별시	2025-06-07 20:16	여의공원로	50000
388	57더21**	임*희	서울특별시	2025-06-11 1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9	97로11**	서*준	경기도 하남시	2025-06-11 07: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90	16주68**	정*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1 19: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91	서울31바79**	김*배	서울특별시	2025-06-12 07:31	몽촌토성역~송파구청사거리	50000
392	64라99**	김*민	경기도 평택시	2025-06-15 23:3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93	62주44**	김*라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12 17: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94	서울06거64**	(*)*성*업	경기도 성남시	2025-06-04 07:54	내곡교~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60000
395	201부92**	양*우	서울특별시	2025-06-12 07:27	봉천중앙시장앞	50000
396	312머72**	권*분	서울특별시	2025-06-14 13:42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97	158조19**	K*M*A*E*I*A*E*S*N*R*V*C*	인천광역시	2025-06-14 15: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98	09수54**	임*윤	서울특별시	2025-06-09 20: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99	53어02**	박*헌	경기도 용인시	2025-06-12 18:1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00	286도63**	김*용	경기도 안산시	2025-06-13 12:0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01	75저54**	심*만	경기도 고양시	2025-06-14 07:53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60000
402	97노78**	우*운	서울특별시	2025-06-11 10: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03	159나13**	박*형	경기도 성남시	2025-06-12 09: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9-14	50000
404	127오31**	Z*A*Z*I*O*G	서울특별시	2025-06-14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5	32버56**	C*U*G*R*N*I*	서울특별시	2025-06-12 09:2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06	82너69**	서*규	경기도 부천시	2025-06-11 17: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7	194호61**	박*랑	경기도 성남시	2025-05-27 16: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8	194호61**	박*랑	경기도 성남시	2025-05-27 16:4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09	서울32자47**	강*춘	서울특별시	2025-06-10 09:2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10	014가89**	김*복	인천광역시	2025-06-09 17: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60000
411	312주98**	에*제*홀*스*주*	부산광역시	2025-05-16 20: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12	41수04**	하*혜	서울특별시	2025-06-14 12:41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13	서울31사71**	이*호	서울특별시	2025-06-13 12:41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14	143호68**	조*현	서울특별시	2025-05-26 09: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15	45러88**	강*숙	경기도 부천시	2025-06-09 17: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16	117저69**	김*국	인천광역시	2025-06-10 17: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17	20버26**	김*금	서울특별시	2025-06-13 19: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8	12누34**	김*식	경기도 용인시	2025-06-05 16:52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419	66라54**	김*주	서울특별시	2025-06-13 17:0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20	경기81자88**	정*길	경기도 성남시	2025-06-09 0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21	224더23**	이*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6-13 18:4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22	05루06**	고*화	대전광역시	2025-06-09 16: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3	28너56**	조*이	경기도 고양시	2025-05-15 08:47	동산육교~은평뉴타운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91호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명: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수취인명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예정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1	㈜건담 (김*희 대표)	(2)배배꼬, 파이브센소커피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로 21-20,	2,108,000	2024	폐문부재
2	㈜기술자들 (김*훈 대표)	(5)8090클럽싸이월드, 메가피자, 뼈참집, 만닥, 올리면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419,	2,108,000	2024	폐문부재
3	㈜대단한에프앤비 (채*수대표)	대단한 갈비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5	2,108,000	2024	주소불명
4	(주)더블유씨엠인터내셔널(원*환대표)	터치카페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3길 66,	2,132,000	2024	이사불명

연번	수취인명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예정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5	㈜더이룸에프앤씨 (전*업대표)	(2)성수옥아궁지, 성수옥솟대해장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4,	2,108,000	2024	폐문부재
6	㈜마마에프앤비 (김*남대표)	조미료를넣지않은참마 마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83,	2,108,000	2024	보관기간 경과
7	㈜미각 (황*우대표)	미각양꼬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3길 22,	2,108,000	2024	폐문부재
8	㈜미라클버즈 (現(주)로보셰프) (이*수대표)	(4)곱가앤곱도리탕, 영웅갈비찜, 냉면대첩, 김치찜대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2길 40,	2,132,000	2024	보관기간 경과
9	㈜봉원에프앤비 (정*원대표)	명동할머니국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12,	2,132,000	2024	보관기간 경과
10	㈜사진공방 (임*빈대표)	비키포토 사진공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가길 30-5	2,132,000	2024	이사불명
11	㈜샐러드로우앤트라타 (김*규대표)	샐러드로우앤트라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41,	2,108,000	2024	보관기간 경과
12	㈜송화의랑 (편*선대표)	오화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00-7,	2,108,000	2024	보관기간 경과
13	㈜씨디씨 (정*영대표)	(2)마라하오, 포샵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40,	2,108,000	2024	폐문부재

연번	수취인명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예정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14	㈜앤츠커뮤니케이션 (조*용대표)	달콤서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79길 99,	2,132,000	2024	폐문부재
15	㈜어깨동무컴퍼니 (조*민대표)	(2)사계절카레, 테이스트오브비엣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길 19	2,108,000	2024	보관기간 경과
16	㈜에듀바움 (홍*일대표)	체리힐 아카데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69,	2,108,000	2024	이사불명
17	㈜오백미라클 (김*석대표)	소공동뚝배기집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2,132,000	2024	수취인 불명
18	㈜유비플랩 (강*서대표)	레인에이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25,	2,132,000	2024	폐문부재
19	㈜일가브라더스 (한*환대표)	(3)돈전쟁, 북촌삼대갈비, 오늘쉐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49,	2,108,000	2024	보관기간 경과
20	㈜청년에프앤비 (이*훈대표)	(3)청년컵밥, 미카코카레, 청년곱창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8길 19,	2,108,000	2024	이사불명
21	㈜크리스피 (손*균대표)	노리 디지털키즈카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36,	1,705,600	2024	수취인 불명
22	㈜펜톤 (이*호대표)	(2)리라김밥, 3일국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6-8,	2,132,000	2024	보관기간 경과

연번	수취인명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예정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23	나이브에프앤비(주) (최*광대표)	일익스프레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1,054,000	2024	수취인 불명
24	덕우왕맥주 (이*우대표)	덕우왕맥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85 2층 202호(마곡동, 마곡사이언스파크뷰)	1,054,000	2024	수취인 불명
25	또올래곱창송파본점 (정*규대표)	또올래곱창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2,132,000	2024	보관기간 경과
26	모두의피자 (이*욱대표)	모두의피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25길 7-1,	2,132,000	2024	보관기간 경과
27	앙팡부티크 (김*승대표)	앙팡부티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19-14,	2,108,000	2024	수취인 불명
28	위니드교육(주) (김*경대표)	위니드수학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55,	2,108,000	2024	수취인 불명
29	이브이파킹서비스(주) (윤*,이*선대표)	이브이피에스(EVPS)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87-19,	2,108,000	2024	이사불명
30	젤리푸드(주) (민*식대표)	젤리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88,	2,108,000	2024	이사불명
31	홀드핀칭 (김*규대표)	홀드핀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11,	1,054,000	2024	이사불명

연번	수취인명	등록위반 영업표지	주소	부과예정액 (원)	위반 연도	반송 사유
32	힐링리듬댄스진흥원 (박*목대표)	힐링리듬댄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7길 4 동남상가3층	1,705,600	2024	보관기간 경과
33	㈜에스엔푸드 (양*남대표)	통닭연구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19,	2,132,000	2023	보관기간 경과

4. 공시송달 기간: 2025. 7. 15. ~ 7. 29.(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공정경제과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 행정청은 공고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과태료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 ☎ 02-2133-5403)

서울특별시의회

[예 규]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7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실장, 담당관”을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담당관”을 “과장”으로 하고, “언론홍보실장”을 삭제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을 별첨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제3조(전결방법) ④ 실장,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은 담당자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5급) 또는 업무분담자(6급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전결방법) ④ 과장, 수석전문위원은 ----------.
⑤ 별표1과 별표2의 전결권자 중의 담당관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언론홍보실장,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다.	⑤ 별표1과 별표2의 전결권자 중의 과장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다.

[별표1]

의장 권한에 관한 사무

(개정 2025. 7.)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1. 공통사항							
1. 방 침	1. 주요업무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세부시행계획 수립			○			
	3.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회람 및 변경		○				
2. 문 서	1. 의회 관련 주요 접수문서 선람					○	
	2. 기타 일반문서 선람						
	가. 중요사항				○		
	나. 일상 반복적인 경미한 사항		○				
3. 법 규	1. 법령 정비(안) 건의 및 협의				○		
	2. 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정비안 방침 결정					○	법제과
	3. 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		○				
	4. 고시문, 공고문의 결정				○		
4.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	
	2. 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					○	
	3.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4. 의원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보고					○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임용 등	1. 공무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가. 5급 이상					○	인사과
	나. 6급 이하				○		
	2.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 발급	○					
6. 복 무	1. 출장 명령 및 복명						
	가. 관 외						
	1) 3급 이상				○		인사과
	2) 4급 (단, 4급 전문위원은 처장 전결)			○			
	3) 5급 이하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의장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나. 관 내						
	1) 3급 이상				○		
	2) 4급 (단, 4급 전문위원은 처장 전결)			○			
	3) 5급 이하		○				
	2. 연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조퇴, 외출의 허가						
	가. 3급 이상				○		
	나. 4급 (단, 4급 전문위원은 처장 전결)			○			
	다. 5급 이하		○				
	3. 특근 명령(승인)				○		
	4. 소속 직원의 당직 변경		○				
2. 의사과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2. 회기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작성 및 회의소집 공고					○	
	나.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선임					○	
	다. 발언 접수 처리					○	
	라. 의원 청가 및 결석 접수 관리					○	
	마. 시정질문 운영계획 수립					○	
	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거 계획 수립					○	
	사. 본회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3. 본회의장 방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회의장 사용 및 방청 허가					○	
	나. 방청 현황 관리		○				
	4.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의회교실 운영			○			
	다. 유관기관 협의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5. 인사청문 및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가. 인사청문요청서 위원회 회부 및 경과보고서 송부					○	
	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출석 요구					○	
2. 의안 및 의원요구 자료 관리	1. 의안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조례안 등 의결사항 이송					○	
	마. 결의안, 건의안 등의 처리결과 회신요청			○			
	바.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사. 철회의 승인					○	
	2. 청원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채택의견서 이송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	
	사. 철회의 승인					○	
	아. 처리 단계별 통지				○		
	3.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가.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허가					○	
	나. 요구자료 의뢰 및 수집 제출		○				
	4. 서면질문서에 관한 사항						
	가. 서면질문서 접수 보고 및 처리(계획)					○	
	나. 서면질문서 이송 및 수집 송부		○				
3. 법규관리	1. 법규 공포 및 발령						
	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나. 서울특별시의회 훈령·예규 발령 처리		○				
	2. 입법예고안 작성·게재 및 관리		○				
4. 회의록 발간 및 관리	1.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불게재 및 자구정정 허가					○	
	나.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 열람·복사허가					○	
	다. 공개대상 회의록 원고 열람·복사		○				
	2.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				
5. 전문도서관 운영	1. 전문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연도별 세부 운영계획 수립				○		
6. 의정정보화	1.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2. 의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3. 디지털 의정위원회 운영						
	가. 위원 위촉 및 해촉					○	
	나. 정기회·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기본계획의 수립					○	
	라.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				○		
3. 언론홍보과							
1. 언론홍보 행정	1. 언론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	
	2.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및 방침 결정					○	
	나. 편집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다. 발간 및 배포 관리		○				
	3. 의정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4. 사진, 영상기록의 제작 및 편집						
	가. 운영계획 수립		○				
	나. 촬영 및 편집	○					
	5. 홍보 간행물 편집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 배부		○				
	6. 일간신문 스크랩 관리	○					
	7. 의회관련 자료의 편집·발간				○		
	8.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다. 기타 여론조사 관련 일반사항		○				
	9.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운영계획 수립				○		
	나. 홈페이지 관리 및 운용		○				
	10. 의회 참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회 참관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나. 의회 참관 우수소감문 시상			○			
	다. 의회 참관 현황 관리		○				
4. 운영지원과							
1. 의회 운영	1. 사무처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	
	2. 의전 및 행사						
	가. 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다. 기념품 및 기념패 제작 관리		○				
	3. 의회사무처 예산 수립					○	
	4. 청사관리 운영계획 수립			○			
	5. 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2. 의정활동 지원	1. 의원의 대외활동 지원						
	가. 연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2.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원			○			
	4. 의원 국제친선교류 추진				○		
3. 의원 신상관련	1. 폐회중 의원 사직서의 처리					○	
	2. 결정된 의원의 사직 허가 및 불허가 통지					○	
	3. 의원 겸직신고 · 공개					○	
4. 의원교육	1. 의원의 교육연수활동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			
5. 상 훈	1. 의장표창 운영						
	가. 제1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해촉					○	
	나. 제1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다. 제2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및 결과보고				○		
	2. 대외기관 표창 상신				○		
	3. 의장 상장			○			
6. 청사관리	1. 당직근무 명령		○				
	2. 당직근무 일지 관리	○					
	3. 직원 후생시설 관리	○					
	4. 의회관련 비상계획 수립 시행			○			
7. 교섭단체 운영 지원	1.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2. 교섭단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					○	
8. 사무 전결	1. 대상사무 조사 및 심의		○				
	2. 사무전결규정 개정					○	
5. 법제과							
1. 입법정책지원	1. 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다. 의정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				
	라. 기타 정책연구관련 일반사항		○				
	2.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나. 위원 위촉 및 해촉					○	
	다.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1) 전체위원회 활동				○		
	2) 소위원회 활동		○				
	3. 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종합평가 계획 수립·결과 보고				○		
	4.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취소, 연구활동 계획 심의·변경 승인					○	
	나. 연구활동비 지급		○				
	5.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2. 법제지원 및 기타 법제관리	1. 의원 또는 상임위원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				
	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가. 소송방침 수립 및 결재					○	
	나.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체결 및 위임장 발부		○				
	다. 쟁송관련 지휘 통제				○		
	라. 쟁송사건 주관과 지정		○				
	마. 소송비용 등 지출		○				
	3.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촉 및 해촉					○	
	나. 의견 조회(자문)		○				
	다. 고문료 지급		○				
	라. 입법조사회답시스템 운영		○				
	4. 기타 법제관리에 관한 사항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의장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3. 지방분권 지원	1.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주민참여행정	1. 주민조례 발안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	
	2. 의정모니터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우수의정모니터 표창계획 수립					○	
	라.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심사계획 및 보고		○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처리결과 보고					○	
	4. 의회 인턴십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6. 재정분석과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2.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3.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4.「빅데이터 예산·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2. 서울시 예산·결산 토론회 개최	1. 예산·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3.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1.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토론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	
	나. 공청회·토론회별 개최 계획					○	
	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공청회·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4. 예산정책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 예산정책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	
	3. 예산정책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4.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7. 인사과							
1. 공무원 인사	1.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장기인력관리계획						
	가. 장기인력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시행계획 수립				○		
	3. 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계획 수립					○	
	나. 시험위탁 요구		○				
	다. 시험위원 선정			○			
	라. 임용등록계획 수립			○			
	마.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바. 임용발령 사항				○		
	4. 공무원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승진계획 및 심사결과					○	
	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		
	다. 다면평가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			
	5. 전보 및 파견(복귀) 및 휴직에 관한 사항						
	가. 전보 및 파견(복귀)계획 수립					○	
	나. 인사발령 사항				○		
	6. 대우공무원						
	가. 선발계획 수립					○	
	나. 선발결과 보고				○		
	7. 명예·조기·정년퇴직						
	가. 비위사실 조회		○				
	나. 명예·조기·정년 퇴직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				
	8. 인사기록 및 전산 관리						
	가. 공무원증 및 전자카드 발급		○				
	나.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	○					
	다. 신원조회 및 전력조회		○				
	라. 인사기록 작성·정정·이송		○				
	9. 근무성적 평정 관련						
	가. 평정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		
	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		
	10.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해임 등					○	
	나.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		
	다.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			○			
	11. 의료·고용보험 등 관련 사항						
	가. 피보험자 자격관리	○					
	나.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				
	다. 보험부담금 납부		○				
	12. 복무관리 관련 사항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가. 복무지침 수립				○		
	나. 휴가업무 지침 수립				○		
	다. 복무지도점검 계획 수립		○				
	라. 시간외 근무관리 사항		○				
	마. 기타 복무관리		○				
2. 반부패·청렴 대책	1. 의회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2. 직원 청렴교육 계획 수립			○			
3. 의원 의무신고	1. 의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운영		○				
	2. 의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이행 운영		○				
	3. 의원 외부강의 신고					○	
4. 감사 관련	1. 사무처 관련 진정, 비위사항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 교육	1. 공무원 교육 관련 사항						
	가. 교육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		
	다.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명령		○				
	2. 직원 학습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			
6. 공무원 후생	1.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		○				
7.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계획 수립 및 실시				○		
	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계획 수립			○			
	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상담		○				
	2.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사 및 조치					○	
8. 목표관리 추진	1. 목표관리제 지침 시달				○		
	2. 목표관리 자료 수집		○				
	3. 목표관리 결과 보고				○		
8. 현장민원과							
1. 민원행정	1. 민원 관련 업무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의정활동 지원 및 민원서비스 콘텐츠 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3.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배부		○				
	4.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자문회의 개최		○				
	5. 민원업무매뉴얼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민원접수 및 관리	1. 의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분석보고					○	
	2. 의회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			
3.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시민권익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	
	3. 시민권익위원회 세부계획 수립			○			
	4. 시민권익위원회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				
9. 전문위원							
1. 위원회 관련	1. 위원장 사임 및 직무대리 보고					○	
	2. 위원의 사임 보고					○	
	3. 간사의 선임 및 사임 보고					○	
	4.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승인					○	
	5. 소위원회 구성					○	
	6. 특별위원회 구성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처장		
	7. 소관위원회 해외연수, 세미나간담회, 계획(변경)방침 수립					○	
	8. 중요사항 또는 민원진정서 접수처리 결과보고					○	

[별표2]

사무처장 권한에 관한 사무

(개정 2025. 7.)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1. 공통사항						
1. 공 사	1. 중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공사계약 및 준공검사(중지, 준공기간 연기 및 설계변경 포함)					
	가. 1건당 도급액 5억원 이상			○		
	나. 1건당 도급액 5억원 미만		○			
2. 용 역, 물품제조 구매 및 기 타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용역 또는 물품제조					
	가. 1억원 이상			○		
	나. 1억원 미만		○			
	3. 물품매입 및 기타					
	가. 1억원 이상			○		
	나. 1억원 미만		○			
	4. 조달물품 구매		○			
3.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1건당 1,000만원 이상			○		
	나. 1건당 1,000만원 미만		○			
4. 봉급, 여비 및 기타	1. 봉급, 여비 및 기타 의무적 경비의 집행		○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운영		○			
5. 자료제출	1. 중요업무 자료 제출				○	
	2. 소관업무 통계 및 기타 경미한 자료 제출		○			
6. 민원 서류처리	1. 중요 진정서 및 건의서				○	
	2. 경미한 진성서 및 건의서		○			
	3.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			
	4.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		○			
7. 기타 일반	1. 부서 및 전문위원실간 업무협조				○	
	2. 소속 부서의 사무분장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3. 사무 인계인수					
	가. 4급간			○		
	나. 5급간		○			
	다. 직원간	○				
	4. 물품의 반납		○			
	5. 물품의 청구와 수리		○			
	6.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 배부		○			
	7.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기관)		○			
	8.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의사과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관련 책자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작성 및 발간			○		
	2. 의사운영관련 통계자료 관리		○			
2. 의안 및 의원요구 자료 관리	1.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		○			
	2.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		○			
	3. 의원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		○			
	4. 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 관리		○			
3. 전문도서관 운영	1.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및 위원 위촉·해촉		○			
	2.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					
	가. 도서 구입		○			
	나. 비도서 및 연속간행물·학회간행물 구입		○			
	다. 전자자료 구입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라.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			
	3. 자료 DB 구축 및 관리					
	가. 서지DB 및 원문DB 구축	○				
	나. 자료 분류, 자료등록 관리, 장비 처리	○				
	4. 도서관 자료 열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료 대출·반납	○				
	나. 도서관 회원 관리	○				
	다. 자료 제적 및 폐기		○			
	라. 장서점검 및 자료 보존 관리	○				
	5. 도서관 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			
	6. 타기관과의 상호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			
4. 의정정보화	1. 의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세부계획 수립			○		
	나. 의정정보화 지원 운영		○			
	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관리					
	가. 세부계획 수립			○		
	나.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운영		○			
3. 언론홍보과						
1. 보도지원 및 분석	1. 기자실 운영 사항		○			
	2. 보도자료 수합 및 제공		○			
	3. 보도사항 분석 및 평가		○			
4. 운영지원과						
1. 의원 신상관련	1. 의원 등록서류 접수		○			
	2. 의원 기록카드 관리	○				
	3. 의원 수첩 및 배치 제작 관리		○			
	4. 의원관련 증명서 발급	○				
2. 청사관리	1. 청사 내외 방호사항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2. 의회 출입증 발급		○			
	3. 보안 관리					
	가. 보안업무 조정 통제		○			
	나.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			
	다. 보안진단부 및 보안점검부 관리	○				
	4. 청사 주차 및 청소		○			
	5. 회의실 대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대관예약시스템 운영	○				
3. 문서 관리	1. 문서접수 및 부서분류	○				
	2. 전자·수기 관인 및 직인 관리		○			
4. 예산 운영	1. 의회예산 편성지침 수립 및 통보				○	
	2. 사무처 소관 예산 확정				○	
	3. 예산 집행계획 작성		○			
	4. 예산 집행 조정					
	가. 주요사항				○	
	나. 기타 일반사항		○			
	5. 예산배정요구	○				
	6. 예산 합의					
	가. 일상경비 및 1천만원 미만 예산 집행 합의	○				
	나. 1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합의		○			
5. 물품 수급관리	1.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			○		
	2. 재물 현황 조사		○			
	3. 물품 소요 조회	○				
	4. 물품 정수의 결정		○			
	5. 불용물품 결정		○			
	6. 물품 관리 전환		○			
	7. 정수관리 대상물품의 정수책정 및 재고관리		○			
6. 지 출	1. 지출원인행위		○			
	2.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3. 자금신청	○				지출원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			
	5. 세입세출외 유가증권 출납	○				
	6. 보수 지급		○			
	7. 의원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		○			
	8. 기간제근로자 등 임금 지급		○			
	9. 세입세출결산 총괄		○			
7. 차량관리	1. 일일배차 명령 및 유류지급	○				
	2. 차량연료 구입	○				
	3. 차량등록 및 검사 수속	○				
	4. 차량불용 결정 및 교체			○		
	5. 차량정비 및 용품구매	○				
8.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1. 청사 업무공간 배치			○		
	2. 시설점검 및 보수		○			
	3. 청사보수용 자재구매		○			
5. 법제과						
1. 입법정책지원	1. 정책연구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	
	나. 일반자료		○			
	4. 국내 입법기관 등 업무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	1. 의회관련 법규집 편찬 간행				○	
	2. 각종 법무관계 자료 편찬 간행		○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처장결재	협조처
		담당자	과장	국장		
6. 재정분석과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1. 국내·외 의회 예산정책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2. 예산·재정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			
2. 예산정책 관련 전문지 간행	1.「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가. 발간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예산과 정책」발간					
	가. 전문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3. 의안의 비용추계	1. 의안의 비용추계					
	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			
	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다. 의안의 비용추계 통계 작성		○			
7. 현장민원과						
1. 민원접수 및 관리	1. 의회신문고 관리자 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2. 의회신문고 관리자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3. 민원접수		○			
	4. 처리부서이송		○			
	5. 민원처리 통지		○			
	6.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7. 의원 민원관리카드 작성		○			

[별표3]

위원장 권한에 관한 사무

(개정 2023. 3.)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위원장 결재	협조처
		팀장 · 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1. 전문위원					
1. 의안 청원심사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		
	2. 소관위원회 의사일정 작성 통보		○		
	3.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 관련자료의 요구			○	
	4. 의안, 청원의 심사보고			○	
2. 자료작성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	
	2. 위원회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	
	3. 의안관련 세미나, 연수회, 공청회 등 자료준비		○		
3. 위원회 행사지원	소관위원회 해외연수, 세미나 간담회 등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관련	1. 위원회 회의준비, 보좌, 진행, 방청 등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예산 및 일반행정 업무 처리		○		
	3. 위원회의 지시사항 처리		○		
	4. 위원회의 진정서 처리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의정국장 직위 신설에 따라 국장 전결사무를 분장하고, 사무처 직제 정비, 기구 및 부서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을 반영 (제3조제4항 및 제5항)

나. '의정국장' 직위 신설에 따른 의정국장 전결사무 분장 (총 39개) (별표1, 2)

다.「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순 변경, 기구 및 부서 명칭 변경 (별표1,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별표1~3(첨부)

-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별표로 갈음

◈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79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을 “의정국장”으로 하고,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을 포함한 4인의 부서장”을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의 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 당시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의사담당관을 포함한 4인의 부서장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제6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의정국장----------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 ⑤ ~ ⑦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사무전결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 조정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의정국장으로 하고, 위원을 의사과장, 언론홍보과장,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의 부서장으로 함
(제6조제4항)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을 결정한 때에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즉시 사용자의 사용허가 기간을 종료할 수 없으며, 취소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허가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전염병 발생, 시설 파손 등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즉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이미 허가된 시설 사용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나. 학교 시설 사용 허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허가된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로 사용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제10조4항)

나. 학교 사정 상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취소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함.(제10조5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9.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9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원생 및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교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나.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제5조)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이에 따른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제6조)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함(제7조)

마. 학교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제9조)

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으로 한다.

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어린이 안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위의 제한 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함(제5조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2. “공직자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
3.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분석
4.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대내외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직자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조사
2.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
3.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교육·연수의 실시
4. 청렴정책 및 부패 방지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
5.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 방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및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직자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 신고) ① 공직자등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등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교육감 또는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 방법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이익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2024년도 모두 3등급에 그치며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감과 공직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건한”을 “건전한”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학교”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와 예산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
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
3.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119 화재 신고 요령
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
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
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이 중요시 되고 있음. 특히 학교에서의 화재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와 함께 학생의 학사일정까지 차질을 준다는 점에서 화재의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화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은 물론, 실태조사와 학교 소방시설 협력체계 등의 구축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화재의 선제적 대응 및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이 보장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제1조 및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제3조)

다.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제5조)

라.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에 대해 규정함 (제6조)

마. 소방 안전교육에 대해 규정함 (제7조)

바.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해 규정함 (제8조)

사.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을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의2를 제7조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9조의2 및 제9조의3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2)의 제목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지원 사업
2.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등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사업
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4.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에 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2항제4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수교육”을 “제9조의 4에 따른 특수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례가 발생해, 실질적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 저해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 침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나. 이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인권보호 및 편의지원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지원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규정함 (제4조제1항)

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및 신고시스템 관련 조항 신설함 (제7조)

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및 편의지원 조항 신설함 (제9조의4)

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의결기한 등으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나. 회의의 운영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와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함(제3조)

나. 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제10조)

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는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통법규 · 기초질서 준수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예방에 관한 지도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연령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고 미성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위험성에 대해 집중하여 교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를 하도록 함(제8조제1항제5호)

나. 교육감은 학생의 연령에 따른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 학교에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개·보수에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면 자재의 일부 파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감은 석면자재의 일부파손시 비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7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 · 직위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 · 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을 규정함(제2조)
나. 공개방법을 규정함(제3조)
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제4조)
라. 예산낭비 등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5조)
마. 성과금 지급 및 포상을 규정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9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장실 등”이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을 “기관”으로, “화장실을 말한다”를 “화장실 등에 적용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장실”을 각각 “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8조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9조 중 “화장실”을 “화장실 등에서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최근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관내 학교의 성폭력·성희롱 신고건수 가운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11.3%)가 강제추행(55.9%)과 성희롱(16.8%)에 이어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나.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는 기존에 주로 화장실에서 발생한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사생활 보호가 절실한 취약 공간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다. 이에 현행 조례에 화장실 외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들을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해당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등’의 정의를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로 하여 본 조례의 대상을 확대함(제2조제1호 신설)

나. 조례상 ‘화장실’을 ‘화장실 등’으로 변경함(제1조 및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서울형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2. “노후 학교시설”이라 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학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
   나. 학생 수 증가, 교육여건 변화, 획일화·정형화된 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3. “서울형 미래학교”이라 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교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교육여건,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가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진 학교
2. 학교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3.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4.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시설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능형 학교
5.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과 설비를 개방·공유할 수 있는 학교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 기준 및 사업 추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
5.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학교의 선정 및 조성 지원) ① 교육감은 시설 노후 수준,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정 절차와 방식,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2.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교육과정상 체육활동을 위한 외부시설의 임차(賃借) 비용 등의 지원
3.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시교사 설치,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버스 배정 등의 지원 방안

제8조(의견수렴 및 홍보 등) ① 교육감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장(이하 “대상 학교장”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추진 여부, 설계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우수 학교시설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지침서 등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침서,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업 절차와 내용 전반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함(제1조~제4조)

나.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정함(제5조)

다.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대상학교의 선정, 대상학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마.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8조)

바.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9조~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기본법」 제17조의5”를 “「교육기본법」 제17조의6”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최근 개발사업의 증가와 학교 주변에서의 싱크홀 사고 등으로 인해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교육안전 강화와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교육기본법」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함(제1조 개정)

나. 교육기관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10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7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7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형캠퍼스”란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초·중등교육법」 상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2.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3.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캠퍼스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형캠퍼스 설립유형 및 절차,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
4.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과대 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도시형캠퍼스 설립기준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된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적정규모학교육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영)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단,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본교와 분교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직원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며 도시형캠퍼스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2.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경력 개발, 복리 후생 등이 본교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학교운영위원회)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위원회는 본교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1명 이상은 도시형캠퍼스의 학부모 또는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와 분리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
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상 위임사항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서울의 특성에 맞도록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성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캠퍼스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 제2조)
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교육감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사항을 신설함(제4조)
라.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에 대해 정의함(제5, 6조)
마. 도시형캠퍼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
바.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8조)
사.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
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0조)
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11조)
차.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105호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12호(2025.06.12.)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제동 98번지 외 19필지 가구 및 획지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종 로 구 청 장

1.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기정)

가구번호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C-4	효제동	67-2	544.4	공동개발 지정	기 공동개발
		94-2	16.5		
		95-1	69.4		
		95-2	6.6		
		98	5,888.8		
		84-1	252.2		
		91	10.5		
		255-17	424.8		
		291-8	0.1		
		85-1	28.6		
		291-7	3.9		
		291-9	10.4		
		291-11	17.6		
		86-3	133.3		
		89-1	85.7		

		90-5	2.5		
		255-33	17.9		
		86-4	116.7		
		113	59.9	-	-
		115-1	34.3	-	-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구번호	위 치		필지면적(㎡)	계획내용	비 고
	동 명	지 번			
C-4	효제동	67-2	544.4	공동개발(지정)	동일소유
		94-2	16.5		
		95-1	69.4		
		95-2	6.6		
		98	5,888.8		
		84-1	252.2		
		91	10.5		
		291-8	0.1		
		85-1	28.6		
		291-7	3.9		
		291-9	10.4		
		291-11	17.6		
		86-3	133.3		
		89-1	85.7		
		90-5	2.5		
		113	59.9		
		115-1	34.3		
		255-33	17.9		
		86-4	116.7	-	미확보 토지
		255-17	424.8	-	도로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C-4 (효제동)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공동개발 지정 기준(동일 소유자)을 적용하여 동일 소유인 113, 115-1번지는 공동개발로 지정 ○ 동일 소유가 아닌 86-4번지와 도로 부분인 255-17번지는 공동개발에서 제외

2.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관계도서는 종로구 건축과(☎02-2148-281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_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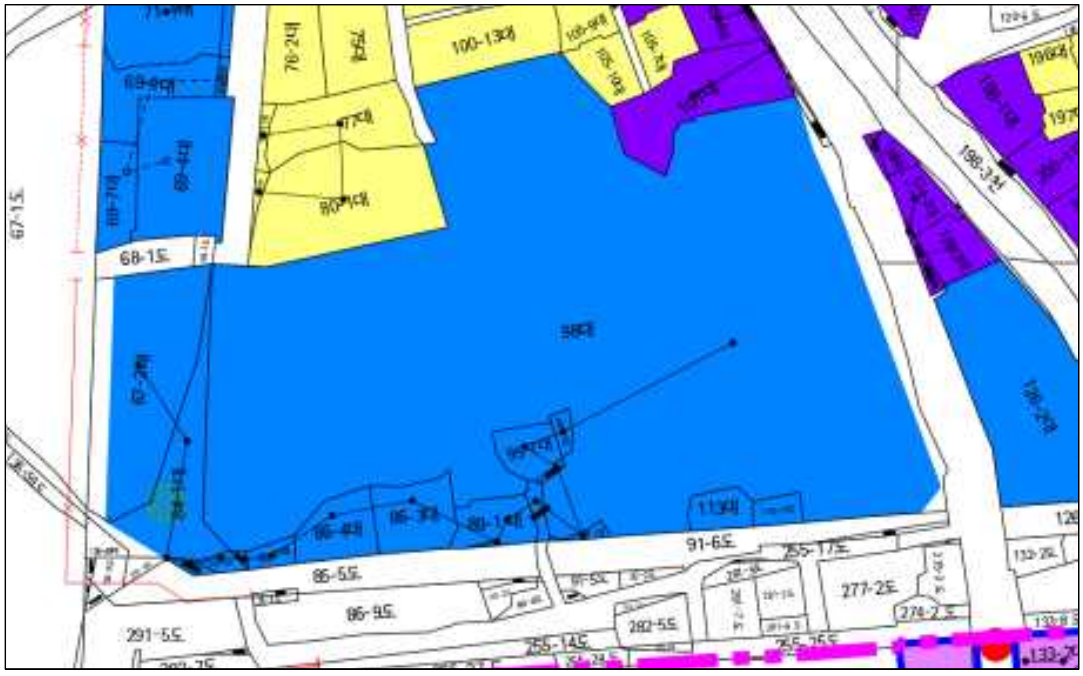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도_변경

◈ 성동구고시 제2025-125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실시계획이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7항 ·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명시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 · 지구등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 · 고시방법)에 따라 지형도면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성 동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	기정	소로	4	18	4	국지도로	136	하왕십리동 979-1	행당동 300-1	-	건설부고시 제768호 (`64.1.24.)	성동구고시 제2020-72호 (`20.7.2.) 미집행구간 실효
	변경	소로	4	18	4	국지도로	68	하왕십리동 979-1	행당동 300-1	-	실효(`25.6.19.)	
2	기정	소로	3	136	6	국지도로	207	성수동1가 659-9	성수동1가 656-323	-	서울시고시 제1969-3호 (`69.1.18.)	서울시고시 1993-136호 (`93.5.4.) 결정 재고시
	변경	소로	3	136	6	국지도로	207	성수동1가 659-9	성수동1가 656-323	-	실효(`25.6.19.)	
3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20	성수동1가 656-1076	성수동1가 656-1027	-	서울시고시 제1969-3호 (`69.1.18.)	서울시고시 1993-260호 (`93.8.21.) 결정 재고시
	변경	소로	3	-	6	국지도로	120	성수동1가 656-1076	성수동1가 656-1027	-	실효(`25.6.19.)	
4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150	성수동1가 33-17	성수동1가 33-5	-	서울시고시 제1969-3호 (`69.1.18.)	서울시고시 1993-260호 (`93.8.21.) 결정 재고시
	변경	소로	3	-	6	국지도로	150	성수동1가 33-17	성수동1가 33-5	-	실효(`25.6.19.)	

2. 실효 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제7항 및 제9항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음
  · 이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한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날에 효력을 잃음

3. 실효일자: 2025. 6. 19.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2020. 6. 18. (성동구 고시 제2020 - 62 ~ 65호)	⇨ 5년 경과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실효 2025. 6. 19. (성동구 고시 제2025 - 100 ~ 103호)

4. 지형도면 : 붙임 참조(총 4페이지)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02-2286-5504) 또는 토목과(02-2286- 5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실효 지형도면

– 총 4 페이지 –

[연번 1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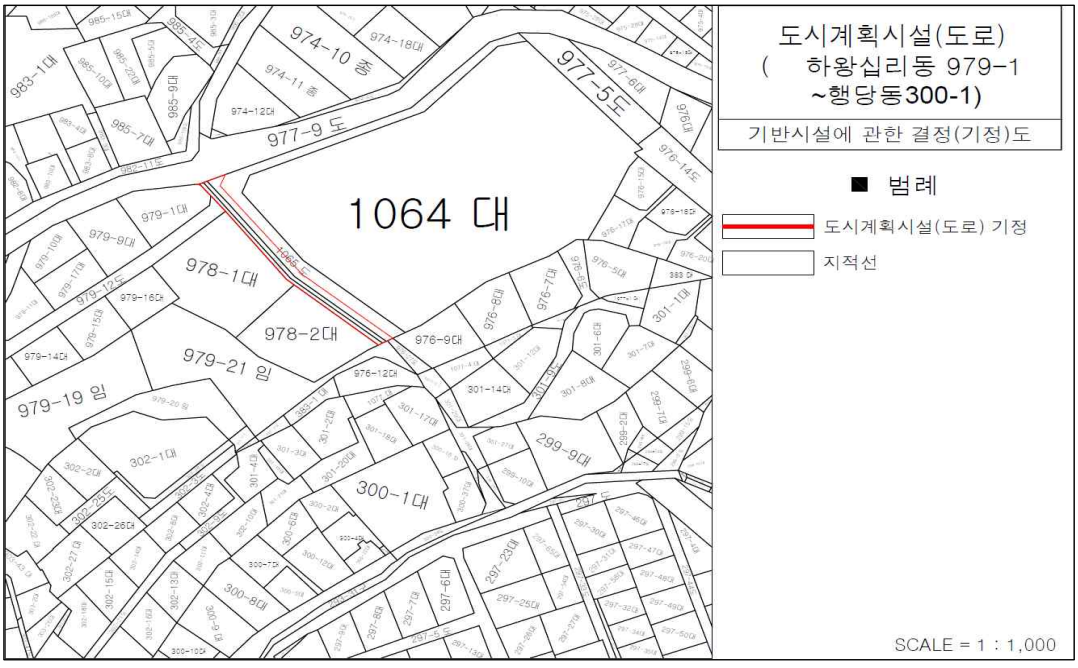

[연번 1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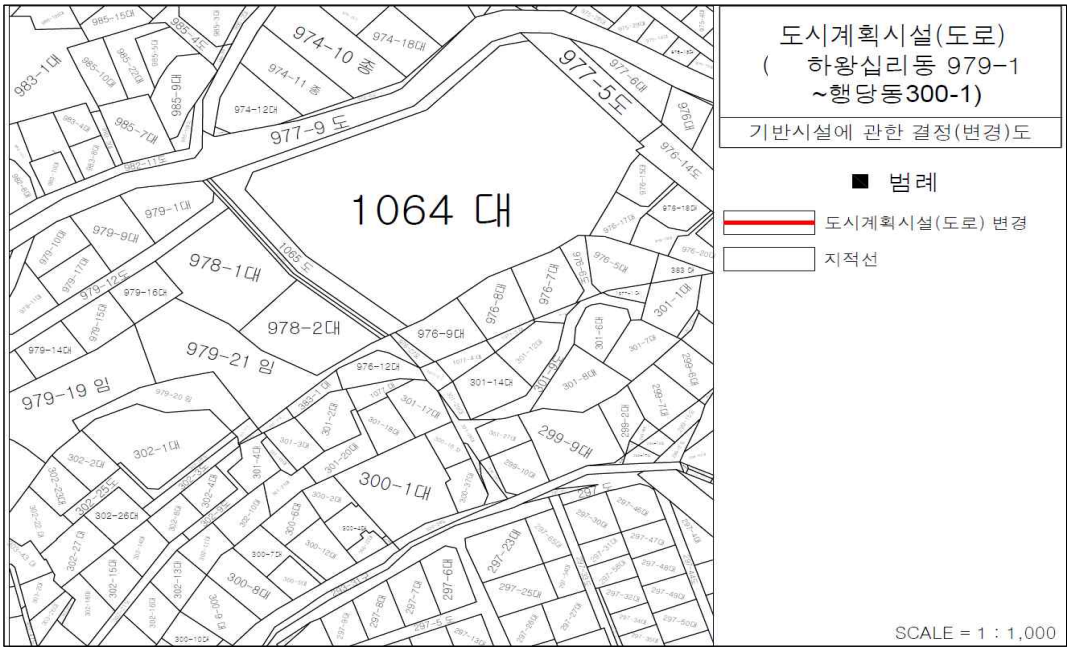

[연번 2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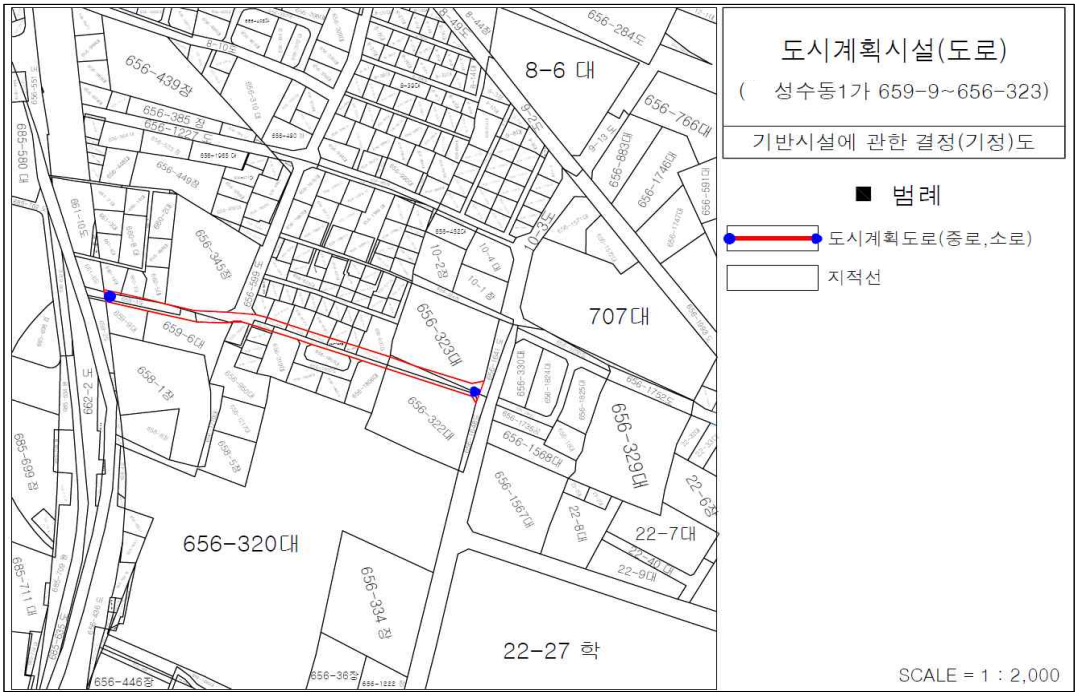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
(성수동1가 659-9~656-32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범례
도시계획도로(중로,소로)
지적선
SCALE = 1 : 2,000
8-6 대
707대
656-320대
656-329대
656-323대
656-321대
656-334 장
22-7대
22-27 학
656-766대
656-439장
656-345장
656-446장

[연번 2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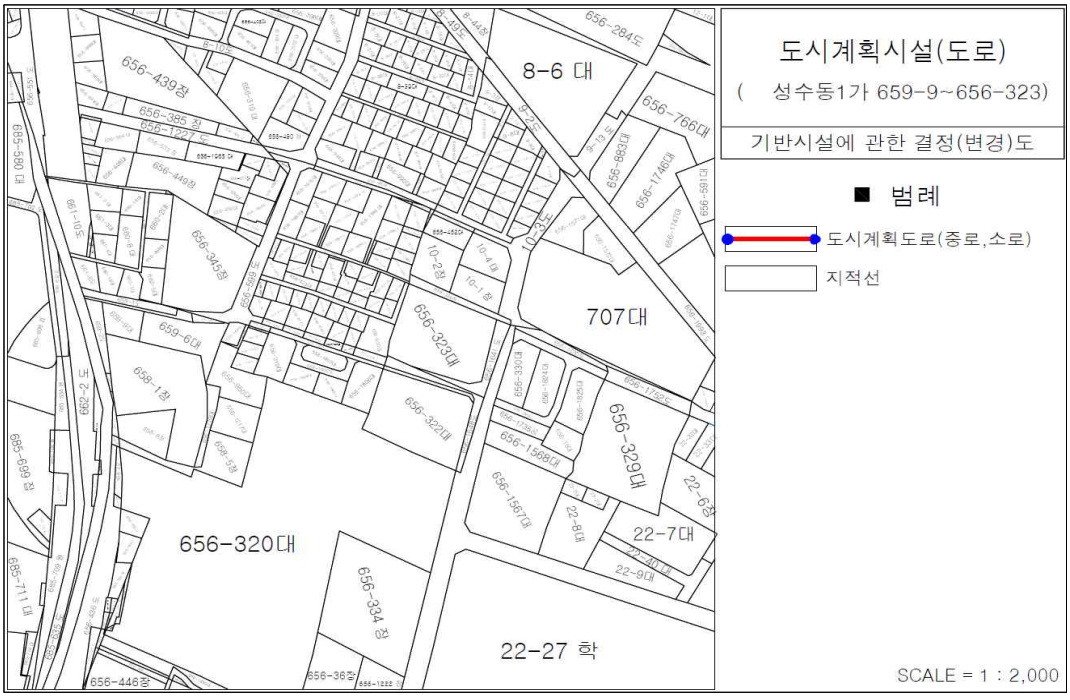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
(성수동1가 659-9~656-323)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례
도시계획도로(중로,소로)
지적선
SCALE = 1 : 2,000
8-6 대
707대
656-320대
656-329대
656-323대
656-321대
656-334 장
22-7대
22-27 학
656-766대
656-439장
656-345장
656-446장

[연번 3 – 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성수동1가 656-1076)
~656-1027)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범례
도시계획도로(중로,소로)
지적선
SCALE = 1 : 1,000
8-6 대
707대
656-323대
8-49도
9-2도
10-3도
656-599 도
656-310 대
656-480 장
656-452대
10-2장
10-4 대
10-1 장

[연번 3 –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성수동1가 656-1076)
~656-1027)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례
도시계획도로(중로,소로)
지적선
SCALE = 1 : 1,000
8-6 대
707대
656-323대
8-49도
9-2도
10-3도
656-599 도
656-310 대
656-480 장
656-452대
10-2장
10-4 대
10-1 장

[연번 4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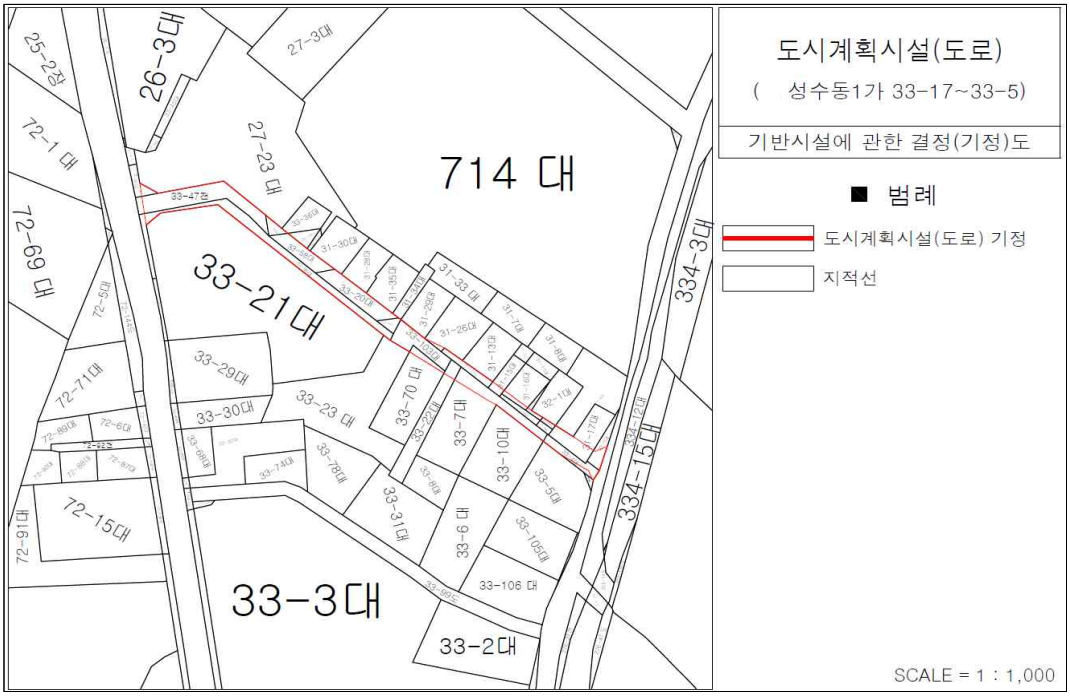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
(성수동1가 33-17~33-5)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범례
도시계획시설(도로) 기정
지적선
SCALE = 1 : 1,000
714 대
33-21대
33-3대
33-2대
26-3대
27-3대
27-23 대
25-2잡
72-1 대
72-69 대
72-71대
72-15대
72-91대
33-29대
33-30대
33-23 대
33-70 대
33-7대
33-10대
33-5대
33-31대
33-6 대
33-78대
33-106 대
334-3대
334-15대

[연번 4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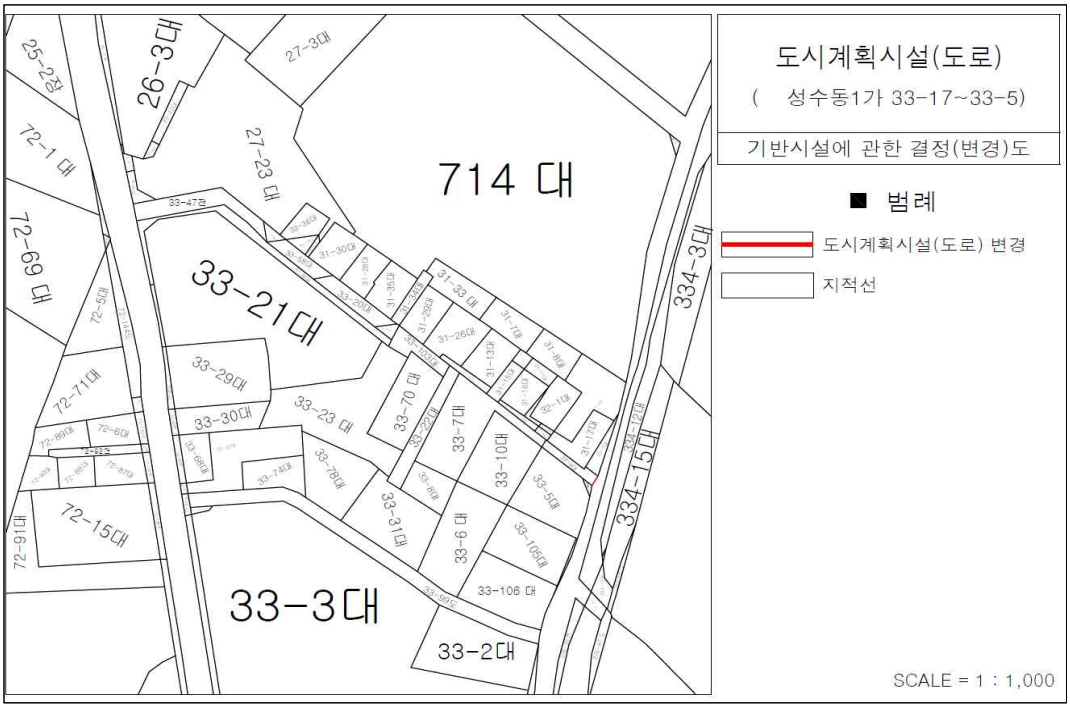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도로)
(성수동1가 33-17~33-5)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지적선
SCALE = 1 : 1,000
714 대
33-21대
33-3대
33-2대
26-3대
27-3대
27-23 대
25-2잡
72-1 대
72-69 대
72-71대
72-15대
72-91대
33-29대
33-30대
33-23 대
33-70 대
33-7대
33-10대
33-5대
33-31대
33-6 대
33-78대
33-106 대
334-3대
334-15대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5-98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5호(2011.05.06.)로 결정된 「내자·필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정비구역 지정된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1287호(2024.10.11.)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이 2025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6.04.)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이내에 우리구(도시개발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종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5. 07. 18. ~ 2025. 08. 18.(31일간)

나.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74)

다. 공람사유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재공람공고

라. 공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435.44	감)	150.10	13,285.3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857.19	증)	1,035.35	12,892.54	9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7.19	감)	10,699.55	1,157.64	8.7	
	준주거지역	-	증)	11,734.90	11,734.90	88.3	
상업 지역	소 계	1,578.25	감)	1,185.45	392.80	3.0	
	일반상업지역	1,578.25	감)	1,185.45	392.80	3.0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내자동 81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감)148.10㎡	•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축소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2.00㎡	• 제2-1지구 내 단순오기로 인한 면적 감소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45㎡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911.9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392.80㎡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존치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2.19㎡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존치
		준주거지역	10,823.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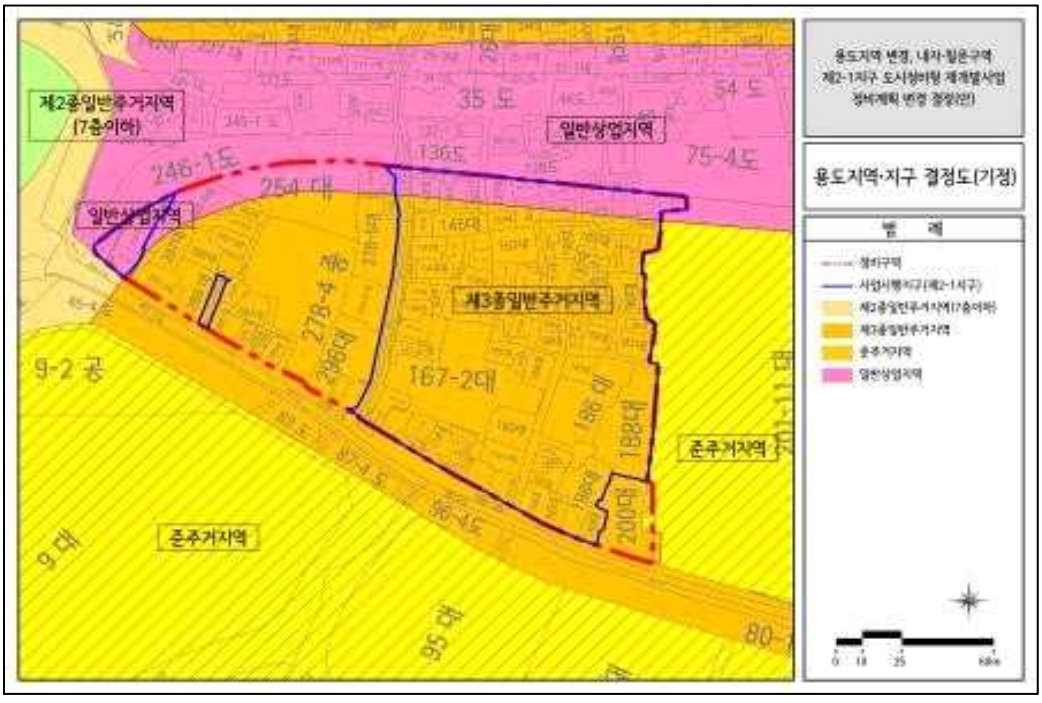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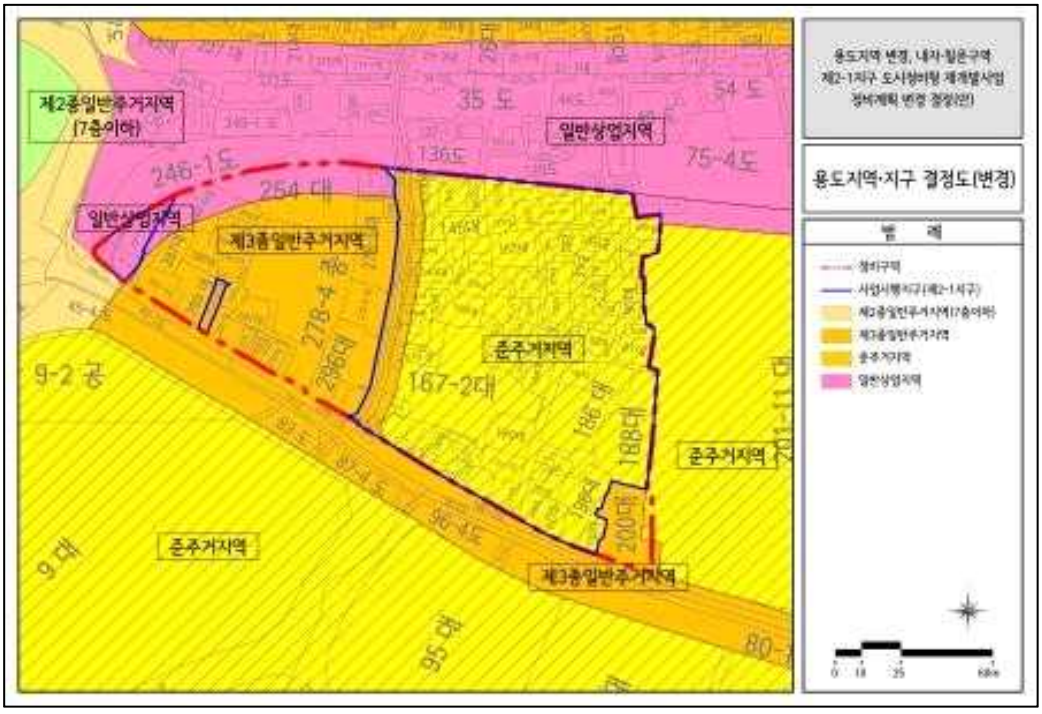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안)

1.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자동 81번지 일대	20,877.0	감)148.1	20,728.9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필운동 278-4번지 일대 : 소단위정비형 -내자동 99번지 일대 : 일반정비형

■ 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정비구역 면적 변경 감) 148.1㎡	•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변경

2. 정비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내자동 81번지 일대	13,435.44	감)150.10	13,285.34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 변경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 정비지구 면적 변경 감) 150.1㎡	• 토지 공부면적에 따른 단순 오기 정정 및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가) 토지이용계획(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877.00	감)148.1	20,728.90	100.00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1,935.44	감)385.0	1,550.44	7.48	
	녹 지		304.30	-	304.30	1.47	
	도 로		1,246.14	-	1,246.14	6.01	
	공 원		385.00	감)385.0	-	-	
획 지	소 계		18,941.56	증)236.9	19,178.46	92.52	
	1	1	635.00	-	635.00	3.06	존치
		2	253.56	-	253.56	1.22	
		3	1,107.40	-	1,107.40	5.34	존치
		4	615.20	-	615.20	2.97	
		5	266.00	-	266.00	1.28	
		6	1,676.80	증)2.0	1,678.80	8.10	
		7	641.00	-	641.00	3.09	
		8	170.00	-	170.00	0.82	
		9	527.90	-	527.90	2.55	
		10	279.00	-	279.00	1.35	
		11	681.30	-	681.30	3.29	
	2	1	11,500.00	증)234.9	11,734.90	56.61	
		2	588.40	-	588.40	2.84	존치(중국문화원)

※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 감)148.1㎡
※ 2011년 정비계획 결정 당시 일부 획지면적 오기로 인한 정정
2-1지구 : 감)2.0㎡, 1-6지구 : 증)2.0㎡
※ 면적은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토지이용계획(2-1지구)(변경)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435.44	감)150.10	13,285.34	100.00	
획 지		11,500.00	증)234.90	11,734.90	88.33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935.44	감)385.00	1,550.44	11.67	
	녹 지	304.30	-	304.30	2.29	
	도 로	1,246.14	-	1,246.14	9.38	
	공 원	385.00	감)385.00	-	-	
기반시설 등	(공공청사)	-	-	-	-	입체적결정 (연면적:3,250㎡)

※ 공공청사는 획지 내 입체적결정으로 환산면적 및 대지지분(963.71㎡)은 면적산정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환산면적 및 대지지분 280.17㎡) 및 현금기부채납 환산면적(91.23㎡)은 면적산정에서 제외

다)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3,435.44	감)	150.10	13,285.34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857.19	증)	1,035.35	12,892.54	9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7.19	감)	10,699.55	1,157.64	8.7	
	준주거지역	-	증)	11,734.90	11,734.90	88.3	
상업 지역	소 계	1,578.25	감)	1,185.45	392.80	3.0	
	일반상업지역	1,578.25	감)	1,185.45	392.80	3.0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내자동 81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감)148.10㎡	•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축소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감)2.00㎡	• 제2-1지구 내 단순오기로 인한 면적 감소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25.45㎡	•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911.9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일반상업지역	392.80㎡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존치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32.19㎡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부지의 용도지역 존치
		준주거지역	10,823.00㎡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합리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 해당없음

라)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지분율 산정방식

▪ 추정지분율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비(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

[단위 : 천원]
▪ 추정지분율 : 100.0%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총사업비
  = (221,489,792,000+470,665,808,000) / 692,155,600,000= 100% = 1

구분		금액(천원)	비고
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	계	692,155,600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221,489,792	①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470,665,808	②
대지조성비		43,987,046	③
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		166,978,110	④
총 대지평가차액		10,524,636	① - ③ - ④ = ⑤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514,652,854	② + ③ = ⑥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 이 나와야
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종후평가 권장)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단위 : 천원]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1,500,000(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1,500,000(⑦) / 166,978,110 (④) ≒ 0.90%(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10,524,636⑤ × 0.90%(⑧) ≒ 94,545(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1,500,000(⑦) + 94,545(⑨) = 1,594,545(⑩)
- (A)의 지분율 = 1,594,545(⑩) / 692,155,600(①+②) ≒ 0.23%

추정 수익률	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106.3%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X 100%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15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 천원)	개별 분담금 (천원)	비고
주택	59A(24.3평형)	56,368	1,380,000	1,594,545	214,545	수령
	84A(34.4평형)	55,057	1,910,000	1,594,545	315,455	지급
	126A(51.4평형)	60,161	3,090,000	1,594,545	1,495,455	지급
	244A(99.1평형)	69,193	6,860,000	1,594,545	5,265,455	지급
오피스텔	58A(40평형)	41,539	1,000,000	1,594,545	594,545	수령
	84A(58평형)	41,509	1,440,000	1,594,545	154,545	수령
	119A(81평형)	37,604	1,780,000	1,594,545	185,455	지급
	218A(149평형)	53,036	4,700,000	1,594,545	3,105,455	지급
근린 생활시설	지상1층 (20평)	42,314	846,280	1,594,545	748,265	수령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0	35	주간선 도로	3,820	적선동	세브란스 병원앞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169호 (1976.10.28.)	
기정	중로	1	202	20	보조 간선 도로	594	사직로 (광2-106)	사직동 (대1-40)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241호 (1971.5.5.)	
기정	소로	1	A	10 (10)	집산 도로	105 (105)	사직로 (대로1-40)	내자동길 (중로1-20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기정	소로	3	A	4 (4)	국지 도로	21 (21)	필운동 283-4	내자동길 (중로1-202)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 ( ) 안은 제2-1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소공원	내자동 197번지 일원	385	감)385	-	서울시고시 2011-115호 (2011.5.6)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원	소공원 폐지	• 소규모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공원은 폐지하되, • 지역내 필요한 공공청사를 확대 계획하고, 사업대상지내 개방형녹지 계획을 통해 규모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대체 확보	

(나)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지	경관녹지	필운동 240-4번지 일원	304.3	-	304.3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내자동 81번지 일원	2,841.76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참조 (입체적 결정)

※2,841.76㎡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구분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내자동 81번지 일대	층수(층)	지하1층~지상2층, 지하3~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2,841.76		

※ 공공청사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공공시설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지상2층, 지하3~4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3,250㎡ • 수평투영면적 : 2,841.76㎡	• 자치구 공공시설 수요에 따른 공공청사 연면적 확보(전용공간 지상1~2층)를 통한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공청사 이전 배치

바)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에 관한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계획(변경)

구분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대지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순부담면적(㎡)				순부담률(%)
						정비기반시설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현금	소계	
기정	13,435.44	11,500.00	1,935.44	626.53	-	1,308.91	-	-	1,308.91	10.2
변경	13,285.34	11,734.90	1,550.44	730.54	1,023.50	288.54	1,243.88	91.23	1,623.65	13.83

※ 순부담률(기정) 산정식 : {(정비기반시설 - 기존국공유지)÷(구역면적-기존국공유지)}×100
= {(1,935.44-626.53)÷(13,435.44-626.53)}×100 = (1,308.91÷12,808.91)×100 = 10.2%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3-1-3 나.(3)호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혼재지로서 특정 용도지역에서 '-' 값이 있는 경우 각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여 재산정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순부담면적	• 정비기반시설이 혼재지로서 특정 용도지역에서 '-' 값이 있는 경우 각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적용하여 재산정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1,550.44㎡ - 730.54㎡ - 1,023.50㎡ = -203.60㎡ • 토지가치가 동일한 면적으로 보정 (제3종일반주거 순부담 -506.40㎡ X 제3종일반주거 허용용적률 275% + 일반상업지역 순부담 302.80㎡ X 일반상업지역 허용용적률 800%) / 획지용적률 356.9% = 288.54㎡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 면적

구 분	위 치		기반시설(㎡)		비 고
			도 로	녹 지	
제2-1지구	합 계		1,246.14	304.3	1,550.44
	내자동	1-1	55.3	-	
		141-1	11.5	-	
		141-2	25	-	
		142	49	-	
		146	40.2	-	
		146-1	9.9	-	
		147	36.3	-	
		147-1	9.9	-	
		148	23.1	-	
		148-1	13.2	-	
		149	10.3	-	
		163	28	-	
		163-1	8.6	-	
		164	32.7	-	
		164-1	6.3	-	
		165	2	-	
		165-1	5.3	-	
		166-1	9.9	-	
		167-1	25.2	-	
		167-2	63.5	-	
		167-3	7.3	-	
		167-5	11.5	-	
		167-6	33.1	-	
		168-1	43.2	-	
		168-2	-	-	
		169	26.9	-	
		169-1	10.1	-	
		171	-	-	
		186-6	161.6	-	
		207-4	41.6	-	
		240-4	-	133.6	
		240-9	-	89.7	
		240-14	-	70.4	
		240-16	74.4	-	
		240-18	-	10.6	
		240-19	14.1	-	
		273-1	19.65	-	
		273-2	6.9	-	
		276-1	9.9	-	
		277-1	120.8	-	
	필운동	278-9	3.3	-	
		283-1	14.5	-	
		283-4	3	-	
		289	41.2	-	
		289-3	20.09	-	
		299-3	117.8	-	

(나) 건축물 기부채납 부담 면적

구 분	위 치	설치면적	기부채납 면적(㎡)			비 고
			환산부지	부속토지	소 계	
공공청사	획지2-1 내	3,250.00㎡	502.92	460.79	963.71	
공공임대주택	획지2-1 내	1,266.41㎡	100.62	179.55	280.17	전용59㎡형 5세대 전용84㎡형 3세대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 부지면적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인허가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확정

(다) 현금 기부채납

구 분	기부채납 금액	단위토지가(원/㎡)	기부채납 면적(㎡)	비 고
			환산부지	
현금 기부채납	1,810,000,000 원	19,838,476	91.23	

※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 납부금액 확정

(라)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 고
제2-1지구	합 계			730.54	
	내자동	1-1	도로	67.2	
		141-1	도로	11.5	
		146-1	도로	9.9	
		147-1	도로	9.9	
		148-1	도로	13.2	
		163-1	도로	8.6	
		164-1	도로	6.3	
		165-1	도로	5.3	
		166-1	도로	9.9	
		167-3	도로	7.3	
		169-1	도로	10.1	
		186-6	도로	149.7	
	필운동	207-4	도로	41.60	
		240-16	도로	74.4	
		240-19	도로	14.1	
		273-1	도로	19.65	
		276-1	도로	9.9	
		277-1	도로	120.8	
		278-9	도로	3.3	
		289-3	도로	20.09	
		299-3	도로	117.8	

(마)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국·공유지 면적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 고
제2-1지구	합 계			1,023.5	
	내자동	1-1	-	105.3	현황도로
		186-1	-	806.6	현황도로
		186-4	-	58.8	현황도로
		186-5	-	9.3	현황도로
		186-6	-	43.5	현황도로

(바) 매입대상 국·공유지

위 치		지 목	편입면적(㎡)	유상매입 면적(㎡)	소유자	비 고
합 계			-	15.6	-	
내자동	124-5	대지	5.00	5.00	서울시	
필운동	240-18		10.60	10.60	서울시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관리사무소		50.0	증) 60.0	110.0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530.0	감) 367.7	162.3	
	휴게소	1개소	감) 1개소	-	
	커뮤니티시설 (주민운동시설 포함)	80.0	증) 1,947.57	2,066.37	
	경로당	80.0	증) 120.0	200.0	
	작은도서관	50.0	감) 50.0	-	
	보육시설	80.0	감) 80.0	-	

※ 본 공동이용시설 면적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임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주거시설별 세대수를 고려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아)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내자·필운 제2-1지구	13,435.44	획지2-1	11,500.0	내자동 81 일원	89	-	-	88	1	
변경	내자·필운 제2-1지구	13,285.34	획지2-1	11,734.9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기정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13,435.44	2-1	11,500.0	내자동 81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근생	50 이하	335% 이하	-	60m 이하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13,285.34	2-1	11,734.9	내자동 81번지 일원	공동주택	50 이하	431.0% 이하	-	8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정

- 총 세대수 : 321세대 (임대주택 55세대(17.13%) 포함)
  - 전용면적 60㎡이하 : 97세대(30.22% : 임대주택 55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54세대(16.82%)
  - 전용면적 85㎡이상 : 170세대(52.96%)

※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변경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 해당없음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 기준)

구분(전용면적)		분양주택		공공주택	
		세대수	세대비율	세대수	세대비율
공동주택	소계	191세대	100.0%	8세대	100.0%
	60㎡ 이하	14세대	7.3%	5세대	62.5%
	60~85㎡ 이하	144세대	75.4%	3세대	37.5%
	85㎡ 초과	33세대	17.3%	-	
준주택(오피스텔)	소계	186호	100.0%	-	
	60㎡ 이하	69호	37.1%	-	
	60~85㎡ 이하	69호	37.1%	-	
	85㎡ 초과	48호	25.8%	-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사항

기정

- 용적률 : 335% 이하 (건축계획 334.03%)

① 기준용적률 : 288.87% - 산식 : $\frac{(10,420\times250 + 1,080\times600)}{10,420 + 1,080}$

※ 계획부지 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이 혼재 된 경우 평균용적률 적용

② 허용용적률 : 292.26% - 산식 : $\frac{(10,420\times250 + 1,080\times700)}{10,420 + 1,080}$

③ 상한용적률 : 335% 이하 - 산식 : $292.26 + \{292.26\times1.3\times(1,308.91\div11,50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허용용적률×1.3×α)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변경

- 용적률 : 431.0% 이하

① 기준용적률 : 261.6%
② 허용용적률 : 356.0%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계획	법적 상한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인센티브 산식	산식	산정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안)	비 고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 확보기준 초과 설치	기준용적률×(추가녹지면적/획지면적)×2.0	261.6%×(α/11,734.9)×2 = 54.4% α = 1,221.11㎡(확보면적:4,741.58㎡)	정률 부여	2.0 (최대 100%)	기준:3,520.47㎡ 확보:4,741.58㎡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1/2이상 초과설치시 총 주차대수의 7.5% 이상 확보 (의무: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정량 부여	20%	기준:29대 확보:48대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설치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정량 부여	20%	옥상녹화, 우수저류조, 투수성포장, 홍수 및 침수를 대비한 빗물침투시설 설치
합 계				54.4% + 20% + 20% = 94.4% → 94.4%		

③ 상한용적률 : 431.0%

구분		인센티브 산식	완화량	기부채납 면적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 356.0%×(1.3×1×0.0260) = 12.03%	12.03%	288.54㎡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청사)	부속토지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 356.0%×(1.3×1×0.0415) = 19.20%	19.20%	460.79㎡
	환산면적	허용용적률×(0.7×α건축물) = 356.0%×(0.7×0.0453) = 11.28%	11.28%	502.92㎡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임대)	부속토지	허용용적률×(1.3×가중치×α토지) = 356.0%×(1.3×1×0.0161) = 7.45%	7.45%	179.55㎡
	환산면적	허용용적률×(1.0×α건축물) = 356.0%×(1.0×0.0090) = 3.20%	3.20%	100.62㎡
현금 기부채납		허용용적률×(0.7×α현금) = 356.0%×(0.7×0.0082) = 2.04%	2.04%	91.23㎡
친환경 건축물 인증		허용용적률×(0.5~1.0)×∑인증완화비율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3%) 지능형건축물 인증 (4등급 6%) = (356.0%×1.0×3%)+(356.0%×0.5×6%) = 21.36%	21.36%	-
합 계			356.0% + 55.20% + 21.36% = 432.56% → 431.0%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 역 구 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
(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 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계획</th><th>법적상한</th></tr>
<tr><td colspan="2">높이 완화사항</td><td>기정</td><td colspan="8">• 높이 : 60m 이하
- 기준높이 = 50m + 10m(내부도로 미개설)</td></tr>
<tr><td colspan="2"></td><td>변경</td><td colspan="8">• 최고높이 : 85m 이하
<table>
<tr><th>목 표</th><th>내 용</th><th>완화높이</th><th>비 고</th></tr>
<tr><td>기준높이</td><td>50m</td><td>50m</td><td></td></tr>
<tr><td>① 개방형녹지 의무기준(30%) 초과 확보에 따른 높이 완화</td><td>= 적정건폐율 50%×(기준높이+20m)/(80%-개방형녹지율)
= 50%×(50m+20m)/(80%-40.4%) = 88.3m</td><td>88.3m</td><td></td></tr>
<tr><td>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td><td>= 기준높이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 50m × (1,623.65 ÷ 13,285.34) = 6.1m</td><td>6.1m</td><td></td></tr>
<tr><td colspan="2"></td><td>94.4m → 85m 적용</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건축한계선</td><td>기정</td><td colspan="8">• 사직로변 : 6m / 내자동길변 : 5m / 장흥고길변, 소공원변 : 3m</td></tr>
<tr><td colspan="2"></td><td>변경</td><td colspan="8">• 사직로변 : 6m / 사직로8길변(구 내자동길) : 5m / 사직로10길변(구 장흥고길) : 3m</td></tr>
<tr><td colspan="2">대지내 공지 계획</td><td>기정</td><td colspan="8">
<table>
<tr><th>구 분</th><th>위 치</th><th>계획내용</th><th>조성방법</th></tr>
<tr><td>전면공지</td><td>사직로변, 장흥고길변,
소공원변</td><td>2m, 3m, 6m로 확장보도 조성</td><td>차도 및 인도 부속형</td></tr>
<tr><td>공개공지</td><td>사직로변</td><td>보행공간 활성화 및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
획지 2-1 가각부분에 위치하여 24시간 개방</td><td>공원형태 조성</td></tr>
<tr><td>공공보행통로</td><td>획지 2-1 내부</td><td>기존 옛길(어이궁길) 보전 위해 폭원 4~6m
확보하여 24시간 개방, 사직로와 내자로 연결</td><td>시야 확보</td></tr>
</table></td></tr>
<tr><td colspan="2"></td><td>변경</td><td colspan="8">• 전면공지 : 사직로변 6m, 사직로10길변 3m, 사직로8길변 5m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공개공지 : 사직로변 및 사직로10길변 보행결절점에 공개공지 조성 (2개소)
• 공공보행통로 폐지</td></tr>
<tr><td colspan="2">교통처리에 관한 계획</td><td>기정</td><td colspan="8">• 차량출입 불허구간 : 사직로변
• 차량출입구 : 내자로변(현 사직로8길)
- 계획내용 : 차량과 보행자 공간 분리 및 원활한 소통 유도
- 차량은 진출입이 용이한 내자로 및 소로3-A에 계획</td></tr>
<tr><td colspan="2"></td><td>변경</td><td colspan="8">• 차량출입 불허구간 : 사직로변
• 차량출입구 : 사직로8길변 차량출입구 위치 일부 이동(도면 참조)
- 계획내용 : 차량과 보행자 공간 분리 및 원활한 소통 유도
- 차량은 진출입이 용이한 내자로 및 소로3-A에 계획</td></tr>
<tr><td rowspan="2">기타 사항</td><td>개방형녹지 계획</td><td>신설</td><td colspan="8">• 획지 내 30% 이상 개방형녹지 조성
• 일반에게 상시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공간으로 조성
• 개방형녹지변으로 주요 시설 진출입구 1개소 이상 확보</td></tr>
<tr><td>통경축</td><td>신설</td><td colspan="8">• 사직로와 사직로8길을 연결하는 통경축 조성 : 폭원 15m 이상
• 획지2-1 남동측 경계를 기준으로 통경축 조성 : 폭원 15m 이상</td></tr>
</table>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음
※ 향후 분양공고, 소유자 변경시 개방형녹지유지관리 의무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자)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계획 : 해당 없음

2)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3)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기부채납 면적		비고
			대지지분	연면적	
합계		8세대	179.55㎡	1,266.41㎡	
전용59㎡형(59.95㎡)	80.93㎡	5세대	97.05㎡	684.47㎡	장기전세주택
전용84㎡형(84.95㎡)	114.68㎡	3세대	82.50㎡	581.94㎡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은 추후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개량계획(동)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현황:119 계획:321 증가세대수:202 (임대55세대 포함)	없음	지구단위계획 (블록별특성을 감안하여 정비수업 적용) →수복/철거재개발
변경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고시일부터 4년이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현황:27 계획:199 증가세대수:172 (임대8세대 포함)	없음	

※ 〈변경〉 : 제2-1지구에 한함

카) 세입자 주거대책

-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시 관련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필요시 인근의 활용가능한 임대주택 현황, 임대주택 입주희망 의견조사, 개발후 부담능력 등을 고려 구체적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음
- 상가세입자 대책 : 철거되는 상가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보상 추진하겠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로구 내자동 81번지 일대	20,877.0	감)148.1	20,728.9	- 필운동 278-4번지 일대 : 소단위정비형 - 내자동 81번지 일대 : 일반정비형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내자·필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감) 148.1㎡	• 정비구역 내 경찰청 소유부지 제척에 따른 변경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비율(%)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435.44	감) 150.10	13,285.34	100.0
주거지역	소 계	11,857.19	증) 1,035.35	12,892.54	97.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57.19	감) 10,699.55	1,157.64	8.7
	준주거지역	-	증) 11,734.90	11,734.90	88.3
상업지역	소 계	1,578.25	감) 1,185.45	392.80	2.9
	일반상업지역	1,578.25	감) 1,185.45	392.80	2.9

※ 제2-1지구 외 사항은 생략하였으며, 향후 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변동될 수 있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40	35	주간선 도로	3,820	적선동	세브란스 병원앞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69호 (1976.10.28)	2-1 지구내 일부저촉
기정	중로	1	202	20	보조간선 도로	594	사직로 (광2-106)	사직동 (대1-40)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241호 (1971.5.5.)	2-1 지구내 일부저촉
기정	소로	1	A	10 (10)	집산도로	105 (105)	사직로 (대로1-40)	내자동길 (중로1-20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2-1 지구내
기정	소로	3	A	4 (4)	국지도로	21 (21)	필운동 283-4	내자동길 (중로1-202)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2-1 지구내

※ ( )안은 제2-1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나)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	공원	소공원	내자동 197번지 일원	385.0	감)385.0	-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2-1 지구내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공원	소공원 폐지	• 소규모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소공원은 폐지하되, • 지역내 필요한 공공청사를 확대 계획하고, 사업대상지내 개방형녹지 계획을 통해 규모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대체 확보.	-

(다)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녹지	경관녹지	필운동 240-4번지 일원	304.3	-	304.3	서울시고시 제2011-115호 (2011.5.6.)	2-1 지구내

(라)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내자동 81번지 일원	2,841.76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참조 (입체적 결정)

※ 2,841.76㎡는 수평투영면적임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공공청사	내자동 81번지 일원	층수(층)	지하1층~지상2층, 지하3~4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2,841.76		

※ 공공청사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함
- 공공기여 세부계획(관리부서, 시설·운영계획 등)은 공공기여 관리부서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변경(경미한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기여량 산정방법 등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지상2층, 지하3~4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3,250㎡ - 수평투영면적 : 2,841.76㎡	• 자치구 공공시설 수요에 따른 공공청사 연면적 확보(전용공간 지상1~2층)를 통한 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존 공공청사 이전 배치

다)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공기여 확보기준

구분	용도지역		획지면적	순부담기준		순부담계획		비고
	변경전	변경후		비율(%)	면적(㎡)	비율(%)	면적(㎡)	
제2-1지구	제3종일반	준주거	10,823.0㎡	15%	1,623.45㎡	13.83%	1,623.65㎡	
	일반상업	준주거	911.9㎡	-	-			
	소계		11,734.9㎡	13.83%	1,623.45㎡			

2)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확보계획

구분	위치		시설의종류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	비고
제2-1지구	종로구 내자동 81번지 일대	-	소 계	1,623.65㎡	
		내자·필운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도로, 녹지)	1,550.44㎡ (순부담 : 288.54㎡)	
		제2-1지구 획지내	공공청사 (연면적 3,250㎡)	963.71㎡	환산면적+대지지분
		제2-1지구 획지내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1,266.41㎡)	280.17㎡	환산면적+대지지분
		-	현금 (약 18.1억원)	91.23㎡	환산면적

※ 부지가액(원/㎡) : 감정평가예상액 적용 (19,838,476원/㎡)
※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 부지면적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은 인허가시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확정
※ 현금 기부채납에 따른 납부액은 사업시행인가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이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평가한 토지가액으로 산술평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 납부금액 확정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	6,853.16	증)2.0	6,855.16	• 획지계획 - 1,2,3,4,5,6,7,8,9,10,11	획지1-6:오기정정(+2㎡)
변경	2	-	12,088.40	증)234.9	12,323.30	• 획지계획 - 1,2	획지2-1:오기정정(-2㎡), 공원폐지(+385㎡), 경찰청부지 제척(-148.1㎡)에 따른 면적 변경

2)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획지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공동개발)
				위치	면적(㎡)	
기정	1	1	6,853.16	필운동 285-5 일원	635.00	•존치(286-5, 287)
		2		필운동 288-1 일원	253.56	•289-3, 288-1
		3		필운동 254번지	1,107.40	•존치(254)
		4		필운동 286 일원	615.20	•283, 283-2, 283-3, 283-4, 283-5, 283-6, 286 •공동개발 권장(1-4, 1-5)
		5		필운동 289 일원	266.00	•289□□□□□□ •공동개발 권장(1-4, 1-5)
		6		필운동 278-4 일원	1,676.80	•278-4, 298-2, 299-2
		7		필운동 281 일원	641.00	•281, 282, 290, 292-1, 292, 293, 294, 295, 295-1, 299-2
		8		필운동 275 일원	170.00	•275, 273-2, 207-4
		9		필운동 278-5 일원	527.90	•278-12, 276, 278-5
		10		필운동 278-6 일원	279.00	•278-6
		11		필운동 296번지	681.30	•296, 300-2, 297-2
	2	1	12,088.40	내자동 81번지	11,500.00	• 20-1, 81, 82, 90, 92, 93, 93-1, 94, 95-1, 95-2, 96-1, 96-3, 97, 98, 99, 100, 101, 102, 103, 105, 106-1, 106-2, 107-1, 107-2, 108, 109-1, 109-2, 110, 111-1, 112-3, 112-4, 113-2, 114-3, 124-4, 124-5, 125-3, 126-1, 127, 128-1, 130-1, 131, 132, 133, 134, 135-1, 142, 142-2, 145, 146, 147, 149, 150-1, 151-1, 152, 152-2, 153, 154-1, 154-2, 155-1, 155-2, 155-3, 155-4, 156, 157, 158-1, 158-2, 159, 160, 162, 163, 164, 167-1, 167-2, 167-4, 167-5, 167-6, 171, 172-1, 174, 174-1, 175, 177, 178-1, 178-2, 180, 181, 181-5, 182, 183, 184, 186, 186-1, 186-2, 186-4, 186-5, 186-6, 188,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		내자동 200번지	588.40	•존치(중국 문화원) -200, 201-25

구분	도면표시	획지번호	면적(㎡)	계획내용		비고(공동개발)
				위치	면적(㎡)	
변경	1	1	6,855.16	필운동 285-5 일원	635.00	•존치(286-5, 287)
		2		필운동 288-1 일원	253.56	•289-3, 288-1
		3		필운동 254번지	1,107.40	•존치(254)
		4		필운동 286 일원	615.20	•283, 283-2, 283-3, 283-4, 283-5, 283-6, 286 •공동개발 권장(1-4, 1-5)
		5		필운동 289 일원	266.00	•289□□□□□ •공동개발 권장(1-4, 1-5)
		6		필운동 278-4 일원	1,678.80	•278-4, 298-2, 299-2
		7		필운동 281 일원	641.00	•281, 282, 290, 292-1, 292, 293, 294, 295, 295-1, 299-2
		8		필운동 275 일원	170.00	•275, 273-2, 207-4
		9		필운동 278-5 일원	527.90	•278-12, 276, 278-5
		10		필운동 278-6 일원	279.00	•278-6
		11		필운동 296번지	681.30	•296, 300-2, 297-2
	2	1	12,323.30	내자동 81번지	11,734.90	• 20-1, 81, 82, 90, 92, 93, 93-1, 94, 95-1, 95-2, 96-1, 96-3, 97, 98, 99, 100, 101, 102, 103, 105, 106-1, 106-2, 107-1, 107-2, 108, 109-1, 109-2, 110, 111-1, 112-3, 112-4, 124-4, 124-5, 125-3, 126-1, 127, 128-1, 130-1, 131, 132, 133, 134, 135-1, 142, 142-2, 145, 146, 147, 149, 150-1, 151-1, 152, 152-2, 153, 154-1, 154-2, 155-1, 155-2, 155-3, 155-4, 156, 157, 158-1, 158-2, 159, 160, 162, 163, 164, 167-1, 167-2, 167-4, 167-5, 167-6, 171, 172-1, 174, 174-1, 175, 177, 178-1, 178-2, 180, 181, 181-5, 182, 183, 184, 186, 186-1, 186-2, 186-4, 186-5, 186-6, 188, 193, 194, 195, 196, 197, 198, 199, 168-1, 168-2, 169
		2		내자동 200번지	588.40	•존치(중국 문화원) -200, 201-25

※ 면적은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AD 구적임)

■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1	필운동 278-4 일대	용도	•주된용도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지구, 근린생활시설 중 분류상 정의되지 않는 신규용도	
			건폐율	•50% 이하	2, 4~7, 9~11
				•60% 이하	1, 3, 8
			용적률	•기준용적률600% 이하	1, 3, 8

구분	가구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250% 이하	2, 4~7, 9~11
			높이	•기준높이 50m 이하	
			건축선	•사직로변: 건축한계선 3m	1 ,3, 8
				•내자로변, 장흥고길변: 건축한계선 2m	2, 5, 6, 7, 8, 9, 10, 11
				•소로3-A변 : 건축한계선 1m	5, 7
기정	2	내자동 81번지 일대	용도	•주된용도 :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지구, 근린생활시설 중 분류상 정의되지 않는 신규용도	
			건폐율	•50% 이하	1,2
			용적률	•상한용적률335% 이하	1
				•기준용적률250% 이하	2
			높이	•기준높이50m이하(최고높이60m이하)	2(1)
			건축선	•사직로변: 6m	1
				•내자로변: 5m	
				•장흥고길변, 소공원변 : 2m	
				•내자로변: 5m	2
변경	1	필운동 278-4 일대	용도	•주된용도: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지구, 근린생활시설 중 분류상 정의되지 않는 신규용도	
			건폐율	•50% 이하	2, 4~7, 9~11
				•60% 이하	1, 3, 8
			용적률	•기준용적률600% 이하	1, 3, 8
				•기준용적률250% 이하	2, 4~7, 9~11
			높이	•기준높이 50m 이하	
			건축선	•사직로변: 건축한계선 3m	1 ,3, 8
				•사직로8길변, 사직로10길변: 건축한계선 2m	2, 5, 6, 7, 8, 9, 10, 11
				•소로3-A변 : 건축한계선 1m	5, 7
	2	내자동 81번지 일대	용도	•주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건축연면적중 가장 많은 면적) •지정용도(지상1층 연면적의 50% 이상)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생중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	1
				•주된용도: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해당용도지역·지구, 근린생활시설 중 분류상 정의되지 않는 신규용도	2

구분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50% 이하	1,2
			용적률	•상한용적률431.0% 이하	1
				•기준용적률250% 이하	2
			높이	•최고높이 85m이하	1
				•기준높이 50m이하	2
			건축선	•사직로변: 6m	1
				•사직로8길변: 5m	
				•사직로10길변: 3m	
				•사직로8길변: 5m	2

※ 기반시설 부담과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하여 추가 완화(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능함
※ 획지2-1의 상한용적률은 용도지역별 평균용적률 적용(인센티브 완화)한 용적률임
※ 1) 계단실 등 공유면적은 제외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2-1지구)

구분		항목	적용	인센티브	비고
기정	창조적 도시디자인 및 공공기여시설 설치	공공보행통로(확장보도) (옛길/물길 등 복원 및 재현)	•건축계획 반영시(장애물이 없어야 함) •서울시 역사문화경관계획에서 정한 '경관형성기준' 에 적합하게 조성시	50%	
	친환경 건축물 설치	친환경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총건축비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를 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건축물인증(85점이상) (단, 친환경 건축물점수 75점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74점 의무)	50%	
변경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 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 초과 설치시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54.4%	
	친환경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1/2이상 초과 설치시 •총 주차대수의 7.5% 이상 확보 (의무:총 주차대수의 5% 이상)	2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설치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시	2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제2-1지구)

구분	목표	계획내용	완화량	비고
기반시설 등 제공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 288.54㎡	12.03%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청사)	부속토지 : 460.79㎡	19.20%	
		환산면적 : 502.92㎡	11.28%	
	건축물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179.55㎡	7.45%	
		환산면적 : 100.62㎡	3.20%	
	현금 기부채납	환산면적 : 91.23㎡	2.04%	

구분	목표	계획내용	완화량	비고
	소 계		55.20%	
친환경	친환경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3%) 지능형건축물 인증 (4등급 6%)	21.36%	
합 계			76.56%	75.0% 적용

■ 건축물의 형태, 외관 등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치	산정방식	비고
기정	건축물 형태	중정형 블록형	2-1	•주변가로와의 경관적 연속성을 제공하는 입면디자인	
		한옥형태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	•한식기와, 지붕형태, 전통문양의 철재 •전통 문살문양을 착안한 입면디자인	
		외부형태	전구역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건축물 외관	외관	전구역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색채	주민공동이용시설 공동주택	•기와진회색, 은행노란색, 고궁갈색 권장 •원색은 제한적 사용	
		야간조명	전구역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전구역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준용	
		담장	2-1, 건축한계선부분	•무(無)담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한옥형 담장으로 조성	
변경	건축물 형태	외부형태	전구역 (획지 2-1 제외)	•사선절제형 건축형태 금지	
	건축물 외관	외관	전구역	•개구부 없는 벽면의 도로변 노출 금지	
		야간조명	전구역	•건축시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권장 •옥외설치미술장식품의 야간조명 설치	
	기타 사항	옥외광고물	전구역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준용	
		담장	2-1, 건축한계선부분	•무(無)담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한옥형 담장으로 조성	

마) 기타에 관한 결정(변경)

■ 건축물의 대지내 공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전면공지	사직로변, 장흥고길변, 소공원변	• 2m, 3m, 6m로 확장보도 조성	차도 및 인도부속형
	공공보행통로	획지2-1 내부	• 기존 옛길(어이궁길) 보전 위해 폭원4~6m 확보하여 24시간 개방, 사직로와 내자로 연결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사직로변	• 보행공간 활발하고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 획지 2-1 가각부분에 위치하여 24시간 개방	공원형태 조성 (결정도 참조)
변경	전면공지	사직로변, 사직로10길, 사직로8길	• 6m, 3m, 5m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사직로변	• 보행공간 활발하고 접근성과 공공성을 고려 획지 2-1 가각부분에 위치하여 24시간 개방	공원형태 조성 (결정도 참조)

(나)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신설	개방형녹지	획지2-1 내부	• 개방형녹지율 : 획지 내 30% 이상 조성 • 일반에게 상시 개방하고,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공간으로 조성 • 개방형녹지변으로 주요 시설 진출입구 1개소 이상 확보	
신설	통경축	획지2-1 내부	• 사직로와 사직로8길을 연결하는 통경축 조성 : 폭원 15m 이상 • 획지2-1 남동측 경계를 기준으로 통경축 조성 : 폭원 15m 이상	결정도 참조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공개공지)의 형상 등은 조정 가능
※ 향후 분양공고, 소유자 변경시 개방형녹지유지관리 의무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다)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사직로변(2-1)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차량출입 불허	• 결정도 참조
	차량출입 권장구간	내자로변, 장흥고길변, 소로3-A	•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량공동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도	
	주차출입구 보행출입구	내자로변, 소로3-A	• 차량과 보행자 공간 분리 및 원활한 소통 유도 • 차량은 진출입이 용이한 사직로8길 및 소로3-A에 계획	• 1-4와 1-7 폭4m 공동주차출입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사직로변(2-1)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 직접 차량출입 불허	• 결정도 참조
	차량출입 권장구간	사직로8길변, 사직로10길변,	• 차량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차량공동출입이 가능하도록 유도	

구분		위치	계획내용	비고
		소로3-A		
	주차출입구 보행출입구	사직로8길변, 소로3-A	• 차량과 보행자 공간 분리 및 원활한 소통 유도 • 차량은 진출입이 용이한 사직로8길 및 소로3-A에 계획	• 1-4와 1-7 폭4m 공동주차출입 • 사직로8길변 획지2-1 주차출입구 위치 일부 이동 (결정도 참조)

마. 관련 도서 : 생략(종로구 도시개발과에 관련 공람도서 비치)

바. 기타 사항 :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도시개발과(☎02-2148-2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은 공람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므로 제반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 람 의 견 서

<table>
<tr><td>공람내용</td><td colspan="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내자·필운구역
제2-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td></tr>
<tr><td>공람기간</td><td colspan="4">2025.07.18. ~ 2025.08.18.</td></tr>
<tr><td rowspan="2">대상
물건지</td><td>건 물</td><td colspan="3"></td></tr>
<tr><td>토 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의견
제출인</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colspan="5">내 용</td></tr>
</table>

2025. . .

의견제출인 (인)

◈ 중구공고 제2025-699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공사완료 공고

1. 서울시고시 제2022-103호(2022.03.10.)로 결정되고, 중구고시 제2022-34호(2022.4.28.)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중구고시 제2023-63호(2023.11.2.)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중구고시 제2024-10호(2024.2.15.)로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모노레일 및 승강장 설치
(B=2~8m, L=110m, A=380.8㎡)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마. 공사완료 공고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중구 신당동 837-14 일원	B = 2~8m L = 110m A = 380.8㎡	중구 고시 제2022-34호 (2022.4.28.)	2022.04. ~ 2024.03.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중구청 도로시설과(☎02-3396-61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25-964호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029호(2024.12.19.) 및 제294호(2025.5.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3 어린이공원(가칭) 등 공원 2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용 산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한남3 어린이공원(가칭) 등 2개소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5-13 등 2개소

3. 면　　적

연번	공원명	소재지	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일(최초)	비 고
1	한남3 어린이공원(가칭)	보광동 35-13일대	2,855.8	서고223호(2017.6.29)	
2	한남4 소공원(가칭)	보광동 393일대	6,576.4	서고49호(2023.2.16)	

4. 공원조성계획(안):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5. 관계도서 : 열람장소(공원녹지과)에 비치

6.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 (☎ 02-2199-7593)

8.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3 어린이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보광동 31-13 일대)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855.80	1,188.70	-	-	-	30	
기반시설	소 계	564.70	564.70	-	-	-	-	
	도 로	564.70	564.70	-	-	-	-	
조경시설		-	-	-	-	-	3	
휴양시설		91.50	91.50	-	-	-	17	
유희시설		532.50	532.50	-	-	-	10	
녹지		1,667.10	-	-	-	-	-	
시 설 율 (법정 60%)		(1,188.70 / 2,855.80) x 100 = 41.62%						
건 폐 율 (법정 5%)		-						

2. 시설조서

구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2,855.80	1,188.70	-	-	-	-	30	
기반시설	소계		-	564.70	564.70	-	-	-	-	-	
	도 로(소계)	-	전지역	564.70	564.70	-	-	-	-	-	6개 노선
조경시설	소계		-	-	-	-	-	-	-	3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3	
휴양시설	소계		-	91.50	91.50	-	-	-	-	17	
	포켓쉼터	가	-	20.40	20.40	-	-	-	-	-	
	포켓쉼터-1	가-1	보광동 33-1	5.10	5.10	-	-	-	-	-	
	포켓쉼터-2	가-2	보광동 44	5.10	5.10	-	-	-	-	-	
	포켓쉼터-3	가-3	보광동 35-39	5.10	5.10	-	-	-	-	-	
	포켓쉼터-4	가-4	보광동 35-16	5.10	5.10	-	-	-	-	-	
	휴게쉼터	나	-	62.10	62.10	-	-	-	-	-	
	휴게쉼터-1	나-1	보광동 45-1	19.50	19.50	-	-	-	-	-	
	휴게쉼터-2	나-2	보광동 35-31	42.60	42.60	-	-	-	-	-	
	평의자	②	전지역	-	-	-	-	-	-	6	
	등의자	③	전지역	-	-	-	-	-	-	8	
	앉음벽	④	전지역	9.00	9.00	-	-	-	-	3	L=17.3m
유희시설	소 계		-	532.50	532.50	-	-	-	-	10	
	놀이터	다	-	532.50	532.50	-	-	-	-	-	
	놀이터-1	다-1	보광동 43-2	532.50	532.50	-	-	-	-	-	
	조합네트놀이대	⑤	보광동 43-1	-	-	-	-	-	-	1	
	시소	⑥	보광동 43-1	-	-	-	-	-	-	2	
	그네	⑦	전지역	-	-	-	-	-	-	2	
	흔들놀이대	⑧	전지역	-	-	-	-	-	-	3	
	통과놀이대	⑨	보광동 52	-	-	-	-	-	-	1	
	유아조합놀이대	⑩	보광동 52	-	-	-	-	-	-	1	
녹지	소계		-	1,667.10	-	-	-	-	-	-	
	녹지		전지역	1,667.10	-	-	-	-	-	-	

3. 도로조서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계				207.8	564.70				
신설	소로	3	1	3	102.8	308.30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3	2	2	79.7	159.30	연결로	소로3-1	소로3-1	
		3	3	2	4.7	9.40	연결로	소로3-2	놀이터-1	
		3	4	3	8.1	24.2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1	
		3	5	6	6.7	40.4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1	
		3	6	4	5.8	23.1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1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내

한남4구역 소공원(가칭) 조성계획 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보광동 393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6,576.40	1,137.80	-	-	-	18	
기반 시설	소 계	837.70	837.70	-	-	-	-	
	도 로	661.00	661.00	-	-	-	-	5노선
	광 장	176.70	176.70	-	-	-	-	
운동시설		-	-	-	-	-	5	
휴양시설		163.00	163.00	-	-	-	13	
녹 지 및 기 타		5,575.70	137.10	-	-	-	-	
시 설 율 (법정 20%)		(1,137.80 / 6,576.40) x 100 = 17.30%						
건 폐 율 (법정 5%)		(0.00 / 6,576.40) x 100 = 0.0%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	6,576.40	1,137.80	-	-	-	-	18	
기반시설	소 계		-	837.70	837.70	-	-	-	-	-	
	도로		전지역	661.00	661.00	-	-	-	-	-	5노선
	광장	가	-	176.70	176.70	-	-	-	-	-	
	진입광장-1	가-1	보광동421-1	176.70	176.70	-	-	-	-	-	
체육시설	소 계			-	-	-	-	-	-	5	
	체력단련시설	①	보광동402	-	-	-	-	-	-	5	
휴양시설	소 계		-	163.00	163.00	-	-	-	-	13	
	스탠드	나	보광동413	163.00	163.00	-	-	-	-	-	
	등의자	②	전지역	-	-	-	-	-	-	12	
	앉음벽	③	보광동421-1	-	-	-	-	-	-	1	
녹지및기타	소 계		-	5,575.70	137.10	-	-	-	-	-	
	녹지		전지역	5,438.60	-	-	-	-	-	-	
	기타(옹벽)	다	전지역	137.10	137.1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204.5	661.0				
신설	소로	3	1	3	33.0	98.0	진입로	부지경계	가-1	
		3	2	3	7.5	28.0	연결로	가-1	소로3-4	
		3	3	3	10.0	26.0	연결로	가-1	소로3-4	
		3	4	2	57.0	218.2	진입로	나	부지경계	
		3	5	3	97.0	291.0	진입로	가-1	부지경계	

조성계획총괄도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어린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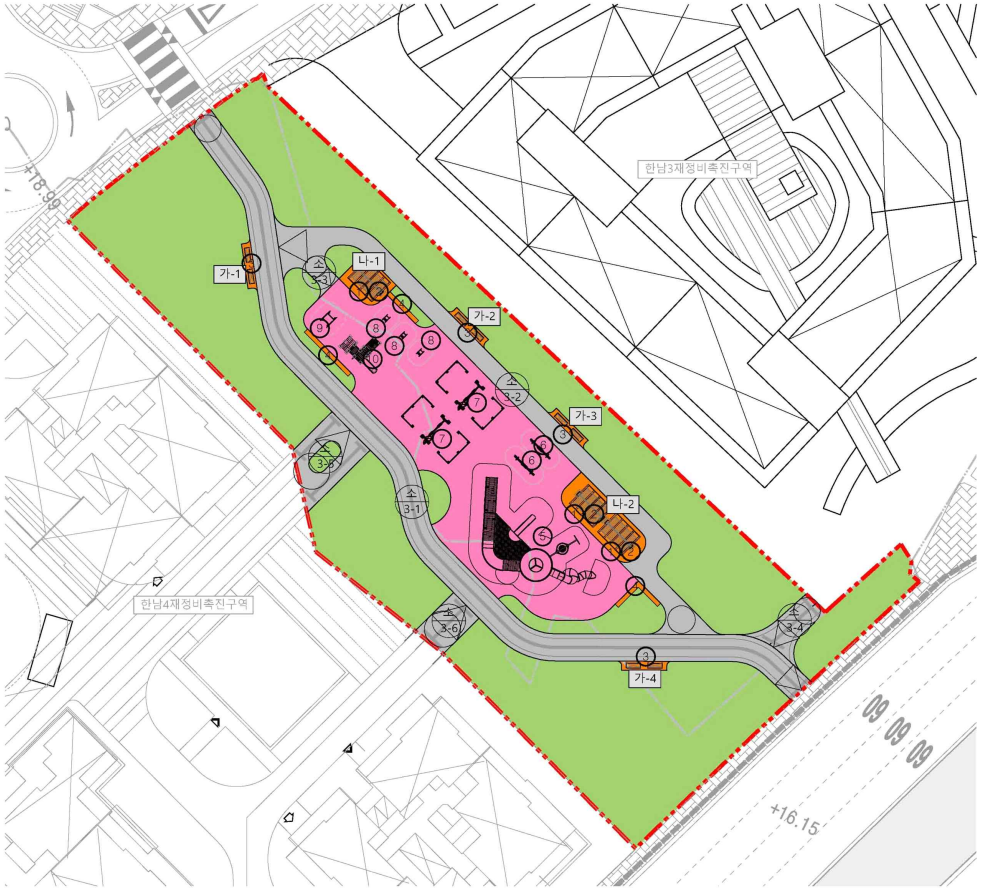

Scale : 1/200(A1)
0 2 5 10(m)

◩ 조성계획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비 고
총 계			2,855.80	1,188.70	-	-	30	※ 시설율 41.62%
기반시설		소 계	564.70	564.70	-	-	-	
		도 로	564.70	564.70	-	-	-	6개 노선
주점시설		소 계	-	-	-	-	3	
	①	파고라	-	-	-	-	3	
휴양시설		소 계	91.50	91.50	-	-	17	
	가	포켓쉼터	20.40	20.40	-	-	-	
	가-1	포켓쉼터-1	5.10	5.10	-	-	-	
	가-2	포켓쉼터-2	5.10	5.10	-	-	-	
	가-3	포켓쉼터-3	5.10	5.10	-	-	-	
	가-4	포켓쉼터-4	5.10	5.10	-	-	-	
	나	휴게쉼터	62.10	62.10	-	-	-	
	나-1	휴게쉼터-1	19.50	19.50	-	-	-	
	나-2	휴게쉼터-2	42.60	42.60	-	-	-	
	②	벤의자	-	-	-	-	6	
	③	등의자	-	-	-	-	8	
	④	앙음벽	9.00	9.00	-	-	3	L=17.3m
유희시설		소 계	532.50	532.50	-	-	10	
	다	놀이터	532.50	532.50	-	-	-	
	다-1	놀이터-1	532.50	532.50	-	-	-	
	⑤	조합네트놀이대	-	-	-	-	1	
	⑥	시소	-	-	-	-	2	
	⑦	그네	-	-	-	-	2	
	⑧	흔들놀이대	-	-	-	-	3	
	⑨	통과놀이대	-	-	-	-	1	
	⑩	유아조합놀이대	-	-	-	-	1	
녹지 및 기타		소 계	1,667.10		-	-	-	※ 녹시율 58.38%
		녹 지	1,667.10		-	-	-	

조성계획총괄도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소공원

◩ 조성계획총괄표

시설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건축면적(M2) 바닥면적	건축면적(M2) 연면적	공작물	비 고
총 계			6,576.40	1,137.80	-	-	18	※ 시설율 17.30%
기반시설		소 계	837.70	837.70	-	-	-	
		도 로	661.00	661.00	-	-	-	5개 노선
	가	광 장	176.70	176.70	-	-	-	
	가-1	광 장 - 1	176.70	176.70	-	-	-	
운동시설		소 계	-	-	-	-	5	
	①	체력단련시설	-	-	-	-	5	
휴양시설		소 계	163.00	163.00	-	-	13	
	나	스탠드	163.00	163.00	-	-	-	
	②	등의자	-	-	-	-	12	
	③	옆돌벽	-	-	-	-	1	L=13.0m
녹지 및 기타		소 계	5,575.70	137.10	-	-	-	※ 녹지율 82.70%
		녹 지	5,438.60	-	-	-	-	
	다	기타(옹벽)	137.10	137.10	-	-		

◈ 강서구공고 제2025-130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열람공고

1. 강서구 화곡동 24-266번지 화곡초등학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주차관리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주차장	화곡동 24-266번지	-	증) 3,600.0	3,600.0	-	학교시설 중복결정 (A=3,600㎡)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신설	-	주차장	• 주차장(신설) - 면적 증) 3,600.0㎡	• 사업지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자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주택이 다수 존재하며,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 및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기여 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려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	학교 (화곡초)	화곡동 24-266번지	14,921.0	-	14,921.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 (1987.02.21.)	주차장 중복결정 (A=3,600㎡)

※ 면적 변경 없음

라. 관련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과(☎02-2600-6692) 및 주차관리과(☎02-2600-42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작구공고 제2025-1295호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동작구공고 제2023-933(2023.06.01.)호로 열람공고 한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에 대하여 2025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공간포털(열람공고-동작구-공고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25. 7. 17. ~ 7. 31.(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장승배기로 70, 8층)
   상도3동 주민센터(성대로2길 11)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대	-	증) 24,768	24,768	-

※ 구역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4.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5. 의견서 제출방법 : Fax 02-820-4325, e-mail lch0409@dongjak.go.kr
   - 서면 및 온라인(팩스·이메일)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의견서 제출 가능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94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공고 제2025-1698호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86호(2023.7.13.)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대모산근린공원(일원지구)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가. 공 원 명: 대모산근린공원
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434-1 일원
나. 면 적: 229,732.7.0㎡
- 개포지구: 62,813.4㎡
- 일원지구: 149,361.3㎡
- 구룡지구: 17,558.0㎡
다. 조성계획(변경)결정 조서 및 도면: 별첨
라.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원녹지과(☎02-3423-6243)
사.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비치

도시계획시설(대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대모산근린공원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29,732.70	23,038.63	2	218.98	168.88	112	229,732.70	27,110.92	3	548.98	498.88	128	시설면적 증가 ㎡ 4,072.29㎡
기반시설	소 계	229,732.70	23,038.63	2	218.98	168.88	112	229,732.70	27,110.92	3	548.98	498.88	128	㎡ 4,072.29㎡
	개포지구	62,813.40	3,104.25	-	-	-	9	62,813.40	3,104.25	-	-	-	9	-
	일원지구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149,361.30	19,311.71	2	382.00	382.00	47	㎡ 4,072.29㎡
	구룡지구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
시 설 율 (법정 40%)		23,038.63 / 229,732.70 × 100% = 10.03%						27,110.92 / 229,732.70 × 100% = 11.80%						
건 폐 율 (법정 10%)		218.98 / 229,732.70 × 100% = 0.10%						548.98 / 229,732.70 × 100% = 0.24%						

1-1.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2,813.40	3,104.25	-	-	-	9	62,813.40	3,104.25	-	-	-	9	
기반시설	소계	2,737.75	2,737.75	-	-	-	-	2,737.75	2,737.75	-	-	-	-	
	도로	2,737.75	2,737.75	-	-	-	-	2,737.75	2,737.75	-	-	-	-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366.50	366.50	-	-	-	9	366.50	366.50	-	-	-	9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	-	-	-	-	-	-	-	-	-	-	-	
교양시설		-	-	-	-	-	-	-	-	-	-	-	-	
편익시설		-	-	-	-	-	-	-	-	-	-	-	-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59,709.15	-	-	-	-	-	59,709.15	-	-	-	-	-	

1-2.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시설조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62,813.40	3,104.25	-	-	-	-	9	-	-	62,813.40	3,104.25	-	-	-	-	9	
기반시설	소계	-	-	2,737.75	2,737.75	-	-	-	-	-	-	-	2,737.75	2,737.75	-	-	-	-	-	
	도로	-	-	2,737.75	2,737.75	-	-	-	-	-	-	-	2,737.75	2,737.75	-	-	-	-	-	
휴양시설	소계	-	-	366.50	366.50	-	-	-	-	9	-	-	366.50	366.50	-	-	-	-	9	
	휴게소	가	개포동 산104	366.50	366.50	-	-	-	-	-	가	개포동 산104	366.50	366.50	-	-	-	-	-	
	파고라	①	휴게소	-	-	-	-	-	-	1	①	휴게소	-	-	-	-	-	-	1	
	평의자	②	휴게소	-	-	-	-	-	-	8	②	휴게소	-	-	-	-	-	-	8	
녹지 및 기타	소계	-	-	59,709.15	-	-	-	-	-	-	-	-	59,709.15	-	-	-	-	-	-	
	녹지	-	-	59,709.15	-	-	-	-	-	-	-	-	59,709.15	-	-	-	-	-	-	

1-3. 대모산근린공원 개포지구 도로조서(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926.80	2,737.75	-	-	-	
변 경					926.80	2,737.75				
당 초	산책로	계			926.80	2,737.75	-	-	-	
변 경					926.80	2,737.75				
당 초			1	3.0	502.10	1,506.18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	3.0	173.50	520.46	연결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 초			3	3.0	208.70	626.15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소 가	
당 초			4	2.0	42.50	84.9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3	

2-1.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총괄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9,361.30	15,239.42	1	52.00	52.00	31	149,361.30	19,311.71	2	382.00	382.00	47	증 4,072.29㎡
기반시설	소계	8,846.58	8,846.58	-	-	-	-	10,937.24	10,937.24	-	-	-	-	증 2,090.66㎡
	도로	8,846.58	8,846.58	-	-	-	-	10,937.24	10,937.24	-	-	-	-	증 2,090.66㎡
	광장	-	-	-	-	-	-	-	-	-	-	-	-	
조경시설		3,755.43	3,755.43	-	-	-	26	4,785.84	4,785.84	-	-	-	32	증 1,030.41㎡
휴양시설		136.21	136.21	-	-	-	3	165.35	165.35	-	-	-	13	증 29.14㎡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1,250.00	1,250.00	-	-	-	-	1,250.00	1,250.00	-	-	-	-	
교양시설		600.00	600.00	-	-	-	-	1,400.25	1,400.25	1	330.00	330.00	-	증 800.25㎡
편익시설		651.20	651.20	1	52.00	52.00	2	773.03	773.03	1	52.00	52.00	2	증 121.83㎡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134,121.88	-	-	-	-	-	130,049.59	-	-	-	-	-	감 4,072.29㎡

2-2.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시설조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149,361.30	15,239.42	-	1	52.00	52.00	31	-	-	149,361.30	19,311.71	-	2	382.00	382.00	47	증 4,072.29㎡
기반시설	소계	-	-	8,846.58	8,846.58	-	-	-	-	-	-	-	10,937.24	10,937.24	-	-	-	-	-	증 2,090.66㎡
	도로	-	-	8,846.58	8,846.58	-	-	-	-	-	-	-	10,937.24	10,937.24	-	-	-	-	-	변경
조경시설	소계	-	-	3,755.43	3,755.43	-	-	-	-	26	-	-	4,785.84	4,785.84	-	-	-	-	32	증 1,030.41㎡
	관상용 식수대	가	-	3,755.43	3,755.43	-	-	-	-	-	가	-	4,785.84	4,785.84	-	-	-	-	-	변경
	관상용 식수대	가-1	개포동 산54-1	(2,199.24)	(2,199.24)	-	-	-	-	-	가-1	개포동 산54-1	(2,199.24)	(2,199.24)	-	-	-	-	-	
	관상용 식수대	가-2	개포동 246-13	(1,556.19)	(1,556.19)	-	-	-	-	-	가-2	개포동 246-13	(1,556.19)	(1,556.19)	-	-	-	-	-	
	관상용 식수대	-	-	-	-	-	-	-	-	-	가-3	일원동 433-3	(443.74)	(443.74)	-	-	-	-	-	신설
	관상용 식수대	-	-	-	-	-	-	-	-	-	가-4	일원동 437	(586.67)	(586.67)	-	-	-	-	-	신설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평의자	①	전지역	-	-	-	-	-	-	25	①	전지역	-	-	-	-	-	-	30	변경
	파고라	②	관상용 식수대	-	-	-	-	-	-	1	②	관상용 식수대	-	-	-	-	-	-	1	
	원형 파고라	-	-	-	-	-	-	-	-	1	③	휴게소 다-4	-	-	-	-	-	-	1	신설
휴양시설	소계	-	-	136.21	136.21	-	-	-	-	3	-	-	165.35	165.35	-	-	-	-	13	증 29.14㎡
	휴게소	다	-	63.71	63.71	-	-	-	-	-	나	-	92.85	92.85	-	-	-	-	-	변경
	휴게소	다-1	개포동 246-2	(26.08)	(26.08)	-	-	-	-	-	나-1	개포동 246-2	(26.08)	(26.08)	-	-	-	-	-	
	휴게소	다-2	개포동 산56	(17.26)	(17.26)	-	-	-	-	-	나-2	개포동 산56	(17.26)	(17.26)	-	-	-	-	-	
	휴게소	다-3	개포동 산56	(20.37)	(20.37)	-	-	-	-	-	나-3	개포동 산56	(20.37)	(20.37)	-	-	-	-	-	
	휴게소	-	-	-	-	-	-	-	-	-	나-4	일원동 433-3	(29.14)	(29.14)	-	-	-	-	-	신설
	전망 데크	라	개포동 246-3	72.50	72.50	-	-	-	-	-	다	개포동 246-3	72.50	72.50	-	-	-	-	-	
	야외 테이블	③	휴게소	-	-	-	-	-	-	3	④	전지역	-	-	-	-	-	-	13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영시설	소계	-	-	1,250.00	1,250.00	-	-	-	-	-	-	-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마	개포동 산56	495.00	495.00	-	-	-	-	-	라	개포동 산56	495.00	495.00	-	-	-	-	-	
	농구장	바	개포동 산56	315.00	315.00	-	-	-	-	-	마	개포동 산56	315.00	315.00	-	-	-	-	-	
	체력단련장	사	개포동 산56	440.00	440.00	-	-	-	-	-	바	개포동 산56	440.00	440.00	-	-	-	-	-	
교육시설	소계	-	-	600.00	600.00	-	-	-	-	-	-	-	1,400.25	1,400.25	-	-	-	-	-	증 800.25㎡
	조정수목원	나	개포동 산56	600.00	600.00	-	-	-	-	-	사	개포동 산56	600.00	600.00	-	-	-	-	-	
	책섬터	-	-	-	-	-	-	-	-	-	아	일원동 434-1	800.25	800.25	-	1	330.00	330.00	-	신설
편의시설	소계	-	-	651.20	651.20	-	1	52.00	52.00	2	-	-	773.03	773.03	-	1	52.00	52.00	2	증 121.83㎡
	주차장	-	-	550.00	550.00	-	-	-	-	-	자	-	671.83	671.83	-	-	-	-	-	변경
	주차장	아	개포동 산56	(550.00)	(550.00)	-	-	-	-	-	자-1	개포동 산56	(550.00)	(550.00)	-	-	-	-	-	
	주차장	-	-	-	-	-	-	-	-	-	자-2	일원동 434-2	(121.83)	(121.83)	-	-	-	-	-	신설
	약수터	자	개포동 산56	20.00	20.00	-	-	-	-	-	차	개포동 산56	20.00	20.00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화장실	차	-	81.20	81.20	-	1	52.00	52.00	2	카	-	81.20	81.20	-	1	52.00	52.00	2	
	화장실	차-1	개포동 산56	(70.00)	(70.00)	-	(1)	(52.00)	(52.00)	(1)	카-1	개포동 산56	(70.00)	(70.00)	-	(1)	(52.00)	(52.00)	(1)	
	화장실	차-2	개포동 246-13	(11.20)	(11.20)	-	-	-	-	(1)	카-2	개포동 246-13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	-	134,121.88	-	-	-	-	-	-	-	-	130,049.59	-	-	-	-	-	-	감 4,072.29㎡
	녹지	-	-	134,121.88	-	-	-	-	-	-	-	-	130,049.59	-	-	-	-	-	-	변경

2-3. 대모산근린공원 일원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3,548.57	8,846.58	-	-	-	
변 경					4,693.95	10,937.24				
당 초	소 로	계			631.91	2,595.73	-	-	-	
변 경					631.91	2,595.73				
당 초		3	1	3.0	102.94	308.9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 초		3	2	3.0~3.5	16.52	54.4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3	3	3.5~5.0	512.45	2,232.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2,916.66	6,250.85	-	-	-	
변 경					4,062.04	8,341.51				
폐지			1	2.0	283.84	567.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신설			1	2.0	286.00	574.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	2.0	96.55	193.5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당 초			3	2.0	192.55	384.76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3	
당 초			4	2.0	63.05	126.87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산책로		5	2.0	47.52	97.2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6	2.0	132.56	322.39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7	2.0	183.52	375.0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8	1.8	73.90	149.8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	
당 초			9	1.8	55.05	111.2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당 초			10	1.8	414.89	883.01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 초			11	1.5	137.61	219.93	진입로	산책로 12	소로 3-3	
당 초			12	1.2	183.40	225.4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당 초			13	1.2	12.25	14.69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2	
당 초			14	1.5	19.86	31.55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0	
당 초			15	1.2	118.41	143.6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2	
당 초			16	3.0	78.18	227.9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당 초			17	1.8	229.29	444.1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당 초			18	3.0~7.0	98.89	386.1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28	
당 초			19	2.0~3.0	46.41	113.0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산책로		20	2.8~12.0	43.05	280.48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8	
당 초			21	2.5~3.0	55.29	152.0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0	
당 초			22	1.0	46.22	61.9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3	2.2~5.5	64.42	183.87	산책로	산책로 22	공원내	
당 초			24	2.0~3.0	17.34	48.54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1	
당 초			25	2.5~4.0	4.93	16.05	산책로	공원내	산책로 21	
당 초			26	2.0~2.3	65.04	145.56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28	
당 초			27	1.2~1.8	56.85	76.2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8	
당 초			28	2.2~4.0	95.79	268.44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3-3	
신 설			29	2.0	59.59	118.99	산책로	산책로 1	책쉼터	
신 설			30	1.2	4.68	5.62	산책로	산책로 29	책쉼터	
신 설			31	1.2	16.97	20.37	산책로	산책로 29	산책로 29	
신 설			32	1.2	16.32	29.47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29	
신 설			33	1.2~1.5	173.61	229.86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6	
신 설			34	1.2	8.31	10.00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3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산책로		35	1.2	13.95	16.94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33	
신 설			36	1.8	462.04	917.49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신 설			37	1.8	198.55	379.18	산책로	산책로 36	공원경계	
신 설			38	1.8	189.20	355.7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3-1.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17,558.00	4,694.96	1	166.98	116.88	72	
기반시설	소계	2,790.14	2,790.14	-	-	-	1	2,790.14	2,790.14	-	-	-	1	
	도로	1,598.23	1,598.23	-	-	-	1	1,598.23	1,598.23	-	-	-	1	
	광장	1,191.91	1,191.91	-	-	-	-	1,191.91	1,191.91	-	-	-	-	
조경시설		377.39	377.39	-	-	-	-	377.39	377.39	-	-	-	-	
휴양시설		313.40	313.40	-	-	-	44	313.40	313.40	-	-	-	44	
유희시설		423.85	423.85	-	-	-	9	423.85	423.85	-	-	-	9	
운동시설		194.19	194.19	-	-	-	8	194.19	194.19	-	-	-	8	
편익시설		66.50	66.50	-	-	-	-	66.50	66.50	-	-	-	-	
관리시설		529.49	529.49	1	166.98	116.88	10	529.49	529.49	1	166.98	116.88	10	
녹지 및 기타		12,863.04	-	-	-	-	-	12,863.04	-	-	-	-	-	

3-2.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시설조서(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	-	17,558.00	4,694.96	-	-	166.98	116.88	72	-	-	17,558.00	4,694.96	-	-	166.98	116.88	72	
기반시설	소계	-	-	2,790.14	2,790.14	-	-	-	-	1	-	-	2,790.14	2,790.14	-	-	-	-	1	
	도로	-	-	1,598.23	1,598.23	-	-	-	-	-	-	-	1,598.23	1,598.23	-	-	-	-	-	
	광장	가	-	1,191.91	1,191.91	-	-	-	-	-	가	-	1,191.91	1,191.91	-	-	-	-	-	
	광장A	가-1	개포동 638-5, 산176-18	(92.70)	(92.70)	-	-	-	-	-	가-1	개포동 638-5, 산176-18	(92.70)	(92.70)	-	-	-	-	-	
	광장B	가-2	개포동 638-5	(143.22)	(143.22)	-	-	-	-	-	가-2	개포동 638-5	(143.22)	(143.22)	-	-	-	-	-	
	광장C	가-3	개포동 638-5	(69.94)	(69.94)	-	-	-	-	-	가-3	개포동 638-5	(69.94)	(69.94)	-	-	-	-	-	
	광장D	가-4	개포동 638-5	(80.69)	(80.69)	-	-	-	-	-	가-4	개포동 638-5	(80.69)	(80.69)	-	-	-	-	-	
	광장E	가-5	개포동 638-5, 산176-18	(318.14)	(318.14)	-	-	-	-	-	가-5	개포동 638-5, 산176-18	(318.14)	(318.14)	-	-	-	-	-	
	광장F	가-6	개포동 산176-18	(92.60)	(92.60)	-	-	-	-	-	가-6	개포동 산176-18	(92.60)	(92.60)	-	-	-	-	-	
	광장G	가-7	개포동 산176-18	(293.59)	(293.59)	-	-	-	-	-	가-7	개포동 산176-18	(293.59)	(293.59)	-	-	-	-	-	
	광장H	가-8	개포동 산176-18	(101.03)	(101.03)	-	-	-	-	-	가-8	개포동 산176-18	(101.03)	(101.03)	-	-	-	-	-	
	데크로드	①	-	-	-	-	-	-	-	1	①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조경시설	소계	-	-	377.39	377.39	-	-	-	-	-	-	-	377.39	377.39	-	-	-	-	-	
	잔디마당	나	개포동 산176-18	377.39	377.39	-	-	-	-	-	나	개포동 산176-18	377.39	377.39	-	-	-	-	-	
휴양시설	소계	-	-	313.40	313.40	-	-	-	-	44	-	-	313.40	313.40	-	-	-	-	44	
	휴게마당	다	-	313.40	313.40	-	-	-	-	-	다	-	313.40	313.40	-	-	-	-	-	
	휴게마당 A	다-1	개포동 산176-18	(109.82)	(109.82)	-	-	-	-	-	다-1	개포동 산176-18	(109.82)	(109.82)	-	-	-	-	-	
	휴게마당B	다-2	개포동 산176-18	(101.56)	(101.56)	-	-	-	-	-	다-2	개포동 산176-18	(101.56)	(101.56)	-	-	-	-	-	
	휴게마당C	다-3	개포동 산176-18	(102.02)	(102.02)	-	-	-	-	-	다-3	개포동 산176-18	(102.02)	(102.02)	-	-	-	-	-	
	휴게데크 A	②	-	-	-	-	-	-	-	1	②	-	-	-	-	-	-	-	1	
	휴게데크 B	③	-	-	-	-	-	-	-	1	③	-	-	-	-	-	-	-	1	
	전망 파고라	④	-	-	-	-	-	-	-	2	④	-	-	-	-	-	-	-	2	
	휴게 파고라	⑤	-	-	-	-	-	-	-	1	⑤	-	-	-	-	-	-	-	1	
	야외 테이블	⑥	-	-	-	-	-	-	-	6	⑥	-	-	-	-	-	-	-	6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휴양시설	평상	⑦	-	-	-	-	-	-	-	4	⑦	-	-	-	-	-	-	-	4	
	선베드	⑧	-	-	-	-	-	-	-	6	⑧	-	-	-	-	-	-	-	6	
	등벤치	⑨	-	-	-	-	-	-	-	4	⑨	-	-	-	-	-	-	-	4	
	사각벤치	⑩	-	-	-	-	-	-	-	13	⑩	-	-	-	-	-	-	-	13	
	앉음벽	⑪	-	-	-	-	-	-	-	6	⑪	-	-	-	-	-	-	-	6	
야외시설	소계	-	-	423.85	423.85	-	-	-	-	9	-	-	423.85	423.85	-	-	-	-	9	
	지형놀이마당	라	개포동 638-5, 산176-18	423.85	423.85	-	-	-	-	-	라	개포동 638-5, 산176-18	423.85	423.85	-	-	-	-	-	
	미끄럼틀 A	⑫	-	-	-	-	-	-	-	1	⑫	-	-	-	-	-	-	-	1	
	미끄럼틀 B	⑬	-	-	-	-	-	-	-	1	⑬	-	-	-	-	-	-	-	1	
	다리 건너기	⑭	-	-	-	-	-	-	-	1	⑭	-	-	-	-	-	-	-	1	
	통나무 건너기	⑮	-	-	-	-	-	-	-	2	⑮	-	-	-	-	-	-	-	2	
	지형 오르기	⑯	-	-	-	-	-	-	-	3	⑯	-	-	-	-	-	-	-	3	
	모험놀이	⑰	-	-	-	-	-	-	-	1	⑰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	-	194.19	194.19	-	-	-	-	8	-	-	194.19	194.19	-	-	-	-	8	
	힘뜰 마당	마	-	194.19	194.19	-	-	-	-	-	마	-	194.19	194.19	-	-	-	-	-	
	힘뜰 마당A	마-1	개포동 638-5, 산176-18	(122.31)	(122.31)	-	-	-	-	-	마-1	개포동 638-5, 산176-18	(122.31)	(122.31)	-	-	-	-	-	
	힘뜰 마당B	마-2	개포동 산176-18	(71.88)	(71.88)	-	-	-	-	-	마-2	개포동 산176-18	(71.88)	(71.88)	-	-	-	-	-	
	체력단련 시설	⑱	-	-	-	-	-	-	-	8	⑱	-	-	-	-	-	-	-	8	
편의시설	소계	-	-	66.50	66.50	-	-	-	-	-	-	-	66.50	66.50	-	-	-	-	-	
	주차장	바	개포동 638-5, 638-8	66.50	66.50	-	-	-	-	-	바	개포동 638-5, 638-8	66.50	66.50	-	-	-	-	-	
관리시설	소계	-	-	529.49	529.49	-	-	166.98	116.88	10	-	-	529.49	529.49	-	-	166.98	116.88	10	
	관리 사무소	사	개포동 638-5	529.49	529.49	-	-	166.98	116.88	-	사	개포동 638-5	529.49	529.49	-	-	166.98	116.88	-	
	볼라드	⑲	-	-	-	-	-	-	-	4	⑲	-	-	-	-	-	-	-	4	
	종합 안내판	⑳	-	-	-	-	-	-	-	1	⑳	-	-	-	-	-	-	-	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시설안내판	㉑	-	-	-	-	-	-	-	1	㉑	-	-	-	-	-	-	-	1	-	
	방향안내판	㉒	-	-	-	-	-	-	-	4	㉒	-	-	-	-	-	-	-	4	-	
	소계	-	-	12,863.04	-	-	-	-	-	-	-	-	12,863.04		-	-	-	-	-	-	
	녹지	-	-	12,863.04	-	-	-	-	-	-	-	-	12,863.04		-	-	-	-	-	-	

3-3. 대모산근린공원 구룡지구 도로조서(변경없음)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432.11	1,598.23	-	-	-	
변 경					432.11	1,598.23				
당 초	소 로	계			132.57	795.42	-	-	-	
변 경					132.57	795.42				
당 초		3	1	6.0	97.47	584.82	진입로	공원경계 (진입부)	공원경계 (등산로)	
당 초		3	2	6.0	35.10	210.60	부진입로	소로3-1	사	
당 초	산책로	계			299.54	802.81	-	-	-	
변 경					299.54	802.81				
당 초			1	2.5	44.40	111.00	부진입로	공원경계 (E/V연결로)	가-1(광장)	
당 초			2	2.5	11.61	29.03	부진입로	가-1(광장)	공원경계 (생태통로)	
당 초			3	2.5	17.97	44.93	산책로	가-1(광장)	가-3(광장)	
당 초			4	2.5	7.27	18.18	산책로	가-3(광장)	가-4(광장)	
당 초			5	2.5	19.39	48.48	산책로	가-4(광장)	가-5(광장)	
당 초			6	2.5	17.32	43.30	산책로	가-5(광장)	가-6(광장)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산책로		7	2.5	18.07	45.18	산책로	가-6(광장)	가-7(광장)	
당 초			8	2.5	14.10	35.25	산책로	가-7(광장)	가-8(광장)	
당 초			9	2.5	32.00	80.00	산책로	가-8(광장)	산책로10	
당 초			10	2.0	48.68	97.36	산책로	가-7(광장)	공원경계 (등산로)	
당 초			11	2.5	13.93	34.83	산책로	가-5(광장)	가-7(광장)	
당 초			12	3.5	7.80	27.30	부진입로	소로3-1	산책로13	
당 초			13	4.0	47.00	188.00	부진입로	소로3-1	사(관리사무소)	

도시계획시설(대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위 치 도

대모산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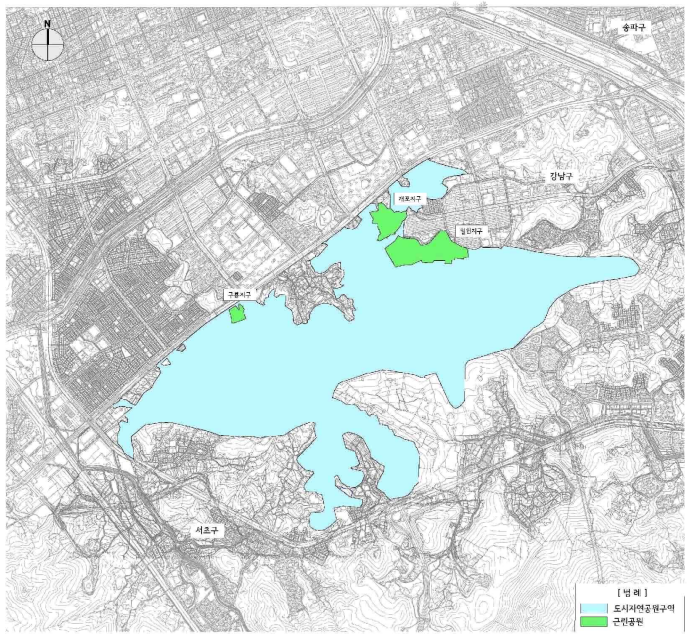

개요

구분		위치	면적(㎡)	비고
대모산 근린공원		-	229,732.70	
01	개포지구	강남구 개포동 산 89 일대	62,813.40	
02	일원지구	강남구 일원동 산55 일대	149,361.30	
03	구룡지구	강남구 개포동 639-5 일대	17,558.00	

Scale=1:5,000

0 150 300 600 1,500

대모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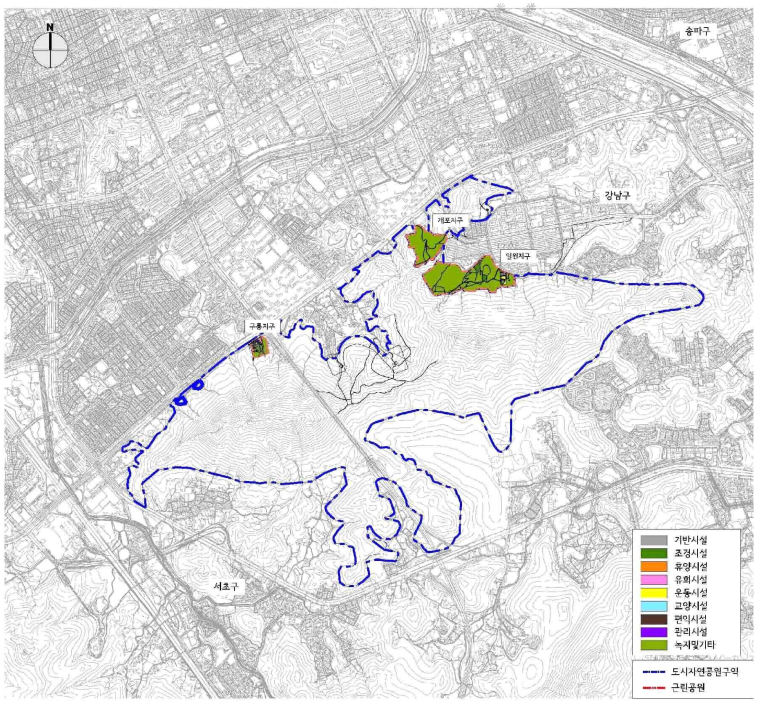

총괄표

구분		총계	개포지구	일원지구	구룡지구
투지 총 면적		229,732,70	62,813,40	140,361,30	17,558,00
사업 총 면적		23,038,83	3,104,25	15,239,42	4,694,96
기반시설	소계	14,374,47	2,737,75	8,846,58	2,790,14
	도로	13,192,56	2,737,75	8,846,58	1,598,23
	광장	1,191,91	-	-	1,191,91
조경시설		4,132,82	-	3,755,43	377,39
유양시설		816,11	366,50	136,21	313,40
유희시설		423,85	-	-	423,85
운동시설		1,444,19	-	1,250,00	194,19
교양시설		600,00	-	600,00	-
편의시설		717,76	-	651,20	66,56
관리시설		529,48	-	-	529,48
녹지 및 기타		205,694,07	99,709,15	134,121,88	12,863,04
주차(장)		2	-	1	1
산책로 보안펜스		216,98	-	52,00	186,98
옹벽체		186,88	-	52,00	116,88
공중화장실		112	9	31	72
비고					

* 공원사업율 : 23,038,83 / 229,732,70 x 100% = 10,03%
* 건폐율 : 218,98 / 229,732,70 x 100% = 0,10%
* 특정시설율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선축행위가 수반되는 운동시설물) : 0%

Scale=1:10,000
0 150 300 600 1,500

대모산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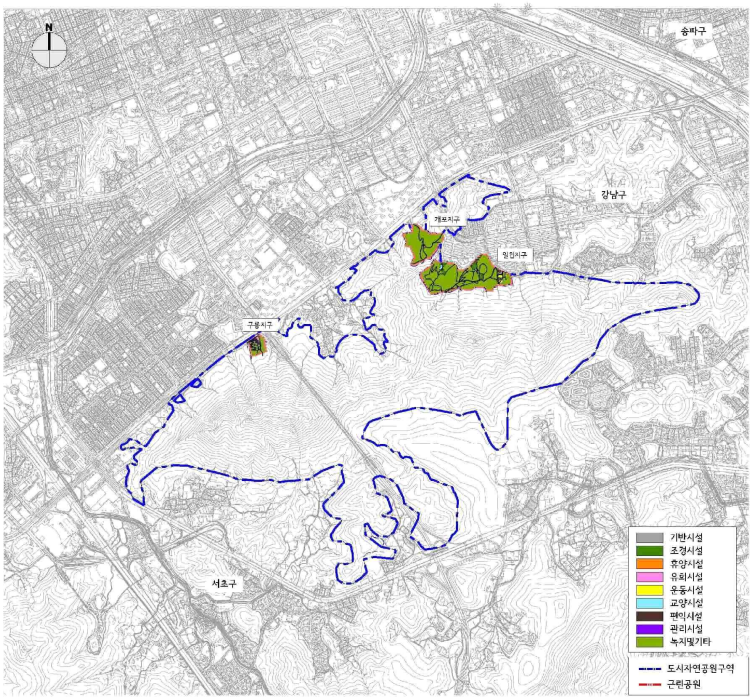

총괄표

구분		총계	개포지구	일원지구	구룡지구
부지 총 면적		229,732.70	62,813.40	149,351.30	17,568.00
시설 총 면적		27,110.92	3,104.25	19,311.71	4,694.96
기반시설	소계	18,495.13	2,737.75	10,937.24	2,760.14
	도로	15,273.22	2,737.75	10,937.24	1,598.23
	광장	1,191.91	-	-	1,191.91
조경시설		5,103.23	-	4,795.84	377.39
휴양시설		845.25	396.50	135.35	313.40
유희시설		423.85	-	-	423.85
운동시설		1,444.19	-	1,250.00	194.19
교양시설		1,400.25	-	1,400.25	-
편익시설		629.53	-	773.03	69.50
관리시설		529.49	-	-	529.49
녹지및기타		202,621.78	59,709.15	130,049.58	12,963.04
수목(종)		3	-	2	1
산책로 바닥면적		548.96	-	392.00	168.96
면적		490.96	-	392.00	118.96
공작물(기)		126	9	47	72
비고					

* 공원시설율 : 27,110.92 / 229,732.70 x 100% = 11.80%
* 건축율 : 548.96 / 229,732.70 x 100% = 0.24%
* 특정시설율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산촌생태가 수반되는 운동시설물) : 0%

Scale= 1:5,000
0 100 200 400 600 800 1,000

조 성 계 획 도 (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9,351.30	15,239.42	-	1	52.00	52.00	31	
기반시설	소계		8,846.58	8,846.58	-	-	-	-	-	
시설	도로		8,846.58	8,846.58	-	-	-	-	-	
조경시설	소계		3,755.43	3,755.43	-	-	-	-	25	
시설	관입음식수대	가	3,755.43	3,755.43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명의비	①	-	-	-	-	-	-	25	
	비고사	②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36.21	136.21	-	-	-	-	3	
시설	휴게소	다	63.71	63.71	-	-	-	-	-	
		다-1	(26.08)	(26.08)	-	-	-	-	-	
		다-2	(17.25)	(17.25)	-	-	-	-	-	
		다-3	(20.37)	(20.37)	-	-	-	-	-	
	전경대크	라	72.50	72.50	-	-	-	-	-	
	야외테이블	②	-	-	-	-	-	-	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마	495.00	495.00	-	-	-	-	-	
	농구장	바	315.00	315.00	-	-	-	-	-	
	서북단원장	사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600.00	600.00	-	-	-	-	-	
	조경수육집	나	600.00	600.00	-	-	-	-	-	
편익시설	소계		951.20	951.20	-	1	52.00	52.00	2	
시설	주차장	아	550.00	550.00	-	-	-	-	-	
	약수터	자	20.00	20.00	-	-	-	-	-	
	화장실	차	81.20	81.20	-	1	52.00	52.00	2	
		차-1	(70.00)	(70.00)	-	(1)	(52.00)	(52.00)	(1)	
		차-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4,121.88	-	-	-	-	-	-	
	녹지		134,121.88	-	-	-	-	-	-	

Scale=1:1,800

0 15 30 60 180

조 성 계 획 도 (변경)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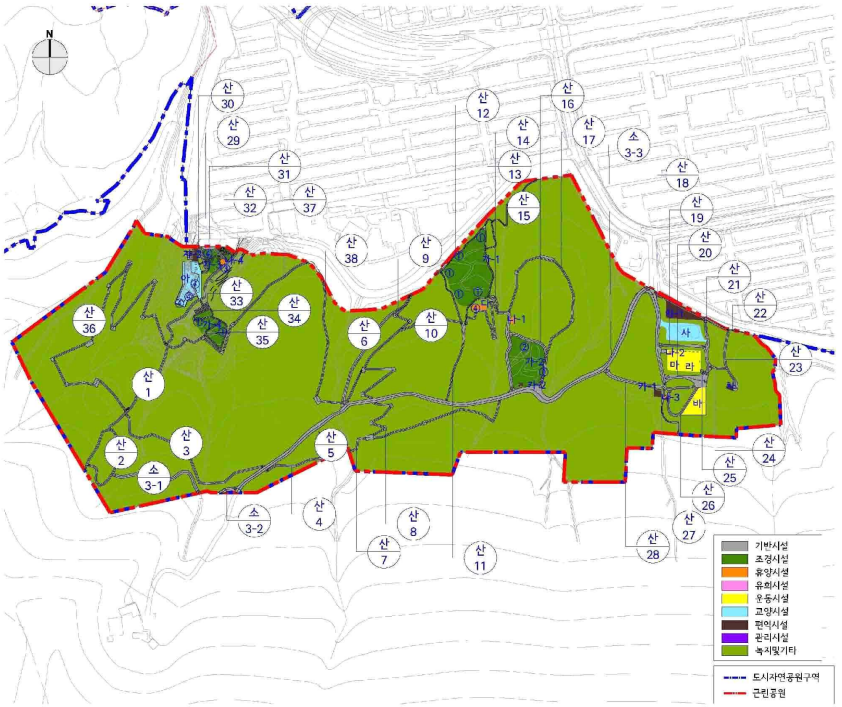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0,361.30	10,311.71	-	2	382.00	382.00	47	
기반시설	소계		10,937.24	10,937.24	-	-	-	-	-	
기반시설	도로		10,937.24	10,937.24	-	-	-	-	-	
조경시설	소계		4,765.84	4,765.84	-	-	-	-	32	
조경시설	관상용식수대	가	4,765.84	4,765.84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8.16)	(1,558.16)	-	-	-	-	-	
		가-3	(443.74)	(443.74)	-	-	-	-	-	
		가-4	(588.87)	(588.87)	-	-	-	-	-	
	입비카	①	-	-	-	-	-	-	30	
	체크라	②	-	-	-	-	-	-	1	
	횡정라고싸	③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65.35	165.35	-	-	-	-	13	
휴양시설	휴게소	나	92.85	92.85	-	-	-	-	-	
		나-1	(28.06)	(28.06)	-	-	-	-	-	
		나-2	(17.26)	(17.26)	-	-	-	-	-	
		나-3	(20.37)	(20.37)	-	-	-	-	-	
		나-4	(29.14)	(29.14)	-	-	-	-	-	
	산림테크	다	72.50	72.50	-	-	-	-	-	
	어린이이정	④	-	-	-	-	-	-	13	
유희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유희시설	테트만탈장	라	495.00	495.00	-	-	-	-	-	
	농구장	마	315.00	315.00	-	-	-	-	-	
	체적댄딩장	바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1,400.25	1,400.25	-	1	330.00	330.00	-	
교양시설	초청수목원	사	600.00	600.00	-	-	-	-	-	
	체험버	아	800.25	800.25	-	1	330.00	330.00	-	
편익시설	소계		773.03	773.03	-	1	52.00	52.00	2	
편익시설	주차장	자	671.83	671.83	-	-	-	-	-	
		자-1	(550.00)	(550.00)	-	-	-	-	-	
		자-2	(121.83)	(121.83)	-	-	-	-	-	
	매수터	차	20.00	20.00	-	-	-	-	-	
	화장실	카	81.20	81.20	-	1	52.00	52.00	2	
		카-1	(70.06)	(70.06)	-	(1)	(52.00)	(52.00)	(1)	
		카-2	(11.26)	(11.26)	-	-	-	-	(1)	
녹지및기타	소계		130,049.59		-	-	-	-	-	
기타	녹지		130,049.59		-	-	-	-	-	

Scale=1:1,800
0 15 30 90 180

동 선 계 획 도 (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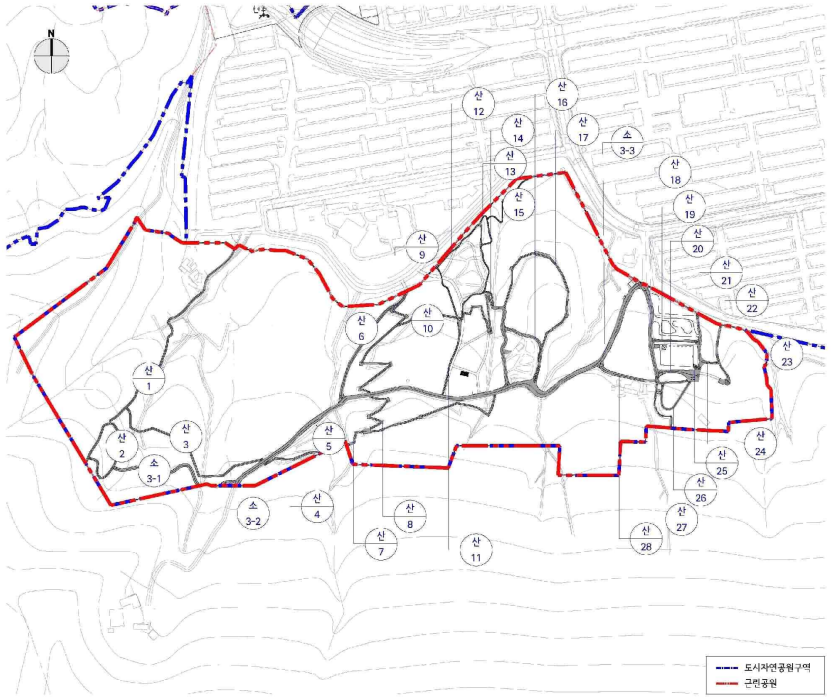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3,548.57	8,946.58				
"	소로	소 계			631.91	2,595.73				
"	소로	3	1	3.0	102.94	308.90	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	소로	3	2	3.0~3.5	18.52	54.43	산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소로	3	3	3.5~5.0	512.45	2,232.40	산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산책로	소 계			2,916.66	6,250.85				
"	산책로		1	2.0	283.64	567.22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산책로		2	2.0	95.55	193.5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	산책로		3	2.0	182.55	364.76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3	
"	산책로		4	2.0	69.05	126.97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5	2.0	47.52	97.2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산책로		6	2.0	132.56	322.39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7	2.0	183.52	375.06	산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8	1.8	73.90	148.8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9	1.8	55.06	111.27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	산책로		10	1.8	414.88	883.01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	산책로		11	1.5	137.61	216.30	진입로	산책로 12	소로 3-3	
"	산책로		12	1.2	183.40	225.4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	산책로		13	1.2	12.25	14.98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2	
"	산책로		14	1.5	19.66	31.55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0	
"	산책로		15	1.2	118.41	143.9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2	
"	산책로		16	3.0	79.16	227.9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	산책로		17	1.8	229.28	444.1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	산책로		18	3.0~7.0	99.80	368.1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28	
"	산책로		19	2.0~3.0	46.41	113.0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1	
"	산책로		20	2.8~12.0	43.05	266.48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8	
"	산책로		21	2.5~3.0	55.28	152.0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0	
"	산책로		22	1.0	45.22	61.99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산책로		23	2.2~5.5	64.42	183.87	산책로	산책로 22	공원내	
"	산책로		24	2.0~3.0	17.34	46.54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1	
"	산책로		25	2.5~4.0	4.93	16.05	산책로	공원내	산책로 21	
"	산책로		26	2.0~2.3	65.04	145.56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28	
"	산책로		27	1.2~1.8	58.85	76.26	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8	
"	산책로		28	2.2~4.0	95.78	266.44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3-3	

Scale=1:1,800

동 선 계 획 도 (변경)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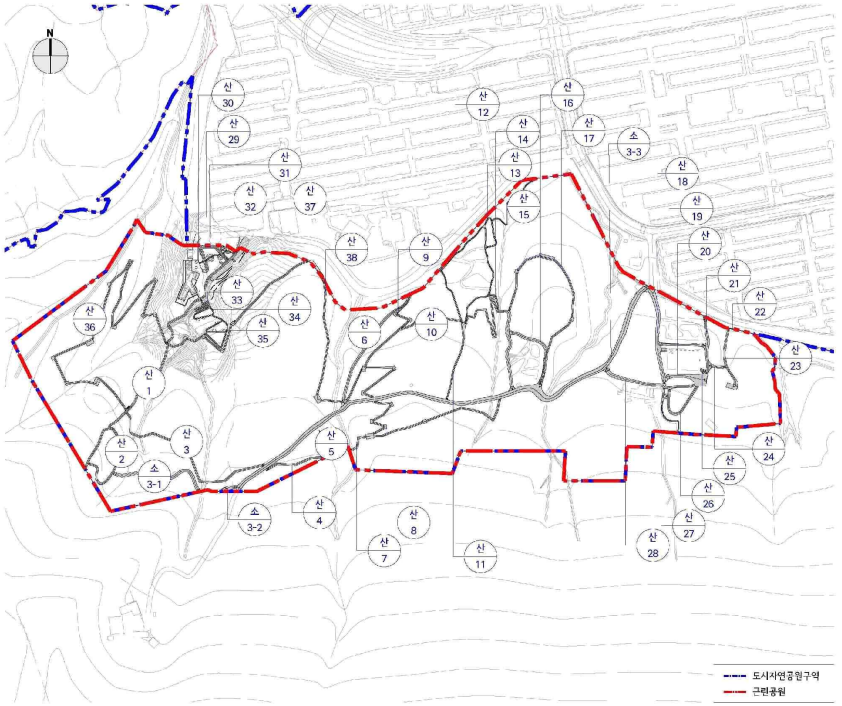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4,893.95	10,937.24				
	소로	소 계			831.91	2,595.73				
기정	소로	3	1	3.0	102.94	308.90	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	소로	3	2	3.0~3.5	18.52	54.43	린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소로	3	3	3.5~5.0	512.46	2,232.40	린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산책로	소 계			4,062.04	8,341.51				
변경	산책로		1	2.0	285.00	574.22	린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기정	산책로		2	2.0	88.88	193.5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1	
〃	산책로		3	2.0	192.56	364.75	산책로	산책로 1	소로 3-3	
〃	산책로		4	2.0	63.05	126.87	린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5	2.0	47.52	97.24	린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산책로		6	2.0	132.56	322.38	린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7	2.0	183.52	375.05	린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8	1.8	73.50	148.80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3	
〃	산책로		9	1.8	55.05	111.27	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	산책로		10	1.8	414.89	883.01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	산책로		11	1.5	137.61	219.93	린입로	산책로 12	소로 3-3	
〃	산책로		12	1.2	183.40	225.42	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	
〃	산책로		13	1.2	12.25	14.69	산책로	산책로 15	산책로 12	
〃	산책로		14	1.5	19.85	31.55	산책로	산책로 12	산책로 10	
〃	산책로		15	1.2	118.41	143.65	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2	
〃	산책로		16	3.0	78.18	227.9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	산책로		17	1.8	229.29	444.12	산책로	산책로 10	소로 3-3	
〃	산책로		18	3.0~7.0	99.89	386.18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20	
〃	산책로		19	2.0~3.0	48.61	113.64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21	
〃	산책로		20	2.8~12.0	43.05	280.48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19	
〃	산책로		21	2.5~3.0	55.29	152.03	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0	
〃	산책로		22	1.0	48.22	61.98	린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산책로		23	2.3~5.5	64.42	183.87	산책로	산책로 22	공원내	
〃	산책로		24	2.0~3.0	17.34	48.54	산책로	산책로 23	산책로 21	
〃	산책로		25	2.5~4.0	4.83	16.05	산책로	공원내	산책로 21	
〃	산책로		26	2.0~2.3	65.04	145.50	산책로	산책로 20	산책로 28	
〃	산책로		27	1.2~1.8	56.85	76.26	린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8	
〃	산책로		28	2.2~4.0	95.79	268.44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3-3	
신설	산책로		29	2.0	59.59	118.99	산책로	산책로 1	적림내	
〃	산책로		30	1.2	4.65	5.62	산책로	산책로 29	적림내	
〃	산책로		31	1.2	16.97	20.37	산책로	산책로 29	산책로 29	
〃	산책로		32	1.2	16.32	19.47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29	
〃	산책로		33	1.2~1.5	173.61	228.80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5	
〃	산책로		34	1.2	9.31	10.60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32	
〃	산책로		35	1.2	13.95	16.94	산책로	산책로 33	산책로 33	
〃	산책로		36	1.8	462.04	917.49	산책로	산책로 3	산책로 1	
〃	산책로		37	1.8	188.56	379.18	산책로	산책로 36	공원경계	
〃	산책로		38	1.8	189.20	355.7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0	

Scale=1:1,800

0 15 30 60 180

부분조성계획도 (기정)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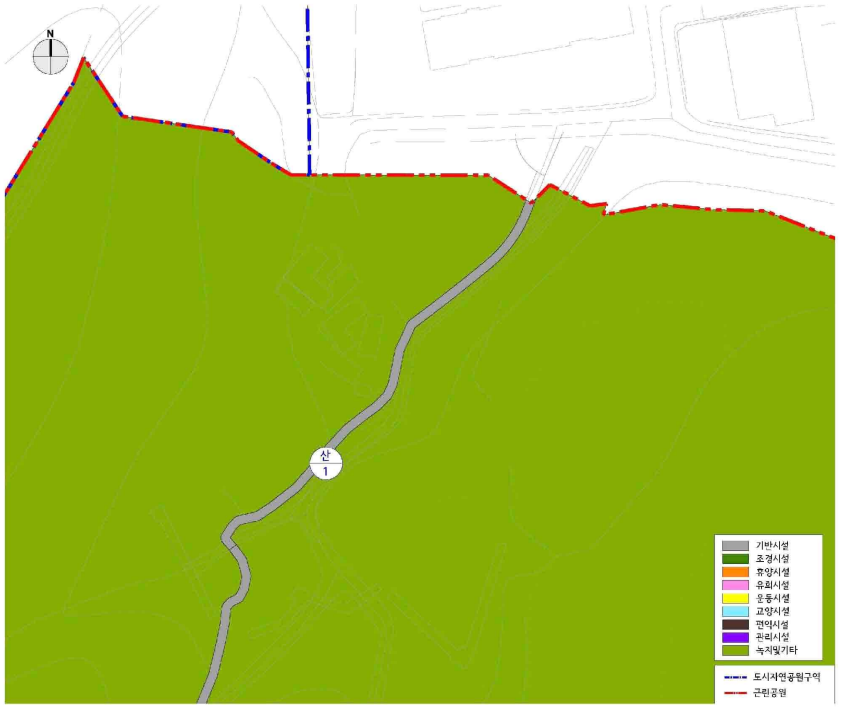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주소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개)	비고
합계			149,361.30	15,239.42	-	1	52.00	52.00	31	
기반시설	소계		6,845.58	6,845.58	-	-	-	-	-	
	도로		6,845.58	6,845.58	-	-	-	-	-	
조경시설	소계		3,755.43	3,755.43	-	-	-	-	26	
휴양시설	공상등식수대	가	3,755.43	3,755.43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쉼의자	①	-	-	-	-	-	-	25	
	파고라	②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38.21	138.21	-	-	-	-	3	
	휴게소	다	63.71	63.71	-	-	-	-	-	
		다-1	[26.06]	[26.06]	-	-	-	-	-	
		다-2	[17.26]	[17.26]	-	-	-	-	-	
		다-3	[20.37]	[20.37]	-	-	-	-	-	
	전망대크	라	72.50	72.50	-	-	-	-	-	
	야외테이블	③	-	-	-	-	-	-	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마	485.00	485.00	-	-	-	-	-	
	농구장	바	315.00	315.00	-	-	-	-	-	
	어린이운동장	사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500.00	500.00	-	-	-	-	-	
	조경수목원	나	500.00	500.00	-	-	-	-	-	
편익시설	소계		951.20	951.20	-	1	52.00	52.00	2	
	주차장	아	550.00	550.00	-	-	-	-	-	
	약수터	자	20.00	20.00	-	-	-	-	-	
	화장실	차	81.20	81.20	-	1	52.00	52.00	2	
		차-1	[70.00]	[70.00]	-	(1)	(52.00)	(52.00)	(1)	
		차-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4,121.88	-	-	-	-	-	-	
	녹지		134,121.88	-	-	-	-	-	-	

Scale=1:400

0 20 60 200 400

부분조성계획도 (변경)

대모산 근린공원 일원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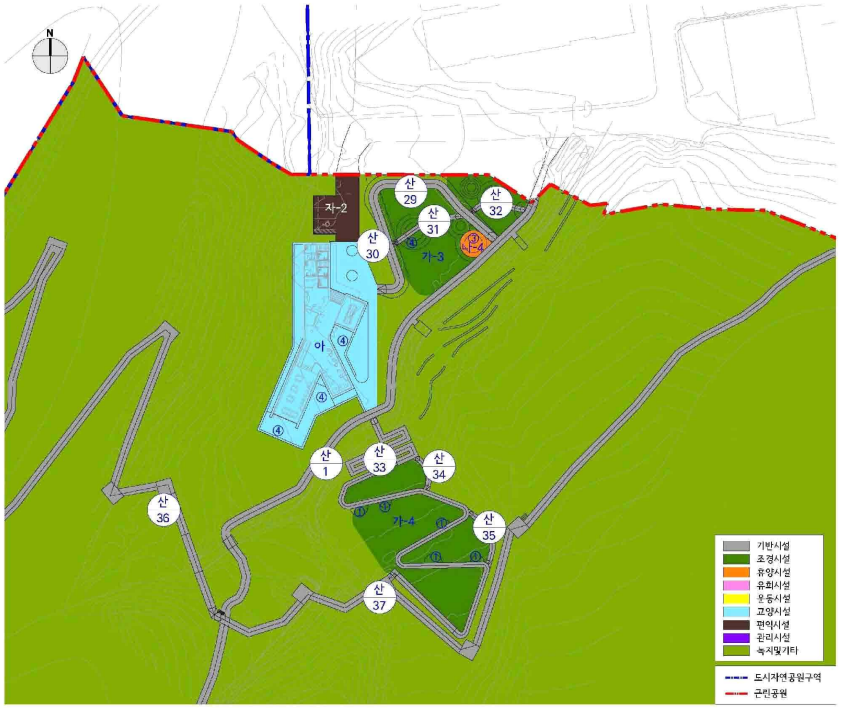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9,361.30	19,311.71	-	2	362.00	362.03	47	
기반시설	소계		10,937.24	10,937.24	-	-	-	-	-	
	도로		10,937.24	10,937.24	-	-	-	-	-	
조경시설	소계		4,785.84	4,785.84	-	-	-	-	32	
	운동종목수대	가	4,785.84	4,785.84	-	-	-	-	-	
		가-1	(2,199.24)	(2,199.24)	-	-	-	-	-	
		가-2	(1,556.19)	(1,556.19)	-	-	-	-	-	
		가-3	(443.74)	(443.74)	-	-	-	-	-	
		가-4	(586.67)	(586.67)	-	-	-	-	-	
	쉼의자	①	-	-	-	-	-	-	30	
	퍼고라	②	-	-	-	-	-	-	1	
	인칭하고라	③	-	-	-	-	-	-	1	
유희시설	소계		165.35	165.35	-	-	-	-	13	
	휴게소	나	92.85	92.85	-	-	-	-	-	
		나-1	(26.08)	(26.08)	-	-	-	-	-	
		나-2	(17.26)	(17.26)	-	-	-	-	-	
		나-3	(20.37)	(20.37)	-	-	-	-	-	
		나-4	(29.14)	(29.14)	-	-	-	-	-	
	전망데크	다	72.50	72.50	-	-	-	-	-	
	아외테이블	④	-	-	-	-	-	-	13	
운동시설	소계		1,250.00	1,250.00	-	-	-	-	-	
	배드민턴장	라	485.00	485.00	-	-	-	-	-	
	농구장	마	315.00	315.00	-	-	-	-	-	
	게이트볼장	바	440.00	440.00	-	-	-	-	-	
교양시설	소계		1,400.25	1,400.25	-	1	330.00	330.00	-	
	조경수목원	사	800.00	800.00	-	-	-	-	-	
	체험터	아	600.25	600.25	-	1	330.00	330.00	-	
편익시설	소계		773.03	773.03	-	1	52.00	52.00	2	
	주차장	자	671.83	671.83	-	-	-	-	-	
		자-1	(550.00)	(550.00)	-	-	-	-	-	
		자-2	(121.83)	(121.83)	-	-	-	-	-	
	약수터	차	20.00	20.00	-	-	-	-	-	
	화장실	카	81.20	81.20	-	1	52.00	52.00	2	
		카-1	(70.00)	(70.00)	-	(1)	(52.00)	(52.00)	(1)	
		카-2	(11.20)	(11.20)	-	-	-	-	(1)	
녹지 및 기타	소계		130,049.59	-	-	-	-	-	-	
	녹지		130,049.59	-	-	-	-	-	-	

Scale=1:400

0 20 60 120 400

◈ 송파구공고 제2025-1306호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7호(2012.01.1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5호(2021.02.15.)로 청년안심주택 사업 결정(변경)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8호(2025.05.29.)로 청년안심주택 해제 고시된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거여동 26-1호에 대해서 SH 매입임대주택(미리내집) 건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송 파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 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02-2147-3014)

□ 도시관리계획(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거여동 22번지 일대	50,853 (920.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 ('96.3.11)	-

※ ( )는 금회 변경대상지(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면적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 계	50,853	-	50,853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50	-	2,550	5.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7,412	-	7,412	14.6	-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8	-	2,388	4.7	-
	제3종일반주거지역	39	-	39	0.1	
	준주거지역	38,464 (920.5)	-	38,464 (920.5)	75.6 (1.8)	

※ ( )는 금회 변경대상지(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면적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불허용도 : 변경

구 분	전 층			비 고
	기 정	변 경		
전구역	• 생략 - 변경 없음			
간선변 준주거지역 (A)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간선변 준주거지역 (A-)	• 단독 및 공동주택(주거복합 또는 전량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수리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장례식장	송파구 거여동 26-1호에 한함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량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자 하는 거여동 26-1번지에 한하여 공동주택 불허용도 제외

나.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높이)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 변경없음

구 분	기 준	비 고
준주거지역	• 60% 이하	-

※ 상기 계획내용 외 기재 생략

2) 용적률 : 변경

■ 용적률 적용 기준(기정)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3)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간선변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이면부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지역1)	간선변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이면부2)	250~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주1)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계획한다.
주2) 준주거지역 이면부 각 필지별 용적률 계획은 도면 참조
주3)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준주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7항에 따라 용적률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 용적률 적용 기준(변경)

구 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3)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14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제2종일반 주거지역	간선변		19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이면부		18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준주거지역1)	간선변		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400%이하	400%이하	540% 이하	
	이면부2)		250~300%이하	36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주1)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250% 이하 적용(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제외)
주2) 준주거지역 이면부 각 필지별 용적률 계획은 도면 참조
주3)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0조 「허용(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이내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에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의 2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거여동 26-1번지에 한해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24.04.) 사항을 일부 준용하여 기준/허용용적률 변경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 적용 기준

기 정	변 경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250% 이하 적용' 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 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용적률의 10% 이상 계획 ※ 용적률의 10% 이상 설치는 지상부 설치를 의미 ※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중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250% 이하 적용' 하는 기준과는 별도로 비주거 용도 비율을 만족하여야 함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에 한해 전량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비주거 용적률의 10% 이상 미적용 및 주거 부분 허용용적률 250% 이하 미적용)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량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자 하는 거여동 26-1번지에 한하여 비주거비율 10% 미적용 및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 250%이하 미적용

■ 공동개발(특별지정) 대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없음, 기재 생략)

■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도입 용적률 완화 (신설)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 고</th></tr>
<tr><td>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도입1)</td><td>•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 허용용적률 + 조례용적률2) × 0.2 이내
<table>
<tr><th>구 분</th><th>20년 이상</th><th>10년 이상</th><th>5년 이상</th></tr>
<tr><td>공공임대주택</td><td>20%</td><td>15%</td><td>10%</td></tr>
</table>
</td><td>송파구 거여동 26-1번지에 한함</td></tr>
</table>

주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용적률의 완화) 제1항제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
주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4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이하 동일)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거여동 26-1번지에 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을 건립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조례 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함

■ 친환경 항목 적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신설)

<table>
<tr><th>구 분</th><th>계 획 내 용</th><th>비고</th></tr>
<tr><td>친환경 항목 적용</td><td>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X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 시 의무기준 및 요율은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
-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법적용적률은 변경 전 용도지역 용적률 적용
- 친환경 건축물 인증 완화비율(β)
<table>
<tr><th colspan="7">① 에너지 효율등급 및 ZEB 인증</th></tr>
<tr><td>구분</td><td>ZEB1</td><td>ZEB2</td><td>ZEB3</td><td>ZEB4</td><td>ZEB5</td><td>에너지 효율 1++</td><td>에너지 효율 1+</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d>6%</td><td>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② 녹색건축 인증</th></tr>
<tr><td>완화조건</td><td>최대완화비율</td></tr>
<tr><td>녹색건축 최우수 등급</td><td>6%</td></tr>
<tr><td>녹색건축 우수 등급</td><td>3%</td></tr>
</table>
<table>
<tr><th colspan="4">③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th></tr>
<tr><td>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td><td>15% 이상</td><td>20% 이상</td><td>25% 이상</td></tr>
<tr><td>완화비율</td><td>5%</td><td>10%</td><td>15%</td></tr>
</table>
<table>
<tr><th colspan="3">④ 장수명주택인증</th></tr>
<tr><td>장수명주택 인증등급</td><td>최우수</td><td>우수</td></tr>
<tr><td>완화비율</td><td>15%</td><td>10%</td></tr>
</table>
1. ①~③ 항목 중복 적용시 완화비율은 최대 15% 적용 (∑①~③ ≥ 15% ⇒ 15% 적용)
2. 장수명주택인증은 관련 조례 개정 후 시행
</td><td>「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용 기준 ' 25.1.)」 준용

※ 금회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ZEB인증 4등급(12%)/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3%) → 총15% 적용</td></tr>
</table>

– 변경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유
송파구 거여동 26-1번지	• 거여동 26-1번지에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고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별표19] 권한위임사무에 따른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신설

다. 관련 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끝.

[관계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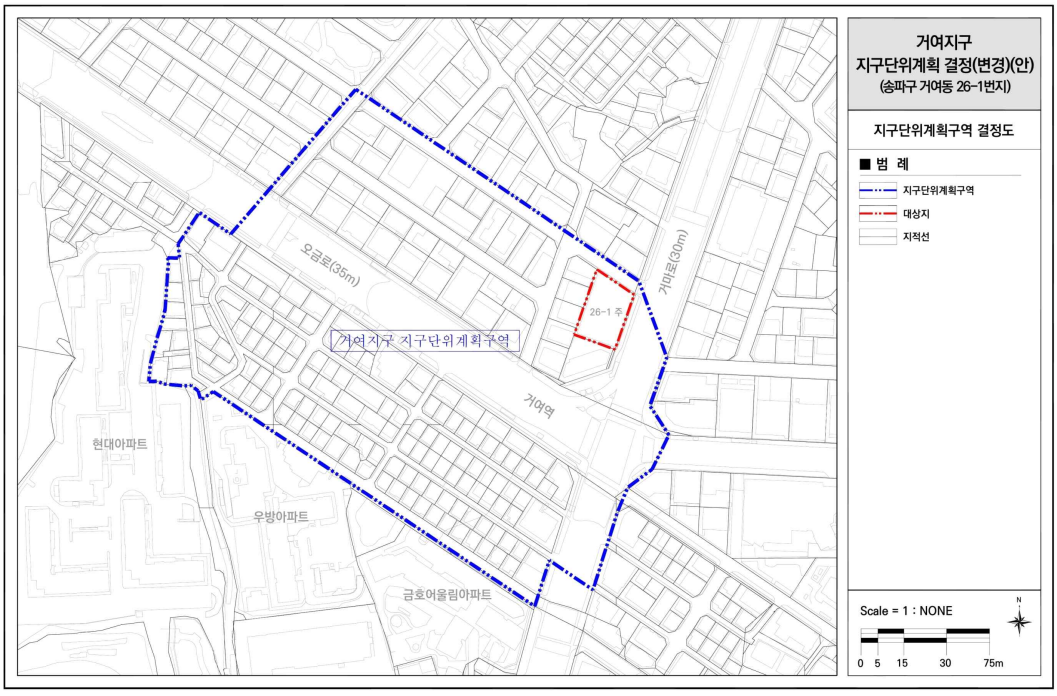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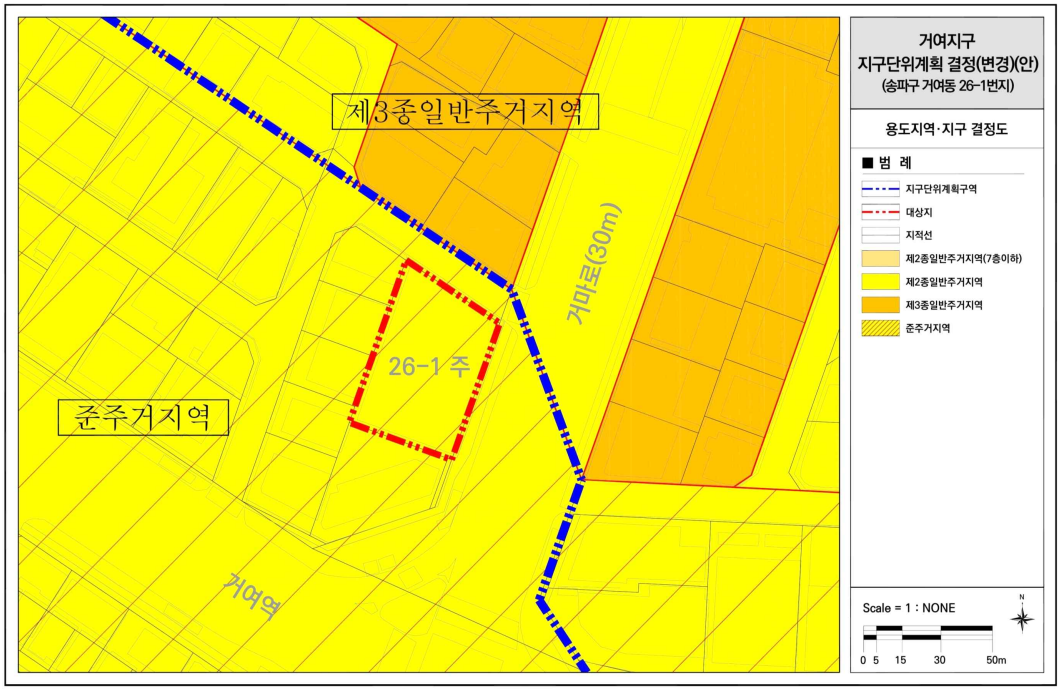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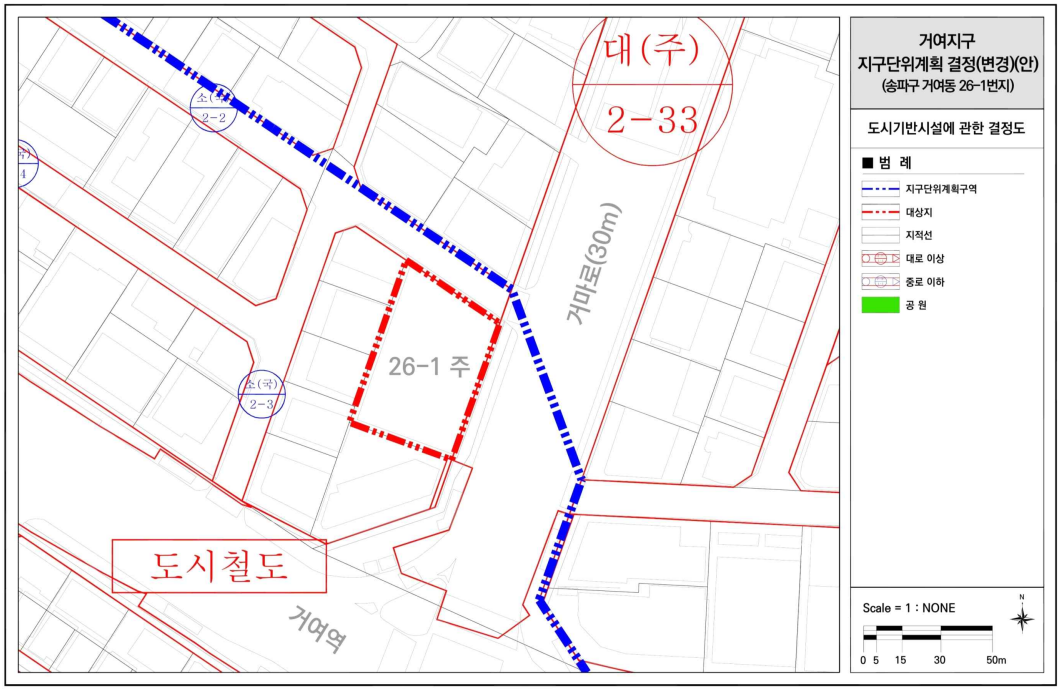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안)도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3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주식회사 로얄크루저 (대표 허재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서로 160	마리나선박 대여업	동력선 1척 (로얄크루저1호)	2025. 7. 9. ~12. 31.	2025. 7. 9.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2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가스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02-4~성동구 용답동 242-2
 - 면 적 : 47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관 매설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5. 점용기간 : (당초) 20216.6.24.. ~ 2021.6.30. (변경) 2025.7.14.~2030.7.13.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29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원구청(치수과)
 -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제1파크골프장)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230-10 일원
 (제2파크골프장)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54-14 일원
 - 면 적 : (제1파크골프장) 7,349㎡ (제2파크골프장) 3,8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원구 제1파크골프장 및 제2파크골프장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5. 점용기간 : (당초) 2024.09.13. ~ 2025.04.31. (변경) 2025.7.14.~2030.7.13.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